

여성학연구

PNU Journal of Women's Studies

제34권 제1호 | 2024. 4.

Vol.34. No.1. | 2024. 4.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 목차 |

특집 논문

- 김은주 | 다중위기 시대, 비인간 전회와 회절의 정치
..... 7
- 문현아 · 은기수 · 허오영숙 | 초국적 ‘가족하기’(doing family)의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실천 35

일반 논문

- 성수진 · 강영희 | 한국 여성의 결혼관과 한국의 결혼 규범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67
- 조민지 | 1960~70년대 버스안내원 직종의 여성화와
‘여성적인’ 서비스의 의미 107
- 최나현 · 김영 | 대학 미투운동의 응결점들
- B시 P대학의 경험을 중심으로 139
- 유화정 · 김효정 |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85
- 최희경 |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에 대한 성별 분석
..... 221
-

김은주 | 다중위기 시대, 비인간 전회와 회절의 정치

문현아 · 은기수 · 허오영숙 | 초국적 '가족하기'(doing family)의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실천

다중위기 시대, 비인간 전회와 회절의 정치*

김은주**

| 목차 |

- | | |
|--|---|
| 1. 들어가며: 다중위기 시대 그리고
괴물들의 약속 | 1) 회절 |
| 2. 비인간 전회(Nonhuman Turn):
주체에서 행위자로 | 2) 간섭의 패턴을 그리는 회절 |
| 1) 비인간전회에 관하여 | 4.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들
(inappropriate/d others)과 회절의
장소 |
| 2) 행위자-네트워크 | 5. 나가며: 인정의 정치를 넘나드는
회절의 정치 |
| 3. 행위자들의 얽힘을 드러내는 회절 | |

| 초록 |

이질적 현상들의 복합 위기를 뜻하는 다중 위기의 상황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을 기점으로 지구 행성적 재난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이 글은 ‘비인간전회’를 통과해 다중위기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적 이행을 모색하는 행위자(actor)와 그 연결을 살핀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인간 전회의 의미를 짚고,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 네트워크 개념을 해러웨이가 제안한 광학적 기구가 행하는 회절(diffraction)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행위성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의 중첩과 얽힘 그리고 연결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간섭의 패턴으로서 회절이라는 개념과 연관한다. 이러한 회절은 바라드의 양자적 이해를 통과해 중첩과 얽힘 그리고 전유할 수 없는 타자들의 간섭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521) 2023년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글임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dawnbright@hanmail.net

한 패턴으로 구체화된다. 바라드는 이러한 얽힘이 타자화의 흔적에 얽매어 있는 관계 이기에 다른 것과 얽혀 있는 의무의 관계를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바라드는 특히 회절의 특징은 모호성과 미결정성을 강조하며 이분법적 사유를 넘어서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 연결을 강조하는 회절의 정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다중위기, 바라드, 비인간전화, 해러웨이, 행위자-네트워크, 회절

1. 들어가며: 다중위기 시대 그리고 괴물들의 약속

프랑스의 사상가인 에드거 모랭(Edgar Morin)은 20세기를 야만의 세기로 21세기를 불확실성의 세기로 진단한 바 있다. 불확실성의 세기는 경제·기술적 진보가 사회·정치적·도덕적 성장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라는 단순한 진보 개념과 역사의 예정된 진보를 필연성으로 바라보는 목적론을 폐기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모험으로 역사를 이해하면서 사회 현상의 다차원적 성격과 주체이자 대상이 되어버린 인간 존재의 상황을 제시한다.(모랭, 1999)

모랭(Morin)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는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중위기(Multiple Crises)로 나타난다.(Morin& Kern, 1999) 다중 위기는 “다른 모든 문제가 종속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거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난, 적대감, 위기, 통제되지 않는 과정, 지구의 전반적인 위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모랭 & 케른, 1999: 74)이다. 위기는 생태학적 위기,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사회 위기, 지식과 교육의 위기 등 다종의 복합적이지도 복수적인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 더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없고 지구 행성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 결국 다중위기는 분리될 수 없는 이질적 현상들로 연결되어 일어나는 지구 행성 차원의 복합 위기이며 보편과 추상으로 수렴, 환원될 수 없는 복수의 특이성과 우연성으로 겹쳐진 위기로 나타난다.

이러한 다중 위기의 상황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을 기점으로 행성적(planetary) 재난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팬데믹과 포스트 팬데믹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디지털 기술의 의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의 접근과 활용 그에 따른 경제적 구조의 양극화를 심화했다. 이 뿐 아니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체제로 인한 각국의 정치 위기는 국제질서의 균열로 이어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 세계의 ‘화약고’가 폭발하는 대리전 형태의 전쟁이 곳곳에서 발발해 민간인들의 학살과 살 곳을 잃은 난민들이 점점 더 증가한다.

무엇보다도 극심한 가뭄과 홍수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동과 생태계 교란이 보여주듯 기후 위기는 지구 행성의 심각한 위기이다.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의 지적처럼 “오늘날 주요 문제인 지구온난화와 팬데믹은 중대하게 연결”(라투르, 2021:12-13)되어 있기에 코로나를 이어 넥스트 팬데믹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출현과 보건 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와 재난 상황이 불안과 증오 그리고 사회적 우울을 가속화하면서 우리 삶을 포위하는 다중위기의 시대가 동시대의 풍경이다.

그렇다면 다중위기 시대, 어떻게 행위 할 것인가? 앞서 다중위기를 제시한 모랭은 어떤 문제를 측정하는 것이 그 장소 바깥에서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는 주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재난의 상황에 실재적으로 대처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호소한다. 이는 인간이 더 이상 주체만이 아니라 대상이자 객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근대의 이분법의 논리에서 벗어나 세계의 복잡성, 불확실성, 모호성을 이해하고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다르게 사유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모랭이 다중위기를 예측한 1999년 보다 앞서,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1992년에 쓰여진 「괴물들의 약속」에서 20세기 후반 인간과 동물, 유기체와 기계, 물리적인 것과 비물리적인 것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과정 중에 등장한 경제적 피조물인 ‘괴물’을 조명한다. ‘괴물’은 ‘자연’을 자본주의가 제시하는 자원이거나 소유물, 투시법적 시선에서 읽어내야 할 비밀

스런 텍스트 혹은 계몽의 대상 그리고 대문자 ‘인간’으로 표상되는 서구 남성중심 문명에 상처 입은 어머니로 여기는 바를 반박한다. 해러웨이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설명은 자연을 마치 미리 거기에 존재하는 ‘용기’로 전제하며 자연과 문화, 자연과 인공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한다.(Haraway, 1992)

해러웨이는 영장류학에서 인간의 자연성과 본능을 대표하는 존재인 ‘원시인’으로 영장류를 은유하는 가부장적 내러티브의 정당화 매커니즘을 발견하고 비판하면서 자연의 ‘재발명’을 확인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자연을 발명 하는지, 그리고 그 누군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이다. 다시 말해, 지식은 언제나 ‘위치 지어진 지식(situated knowledge)’이며,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관찰하는 것이 달라지는 특정한 관점에 의존한 체화된(embodied) 실재라는 것이다.(해러웨이, 2007) 캐런 바라드(Karen Barad) 역시 해러웨이에게 동의하며, 지식 추구의 에로티시즘과 인식론적 유혹이란 은유를 바탕으로 한 기술과학의 상상 아래에서 비밀을 지닌 여성과 같이 그려지는 자연과 그러한 비밀을 밝히기 위해 위대한 기술자인 남성적 과학자를 주연으로 삼는 인식론적 각본에 문제를 제기한다. 더 나아가 과학이 자연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고, 비밀과 숨겨진 상태라는 것이 없다면 과학과 기술의 역할은 어떻게 이해될지 묻는다.¹⁾(Barad, 2008)

해러웨이는 자연을 복수종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재생성’된 자연이자 “인공주의(artifactualism)”의 바깥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이 자연의 풍경을 통과하는 여정을 제안한다.(해러웨이, 1992)²⁾ 이러한 자연은 허구이자 사실로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술과학의 실행들과 특정 시공간 속의 특정한 집합적 행

1) 바라드는 ‘얽힘entanglements’의 개념을 제안하면서, 이 개념이 위와 같은 비밀의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한다.

2) 해러웨이는 모든 기술을 재생산기술로 가르친 조에 소피아의 영향을 강조하며 재생산이라는 용어를 생성이라는 용어로 바꾸길 제안한다.

위자들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이는 자연을 인간만이 아닌 행위자들의 구축물로 제시하고, 기술과학이 실행하는 생산은 탈자연화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특정한 생산이자 “재자연화”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자연화는 근대의 인간중심주의의 자연/문화 이분법의 자연으로 되돌아가기를 결코 칭하지 않는다. 해러웨이는 자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자연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물리적 장소도 아니고, 올라타나 독으로 에워싸야 할 보물도 아니며, 구원하거나 침범해야 할 본질도 아니다. 자연은 숨겨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드러내져야 할 필요도 없다. 자연은 수학과 생의학적 코드로 해독해야 할 텍스트도 아니다. 자연은 기원, 재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타자’도 아니다. 어머니도, 유모도, 노예도 아니고, 인간의 재생산을 위한 모체도 자원도 도구도 아니다. 그러나 자연은, 보편적 주제들(themes)을 숙고하기 위한 장소로서 토포스(topos)라는 수사학자들의 의미에서, 관습적인 주제이자 장소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자연은 공통의 장소(commonplace)이다. 우리는 우리의 담화를 질서 있게 정리하고 기억을 구성하기 위해 이 주제에 의지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은 17세기 영국에서 ‘토픽(topik) 신들(gods)’이 지역 신들(local gods), 즉 장소들과 민중들에게 고유한 신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면 수사학적으로 이러한 혼(spirits)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시 거주하기 위해, 보다 정확하게는 공통의 장소, 즉 폭넓게 공유되고, 불가피하게 지역적이고, 세속적이고, 기운찬, 다시 말해 시사성 있는 위치, 현장(locations)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 그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은 공적 문화를 다시 세우는 장소이다. 자연은 또한 말의 수사(trope)이자, 전회, 회전(trópos)이다. 자연은 형상, 구성물, 인공물, 운동, 전치이다. 자연은 또한 구성 이전에 존재할 수 없다.(해러웨이, 1992: 297)

이 글은 “지역/글로벌 괴물들”이 안내하는 “여기와는 다른 곳(elsewhere)”으로 향하는 해러웨이의 30여년 전의 여정에 2024년이라는 시간과 한국이라는 공간이라는 위치에서 동행하며 이를 ‘비인간전회’를 통과해 다중위기상황을 새로운 정치적 이행으로 모색하는 행위자(actor)와 그 연결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해러웨이가 언급한 “문자 그대로 ‘괴물(monsters)’이며, ‘보여주다(demonstrate)’라는 단어와 어근 이상의 것을

공유”한 경계적 피조물인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 행위자가 구축하는 새로운 배치의 가능성에 접근하여, 생산된 자연의 재생성(regeneration)의 체현된 현장(embodied location)에서 불확실성을 긍정하며 “패턴화된 비전(patterned vision)”을 얻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 네트워크 개념을 해러웨이의 여정과 겹쳐 읽고 해러웨이의 광학적 기구가 행하는 회절(diffraction)을 바라드의 양자적 이해의 방법을 통과해 중첩과 얽힘과 함께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는 다중 위기 시대에 위치 지어짐(situated)을 강조하고, 이곳에서 상상의 다른 곳을 위한 ‘연결(connection), 체현(embodiment), 책임/응답능력(responsibility)’을 생산하기 위한 실행이자 회절의 정치의 모색이기도 하다.

2. 비인간 전회(Nonhuman Turn): 주체에서 행위자로

1) 비인간전회에 관하여

옥스퍼드 사전에서 전회를 뜻하는 영단어 “turn”은 애초에 비인간적 물질성과 움직임을 그 의미의 일부로 포섭하고 있던 것으로 서술된다. 15세기 중세 영어에서부터 앵글로 노르만, 라틴어, 그리스어에 뿌리를 둔 “turn”은 비인간적인 움직임과 변화를 포함하는 동작 명사이며, 맥락에서의 행위성이나 행동을 가리킨다.(Grusin, 2015)

리차드 그루신(Richard Grusin)에 따르면, 비인간적 전회를 기술할 때, 늘 “turn”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신체성과 운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라투르적 의미와 겹쳐 “turn”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자면 번역(translation)이거나 사건 생성을 지시하는 매개(mediation)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³⁾

특히 이러한 전회의 방향은 시간의 측면에서 과거로 되돌리기(turn back)이자 미래로 향하는 실험이다. 전회가 가리키는 과거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왔는가라는 물음이며, 전회가 정향하는 미래는 인간중심주의의 선형적 진보로 미리 주어진 시간성에 이탈하면서, 비선형적 시간성 속에서 현재를 지금으로 지속시키는 미래의 시간성을 선택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전회의 의미를 강조하는 비인간적 전회는 다음의 특징을 지닌다.

1. 비인간적 전회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 대부분은 동물, 식물, 유기체, 기후 시스템, 기술, 생태계 등 인간중심주의에 반대하는 이론적 지형에 있다.
2. 인간/비인간, 주체/객체와 같은 이원론을 거부한다.
3. 비인간 전회는 탈인간중심주의의 맥락이 있다. 인간적 특성을 다른 존재에 투사하여 인간으로 환원하여, “인간만이 가치와 의미의 근원이 된다는 오만한 가정”(샤비로, 2021:14-15)에서 벗어나, 인간이 실제로 알 수 없는 것에 관해 사변하거나 실험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협상을 시도한다.
4.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자율적 남성 주체가 가진 특권적 지위에 저항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비인간 전회에서 제일 중요한 관심은 인간중심주의가 상정하는 이원론과 이분법의 위계설정과 거리를 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이다. 이는 근대의 인간중심적 합목적성과 유용성으로 비인간 행위자의 가치와 의미를 규정해온 인간중심주의의 도구화에서 벗어나, 비인간의 고유한 존재 방식과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자 세계에 대한 비인간의 참여를 적극적인

3) 이에 관해 그루신은 비인간적 전회를 체화된 사유의 움직임으로 이해하고, 들뢰즈와 과타리의 “내재성의 평면the plane of immanence”이 작동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성과 움직임으로서의 전환이 갖는 체화된 감각을 “방향 전환turning toward”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방향전환, 무언가를 향한다는 것이 적극적인 대면이며, 길을 잃는 것, 옆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인간적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인간에 관한 전통적 방식을 잃고 다른 많은 비인간적인 것들을 향해 시선을 둔 채 다가가는 것이다.

로 드러낼 방법으로서 행위성(agency)을 모색하는 것이다.

행위성에 관해 시몽동은 전개체화로부터 개체화 과정을 거치는 인간과 비인간의 공동 구성 혹은 존재 발생과 인공과 자연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인간과 기술의 공진화에 관해 제시한 바 있다.(시몽동, 2021) 앤디 클락은 언어 이후의 인간 인지가 어떻게 체화된 비인간적 기술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는지 발견하고, 인간을 “자연에서 태어난 사이보그 natural-born cyborg”로 규정하고 해러웨이는 「사이보그 선언」에서 인간/비인간의 혼종인 ‘사이보그’와 ‘사이보그적 행위성’개념을 제안한다.(클락, 2015; 해러웨이, 2002)비인간적 전회에서 비인간의 행위성 등장은 사회구성주의와 상관주의(correlationalism) 비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⁴⁾ (김은주, 2023b)

2) 행위자-네트워크

행위성의 측면에서, 특히,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주체 객체의 이분법으로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해석하여 행위성을 인간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는 단언을 인간 중심주의로 비판한다. 행위자 네트워크(actor-network)는 사물을 주체에 의해 정립되는 객체나 대상이 아니라, 관계를 이루는 물질(matter in relation)이자, 행위자로 설명한다. 여기서 “행위자(actor)는 기호학적 정의이며, 이는 행동하거나 타존재로부터 행위능력”이 부여된 무언가이다.(김은주, 2023a: 112)⁵⁾ 행위자는 기술, 자연, 제도 등 비인간 존재도 포함하며, 인간이 지닌 특별한 동기를 가정하지

4) 다시 말해, 이는 비인간 세계에 관한 지식이 인간의 지성의 선형적 범주와 상관관계에 놓이거나 매개되어야만 한다는 칸트적 상관주의에 관한 비판이다. (김은주, 2023b)

5)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의 행위자는 그레마스 기호학에서의 기호학적 정의인 행위소(行爲素, actant)이다. 행위소는 행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무엇이든 된다. 이는 스스로 행위 하거나 다른 존재로부터 활동을 부여받은 존재를 의미한다.

않을 뿐 아니라, 행동을 수행하는 것, 라투르에 따르면, “차이를 만듦으로써 사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Latour, 2005: 71) 행위자로 불리며, 차이를 생성하지 못하는 존재는 행위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행위자’는 “어떤 행위를 하는 실체들(entities that do things)” (라투르, 1992: 241)이다. 행위자 네트워크의 존재론적 구성성분은 바로 행위력을 지닌 행위자이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외부에는 행위도, 행위자도, 행위성도 없다. 행위성을 지니는 사물인 행위자는 언제나 네트워크 속에서, 네트워크를 이루어, 네트워크로서 행동하며, 사실상 행위자는 (개체가 아닌) 행위자-네트워크다. “행위자가 무엇이나는 정의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바 시험들(trials)을 통해 그 행위자가 나타내는 수행들(performances)에 의해서 정의”되며, 나중에 이로부터 “그 행위자의 능력(competence)이 연역”(김환석, 2001: 209)된다.⁶⁾ 행위자는 “행위자-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행위자 네트워크에서 비인간은 인간과 동등한 행위자의 지위를 갖고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비인간 행위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도, 그 자체로 행위 하는 것도 아니다. 행위자는 언제나 행위자인 동시에 네트워크이다. 비인간은 관계를 통해 작동한다. 행위자로서 비인간은 네트워크와 분리 불가능하다. ‘행위자’는 단독자가 아니며, 인간-비인간 행위자의 혼종적 네트워크로서, “나의 행위능력이란 나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술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관계적 효과’”(홍성욱, 2010: 23)이다. 물론, 네트워크는 역동적이고 사라지기 쉬워서 안정적이지는 않으며, 행위자의 특성을 재정의하는 과정을 동반한다. 결국 행위자란 이중 물질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다.

6) 바라드 역시 이러한 행위자에 관해, “세계 생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가자라는 응분의 권리(due)를 사물에 허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Barad, 2003)

이런 점에서 행위자의 행위는 그 자체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행위로 인계되거나, 후행하는 행위에 의해 변형, 굴절된다. 이는 행위가 자가-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타자성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생산적인 것임을 의미한다.(김홍중, 2022) 행위는 단일한 행위처럼 여겨지나,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고 선행하는 다른 행위자들이 이미 행하고 이어가고 행하고 있는 수많은 행위들로 채워져 있다. 하나의 행위는 다른 행위들로 겹겹이 쌓이고 넘쳐지는 관계에 있으며 그로부터 생겨난다. 이처럼 행위의 관계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행위자의 의도나 지향성과 같은 인간중심주의나 자유주의의 개인주의로 설명되거나 제어될 수 없는 타자들의 행위들과 얽혀있다. 이는 행위가 어떤 특정한 요소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라투르에 따르면, 모든 행위는 과소결정(under-determination)의 법칙을 따른다. “원인들은 단순히 계기를, 상황을 그리고 선행자(precedent)를 제공할 뿐”(라투르, 2005: 45)이다. 다시 말해, 행위의 원인은 행위 전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행위가 펼쳐지는 과정에는 언제나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겨난다.

행위의 이러한 관계성에 의해 행위성이라는 개념은 다수의 분산된 행위들의 결과를 받아들여 계속하게 하는 것이다. 행위성은 인간중심주의가 상정하는 능동적으로 하는 힘이라는 의미와 거리가 멀고, 다른 행위자가 하게 만드는 힘을 받아들임으로써 실행하는 바에 가깝다.(라투르, 2018) 행위는 언제나 나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게 한 다른 행위자의 행위 능력과 연결된다. 즉, 이렇게 행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행위 할 수 있도록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것”(라투르, 2005: 50)임을 뜻한다. 행위는 다른 행위자들과의 얽힘, 겹쳐짐의 연결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다.

3. 행위자들의 얽힘을 드러내는 회절

1) 회절

행위자 네트워크는 비인간을 행위자로 설명하고, 다수의 분산된 행위로 인한 행위성을 제시한다. 행위성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의 연결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연결망의 양식은 결합들의 다양성과 양식들의 다수성을 지니며, 이러한 연결망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자는 다른 존재자를 경유해 통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변이시키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른 방식으로 통과”(라투르, 2023: 104)해야 한다. 다시 말해, 라투르에게 행위는 순환을 가능케하는 연속성과 배치를 실행하는 불연속성이라는 이중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간섭의 패턴으로서 회절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절은 반사와 산란과 같이 파동의 현상 중 하나를 일컫는 물리학 용어이다. 회절은 파동이 다른 파동과 만나 겹쳐지거나 방해물을 만나 휘어지거나 퍼져나가는 파동 고유의 현상을 의미한다. 파동은 반사 혹은 반영(reflection)과 대조해 보며 그 차이가 분명해진다. 반사나 반영은 빛이나 소리와 같은 파동이 진행하다가 두 매질의 경계면을 만날 때, 그 파동에 에너지가 입사하는 매질 방향으로 되돌아간다. 대상이 거울에 비친 상의 관계로 표상하는 것이 반사이다. 이러한 반사는 근대적 유클리드 공간을 전제하는 뉴턴의 입자설에 입각한 광학적 현상이다.⁷⁾

7) 뉴턴 물리학에 따르면 자연은 결정적이고 결정론적이다. 대상(object)은 일정한 경계와 속성을 가지고 존재하며, 그것의 전체 미래(과거)는 주어진 시간(예: 대상의 위치 및 운동량) 내 기존 상태의 측정값을 기반으로 확실하게 예측(소급)될 수 있다. 상관적 세계관은 객관적 지식이 세계의 객관적 상태를 드러낸다고 본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원자 규모의 사건은 고전적 뉴턴 물리학으로 정확히 이해될 수 없었던 듯하다. 이를 연구한 물리학자들은 자연이 완전히 결정적 상태로 존재할 수 없으며, 예측이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라는 이론을 이끌어낸다. 바라는 이러한 지점에 미루어 양자 이론이 존재의 결정적 본성과 엄격한 인과적 결정론

이에 반해, 회절은 좁은 틈을 통과하거나 방해물 뒤쪽으로 휘어 돌아 들어가는 현상,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넓게 퍼지는 현상으로, 간섭과 함께 파동을 입자와 구별 짓는 특성이다. 파동의 회절은 파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회절 효과는 방해물이나 틈의 크기가 파장과 비슷할 때 크게 나타난다. 소리 파동의 파장은 수 센티미터에서 수 미터에 이르지만 빛의 파장은 수백 나노미터 밖에 되지 않아, 방해물과 문틈에 대해서 소리는 충분한 회절 효과를 보여주지만 빛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매우 작은 핀 구멍을 통과하는 빛은 큰 회절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회절의 가장 특징은 회절 하는 파동이 같은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틈에 영향을 받아 다른 모양으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해러웨이는 자신의 이론을 회절을 만들어내는 광학적 장치로 제안하고 회절을 지식생산 관행에 따른 차이와 그것이 세계에 미치는 효과로 재정의한다.(해러웨이, 1992) 해러웨이에 따르면, 이러한 광학적 장치는 남근주의자들의 판타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포르노의 시각으로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된 회로인 재배치된 시각화 기술로 다른 필터를 작동시키며 간섭하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회절의 장치이다.

회절의 장치로서 광학적 장치는 전망(vision)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눈을 밝히는 계몽과는 다른 어떤 것을 찾으려는 시도”(해러웨이, 1992: 296)이다. 해러웨이는 회절이 일어날 때 스크린을 놓으면 빛이 지나가는 길이 기록되는 것에 견줄 수 있는 이론화를 모색한다. 해러웨이가 회절을 강조하는 이유는 반사나 굴절이 만들어내는 전치된 동일성과 원본과 복사본이라는 위계적 서열을 생산하지 않고, 간섭의 지도를 그려내기 때문이다. 같은 모양을 재현하는 복제와 달리, 회절이 그려내는 패턴은 타자를 통한 변화, 타자가 끼친 효과의 나타남이다.

2) 간섭의 패턴을 그리는 회절

이러한 해러웨이의 회절 개념은 캐런 바라드의 양자 역학 논의를 통해 보다 중첩과 얽힘으로 구체화된다.(Barad, 2014) 바라드는 회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회절에서 차이는 모든 장소와 시대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복합적 다양성이자 존재론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회절의 어원인 라틴어 diffract-에서 알 수 있듯, 조각으로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져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진다. 회절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며 분산한다.

2. 회절은 간섭의 패턴을 그려낸다. 그리고 이러한 회절 패턴은 차이가 나타나는 위치를 지도 그리기 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효과가 나타나는 위치를 그린다. 회절에서는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진 파동이 보강이나 소멸을 일으키면서 공명하거나 상쇄됨에 따라 서로 다른 무늬가 만들어진다. 즉, 회절은 차이 생성적이며, 시간-공간 물질의 (재)구성에서 함께 절단-분리(cut)하며 차이를 생성한다는 점에 착목하는 것이다.

차이는 모든 장소와 시간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그 내부에 다양체를 내포하고 있다. 차이 자체가 회절 된다. 회절은 모든 규모의 차이의 문제이며, 오히려 규모의 만들기과 다시 만들기(시공간을 물질화하기)의 문제이다. 물질의 각각의 비트, 시간의 각각의 순간, 공간의 각각의 위치는 (겉보기에) 이질적인 부분들의 중첩/얽힘으로 이루어진 다양체이다. 분리된 부분의 혼합이나 경계의 흐림이 아니라, 그 특이성의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 거미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유한 물질적 역사성과 그것이 어떻게 물질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여기 안에서. 중첩.(바라드, 2014:175)

3. 이러한 회절 개념에 관해 바라드는 “물리학만큼이나 차이에 대한 페미니스트 이론의 두꺼운 유산에 많은 빛”을 강조하면서, 회절을 “과거를 되돌아보거나 과거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시간성

(시공간성), 새로운 회절 패턴을 만들기”에 방점을 둔다. 회절은 “정해진 패턴이 아니라 분화-융합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재)구성되는 구별-융합의 패턴을”따르며, “그 너머로 나아가는 것도, ‘오래된 것’을 남겨두는 것”도 없다. “여기-지금과 저기-저기 사이에는 절대적인 경계가 없으며, 새로운 것도 없고 새롭지 않은 것도 없다.”(바라드, 2014: 168) 이는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다시 회절하고, 새롭게 회절 하는 것을 다시 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바라드가 예를 드는 지렁이가 퇴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미 있어왔던 흙을 뒤집어 먹고 배설하고, 땅에 구멍을 파고, 헤집어 산소를 공급하여, 땅을 열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등 흙을 계속해서 뒤집어 내는 다양한 과정으로 회절을 이해볼 수 있다.

4. 회절은 “생동감 넘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유기/무기, 생물/무생물과 같이 가장 침전되고 안정화/안정화되는 이분법적 사고에 문제를 제기하는 현상”(바라드, 2014: 168) 이다. 바라드는 이분법 개념 자체를 문제 삼으며, 회절이 반사와 대조되는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특히 주체와 대상이 회절이라는 현상 혹은 사건 이전에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주체가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둔 한 고정점에서, 반사는 대상을 말 그대로 반사하는 거울 이미지를 생산한다. 기하학적 광학은 타자를 부정, 결핍, 이질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타자에 대항하는 자아는 자신의 헤게모니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아와 타자 사이에 뚫을 수 없는 장벽을 세운다. 자아(‘나’)는 항상 자기 자신만 볼 뿐 타자는 보지 못한다. 그러나 회절은 이중적 움직임으로, 여기서 “둘은 결코 이원성과 같은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분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는 결코 하나의 형태 또는 획일성으로 표현되지 않으므로 다양체를 배제하지 않는다.” (바라드, 2003: 801)

회절이 일으키는 내/외부의 유희는 자아/타자의 이분법과 단일성을 전제하는 자아 개념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양자 역학의 중첩과 얽힘 개념으로 자아를 설명한다. 중첩은 자타 이분법에 따른 대립이 아닌

물질에 여러 상태가 겹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질의 겹침인 중첩은 측정하는 순간 겹쳐 존재하는 다른 상태들은 사라져 없어지며, 아주 멀리 떨어진 양자 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이 중첩에서 얽힘으로 바뀌는 양자 얽힘이다. 얽힘의 특징은 거리와 상관없이 양자들이 얽혀있고, 하나가 결정되는 순간 다른 것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양자 간의 영향 속도가 빛보다 빠르기 때문에, 양자 상태가 관측으로 확인되면 그와 동시에 다른 양자의 상태도 결정된다.

중첩과 얽힘의 양자 역학을 통해, 바라드는 확정적 상태나 측정(measurement)에 비결정적인 상태인 중첩을 자아에 적용하여 근대의 인간중심주의의 단일한 자아상과 달리, 자아를 “그 자체로 다중성, 존재와 존재의 중첩, 여기와 저기, 지금과 그때의 중첩”로서 설명한다. 중첩과 얽힘에 관한 사고 실험의 대표적인 예시는 슈뢰딩거의 고양이 실험이다. 슈뢰딩거의 고양이 실험은 양자역학의 불완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사고실험이다. 실험에서 고양이는 철로 만든 상자 안에 갇혀 있으며, 이 상자는 한 시간 안에 동일한 확률로 붕괴 가능한 방사능 물질이 들어 있는 가이거 계수기와 연결되어 있다. 방사능 물질이 붕괴되면, 가이거의 계수관이 방전되면서 망치가 떨어지고 그것이 독가스가 들어있는 플라스크를 깨뜨려 고양이는 죽게 된다. 이 실험의 핵심은 확률 개념에 있다. 양자 이론을 통해 주어진 시간 안에 방사능 물질의 원자가 붕괴할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붕괴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실험의 시스템은 고양이와 방사능 물질의 운명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설정된다. 원자가 붕괴하여 고양이가 죽는 경우와 원자가 붕괴하지 않고 고양이가 사는 경우가 그 두 가지 운명에 해당한다. 슈뢰딩거의 방정식은 한 시간 후 이 얽힌 시스템의 전체 상태가 이 두 가지 상태의 ‘중첩(superposition)’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바라드는 중첩을 이해하는 정확한 방법은 고양이의 운명이 방사능의 원천과 얽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슈뢰딩거가 제안하는 것처럼 존재와 관련되어 고양이

와 방사능 물질 원자는 개별적으로 결정된 존재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실험에는 독립적이면서, 고양이와 생명 상태라는 개념들에 적절한 ‘지시대상(referent)’으로서 구체화되는 ‘고양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라드는 고양이의 “생명 상태”를 측정/규정하는 방법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고양이가 동시에 살아있고 죽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생명 상태”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필수적인 규정 조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생명 상태”는 제대로 규정될 수 있는 어떤 결정적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다. 양자 역학은 표상주의의 형이상학적이 가정하는 단어와 사물이 지닌 본질적으로 한정된 경계, 속성, 및 의미라는 기본단위라는 논리를 해체한다. 바라드는 행위 실재론자로서 “생명 상태” 또는 “살아있음(aliveness)”은 관념적인 것이 아닌, 특정한 물질적 배열이라고 주장한다. 의미론/존재론적 비결정성은 다른 것들을 배제하고 특정한 개념들에 의미를 부여하여, “대상”과 “주체” 사이의 ‘단절(cuts)’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물질적 배열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바라드, 2008)

5. 바라드에게 있어 물질과 담론은 상호구성적이다. 물질은 고정된 본질이나 실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본질적 경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 자체는 회절 되고, 분산되고, 시공간적 물질의 반복적인 수행에 따른 물질화 및 퇴적 효과이며, 이미 발생했던 일의 흔적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의 흔적들로 꿰매어져”있다. 관찰 대상으로서 물질의 경계와 속성도 영원히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보어가 현상이라고 부르는 ‘대상’과 ‘관찰 기관’의 불가분성(분화된 불가분성), 즉 분리할 수 없는 부분과 함께 결정된다. 물질은 “행위, 즉 행위의 응집체로서 활동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며, 물질로서 존재하게 하는 물질화(mattering)는 “물질과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닫히지 않고, 우연적이고 일시적으로 결정되는(그리고 결정되지 않는) 것”(바라드, 2010: 266)이다. 이러한 물질화는 물질적 구성과 특정한 물질적 구성으로 구현된 특정한 배제적 실행을 지시하는 담론의 구

성이 상호 구성적으로 얽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바라드는 이러한 얽힘의 실행을 내부-작용(intra-action)으로 지칭한다. 내부-작용은 어떤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독립된 실체 혹은 관계의 항을 전제하지 않는다. 관계는 선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적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 내적 관계이고 내부-작용을 실행하는 행위자 역시 현상 내부에 있다. 사실상 구분되는 행위자들의 출현은 내부-작용의 결과이며, 현상은 내부-작용이 실행하는 행위적 절단(agenial cut)이 있기 전까지 경계지어지지 않는다. 또한, ‘내부-작용(intra-action)’ 개념은 인과성과 행위성의 본질적 변화를 포함하여 인식론 및 존재론적 풍경의 변화를 수반한다.

내부-작용은 “결정론과 자유 의지, 과거와 미래 사이의 낡은 선택의 이분법을 깨뜨리는 매우 비고전적인 인과관계”이며 “환원 불가능한 개방성을 구성”(바라드 2007: 74)한다. 내부-작용에 따른 물질화(mattering)는 물질을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행위자들 사이의 위치에서 작동하는 내부-작용들의 산물로 제시한다. 또한 담론적 실행은 언제나 진행 중인 얽힘의 단순한 기록만이라, 지식 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제약하는 지역적, 사회 역사적, 물질적 조건의 생산으로 제시한다.

6. 바라드는 이러한 얽힘이 “타자화의 흔적에 얽매어 있는 관계”이기에 다른 것과 얽혀 있는 의무의 관계를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얽힘을 나타내는 회절은 ‘타자’의 형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타자의 흔적과 효과가 그려내는 패턴이라는 점에서 ‘타자’에 대한 부채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타자’는 자아로 환원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매이고 뗄어져 있고, 자아라는 정체성을 회절/분산하는 그 자체이다. 타자는 물질 세계와 분리된 보편적 초월이거나 자아와 완전히 구별된 변증법적 반대항이 아니며, 그 자체로 “서로 얽히고 설킨 차이의 관계(différance)”이자 차이의 생성이다. 타자에 대한 바라드의 논의는 윤리를 윤리에 대한 전통적 접근 방식의 토대가 되는 개인주의를 비판하며, “자신과의 비밀관성을 수반”(바라드, 2010: 287)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러한 바라드의 윤리는 “규격화된 타자를 올바른 규범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생생한 관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이다. 즉, 윤리에서의 책임은 자아의 단일한 정체성을 갖춘 개인이자 주체가 선택하는 의지나 의무와 무관하고, 의식의 의지에 선행하는 체현된 관계로부터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책임은 “신체에 나타나는 특정 패턴의 흔적, 즉 우리가 속한 세계의 다양한 물질화 패턴”에서 비롯하며 그 뿐 아니라 “우리가 실행(enactments)에 참여하는 배제에 대해서도 책임”도 있기에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 것으로부터 배제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사유”(Barad, 2007: 394)해야 한다. 이러한 윤리에서 책임은 수행해야 할 이성적 계산이 아니라 세계의 지속적인 내부 작용과 비-행위에 있어 항상 수반되는 필수적 관계 그 자체가 해러웨이가 제시한 바 있는 응답능력이다.(해러웨이, 2021)

4.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들(inappropriate/d others)과 회절의 장소

회절은 타자성을 차이 생성적인 회절의 패턴에 간섭의 지도를 그리는 것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타자성에 관해, 해러웨이와 바라드는 영화감독이자 페미니스트 이론가인 트린 민하(Trinh Minha)의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들(Inappropriate/d others)”(Haraway, 1992: 299; Minh-ha, 1986: 7) 개념과 연관시킨다. 트린의 이 관용구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출현한 다문화적, 다민족적, 다인종적, 다국가적, 다성적인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와 함께 탄생했다. 타자들은 범주의 구분에 착안하는 동일성과 그에 기반한 정치학이, 이전 시기의 지배적이고 근대적인 서양의 네러티브가 제공했던 “자기” 혹은 “타자” 그 어느 쪽의 가면도 쓸 수 없는 자들을 역사적으로 위치 짓는 용어이다.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거나, 원본적인 것, 훼손되지 않은 지위를 가진, 특별한 보호 구역에 위치한, 순진무구함의 이질적 시간과 이질적 장소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러웨이에 따르면,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은 연결을 만들어 내기 위한 관계에 존재하며 회절하기이다. 해러웨이는 트린의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를 동일성에 따라 근거 지어버리는 특정한 분류학적 표시가 아니라 생성적인 것으로 이해하며, 다음과 같이 쓴다.

서구의 가부장주의적 서사들이 최초로 육체적 몸이 탄생했고, 그 다음으로 태양을 향해 [이성적] ‘인간’이 태어났다 말해왔다면, 미분적인, 회절된 페미니스트 우화에는 그 다음 세 번째로 탄생한, 여기와는 다른 곳이라 불리는, 즉 간섭에 의해 생긴 패턴으로 구성된 장소인 SF 세계 속으로 출현한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들’이 있을 것이다.(해러웨이, 1992:299)

해러웨이는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들을 사이보그 그리고 최초로 특허 받은 생명인 실험쥐 온코마우스 등으로 지목하고 그들이 그려낸 회절(diffraction)의 패턴을 살피며, 이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들과의 친족 관계인 인간과 비인간의 연결을 그려낸다.

그러하기에,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는 자기 동일성의 전략적 환상을 허용하지 않으며, 대표자/재현자/대리자(representative)를 세우는 정치에 문제를 제기한다.⁸⁾ 이러한 정치는 영원히 타자들을 침묵 속에 가둔 채 복화술사로 작동한다. 그들은 타자를 대리한다, 대표한다, 재현한다 하나, 대리의 대상이나 대리하고자 하는 근거는 대표를 자처하는 자가

8) 해러웨이는 “누가 재규어를 대변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해러웨이는 인간 뿐만 아니라 재규어와 다른 많은 비인간들의 삶의 방식이 사라지는 것에 책임이 있다는 점엔 통감하지만, 이 질문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잘못되었다. 이 질문은 임신중지논쟁에서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던진 질문(누가 태아를 대변하는가?)과 정확히 같다. “누가 재규어를 대변하는가?” “누가 태아를 대변하는가?” 두 문제 모두 재현/대표(대리)의 정치적 기호학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바라는 꿈의 실현에 불과하다. 또한 비인간을 누가 대변/대표/재현/대리하는가?라는 질문 역시 자신을 대변할 길 없다는 단정으로 비인간의 역할을 한정하는 관점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물음은 비인간을 대리자의 보호 관할 하에 놓아두고 영원히 침묵하는 자리에 머물게 한다.

바라드는 인간의 반대항인 비인간 타자를 대리한다는 정치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들에 관한 민화와 해러웨이의 논의를 이어, 글로리아 안살두아(Gloria Anzaldúa)의 경계지대(Borderlands/La frontera)를 회절의 패턴으로 그려진 타자들이 일으키는 회절의 장소로 제안한다.

안살두아에 따르면, 미국-멕시코 경계 지대는 미국에 반대하며 출혈하고 있는 제3의 세계인, ‘봉합되지 않은 상처 una herida abierta’이다. 경계지대(a borderland)는 계속해서 이행(transition)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장소에 모여드는 것은 소위 ‘정상성’이라 불리는 것들의 한계들을 건너가는 ‘횡단자들(los atravesados)’이다. 횡단자들은 ‘서류(documents)’를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은 간에 위반자들(transgressors)이자 이방인들 aliens이다. 무단침입자는 강간당하고, 불구가 되고, 교살되고, 총에 맞는다. ‘합법적인 거주자들은 오직 권력을 가진 백인들 혹은, 그 동조자들이다. 그러나, 안살두아에게 경계지대는 무엇을 가르고 구획하는 ‘선’이나 단절이 아니라 거주민들의 역사와 문화라는 넓고 두터운 ‘지대’, “부자연스러운 경계의 감정적 잔류물이 만들어낸 모호하고 비결정적인 장소”, 활발한 뒤섞임을 부추기는 장소이다.(Anzaldúa, 2012) 바라드는 안살두아의 모호하고 미결정적인 경계지대를 회절이 일어나는 장소로 이해한다. 이러한 회절의 장소에서 실타래처럼 엮인 물질의 내부-작용(intra-action)이 실행되며 시공간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행위자들의 연결로 시공간 물질 만들기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모호성과 미결정성은 회절의 장소의 가장 큰 특징이며, 회절은 자/타, 있음/없음, 풍요/결핍의 이원론과 이분법적 사유를 넘어서는 다. 이는 회절

실험에서 등장하는 회절의 패턴이 빛과 어둠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어둠과 빛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바와 관련한다. 회절의 패턴은 완전히 분리된 빛과 그림자라는 도식에서 벗어난다. 그림자로서 어둠은 빛의 결핍이 아니다. 패턴을 구성하는 빛과 어둠에서 어둠이 기존의 빛에 ‘새로운 빛을 더함으로써’, 즉 ‘이미 받은 빛에 새로운 빛을 더함으로써’ 패턴은 만들어진다. 회절의 패턴에서 어둠은 빛 내부에 자주 떠돌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빛이 추방한 타자가 아니다. 그래서 회절의 패턴이 그려내는 어둠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움이다.

이 점에서 회절의 장소는 명석 판명함에서 벗어나 동일성과 차이 개념 그리고 이분법을 퀴어링(queering)하고 이질적인 것의 ‘함께 있음’ 그 자체를 사유한다. 바라드에 따르면, 이는 이질적인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 자체가 서로를 붙잡고 있는 곳에 우리 자신을 놓고 분산하여 이미 존재했던 것(과거)과 존재할 것(미래) 모두와 얽혀낸다. (바라드, 2014)⁹⁾ 이러한 회절은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들이 미친 간섭과 효과를 그려내어 고유한 물질적 역사성과 어떻게 물질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려는 것, 세계의 일부로서 참여하는 것, 행성의 역사화된 물질로서 신체라는 장소의 경계를 재구성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공간 물질 만들기이다.

5. 나가며: 인정의 정치를 넘나드는 회절의 정치

앞서 살펴보았듯, 행위자의 행위는 인간중심주의가 상정하는 주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실천과 달리, 행위자들이 엮인 관계성에서 비롯한 행위 결과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자의 행위는 인간 행위자

9) 시간은 근대의 인간중심주의가 상정하는 선형성이 아닌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 행위자가 엮힌 다층의 시간성들로 두터운 시공간 물질이다.

만이 아닌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 능력과 연결되어 얹히면서 행위자들이 발휘한 효과와 간섭의 패턴을 그려내고 분산하는 회절적인 것이다.

회절은 정해진 패턴이 아니라 분화-얹힘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재)구성하여, 동일성에 기반한 인간중심주의와 이분법의 구획을 넘나들고 그 자체를 문제시한다. 바라드의 말처럼 회절은 차이 그 자체이다. 이 점에서, 회절은 오랫동안 위협적인 타자성, 존재론적 부적절함, 변형의 힘을 지닌 인간적 경계 바깥에 있는 괴물적인 것과 맞닿는다. 이러한 괴물은 비인간적 전회를 통과하며 인간 행위자와 함께 새로운 배치를 만들어내는 비인간 행위자이자 이들의 연결이다.

회절은 바라드가 제시했듯,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행위자 연결과 인간과 비인간적 삶의 물질적 조건을 연결하여 변화의 가능성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다양하게 표현하려는 실행이다. 이는 반복적으로 다시 열리는 “불확정성의 역동성, 세계를 다른 방식이 아닌 특정한 방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급진적 개방”이자, “세계를 다르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세계가 하는 일의 일부로서 나를 존재론적 공간(시공간)을 열어내는”(바라드, 2021: 17) 것이다. 이러한 회절은 서로 다른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엇이 배제되며, 그러한 배제가 어떻게 중요해지는가를 조명하고 차이를 물질화를 실행하는 존재론적인 것으로서 제시한다.

이러한 회절의 정치는 자유주의 휴머니즘과 상충되고 정체성과 주권적 자아에 기반을 둔 전통적 정치 담론과 무관하며 자타 이분법과 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한 인정의 정치를 넘어선다.¹⁰⁾ 그러나 회절의 정치가 지향하는 바는 인정의 정치를 거부하거나 대립하는 것과 무관하다. 회절의 정치의 관심은 위기가 일어나는 장소에서 타자가 간섭한 패턴을 찾아내고,

10) 정치적 명령으로서 인정 투쟁은 정체성을 사회에 인정을 요구하고 승인 받는 틀에서 작동하고, 이런 인정을 통한 합법화를 주창한다. 인정 정치는 가지성(intelligibility)을 중심에 삼고 차이와 타자성을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새로운 시공간을 창출할 정치의 자리를 모색하는 것이다.

해러웨이가 지적하듯, 세계와 무관한 초역사적 보편 자리, 본질적이고 고정된 위치를 상정하는 원근법적 관점은 환상에 불과하다. 회절의 정치 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외부자의 관점을 갖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는 관측하는 현상 내부에 있는 관측하는 위치의 행위자가 분리 불가능한 얽힘의 상태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얽힌 것으로부터의 구별과 분리가 관계적 의미에서만 그러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위치는 배타적 성격을 지닌 어떤 규모를 지닌다. 그러하기에 연결은 기존의 중첩된 척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척도가 서로를 통해 주체적으로 포섭 되는 것이다. 이는 중심에서 주변으로 더 큰 규모에서 더 작은 규모를 아우르거나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 나아가는 유클리드적 수량과 다르다. “예를 들어, 개인, 가족, 공동체, 지역, 국가, 전 세계의 다양한 척도는 어떤 물리적 크기 개념에 따라 기하학적으로 중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통해 내재적으로 생성되는 것”이자 비유클리드적 중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바라드, 2007)

따라서 회절의 정치는 불확실성과 미결정성 그리고 우연성을 동반하여 비유클리드적으로 중첩하는 위치에서 다중 위기의 복합성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정치의 장소를 마련한다. 다중위기는 바로 타자의 패턴이 그려진 자리이며 결코 보편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장소의 특수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확실성과 복잡성 그리고 우연성이라는 다중위기의 상황에서 회절의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가이다. 이 글은 그에 대한 몇가지 제언으로 마치고자 한다.

우선 제일 필요한 작업은 물질화의 계보학을 실행하며 “새로운 좌표계를 발명”(라투르, 2023: 44)하는 ‘회절 장치 만들기’이다. 이러한 장치는 신체와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장치는 권력이 생산적 효과를 발휘하는 물질적-비물질적 도구이며 행위 내적 역동성을 통해 공간-시간적 관계의 위상적 다양체를 반복적으로 재구성(바라드, 2007)함으로써 만들어진

다. 회절 장치의 행위성은 인본주의적 궤도에서 벗어나 비인간과 인간 행위자의 연결망에서 작동하기에, 인간 행위의 영역과 가능성을 넘어서는 행위성의 시공간이 훨씬 깊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회절 장치의 작동은 라투르가 “한 행위자의 이해나 의도를 다른 행위자의 언어로 치환하는 프레임을 만드는 행위”이며 “행위자-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과정”으로 제시하는 번역의 실행이다.

다중 위기와 재난의 이중적 연결이 타자의 패턴을 흐릿하게 만들고 단순화하는 블랙박스화를 동반하여 참여와 책임을 가로막기 때문에 회절 장치가 실행하는 번역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번역은 블랙박스화된 재난을 펼치는 과정이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를 추적과 연동하며, 얽힌 관계에 응답하려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번역에서 추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추적 행위는 블랙박스를 고립된 장치가 아니라, 관계로 형성된 일시적 ‘묶음’으로서 해석하고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을 기술한다. 이는 중심 행위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른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속에서 꼭 지나쳐야 하는 지점을 구성하는 ‘의무 통과점’을 통해 네트워크를 규범화한, 권력의 기원과 효과를 설명한다. 그 뿐 아니라, 무엇보다 번역에서 추적으로 이어지는 행위는 펼쳐진 이중적 네트워크를 설명의 자원에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제정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번역, 추적, 연결을 실행하는 회절 장치를 만들어냄으로서, 회절의 정치는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와의 얽힘에 윤리적으로 응답한다. 이러한 타자는 아직 지어진 적 없는 세계 그리고 닿아 본 적 없는 시간성에 거주하는 세대이자, 인간중심주의로는 감지할 수 없지만 그 바깥에서 함께 공존하는 비인간 행위자일 수 있다. 회절의 정치는 미래의 세대와 비인간 행위자를 지금 하는 행위의 평가자, 윤리적 대화자로 상정하는 방식을 통해 시공간적 연속체를 지탱해나가며 “과거와 미래를 모두 고려하는 거주 형태”(라투르, 2023: 48)를 제안하면서, ‘인간의 종을 넘어 미래를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응답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김은주. 2023a. “사물들의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폴리스와 행위자 네트워크-블랙박스를 펼치는 물의 정치를 향하여.” 『도시인문학연구』 15(1):107-129.
- _____. 2023b. “비인간 전회의 지형과 신유물론: 읽기, 쓰기 그리고 문학적 생산.” 『현대비평 2023 가을』 16:16-40.
- 김홍중. 2022. “21세기 사회이론의 필수통과지점: 브뤼노 라투르의 행위 이론.” 『사회와 이론』 43:7-56.
- 김환석. 2001. “STS(과학기술학) 와 사회학의 혁신 : 행위자연결망이론(ANT)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1:201-234.
- 모랭, 에드가 · 최연구. 1999. “불확실성의 21세기, 어떻게 맞을 것인가.” 『당대비평』 5:22-37.
- 라투르, 브루노. 2023. 『존재양식의 탐구:근대인의 인류학』. 황장진(역). 고양:사월의 책.
- _____. 2021.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박범순(역). 서울:이음.
- _____. 2018. 『판도라의 희망』. 장하옥 · 홍성욱(역). 서울:휴머니스트.
- 샤비로, 스티븐. 2021. 『사물들의 우주: 사변적 실재론과 화이트헤드』. 안호성(역). 서울:갈무리.
- 시몽동, 질베르. 2011.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김재희(역). 서울:그린비.
- 클락, 앤디. 2015. 『내추럴-본 사이보그: 마음, 기술, 그리고 인간 지능의 미래』. 신상규(역). 파주:아카넷.
- 해러웨이, 도나. 2007. 『검소한 목격자@제2의 천년. 여성인간? 양코마우스TM를 만나다: 페미니즘과 기술과학』. 민경숙(역). 서울:갈무리.
- _____. 2002.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자연의 재발명』. 민경숙(역). 서울:동문선.
- _____. 2021. 『트러블과 함께 하기: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최유미(역). 서울:마농지.
- 홍성욱. 2010.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인간 · 사물 · 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서울: 이음.

32 다중위기 시대, 비인간 전화와 회절의 정치

(2) 국외문헌

- Anzaldúa, Gloria. 2012. *Borderlands/La Fronterea: The New Mestiza*, San Francisco: lute books.
- Barad, Karen. 2003. "Posthumanist Performativ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Matter Comes to Matter."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8(3):801-831.
- _____. 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n&London:Duke University Press.
- Barad, Karen. 2008. "Living in a Posthumanist Material World: Lessons from Schrödinger's Cat," Anneke Smelik and Nina Lykke ed, *Bits of Life: Feminism at the Intersections of Medi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165-176.
- _____. 2010. "Quantum Entanglements and Hauntological Relations of Inheritance: Dis/continuities, Space Time Enfoldings, and Justice-to-Come," *Derrida Today* 3(2):240-268.
- _____. 2014. "Diffracting Diffraction: Cutting Together-Apart," *Parallax* 20(3):168-187.
- Barad, Karen & Gandorfer, Daniela. 2021. "Political Desirings: Yearnings for Mattering Differently," *Theory & Event* 24(1):14-66.
- Grusin, Richard. 2015. "Introduction," *The nonhuman turn*,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orin, Edgar, Kern, Anne B. 1999. *Homeland Earth: A Manifesto for the New Millenium*, New York: Hampton Press.
- Latour, Bruno. 1992. "Where Are the Missing Masses? The Sociology of a Few Mundane Artifacts," W. Bijker & J. Law, eds, *Shaping Technology/Building Society*, Massachusetts: MIT Press:225-258.
- _____.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inh-ha, Trinh T.. 1986. "She, The Inappropriated Other," *Discourse* 8:11-37.
- Haraway, Donna. 1992. "The Promises of Monsters: A Regenerative Politics for Inappropriate/d Others," Lawrence Grossberg, Cary Nelson, Paula Treichler eds, *Cultural studies*, New York : Routledge:295-337.

Abstract

The Multiple Crisis Ara, the Non-human Turn and the Politics of Diffraction

Kim, Eun-Joo
(University of Seoul)

The situation of multiple crises, which refers to the compound crisis of heterogeneous phenomena, is in full swing as a global planetary disaster, starting with the pandemic caused by the COVID-19 virus. This article examines the actors and their connections in the search for new political arrangements in the context of multiple crises through the “non-human turn”. The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the meaning of the non-human turn is explained, and Bruno Latour’s concept of networks of actors is linked to Haraway’s idea of diffraction in optical instruments. Since agency depends on superimposing, entangling, and connecting the actions of different actors, he relates the concept of diffraction as a pattern of interference. This diffraction passes through Barad’s quantum understanding and materializes as a pattern of superimposition, entanglement, and interference from non-appropriable others. These entanglements, Barad explains, reveal relations of obligation that are entangled in traces of othering and thus entangled with otherness. In particular, Barad emphasizes the ambiguity and indeterminacy that characterize diffraction,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a politics of diffraction that moves beyond binary thinking and emphasizes the connections between human and non-human actors.

Key words: Actor-networks, Barad, Diffraction, Haraway, Multiple crises, Non-human turn

34 다중위기 시대, 비인간 전화와 회절의 정치

■ 투 고 일 : 2024년 3월 17일

■ 최초심사일 : 2024년 4월 8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4월 10일

초국적 ‘가족하기’(doing family)의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실천*

문현아^{***}, 은기수^{***}, 허오영숙^{****}

| 목차 |

- | | |
|---|--|
| 1. 문제제기 | 재구성하는 초국적 가족 |
| 2. 연구 배경 및 연구 방법 | 4. 출입국 정책의 한계 속 초국적
‘가족하기’의 실천과 의미 |
| 1) 결혼이주여성의 틈새적 위치 | 5. 1) ‘다문화가족’에 국한된
체류정책의 한계와 초국적 가족의
돌봄 현실 |
| 2) 기존 연구 검토 및 초국적 가족
돌봄 | 2) 새롭게 구성되는 돌보는
남성성의 단초 |
| 3)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특징 | 3) 돌봄과 더불어 가족 너머와
공동체로 연결되는 ‘가족하기’ |
| 3. 결혼이주여성과 초국적 가족:
불연속성과 변화 가능성 | 5. 맺으며 |
| 1) 한국인으로만 구성되지 않는
가족의 특징: 국적과 언어의
다양성 | |
| 2) 결혼, 이혼, 재혼을 통해 변화하고 | |

| 초록 |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내 ‘가족’을 이루는 중요한 일원이지만,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 이 글은 2023년 12월 16일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주최로 열린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 “인구 위기, 가족 위기 속 초국적 가족의 ‘가족하기’”를 논문 형식에 맞추어 수정한 것입니다.

** 주저자: 서울대학교 mysyrius@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eunkisoo@snu.ac.kr

**** 공동저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sanjung3535@hanmail.net

맥락은 충분히 조망되지 않고 있다. 기존연구는 개인이 한국으로 이주해서 다문화가족이 되기 이전의 가족과 맺었던 원가족에 대한 관계나 다문화가족이 되면서 원가족과 한국의 가족이 어떻게 연결되고 새롭게 형성되어가는지를 초국적 가족관계 맺기로 접근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가족, 특히 이주여성들이 과거와 현재를 통해 형성하고 있는 '초국적' 가족이라는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와 가족의 연계망을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이주여성의 초국적 가족의 실천을 가족에 대한 동사형 개념을 통해 접근해, 변화하는 가족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주여성의 '가족하기'는 초국적 이주를 통해 어떤 특징을 지니며, 어떤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첫째, 이주여성의 가족이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초국적 가족의 실천을 제약하는 출입국 정책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는 이주여성의 실천을 강조하며 '가족하기'의 역동성을 분석한다. 덧붙여 가족에 국한되지 않는 돌봄의 현실을 포착해 이주여성들이 실천하는 가족 너머의 새로운 공동체적 가능성도 모색한다.

주제어: 돌봄, 이주, 국적, 초국적 가족,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1. 문제제기

한국사회는 여러모로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사회에 국한되지 않은 전지구적 생태위기를 비롯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통한 인류 생존위기를 거쳐 경제위기가 현실로 닥치며 불안한 삶의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결혼을 못하거나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감소 위기가 더해지고 있다. 인구위기는 표면적으로는 출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키우기 힘들다'와 이런 사회를 '자식에게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인구안보의 위기로 볼릴 정도로 내적으로 붕괴되는 한국사회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새로운 가족정책, 균형있는 돌봄경제에 대한 인식과 다인종 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은기수, 2022).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을 기능하는 필수

적인 대전환에서 이주여성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국가기록원(2023) 아카이브에 정리되어 있는 한국 인구정책의 기조는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이다, 1990년대를 전후로 출산억제를 강조하던 가족계획정책이 종료되고 출산장려 지향의 저출산 정책이 등장한다. 이 시기와 맞물려 ‘가족 구성과 혈통 유지’를 명목으로 ‘연변치녀와 농촌 총각 짝짓기’ 정책이 시작된다(이화선, 2012). 이는 한국 여성에게 출산 ‘억제’를 강요했던 가족계획정책의 틀이 출산 ‘장려’로 방향만 바꾸었을 뿐,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을 국경을 넘어 이주여성에게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틀을 통해 1992년 한중수교, 통일교의 교세 확산을 배경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중요한 ‘매개’(이삼식 외, 2007)가 되어 ‘결혼이주여성’은 주요한 새로운 인구 집단으로 부상한다. 이 인구집단과 관련된 ‘국제결혼’ 건수는 1991년에 663건이었다가 1992년과 93년에 3천 건 정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1995년에는 1만 건을 넘어서기 시작한다(이삼식 외, 2007: 83).

뒤이어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려 함양군에서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가 제정되고(이선미, 2023), 유사한 조례가 인구감소를 겪는 지역 중심으로 확산된다. 다시 한번 이주여성을 인구 재생산을 위한 맥락에서 불러들여 이를 계기로 2002년까지 1만 건 정도의 국제결혼 건수가 2006년에 2만 9천 여 건까지 상승했다(e-나라지표, 2024). 이후 2012년까지 2만 건 내외를 유지하다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코로나시기 이전까지 1만 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한 결혼이주여성과 노동이주민 인구 등이 결합해 한국 내 체류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대략 5%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인구범주는 한국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변화하는데 중요한 한 축이 되었다. 그러나 이 인구범주는 인구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적극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의 측면에

서 제대로 '인구'로 포함되어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한 예로 유럽연합이나 OECD에서 이민자통합지표로 활용하는 자료는 내·외국인 통합조사다. 한국은 국적을 중심으로 외국인(이민자)통계만 내고 있어 국제 비교 가능한 이민자통합지표를 산출하기 어렵다(정기선·김혜진, 2015; 박시내, 2017). 결혼이주여성은 노동이주나 난민, 그리고 탈북(새터민) 등 한국사회에 다양한 이주와 관련된 범주의 인구집단과 연관되어 통합적으로 분석되지 않고, '다문화가족'이라는 범주로만 구분해 접근하고 있다. 인구감소 대책에서 이주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지만, 국경을 넘는 '이주'라는 변수를 사회통합과 관련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내 '가족'을 이루는 중요한 일원이지만,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맥락은 충분히 조망되지 않고 있다. 기존연구는 개인이 한국으로 이주해서 다문화가족이 되기 이전의 가족과 맺었던 원가족에 대한 관계나 다문화가족이 되면서 원가족과 한국의 가족이 어떻게 연결되고 새롭게 형성되어가는지를 초국적 가족관계 맺기로 접근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가족, 특히 이주여성들이 과거와 현재를 통해 형성하고 있는 '초국적' 가족이라는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와 가족의 연계망을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이주여성의 초국적 가족의 실천을 가족에 대한 동사형 개념을 통해 접근해, 변화하는 가족의 특징을 분석한다. 김순남은 가족구성권 논의 속에서 기존 가족질서와 불화하는 내용이 기존의 '가족 너머'를 상상하는 것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언급하며 "규범과 불화하는 트러블을 가시화하는 것"(김순남, 2022: 133)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는 가족연구에서 모건(Morgan)이 강조하는 '가족하기'(doing family)의 개념과 맞물린다. '가족하기'는 가족이 고정된 구조 또는 위치, 지위를 갖는다는 개념과 거리를 두고, 사소해 보이는 매일의 '실천'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개념이다(Morgan, 1996, 2011a, 2011b). 정해진 규범이나 이데올로기를 준수하는 맥락의 가족보다는 오히려 그 규범을 비켜서 일상에서 '하는' 가족실천(family practice)을 강조하는 개념

(Morgan, 1996, 2011b)이다. 모건은 이 ‘하기’가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족 단위로 가족에 부과되는 규범, 형식, 관계 맺기 등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하기’를 ‘가족’과 연결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Morgan, 2011a). 이처럼 ‘하기’를 통해 가족은 고정되고 움직이지 않는 일정한 상태로서가 아닌 생성되고 변화하며 진행중인 동사형 실천으로 접근된다(Kottman, 2021; Baldassar and Merla, 2014). 더 나아가 ‘하기’라는 실천을 통해 가족은 ‘해체’되지 않고 물질, 정서적 형식을 통해 자체의 리듬과 주기로 재구성되며 적응한다(Murray et al., 2019). 뒤에서 설명하지만, 해러웨이의 트러블과 함께 하기(해러웨이, 2021)라는 지향과 더불어 상호의존하는, 혈연가족을 넘어선 실천(김순남, 2022)을 강조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개념이다. 특히 ‘함께 사는’ 형식으로 가족을 전제하는 규범과 전형으로부터 ‘초국적 가족’은 비껴나 있지만, 오히려 떨어져 있으면서 가족성(familyhood)을 실천하는 중요한 주체로 고려된다(Bryceson and Vuorela, 2002: 3; Baldassar and Merla, 2014).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이라는 국민국가가 처한 인구위기, 그리고 이와 결합되어 맞물려 있는 돌봄위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경 넘기를 제안받은 존재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 결혼하여 ‘출산’을 통해 한국이라는 국민국가에 편입되도록 제안된 존재이기도 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그 과정에서 사실상 개인으로서만 국경을 넘도록 제안되었을 뿐, 이 개인이 자리한 가족이라는 구성이나 실천 관계는 한국의 사회통합 정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현실과 정책의 틈새에서 이주여성들은 어떻게 초국적 ‘가족하기’를 실천하고 있는가? 이들의 가족하기는 초국적 이주를 통해 어떤 특징을 지니며, 어떤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2장에서는 결혼을 매개로 이주했지만, 출입국 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의 간극 속에 비어있는, 혹은 틈새적 위치에 놓인 이주여성의 배경적 설명과 연구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3장에서는 결

혼이주여성이 국경을 넘어 만들고 있는 초국적 가족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가족하기'의 밑그림을 서술한다. 4장에서는 초국적 '가족하기'가 실천하는 맥락과 지향을 초국적 가족의 연계망과 특징으로 설명하며 가족 너머를 상상하는 '공동체' 지향의 측면도 분석한다.

2. 연구 배경 및 연구방법

1) 결혼이주여성의 틈새적 위치

앞에서 잠시 언급한 인구와 사회통합지표로 결혼이주여성의 틈새적 위치를 살펴보자. 결혼이주여성은 국경을 넘었다는 맥락에서 '이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해외출생인구로 유입국인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1세대다. 이민1세대로서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있고, 취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외국인은 유입국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 소지자로 결혼이주여성 중 귀화하지 않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만, 단기 체류자나 영주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또 다른 인구집단에도 해당된다. 이와 다르게 해외출생인구는 외국인과 귀화자를 포함한다. 결혼이주여성은 이 집단에도 해당된다. OECD에서 집계하는 국제이주통계에는 거주 이민자 규모를 외국인인구와 해외출생인구를 포함해 파악한다(정기선 · 김혜진, 2015). 한국에서는 외국인인구 통계만 발표하고, 해외출생인구 통계는 제공하지 않는다(정기선 · 김혜진, 2015). 한편, 이주민의 고용률, 경제활동률, 실업률 등은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조사를 통해 파악가능하지만, 이 조사에는 90일을 초과해 장기체류중인 '외국인', 즉 외국국적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귀화자는 포함하지 않아 해외출생인구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이주배경인구'(the population with a migrant

background)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해외출생인구(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국사회 인구파악의 기본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이른바 센서스에는 이주관련 문항이 ‘출생시 국적’, ‘현재 국적’, 이 둘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시점’을 조사한다(박효민, 2017). 이를 통해 부모의 해외출생여부는 파악할 수 없어 이민2세대를 포함하는 이주배경인구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정기선·김혜진, 2015). 이주배경인구에 대한 파악은 오히려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를 통해 파악 가능하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귀화한 한국국적자,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한국국적 자녀, 즉 국민이 포함되어 있어 이주배경인구 파악에는 적절하지만, 명칭은 ‘외국인주민’이다(정기선·이상지, 2016). 한국사회는 이주여성들을 어떻게 범주화해서 파악하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가?

이주여성들은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통계청의 ‘다문화인구동태’에서 별개의 인구집단으로 범주화되어 파악된다. 이 조사는 특정 유형의 이주민 집단과 가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내국인과의 비교나 해외출생인구 전체에 대한 통합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정기선·김혜진, 2015). 특히 ‘다문화인구동태’는 결혼, 출산, 이혼에 국한된 자료로 이들의 경제활동 등 다른 측면은 파악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이라는 범주 속에 가려 이주여성을 비롯한 이주민의 출신국 원가족에 대한 내용은 각종 다문화가족관련 조사에서 주요하게 고려된 적이 거의 없다(육수현·허정원, 2020: 83).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원가족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존재이기도 하다(허오영숙, 2013: 89).

이렇게 보면,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서 이주민의 위치가 어디에 자리하는지가 드러난다. 이종원·노용진(2013)에 따르면, 출입국가 통계에 관한 국제 기준의 대표인 UN 권고안과 OECD 기준은 모두 이주자를 상주국을 변경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상주 개념을 중시한다. UN 권

고안은 이주자를 장기 이주자와 단기 이주자로 구분하는데, 기준 거주기간은 1년이다. OECD 기준은 이주자를 영구적, 준영구적 이주자와 한시적 이주자로 구분한다. 이주여성은 결혼이라는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통계에는 '외국인'주민으로 호명되고, 외국인경제활동인구에는 포함되지 않는 틈새적 존재다.

이처럼 한국의 출입국 정책은 외국인의 '입국 억제'와 '유치 확대'의 조화라는 서로 모순되는 기조를 2003년까지 지속했다(김원숙, 2012). 지금도 큰 틀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사회통합적 틀은 여전히 미흡하다. 결혼을 위해 국경을 넘지만, 그래서 '귀화'도 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외국인'으로 범주화되거나 아니면 '다문화'가족으로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가족은 일방향으로 정착한 국가의 가족일 뿐, 초국적 가족으로서의 특성은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2) 기존 연구 검토 및 초국적 가족 돌봄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주제로 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다양한 층위로 진행되어 기존 연구의 흐름을 하나의 축으로 망라하기 쉽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을 주제로 한 연구에 대한 '분야별', '주제별'로 정리한 연구동향이 최근 두드러진다. 한 예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이주여성과 '가족'을 키워드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논문에는 116편이 포함되어 있다(박정숙·이지현, 2018). 이에 따르면 심리사회적 문제를 다룬 논문이 53편으로 가장 많다. 2010년 이전까지 사회복지학, 교육학, 사회학 분야의 연구가 많았지만, 그 이후는 심리학, 아동복지 등 분야의 연구가 두드러진다(박정숙·이지현, 2018). 한편 '상답'에 초점을 맞춰 가족 분야의 341편 논문을 분석한 연구(송윤선·이미나, 2019)는 다문화 지원정책, 부부관계, 경제/취업 관련 주제가 중심이라고 밝혔다. 연구동향을 토대로 정리하면 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는 가족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상답을 주제로 한 연

구도 주요 부문이다. 그리고 이주여성의 주된 ‘상당’ 주제는 가족관계 내에 국한되지 않고, ‘정책’관련 취업 등 경제, 사회적 사안과 관련된다.

사회적 관계를 주로 다룬 논문(64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적응과 가족관계’를 다룬 논문이 78.7%며 양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가 65%를 차지한다(최현우, 2023). 한편 질적연구 방법에 초점을 맞춘 논문(33편)을 분석한 연구는 이주여성의 학습 경험, 정체성, 결혼과 이혼 주제가 중심이 된다고 한다(김가연·홍송희, 2022). 정리하면, 이주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방면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개인적 차원, 특히 심리에 집중된 측면이 강하며, 가족관계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연구도 있지만, 대체로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다.

여성학 분야의 연구는 복지나 상담, 종교, 간호학 분야에 비해 논문 편수로 산정하면 소수 분야에 속한다. 그러나 여성학 분야의 연구들은 이주여성을 보다 적극적 주체로 호명하는 연구에 방점을 찍으며, 이주여성을 한국사회 내 적응이 필요한 존재라기 보다는, 중요한 사회통합의 행위자로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주여성의 국경을 넘는 경험을 중요하게 포착하여 문화접경지대로서의 가족과 이 여성들의 실천을 일종의 ‘문화전략’으로 해석해 시도한 연구(예, 김현미, 2010)는 기존 연구들과 다른 결을 보여준다. 특히 김현미(2010)의 연구는 ‘번역자’로서 이주여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포착해, 본 연구가 시도하는 ‘가족하기’ 실천과 연결되는 초기 연구의 기반이 된다. 또한 이주여성의 어머니 역할을 초국적 가구의 특징과 연결한 연구(황정미, 2012)도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황정미(2012)의 연구는 다층적 모성에 대한 실태 파악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노동자이자 어머니인 이주여성의 특성을 강조해 노동과 가족의 측면을 아울러 포착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황정미(2012)의 연구는 실태조사보다는 기존자료를 이용한 간접적 분석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그런 한계를 극복하여 실제 인터뷰 사례를 통해 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이주여성들의 ‘초국적’ 연결고리를 강조하는 맥락을 더해 분석을 진행한다.

초국적 특징의 강조는 결혼이주여성이 국경을 넘어 가족을 형성하는 측면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또한 초국적 특징의 강조는 이주여성의 일상 이 한국 사회와 맞물려 있지만 동시에 떠나온 국가, 즉 소위 '원가족'과 연결된 존재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 분석이다. 특히 남편 쪽의 부계가족에 국한되지 않고 이주여성을 주축으로 하는 모계가족과 맺었었고 현재도 맺고 있는, 국경을 넘나들며 형성하는 '초국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의 실천에 주목한다.

'초국적' 개념은 국민국가 단위의 교류에 국한되는 국제적(international) 측면과 달리 개인, 개별 기관이나 조직 단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연결, 교환, 소통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Vertovec, 2009). 특히 "이주민들이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국경을 넘나들며 만드는 사회적 장"(Glick Schiller, 1999: 96)의 의미를 지닌다. 즉 초국적이라는 단어는 개인이나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나 협상, 관계맺기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초국적 가족'은 초국적 개인들이 가족을 단위로 해서 국경을 넘나들며 맺는 교류, 협상, 관계맺기를 일컫는데 적합하다. 마즈카토와 산스(Mazzucato and Schans, 2011)는 초국적 가족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배경으로 유입국의 정책을 문제로 꼽는다. 즉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유입국의 정책이 초국적 가족의 형성 배경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이주민 가족연구는 초국적 가족 개념을 많이 활용해 분석한다. 이를 반영하듯 마즈카토와 디토(Mazzucato and Dito, 2018)는 초국적 가족의 국가간 비교를 통해 남미, 아프리카, 동남 아시아 지역의 초국적 가족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평가하고 소개하는 연구도 진행했다.

물론 이 개념만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발다사르와 멀라(Baldassar and Merla, 2014)는 이주하는 존재들의 이동성(mobility)과 연결성(connectedness)을 고려한 기존의 주요 개념들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코헨(Cohen)의 디아스포라(diaspora), 아파두라이의 민족정경(ethnoscapes), 빠레나스나 혹셀드의 글로벌 돌봄사슬(global care chains) 등의 개념으로

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 개념들에 비해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순환성(circulation)’을 강조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초국적 가족 개념을 받아들인다(Baldassar and Merla, 2014: 37).

한국에서 이주여성과 관련해서 초국적 특징을 고려한 연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은 초국적 ‘가족’의 실천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초국적 존재라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 연구는 그와 연결된 시민권의 문제(황정미, 2011), 다른 연구는 경제적 교류나 한국이 아닌 곳과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김정선, 2010), 가족 실천의 측면은 부각하지 않았다.

이처럼 ‘초국적 가족’은 국경을 넘나드는 교류나 행위를 지칭하며 동시에 그 행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데 유용하다. 즉 ‘초국적 가족’ 개념을 통해 가족의 역동성(dynamism)이 국경을 넘나들며 어떻게 형성, 변화하는지 포착할 수 있다(Yeoh et al., 2020). 더불어 초국적 가족은 남편 중심의 한국 가족과의 연계에 국한하지 않고, 이주여성의 출신국에 남아있는 가족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한다. 즉 초국적 가족 개념을 통해 이주여성 원가족과의 관계가 포함된 통합적인 가족 ‘실천’이 파악될 수 있다.

3)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특징

이 연구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가 공동 기획진행한 〈한국사회 이주여성의 원가족과 현가족 상황과 초국적 돌봄현황 조사〉의 일환이다. 초국적 돌봄현황 조사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11월 사이의 기간 동안 서울, 경기, 제주 지역의 결혼이주여성 11명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모두 동의를 얻어 녹음한 뒤, 녹취록을 풀어 분석자료로 활용했다. 단, 마리아씨는 인터뷰 도중 너무 힘들다며 인터뷰를 포기해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다.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맥락 중, 특히 종교, 지인 소개, 중개업체 등 다양한 결혼 경로를 고려했다. 또한 기존의 피해자화된 서사를 극복할 이야

기를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 이를 테면 '직장'이 있거나 직업 경험에 있는 이주여성을 대상에 포함했다. 출신국가도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몽골로부터 이주한 여성들을 섭외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본 사항은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출신국을 기재하는 경우, 개인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기본사항에서 표기하지 않았다.

<표 1> 연구참여자 및 가족관계 기본 사항

사례	이름	현재 직업	배우자 직업 현황	출생 연도	입국 연도	현 가족 현황
1	김순수	NGO 단체 운영	-	1965	2003	이혼, 자녀 3
2	박보람	자영업 + 임대업	공장 노동	1989	2009	재혼, 자녀 2
3	송정은	센터 아이돌보미	공사장 노동	1986	2010	기혼, 자녀 2
4	차난주	상담소 직원	공기업 노동	1984	2008	기혼, 자녀 2
5	이혜선	상담소 퇴직 후 구직 중	사무직 노동	1971	2003	기혼, 자녀 3
6	장사랑	자영업	공장 노동	1991	2010	재혼, 자녀 1
7	배소희	자영업	언급 없음	1986	2007	기혼, 자녀 2
8	하희수	파트 타임	사무직 노동	1994	2014	기혼
9	소냐	상담소 직원	언급 없음	1979	2000	기혼, 자녀 2
10	마리아	상담소 직원	-	1960	1993	이혼, 자녀 1
11	홍단비	다문화센터 통번역사	사무직 노동	1978	1997	기혼, 자녀 2

3. 결혼이주여성과 초국적 가족: 불연속성과 변화 가능성

1) 한국인으로만 구성되지 않는 가족의 특징: 국적과 언어의 다양성

이주여성들이 국경을 넘어 형성하는 가족은 한국 국적인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배우자 관계로 시작해서 외국인이

던 여성은 한국 국적을 택해 귀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신국의 국적을 유지하며 한국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해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기는 경우, 그 자녀의 국적도 상황에 따라 한국 국적이 될 수도 있고, 무국적이거나 미등록이 될 수도 있다. 형식적으로 양계제가 허용되지만 한국의 시민권은 부계 중심으로 치우쳐 있는 시민권 체제로 해당 자녀가 출신국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는 기회는 많지 않지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중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기에 출신국 국적을 따르는 경우도 가능하다. 초국적 가족 내 구성원들의 국적은 이처럼 신청, 취득, 포기, 미등록, 등록 등의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쳐 구성, 재구성되는 유동적 특징을 띤다.

“2003년도에 제가 한국에 와 가지고, 2005년에 제가 국적을 취득하고 애를 초정해 와가지고, 그때는 방학 때만 잠깐 왔다가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졸업, 고3때 실습을 그냥 한국에 와서 하는 것으로 선생님님이 해줬어요.” (김순수)

김순수씨는 출신국에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지인의 소개로 (전) 남편을 소개 받아 한국으로 이주했다. 한국에 와서 결혼관계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뒤에야 출신국에 있던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고, 자녀는 귀화신청을 하고 시험을 본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다.

“난 [...] 아이랑 같이 올 거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저는 결혼비자 받았는데, 애기 큰 애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왔어요. 다시 [신청했는데, 또 안나와, 그래서 왜? 무슨 이유냐고 하니까, 입양해야 된대. 그래야 이 애기를 키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애기가 우리가 같이 산지 9개월 후에 딱 [3개월씩] 세 번 [연장해서] 왔어요. 한 번에 3개월 비자만 주고, 또 [신청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입양해야 된다고 그때 [알려줘서] 그때야 다시 [신청해서, 9개월 때 애기가 왔지.]’ (이혜선)

이혜선씨도 출신국에 거주할 때 자녀가 있었고, 자녀를 남겨두고 한국

으로 입국했다. 출신국으로 사업차 방문한 남편과 연애를 이어가다 결혼하기로 해서 한국으로 입국해 결혼하고 국적을 취득했다. 김순수씨와 마찬가지로 국적을 취득한 이후 남겨둔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했으나, '입양' 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서 9개월에 걸쳐 서류를 마련하고 수속을 밟고 나서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국경을 넘는다는 이유로 이혜선씨는 본인의 자녀를 '입양' 절차를 통해 데려와야 했다.

“바로 자격증 바로 따자마자 신청했거든요. 저는 기다리는 게 한 일 년 넘었어요. 제가 애기도 없고 한국에 온 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따지나 봐요. 애기있는 사람들 보다는 더 느린 것 같아요”(하희수)

“국적을 신청하고 이제, 인터뷰는 한 8개월, 둘째 8개월 때 면접을 받았어요. 제가 임신해서 면접 인터뷰를 해서 그런지 바로 통과된 거였어요. 그것도 국적도 되게 쉽게 된 거예요”(차난주)

하희수씨와 차난주씨의 사례를 보면, '아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두고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와 무관하게 한국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순간부터 시민권에 접근할 자격이 생겨야 함에도 이주 여성들은 '자녀'의 유무를 통해 영향을 받는 틀에 놓인다. 이민1세대로서 여성의 존재보다 오히려 '출산'을 통해 '인구'에 포함되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초국적 가족은 이처럼 다국적 가족 구성원을 전제로 한다. 다국적 단계는 각 국가별 이주정책이나 비자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국적 단계는 체류자격에 따라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족하기가 실천됨을 알려준다.

“엄마는 [...] 1994년에 쿠웨이트, 거기 아이돌보미로 일하러 갔어요. 거기서 2년 마다 집에 오고, 또 다시 가고. 한, 한 달 동안만 집에 살다가 다른 나라, 또 쿠웨이트로 다시 가고, 한 10년? 한 10년 정도. 2014년에 그만두고 우리를 돌봐줬죠.

저하고 동생들이랑. [...] 할머니, 할아버지 손으로 [웃음] 키웠어요.” (송정은)

“언니는 지금 홍콩에 가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어요.” (차난주)

“남편이 일본어 아니까, [...] 그래서 일본어랑 [웃음] 한국어랑 좀 통역하듯이 이 야기 나왔어요. [...] [남편이] 옛날에 한 6개월인가, 일본에서 일했대요. 친척들이 거기 있으니까, 삼촌들이랑. [...] 서울에 있는 시누랑, 부산에 있는 시누랑, 일본에 있는 시누 두 명. 다 착해요. 저랑 잘 맞아요. [웃음]” (송정은)

초국적 가족의 형성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이주여성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지만, 이주여성이 가족 내에서 처음 국경을 넘은 유일한 사람 아니다. 송정은씨의 경우 어머니가 쿠웨이트에 가사노동자로 이주해 가족 내에서 이미 국경을 넘는 경험을 했고, 송정은씨는 이미 초국적 가족의 자녀로 자라온 배경이 있다. 차난주씨의 경우는 차난주씨가 한국으로 떠나던 즈음에 언니도 홍콩으로 떠났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한 가족 내에서 초국적 가족의 계기가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여성의 가족들만 초국적 가족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송정은씨의 경우에는 남편의 가족도 초국적 가족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초국적 가족의 경험은 서로 다른 국적에 국한되지 않고, 사용하는 언어에서의 다양성과 중층성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연구진: 그럼 집에서는 [둘째, 셋째] 아이와는 한국어로 이야기하시고 [첫째와 어머니하고는 모국어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순수: 뭐 한국어 모국어 섞어서, [...] 그냥 다 섞어서 이야기해요.

연구진: 막내는 근데 모국어를 [전혀 모르잖아요?]

김순수: 우리가 모국어로 이야기하면 “모국어 하지마!” [라고 해요] [일동 웃음]. 근데 우리가 모국어로 하는 거 듣고 애가 유튜브에서 가족의 호칭은 다 그 언어를 배웠어요. 어느 순간, 아 엄마, 아빠, 봐라! 할머니도 친할머니 아니, 외할머니니까 외할머니, 그 호칭도 다 배웠더라고요. (김순수) [출신국 언어에 대한 표현을 ‘모국어’로 수정했다]

한국에서 소위 다문화가족 내에서는 '한국어' 중심의 소통방식이 기준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한 가족 내에서 하나의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는 인간이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다. 가족 모두가 '한국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 규범이 아니라 그 반대일 수 있다. 그러나 다중 언어의 소통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한국형 '다문화' 정책에서 이주여성은 유입국의 언어를 배우는 방식에 따르도록 종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규범을 벗어나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 경우, 다양한 맥락에서 자녀가 출생하여 성장하는 경우, 원가족 부모를 초청해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초국적 가족의 경우 등은 다국적으로 구성원이 존재하며, 현실에서 '가족하기'도 다언어 소통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자녀 세대나 초국적 가족의 결합을 고려하면, 한국어 중심이 아닌 이들이 틈새적으로 만들어가는 또다른 방식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가족은 단일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범주도, 단일한 국적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범주도 아니다.

2) 결혼, 이혼, 재혼을 통해 변화하고 재구성하는 초국적 가족

“저도 지금 가족이 있으니까, 새로운 딸이 생겼으니까. 저는 가족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제 꿈이었어요. 뭐 남편, 아내, 딸, 아님 자식. 그렇게 처음 봤을 때 결혼부터 좀 그쪽으로, 그냥 애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다가 안 되니까. 그래도 [...] 남편이랑 사이 안 좋게 헤어진 거 아니고 서로 결국에는 사이 좋게 헤어졌어요. 제가 애 낳고 싶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지금 애 낳고 살고 있어요, 애가 있으니까.” (장사랑)

부부간 나이 차이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결론짓기 어렵지만 장사랑씨의 경우에는 남편의 나이가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아 임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아이를 원했으나 생기지 않았고, 헤어진 뒤에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바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중개업을 통해 결혼을 하는 경우, 한국인 남편과 이주여성인 부인과의 나이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국내인 사이의 결혼에서 남성이 아내보다 10세 이상 연상인 경우는 3.4%에 인데 비해,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에서는 34.2%로 비율이 10배 이상으로 높아진다(통계청, 2023b).

인구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에서 결혼이주여성과의 결혼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서 ‘결혼’은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출산 이후와 양육까지 적극 지원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결혼보조금에 대해 분석한 연구(박지현, 2020)에 따르면, 결혼보조금은 정착, 결혼,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국제결혼에 관한 비용지원’ 내용만을 담고 있다. 바꾸어 생각하면, 만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고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결혼이주여성 가족 내 출산율이 내국인 가족에 비해 높게 나타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유삼현(2017)은 국내 이주여성들의 출산력 수준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며, 선행연구들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는 배경에는 ‘이주민 아내’, ‘혼인이주자 가족 부부’, ‘외국인 아내’ 등 서로 다른 범주의 인구집단을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서술한다. 통계청(2023a) 자료를 보면 다문화 자녀 출생(12,526명)은 전체 출생 비중의 5.0%인데, 전년 대비 0.5%p 감소했다. 덧붙여 2022년 전체 출생이 24만 9천명으로 국내출생이 전년보다 4.4%p 감소한 데 비해 다문화 부모의 출생은 12.5%p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더 크다. 출생아 추이를 보더라도 2012년 22,908명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절반에 가깝게 감소하는 추이가 뚜렷하다. 해외출생여성과 국내출생여성으로 범주를 구분해 비교한 출산력 연구도 해외출생여성의 출산력이 더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한다(유삼현, 2017).

박보람씨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남편이 용돈을 주지 않아 자녀를 위해 뭐라도 사주고 싶어서 부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부업’이 빌미가 되어 박보람씨는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는다며 이혼 소송을 당

한다. 소송장을 받고 싸우던 중에 그 소리를 듣던 옆집 아주머니가 경찰에 신고해 심터로 연계되었다. 심터에서 나온 뒤 이혼을 했고, 지금은 아이를 2주에 한 번만 면접권을 얻어 만나고 있다. 이혼을 ‘당하는’ 처지여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어 포기했다. 이로 인해 결혼이민비자(F-6)를 통한 귀화에 해당하지 않아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국적을 신청했다. 2013년에 이혼하고 2017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인터뷰 당시까지 아이 양육권을 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박보람씨의 경우 시어머니가 이혼소송을 강력하게 원했던 특이한 배경으로 인해 자녀가 있음에도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없었고, 양육권을 찾기 위한 지난한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과 재판을 통해 자녀의 양육권과 본인의 체류자격을 지켜내야 하는 이주여성의 생애는 국내 여성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궤적으로 ‘가족하기’를 실천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으로부터 이탈해 새롭게 초국적 가족을 만들어가는 방향이 진행되고 있다. 박보람씨는 소송과 재판을 겪는 동안의 어려움 속에 모국어로 위로를 해주던 남성을 만나 다시 새롭게 가족을 형성했다,

4. 출입국 정책의 한계 속 초국적 ‘가족하기’의 실천과 의미

1) ‘다문화가족’에 국한된 체류정책의 한계와 초국적 가족의 돌봄 현실

“저는 귀화했는데, 일반귀화했기 때문에 친정 엄마 올 때 삼 개월씩만 비자 줘요. 간이귀화할 때, 한국사람과 살면서 혼인해서 귀화한 경우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친정 엄마는 국적, 제가 일반귀화로 혼자 받았기 때문에 3개월 방문 비자 이외에 안 줘요.” (박보람)

박보람씨는 자녀를 낳았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남편은 자녀를 돌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보람씨를 문제삼으며, 이혼을 종용했다. 국가는 이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고, ‘낳은 아이를 책임지고 자 하는 권리’도 박보람씨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박보람씨가 재구성한 초국적 가족은 귀화 한국인 여성인 박보람씨와 동일한 출신국 배경을 가진 외국인 남성이 형성한 가족이다. 그리고 이 가족에서 새롭게 자녀가 태어났다. ‘다문화가족’의 법적 정의는 부부 중 한쪽이 반드시 한국인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귀화 한국인도 포함된다. 자녀 양육 돌봄은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을 초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외국인 배우자를 여성으로 가정하고 양육돌봄과 체류를 연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보람씨는 ‘귀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의 외국인 남편의 부모를 자녀양육 목적으로 장기 초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박보람씨는 ‘귀화’한 한국인이기에 돌봄을 목적으로 출신국 원가족을 초청하여 장기체류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박보람씨가 이주배경을 가진 귀화인이고, 양육 돌봄을 위해 출신국 친정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는다. 때문에 박보람씨는 자신의 부모를 3개월 미만으로만 초청 가능한 것이다. 박보람씨가 양육 돌봄의 목적으로 외국인 남편의 가족을 초청했다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방문 동거비자(F-1-5)로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박보람씨는 귀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친정 가족을 양육돌봄을 위한 목적으로 초청할 수 없다. 이는 돌봄에 대한 귀화(한국인)에 대한 역설적인 차별이다. 한국인 중에서도 해외에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초청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귀화한 한국인은 특히 한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초청할 수 없다. 귀화 한국인이 행정자치부 통계에 ‘외국인주민’으로 여전히 집계되는 배경일 것이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친정 부모님을 모셔와서 돌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엄마, 부모님들 여기 사는 거 지금 만 7세까지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거 조금만 더, 만 7세는 아직 어린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바뀌면은 저는 좋겠어요. 나 뿐만,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이주여성 가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송정은)

박보람씨의 경우와 달리 송정은씨는 다문화지원정책의 틀에 포함되어 두 자녀를 돌보는데 출신국에 계신 어머니를 초청해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경우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자녀의 나이가 현재는 9세로 확대되었지만, 인터뷰 당시에는 7세로 제한되어 있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 전까지만 조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정책 기조 때문이다. 박보람씨 경우처럼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례가 없지 않는데, 그때 돌봐줄 유일한 지원책은 출신국에 계신 부모님일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초등돌봄의 공백으로 인해 직장을 다니던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이 빈번하게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주여성의 '가족하기'는 그같은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송정은씨의 경우에는 정부가 연령제한을 걸어 돌봄에 제약을 가하고, 귀화 한국인 박보람씨의 경우에는 귀화인에 대한 차별로 제한을 걸어 초국적 가족 돌봄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아이들 대부분 제가 혼자 다 했고 예 그때는, [...] 시어머니는 그때 일했어요. 밭에서 일했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도와주는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 누가 옆에 있는 사람도 없고, 예, 참 많이 힘들었어요.” (송정은)

송정은씨는 시어머니도 일하느라 바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송정은씨가 바라던 기대는 인터뷰가 마무리된 이후, 이주여성 당사자들과 관련 이주인권단체들이 개선 방안을 요구하면서 2021년에야 만 9세까지 연장되었고, ‘한부모 결혼이주가정’과 ‘다자녀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 만 12세까지 초청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국내 가족의 경우에 조부모 돌봄에서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삼아 돌봄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경우를 상상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초국적 가족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다.

2) 새롭게 구성되는 돌보는 남성성의 단초

한국사회 내에서도 비교적 최근에서야 남성의 가족과의 연계, 특히 돌봄에의 참여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하고 있다. 연구진은 뜻밖의 표현과 더불어 이주여성의 가족하기에서 중요한 남성 ‘배우자’ 변수를 고려할 수 있는, 돌보는 남성성의 사례를 만났다. 차난주씨는 남편을 만나 “저는 로또 맞은 것 같”다고 하며, 시어머니도 “우리 아들은 너를 만나서 로또 맞은 것 같아”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로또맞은 사연은 다음과 같다.

“신랑은 아이를 돌봐주는 것에 대해 많이 도와줬어요. 뭐, 그 갓난애기를 매일 샤워해주잖아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항상 남편 기다리고 샤워, 같이 목욕시키고 [그랬죠.] 그래서 남편이 회식 있을 때 나 오늘 ‘애기 목욕해야 돼서 못 간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한국인들이 ‘아이 낳으면 우울증 생긴다’ 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좋아서 우울증,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었어요. 뭐 행복했어요. [웃음] 남편이 빨래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요. 요리 하려고 음식할 때도 제가 남편 퇴근하기 전에 제가 하긴 하지만. 뭐 국수 이런 거는, 남편이 국수를 좋아해요. 국수 먹는 날은 항상 남편이 준비해요. 뭐 삼겹살 먹을 때는 항상 남편이 고기를 구워줘요, 나는 채소만 준비하면 돼요.” (차난주)

연구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몇 안되는 사례 중에서 남편이 돌봄에 적극 지원, 가담하는 경우와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경우로 양분되어 있었다. 남성 배우자의 돌봄 공백의 지점이 강조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남편이 돌봄을 함께 하는 경우와 더불어 대체로 남편의 가족, 특히 시어머니의 도움이 적극적인 경우(홍단비)도 있었다. 남편이 돕는 경우, 이혼한 남편은 대체로 전혀 돕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고, 재혼한 남편은 상대적으로 적극 협조하거나 자녀 양육을 본인보다 더 잘 맡아서 한다(차난주·배소희·박보람)고 평가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의향을 살펴본 연구(김필숙·이윤석·김두섭, 2018)에 따르면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 많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의향이 높다고 분석했는데 기존의 이런 연구경향에 부합하는 현실이 밝혀진 셈이다.

돌보는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서 돌봄을 여성성의 측면으로 남겨두는 경향과 맞물린 젠더구분을 뒤흔드는 변화와 맞물려 있다(문현아, 2021). 기존의 이주여성에 관한 논의 속에서 이주여성의 배우자 남성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측면, 특히 폭력이 강조된 현실과 맞물려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의 사례를 통해 보면 이주여성이 형성하는 초국적 가족의 특징에서 배우자 남성들도 한국적인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규범에 충실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이 논의를 더욱 확장하고 관련 사례를 추가하는 분석이 이어지면 이주여성의 '가족하기'에서 배우자 변수를 고려한 새로운 접근틀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3) 돌봄과 더불어 가족 너머와 공동체로 연결되는 '가족하기'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정부의 이주여성에 대한 인구정책의 현실은 '결혼'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었고, 그것도 지극히 젠더불평등한 방식을 전제한 것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도 여성들은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며 이민2세대를 길러내고 있다. 이들 모두가 "힘들었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 주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가족을 형성하고 직장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하며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아이들은 어떻게 잘 자랐을까?

“아버님도와서 애도 좀 보고 싶다고, 특히 기쁨.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놀러가요 집에. 아니면 어버이날에 용돈 보내주고, 설날 추석 때 제가 몰래 남편, [웃음] 현재 남편은 잘 몰래요. 제가 몰래. 어쨌든 사는, 같이 사는 동안 좋은 사이였고, 나쁘게 헤어지는 거 아니고, 그래도 서로 내가 원하는 일도 이해해주고, 저는 남편에 대해 좀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아버님도 서로 우리가 친척처럼 지내자고, 가족 있어도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라고.”(장사랑)

“일을 하고 싶지만, [...] 정식직원으로 주5일 근무로 한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 애가 돌 지나고 너무 어리니까. 팀장님한테 ‘애 볼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팀장님이 그러면 ‘3일 정도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둬도 된다’고 해서 시작했고, 사람들이 도와줘서 계속 하다가 이렇게 8년까지 [웃음]”(배소희)

장사랑씨는 이혼한 뒤에 전 가족의 시아버지와 계속 연락을 하며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친정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한 경험으로 아버지와 친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장사랑씨에게 시아버지는 오히려 ‘아버지’로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관계로 맺어진 것 같았다. 앞에서 언급한 ‘트러블’이 새롭게 혈연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관계의 확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배소희씨의 경우는 팀장님과 동료들의 지원 덕분에 아이들을 키우는 어려움을 덜어내는데 도움을 받았다. 8년이 지나고 나서 자영업업을 시작하던 때에는 매장 주변의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오며 가며 아이들을 돌봐주고 지원하는데 동참했다고 한다.

분량의 한계상 모두 소개하기 어렵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이주여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한 가족 아닌 지역사회나 주변 사람의 지원은 이주여성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종종 언급되었다. 김순수씨는 동사무소 직원이 퇴근한 뒤에 별도의 시간을 내어 자녀의 ‘치료’를 도왔고, 동네 할머니가 노래를 통해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제안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보람씨도 같은 아파트에 살던 동일 출신국 친구들의 지지와 협조를 강조했고, 심지어 슈퍼 연계도 경찰을 통해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의 사례와 장사랑, 배소희씨의 사례처럼 이주여성들의 가족화기는 혈연 중심의 가족 내로 국한되지 않고, 가족 너머와 연결되며 새로운 관계맺기의 실천과 맞물려 있다.

5. 맺으며

배소희씨는 “공동체 활동도, 센터에서 사람들 도와주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요, 솔직히, 저, 인정해요, 저 많이 변했어요.”라고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시절의 본인과 지금의 본인은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건이 가족하기를 제안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공동체와의 연계였다(Morgan, 1996). 배소희씨를 비롯해 이 연구에 참여한 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가족 내 어머니이자 배우자 여성으로서의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병행하며 개인의 삶을 영위하며 실천하는 주체들이다. 이 연구는 이주여성들이 개인으로서나 가족과 더불어 존재함과 동시에 공동체와도 연관된 존재라는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라는 형식상의 공동체가 체류자격이나 출입국 정책을 통해 공동체로서의 통합에 제약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주여성들의 일상의 실천은 대안적 공동체와의 연계를 더 중시하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공동체는 혈연 중심의 관계 안팎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출신국 지인들로 구성된 이주민공동체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경제, 사회활동을 통해 직장이나 시민단체와 연계된 공동체인 경우도 있다. 이주여성을 둘러싼 이러한 상황은 기존 연구에서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측면이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초국적 가족의 특징을 통해 주체적으로 가족하기를 실천하는 바의 의미를 포착하고자 했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는 첫째, 이주여성의 가족이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이 연구는 초국적 가족의 실천을 제약하는 출입국 정책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는 이주여성의 실천을 강조하며 가족하기의 역동성을 분석했다. 덧붙여 가족에 국한되지 않는 확장된 돌봄의 영역도 포착해 이주여성들이 실천하는 가족 너머의 새로운 공동체적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주여성들의 원가족 상황은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이는 이 연구가 한국사회의 출입국 정책이 초국적 가족 실천을 제약하는 측

면과 그에 맞서는 초국적 가족의 특징을 강조하는데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짧게만 덧붙이면 이주여성과 원가족의 관계는 참여자들 사이에 상당히 다양했다. 그 중에는 정상성이라는 규범과 불화하는, 앞에서 언급한 소위 ‘트러블’로 독해 가능한 원가족 관계도 없지 않았다. 그 트러블은 여성들에게 ‘이주’를 통한 새로운 가족형성의 주요한 계기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 ‘가족하기’ 개념에서 강조하는 변화하는 가족을 해체가 아닌 자체의 리듬과 주기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과 맞닿는다. 원가족과의 초국적 관계망 형성에서 드러난 주요한 공통점은 ‘가족하기’에서 장벽이자 한계를 만드는 한국의 출입국 정책과 체류 제도였다. 이로 인해 원가족과 원할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상황은 거의 모든 결혼이주여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초국적 가족은 국경을 넘는 이주민을 한국사회 위기를 대처할 고안책으로 고려하면서 등장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초국적 가족을 실천하는 이주여성을, 함께 위기를 극복할 공동체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위기가 아니어도 여성의 삶은 가부장의 틀이 존속하는 한 여전히 힘겨운 투쟁의 현장이다. 페미니즘은 그런 맥락에서 힘겨운 일상의 경계들을 통과하며 경계들과 더불어 경계들을 극복하는 해방의 잠재력을 지닌 주체와 연대를 강조한다(모한티, 2005). 정부의 차별적 정책과 인권침해적인 다양한 조례 속에서 이주여성들은 이 소멸하려는 땅에 새롭게 정착해 초국적 가족을 실천하며 틈새 속에서 해방의 잠재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사회는 무엇보다 초국적 가족이 무엇이며 그 실태가 어떠한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사회는 과거에 이주, 특히 노동이주 송출국이었고, 해외동포를 주요한 정책으로 고려하는 국가다. 그런 국가에서 초국적 가족의 특징은 이주여성에 국한된 특징이 아니라 이주와 더불어 지속될 미래지향의 가족 형태다. 더불어 ‘가족하기’는 가족 너머를 상상하도록 동사형으로 그려내는 중요한 실천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가 소개하는 이주여성들의 초국적 ‘가족하기’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을 위해 성찰의 중요한 계기로 해석되길 희망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김가연·홍송희. 2022.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관련 질적 연구 동향 분석.” 『인문사회』 21(5): 57-70.
- 김순남. 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파주: 오월의 봄.
- 김원숙. 2012.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이민정책연구원 위킹페이퍼 시리즈』 NO. 2012-04.
- 김정선. 2010. “아래로부터의 초국적 귀속의 정치학: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2): 1-39.
- 김필숙·이윤석·김두섭. 2018. “결혼이주여성의 남편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그리고 출산 의향: 초혼 및 재혼 차이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9(1): 61-95.
- 김현미. 2010. “결혼 이주여성의 가정(Home) 만들기:문화 접경지대 번역자로서의 이주여성.” 『비교한국학』 18(3): 145-174.
- 모한티, 찬드라 탈파드. 2005. 『경계없는 페미니즘』. 문현아(역). 서울: 여이연.
- 문현아. 2021. “돌보는 남성성의 가능성 모색: 남성의 가족돌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7(3): 33-63.
- 박시내. 20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발.” 『통계연구』 22(1): 1-26.
- 박정숙·이지현. 2018. “결혼이주여성 가족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전인간호과학학술지』 11: 1-9.
- 박지현. 2020. “결혼보조금이 결혼에 미친 영향: 2004-2019 한국의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43(2): 1-39.
- 박효민. 2021. 『각국 센서스의 이주문항의 현황 및 한국 센서스에서의 시사점』.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1-14. 고양: IOM 이민정책연구원.
- 송윤선·이미나. 2019.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당 관련 KCI연구 동향.”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9(4): 697-706.
- 유삼현. 2017. “이주여성의 출산력 수준: 얽힌 실타래 풀기.” 『한국인구학』 40(1): 29-55.
- 육수현·허정원. 2020. “본국가족초청제도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질에 미치는 영향: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0(3): 81-129.
- 이삼식·박중서·김필숙·김형식.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출산 행동과 정책 방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선미. 2023. “국제결혼 지원조례, 이주여성의 시각으로 뜯어보기.” 성·인종차별적
조례폐지 TF,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의 시민주체성 강화를 위한
성·인종차별적 조례폐지 촉구 토론회」 자료집(2023.12.11.).
- 이종원·노용진. 2013. 『출입국자통계 품질개선 건설팅 최종결과보고서: 국제비교성
제고』. 통계청.
- 이화선. 2012.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권에 관한 고찰: 인권시각에서의 재생산권 법리
의 이해.” 『미국헌법연구』 23(1): 205-234.
- 정기선·김혜진. 2015. 『이주민통계 국제비교 현황과 시사점』. 이민정책연구원 통계
브리프 시리즈, No. 2015001. 고양: IOM 이민정책연구원.
- 정기선·이상지. 2016. 『국내 외국인 이민 관련 행정통계 이해를 위한 소고』. 이민정
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16-04. 고양: IOM 이민정책연구원.
- 최현우. 202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관련 연구 동향.” 『다문화사회연구』
16(2): 201-221.
- 해러웨이, 도나. 2021. 『트러블과 함께 하기』. 최유미(역). 서울: 마농지.
- 허오영숙. 2013.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가족 지원』. 서울: 한울아카데미.
- 황정미. 2011. “초국적 이주와 여성의 시민권에 관한 새로운 쟁점들.” 『한국여성학』
27(4): 111-143.
- _____. 2012. “다문화 사회와 ‘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 모성 담론의 재구성과
어머니의 시민권에 관한 고찰.” 『아시아여성연구』 51(2): 103-143.

(2) 국외문헌

- Baldassar, Loretta and Laura Merla, 2014. *Transnational Families, Migration and the
Circulation of Care: Understanding Mobility and Absence in Family Life*. New
York: Routledge.
- Bryceson, Deborah and Ulla Vuorela, 2002. *The Transnational Family: New European
Frontiers and Global Networks*. Oxford: Berg.
- Glick Schiller, Nina. 1999. “Transmigrants and Nation-States: Something Old and
Something New in the U.S. Immigrant Experience.” Hirschman, Charles, Philip
Kasinitz, and Josh DeWind(eds.)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American Experienc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94-119.
- Kottman, Nora. 2021. “Doing Family on a Global Stage: German Expatriates in southern
Tokyo.” *Recherches Sociologiques et Anthropologiques* 52(1): 149-169.

62 초국적 '가족하기'(doing family)의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실천

- Mazzucato, Valentina and Bilisuma B. Dito. 2018. "Transnational Families: Cross-country Comparative Perspectives." *Population, Space and Place* 2018; 24:e2165. <https://doi.org/10.1002/psp.2165>
- Mazzucato, Valentina and Djamilla Schans. 2011. "Transnational Families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4): 704-712.
- Morgan, David H.J.. 1996. *Family Connections: An Introduction to Family Studies*.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2011a. "Locating 'Family Practices.'"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16(4): 14
- _____. 2011b. *Rethinking Family Practices*.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Murray, Lesley, Liz McDonnell, Tamsin Hinton-Smith, Nuno Ferreira and Katie Walsh. 2019. *Families in Motion: Ebbing and Flowing through Space and Time*. Bingley: Emerald Publishing Ltd.
- Vertovec, Steven. 2009. *Transnationalism*. New York: Routledge.
- Yeoh, Brenda S.Y., Bittindira Chand Somaiah, Theodora Lam and Kristel F. Acedera. 2020. "Doing Family in "Times of Migration": Care Temporalities and Gender Politics in Southeast Asia."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110(6): 1709-1725.

(3) 기사 및 인터넷 자료

- 국가기록원. 2023. <https://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view> Policy.do [검색일: 2023.12.13.]
- 은기수. 2022. "인구안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동아일보>. 2022.4.9.
- 통계청. 2023a.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통계청. 2023b. <2022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 통계청. 2024.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1&vw_cd=MT_ZTITLE&list_id=A23_4&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검색일: 2024.2.3.]
- e-나라지표. 2024. 국가별 국제결혼 건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0 [검색일: 2024.2.29.]

Abstract

Marriage Migrant Women's 'Doing Family' Practices as the Subjects of Transnational Families

Moon, Hyun-A
(Seoul National University)

Eun, Ki-Soo
(Seoul National University)

Heo, Young-Sook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Marriage migrant women are regarded as integral members of Korean 'families'. However, existing research insufficiently emphasizes the transnational family relationships of marriage migrants with their families of origin prior to immigrating to Korea, as well as how these relationships are maintained and transformed after becoming a part of a multicultural family.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nterconnection between immigration and family by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 of 'doing family' that migrant women, especially those who form 'transnational' families, are practicing through their past and present experiences. To achieve this, the paper analyzes the changing features of families by approaching the practices of migrant women's transnational families through the concept of 'doing family.'

Based on the awareness of how their practices of 'doing family' through transnational migration can be characterized and what possibilities they may lead to, this paper first emphasizes that marriage

migrant women's families possess transnational characteristics that transcend borders. Secondly, it highlights the limitations of South Korean migration policies that constrain the practices of transnational families and emphasizes the practices of marriage migrant women in overcoming these limitations, analyzing the dynamism of 'doing family.' Lastly it captures the reality of care that extends beyond the family, exploring new communal possibilities beyond the family that marriage migrant women are practicing.

Key words: Care, Migration, Nationality, Transnational Family, Multiculturalism, Marriage Migrant Women

■ 투 고 일 : 2024년 3월 17일
■ 최초심사일 : 2024년 4월 8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4월 22일

성수진 · 강영희 | 한국 여성의 결혼관과 한국의 결혼 규범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조민지 | 1960~70년대 버스안내원 직종의 여성화와 '여성적인'
서비스의 의미

최나현 · 김영 | 대학 미투운동의 응결점들
- B시 P대학의 경험을 중심으로

유화정 · 김효정 |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최희경 |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에 대한 성별 분석

한국 여성의 결혼관과 한국의 결혼 규범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성수진** · 강영희***

| 목차 |

1. 서론
2.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 여성주의 가족론, 신자유주의, 공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 1) 여성에게 필수가 아닌 결혼, 여성주의 가족론
 - 2) 여성의 삶에 위험이 되는 결혼,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
3. 결혼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 공정성 이론
3. 한국 사회의 결혼 규범 변화: 결혼의 탈제도화로 나타난 다양한 가족 형태
 - 1) 결혼에 관한 규범의 해체
 - 2)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4. 결론

|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여성의 결혼 가치관이 왜 변화하였는지와 한국의 결혼 규범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가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초혼 연령 상승과 혼인 건수 감소는 전통적 결혼 규범의 해체이자 역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로 인식되면서 결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결혼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출산’과 결부되어 (정상)가족과 생산가능인구의 재생산 및 유지 기능에 초점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0708).

** 주저자: 계명대학교 soojins.biz@gmail.com

*** 교신저자: 계명대학교 kang02@kmu.ac.kr

을 두거나, 비혼 또는 결혼 지연 현상에 대한 결정요인을 밝히는 결과론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왜 결혼관이 변화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결혼 의향에 있어 성별은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지만, 젠더적 관점에서 변화된 결혼관을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에 주목해 이를 여성주의 가족론, 신자유주의 생활양식, 공정성 이론에 근거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이어서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된 결혼 규범을 ‘결혼의 탈제도화’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며, 결혼 규범의 해체와 함께 다양해지는 한국 가족의 새로운 형태와 변화를 검토하였다.

주제어: 결혼의 탈제도화, 한국 여성, 여성주의 가족론, 신자유주의 생활양식, 공정성 이론

1. 서론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초혼인율이 3.7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각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한국 사회의 결혼 규범에 큰 변화가 생겼음을 암시한다(통계청, 2023b). 결혼이 삶의 규범으로 여겨지는 까닭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표준화된 생애 과정으로 수행되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의 비혼화와 만혼화 같은 비혼 인구의 증가는 전통적 결혼 규범의 해체라는 “역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로 인식되면서(정선영 · 한지우, 2024: 10), 인생의 중요한 생애 전환과정인 결혼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한국 사회에도 필요하다.

이렇듯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결혼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대부분 ‘출산과 결부되어 (정상)가족과 생산 가능인구의 재생산 및 유지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어(권성호 · 이준 · 송기민, 2010; 김혜영 · 선보영 · 김상돈, 2010; 손승영 · 김은정, 2010; 도미향, 2011; 박다운 · 유계숙, 2011; 이훈희 · 서용석 · 정윤택, 2011; 이보람 ·

김정옥, 2012; 최효미, 2017; 성금단, 2021; 오신희, 2022) 한국의 혼인율이 왜 감소하고 있는지, 개인들이 결혼을 왜 기피하는지 등에 관한 연구와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개인의 결혼 의향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각각의 현상에 대한 결정요인을 밝히는 결과론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어성연·조희금·고선강, 2010; 김혜영·선보영, 2011; 이상호·이상현, 2011; 이현옥, 2011; 고선강·어성연, 2013; 임훈민·김중백, 2013; 김은정, 2018; 탁현우, 2020; 임병인·서혜림, 2021; 손병덕, 2022. 홍수아·손서희·최자혜, 2023), 한국의 청년층이 '왜 미혼과 비혼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아졌는가?'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많은 연구에서 결혼 의향에 있어 성별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결혼 의향 및 결혼 가치관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박성옥·양연숙·안선희, 1997; 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김정석, 2006; 진미정·정혜은, 2010; 박지수·박인숙·이재림, 2023; 진미정·기쁘다·성미애, 2023). 그뿐만 아니라 이소연(2023)의 연구는 개인의 결혼 인식 및 가치관 변화가 성별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녀의 결혼관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비중이 여성이 더 적다는 점이다. 예컨대, 18~29세 남성의 88%가 한국의 혼인 감소를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반면, 18~29세 여성은 23%만이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이소연, 2023). 게다가 결혼을 필수로 인식하는 정도에서도 18~29세 남성의 53%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18~29세 여성은 15%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결혼에 관한 남녀의 인식 차이는 젠더적 관점에서 한국 청년층의 변화된 결혼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의 결혼이 비혼화 및 만혼화되어가는 현상에 '왜 여성의 결혼관이 이렇게 변화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결혼관 변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를 여성주의 가족론, 신자유주의 생활양식, 공정성 이론에

근거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한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변화된 결혼 규범을 ‘결혼의 탈제도화’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며, 결혼 규범의 해체와 함께 다양해지는 한국 가족의 새로운 형태와 변화에 관해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정리된 이론들의 함의와 한국 사회의 결혼에 관한 연구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2.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 여성주의 가족론, 신자유주의, 공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결혼관이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개인들의 규범과 가치관을 의미한다(강은숙, 1981). 규범은 개인이 스스로의 행동유형을 결정하게 하며,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유형과 행동지향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고영복, 1977; 정윤경 외, 1997: 52에서 재인용). 특정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개인의 규범과 가치관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결혼관에는 개인적 특성도 영향 주지만 사회적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회는 짧은 기간에 급격한 근대화화 and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결혼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도 자연스럽게 변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여성 청년층에서 비혼의 증가이다.

결혼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하다. 벡과 벡-게른샤임(Beck and Beck-Gernsheim, 1999)에 따르면, 결혼은 소득, 고용, 거주, 교육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성 역할 같은 젠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불안정한 집적(unstable integration)”이다(벡·벡-게른샤임, 1999, 43). 그러므로 한국의 여성 청년층이 결혼을 미루거나 비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도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청년층에서 비혼이나 만혼이 늘어난 원인을 여성주의 가족론,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 분배 공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여성주의 가족론은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가족’과 ‘여성’과의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한국의 가족 및 결혼문화의 구조적 불평등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결혼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결혼을 출산과 연결하거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요인에 주목한 것과 달리 여성주의 가족론은 아내, 어머니, 며느리 등의 가족 내 역할 및 위치로 인해 주목받지 못했던 가족 내 여성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일, 친밀성, 주체성, 성별 분업, 돌봄의 문제 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여성의 결혼이 왜 변화하였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 생활양식에 기초하여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개인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경쟁과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생활양식이 배태한 남성과 여성 간의 성별 불평등을 가시화할 수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불평등한 한국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결혼을 지연하거나 비혼을 선택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분배 공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결혼과 동시에 성별에 따라 시간과 자원 배분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결혼과 가사 및 돌봄 노동의 젠더적 간극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배 공정성 이론은 인간은 자신이 받은 보상이 공정하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한다고 보는 사회적 비교이론이다. 대체로 결혼에서 아내의 비교 대상은 배우자인 남편이다. 이 관점은 성 역할에 따라 불평등하게 가사 및 돌봄 노동을 배분하는 전통적 결혼 제도를 왜 여성이 배척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한다.

1) 여성에게 필수가 아닌 결혼, 여성주의 가족론

1980년대 말 한국 학계에 도입된 여성주의(feminism) 가족론은 파슨스(Parsons, 1955) 학파의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m) 가족론의

이분법적 가정과 지배적 담론에 도전하며, 가족 연구에 젠더 관점을 도입해 가족 이론의 지평을 확대하였다(소온·알롬, 1991: 10). 구조기능주의 가족론은 생물학적으로 본질적이고,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가족을 가정하여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와 같이 가족 내 구성원들의 지위를 할당하는 가족의 기능에 주목하는 반면, 여성주의 가족론은 가족 내 여성을 개별적 주체로 인식하여, “가족이 여성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가족의 정의와 의미, 가족 구성원의 역할,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등을 탐색하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소온·알롬, 1991: 34). 즉, 여성주의 가족론은 가족 내 여성 개인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 중 가족의 일원으로서 성별화된 역할에 관심을 두는 가족 연구이자 방법론이다.

여성주의 가족론은 가족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이데올로기로서의 전형적 가족”의 불가피성을 지지하는 구조주의 가족론의 관점과 달리(소온·알롬, 1991: 14), 가족의 사회적·역사적·정치적 성격에 주목해 지금까지 비주류적 연구 대상으로 상정되었던 “아내와 어머니 역할, 출산, 가사노동, 결혼과 이성애, 사랑”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문소정, 2003: 42). 그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능이 만들어 낸 구조로부터 가족을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젠더화된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가족 연구의 관점을 가족 내 여성의 경험으로 이동시켜 “가족 내 여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으며(문소정, 2003: 42), 여성주의 가족론은 가족과 결혼의 구조적 불평등과 여성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젠더적 속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축적해 왔다(이기숙, 1990; 이효재, 1990; 공미혜, 1992).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여성주의 가족론에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이 결합되면서 가족 연구의 이론 및 방법론적 전환이 이루어졌다(문소정, 2003: 40). 여성주의 가족론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결합은 앞선 논의들이 포괄하지 못했던 여성들 간의 인종, 계층, 계급 등과 같은 차이에 초점을 두며 가족 내 다양한 여성들에 관한 연구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

이진숙(1997)은 코프라와 쉘러(Chopra · Scheller, 1992)의 포스트모던 가족 개념을 토대로 근대 이후 결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이진숙, 1997: 95-96). 첫째,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의 삶은 일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개인의 자아실현 및 생애경로수행 과정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둘째, 결혼과 가족제도의 주요 기능인 감정적 욕구 충족은 다른 생활 형태로부터 충족할 수 있게 되어 현대사회의 가족은 가령 동거, 비혼, 1인 가구 같은 다른 생활 형태와 상호경쟁적으로 병립한다는 것이다. 셋째, 결혼의 도구적 성격이 전면으로 드러나면서 여성들의 주체적 행위가 관찰된다는 것이다. 넷째, 증가하는 이혼율을 통해 결혼제도의 불안정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가족 내 역할에서 성별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코프라와 쉘러가 설명한 결혼의 특징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여성을 개인으로 인식하여 여성과 가족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여성주의 가족론의 관점은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를 이해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청년에게 일은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직위, 지역, 가구 형태, 계층과 무관하게 중요한 것¹⁾으로 인식되고 있다(길현중 · 이경희 · 이영수, 2022). 개인의 생애가 일 중심으로 재편된 가운데, 결혼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및 노동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여성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둘째, 최근 한국 사회의 이혼율 증가, 혼인율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은 사랑과 우정, 배려, 신뢰, 보살핌, 돌봄, 섹슈얼리티(sexuality) 등의 다양

1) 한국노동연구원(2022)의 조사에 따르면 일의 중요성 인식은 7점 리커트 척도 기준 5.23으로 일을 통한 금전적 목표 달성 인식(4.54), 일을 통한 사회적 성공 인식(4.4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길현중 · 이경희 · 이영수, 2022).

한 가치들이 결합한 친밀성의 구조적 변동으로²⁾ 이해되고 있다. 친밀성의 형태의 다양화와 그 구성 절차의 변화는 가족 및 결혼관에 영향을 미쳐 한국에는 이미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오늘날 여성들의 친밀성에 대한 욕구는 이성애를 기반으로 한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여성들의 삶에서 결혼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된 것이다.

셋째, 한국에서 결혼은 여성의 사회적 독립 또는 경제적 지위 향상과 같은 도구적 성격을 띠면서 일종의 선택지가 되어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감소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여성들은 결혼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 사회적 독립과 경제적 지위 향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결혼에 관한 여성들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인식변화는 <표 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여성의 56%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

<표 1> 청년층(18~39세)의 결혼 필요성에 관한 인식 (단위: %)

구분		응답 수 (명)	응답		
			결혼해야 한다	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남성	전체	496	59	36	6
	18~29세	87	53	34	13
	30대	78	44	51	5
여성	전체	504	33	56	11
	18~29세	79	15	72	12
	30대	73	15	72	13

출처: 이소연, 2023.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자 수정.

2) 이명호(2022)는 근대사회의 친밀성 구조를 과거와 근대 이전과 비교하여 오늘날 친밀성의 구성 주체는 가족에서 개인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결과 친밀성이 구성되는 절차가 '묵시적 교류'에서 합의와 확인이라는 '명시적 합의'로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했다고 설명한다(이명호, 2022: 267-268).

도 좋다고 인식한 반면에, 전체 남성은 36%만이 결혼을 선택이라고 인식하며, 59%의 남성은 결혼을 필수라고 인식하고 있다. 결혼에 관한 성별 간 인식 차이는 10~30대 사이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 최근으로 가까워질수록 결혼을 선택이라고 인식하고 실천하는 여성의 주체성이 뚜렷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앞지른 통계 자료는 한국 사회 내 결혼제도의 불안정성을 시사한다. <표 2>에 따르면 2012년을 기점으로 총이혼 건수에서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 구성비가 신혼이혼 비율을 앞질렀다. 이들의 이혼 비중이 2021년에는 38.7%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청년층 여성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여성의 결혼 인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 부부의 해체는 황혼이혼³⁾ 또는 졸혼(卒婚)⁴⁾이라는 방식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며,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여 결혼의 안정성보다는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게 되면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 여성들은 더 이상 결혼이라는 제도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구성률 (단위: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4년 이하	27.0	26.9	24.7	23.7	23.5	22.6	22.9	22.4	21.4	21.0	19.8	18.8	18.6
20년 이상	23.8	24.8	26.4	28.1	28.7	29.9	30.4	31.2	33.4	34.7	37.2	38.7	36.7

출처: 통계청, 2023d.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의 ‘혼인지속 기간별 이혼 구성비’, 저자 수정.

3) 중년 부부의 이혼은 연령의 관점에서 ‘노인 이혼’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노년기 부부 이혼의 특징과 충격을 강조할 수 있는 황혼이혼으로 변경되어 사용되었다. 황혼이혼의 개념은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들이 하는 이혼으로 정의된다(성영식, 2005).

4) 졸혼은 황혼이혼의 대안으로 혼인이라는 제도적 관계는 유지하되 가족과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자기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뜻한다(장정인·강금혜, 2021).

마지막으로, 한국의 가족 내 성별 분업에 따른 불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 격차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OECD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하루 동안 한국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은 49분으로 일본(40.8분)을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여성의 하루 무급노동 시간은 215분으로 남성의 약 4배에 달한다(OECD, Stat, 2023). 2장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과 같은 무급노동 시간의 성별 격차는 기혼여성이 남성과 같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이처럼 여성주의 가족론은 가족이라는 개념 또는 형태에 배태된 가부장성과 젠더성을 정확히 간파함으로써 전통적 가족 가치관, 가족 구성, 가족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을 시도하는 여성들의 결혼관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현대사회에서 결혼의 심리적·정서적 기능이 약해지고 결혼이 전통과 규범이라는 인식의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유지한 한국 사회의 결혼은 더 이상 여성들에게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없다.

여성에게 배타적 희생과 억압을 강요하는 봉건적 가족주의와 여성의 개인적 자유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이다(백·백·게른샤임, 1999: 22). 따라서 결혼관의 변화 역시 다양한 이론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 가운데 여성주의 가족론은 오늘날 한국 여성의 결혼에 관한 논의를 가족이 아닌 여성 개인에게 초점을 두으로써 사적 공간에서 근대적 개인성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여성들의 개인성을 복원하는 실천이자 결혼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2) 여성의 삶에 위험이 되는 결혼, 신자유주의 생활양식

한국 여성의 변화된 결혼관은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확산된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생활양식의 변화라는 관점으로도 논의될 수 있다. 1997년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발 빠르게 도입하였다. 이때 주목할만한 점은 권위주의 정권 당시 억압되었던 민주화 및 자유주의적 욕구가 “위로부터 강행된 신자유주의적 정부 정책과 교묘히 만남으로써, 경제영역뿐 아니라 교육, 복지, 가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문화적 논리로 신자유주의가 강력하게 파급되었다”는 것이다(박소진, 2009: 19).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한국 사회 내 권력 관계를 재구조화함으로써 자기 규제 형태를 띠는 ‘자아의 기술(technologies of the self)’이라는 새로운 통치 기술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새로운 통치전략은 개인을 ‘자기 기업가(the entrepreneur of self)’라 불리는 신자유주의적 주체(neoliberal subjects)를 호명하며,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Gordon, 1991; Rose, 1999; Walkerdine, 2003: 239, 박소진, 2009: 17 재인용).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은 전에는 일부 계급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자본의 소유, 휴일 및 여가생활 향유와 같은 배타적 생활양식과 소비문화를 민주화하였다는 측면에서 “생활양식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라고도 불린다(백, 1997: 164, 170). 개인화된 사회는 민주성과 자율성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개인들에게 끝없는 “선택의 기회와 제약”을 제공하면서(백, 1997: 194),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의 민주성과 자율성은 개인들로부터 사회적 규범을 박탈함으로써 이들의 모든 생애 과정을 선택과 경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 그 결과, 개인의 학력, 경제력, 취향, 취미, 외모, 건강,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것이 화폐가치로 환산되어 시장의 원리로 값이 매겨지게 되었으며, 다양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극복하는 방법

들 역시 개인화의 방식으로 민영화되었다(백, 1997: 160). 한국 청년들의 ‘스펙쌓기’ 열풍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민주화와 자율성의 원리에 근거해 개인화되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에는 중대한 모순이 있다. 신자유주의가 여성의 법적·사회적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신장시켜 여성의 삶의 공간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확장한 것은 맞지만, 성별 간 불평등을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구획선을 따라 이분법적으로 적용되어 남성 개인과 여성 개인 간의 차이를 강화하였다(백, 1997: 182).

그중에서도 새로운 가족의 형성과 함께 노동, 부모됨,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결혼은 전과 후에 있어 남성과 여성 간의 상당한 차이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결혼, 임신·출산, 육아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2022년 기준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17.24%이다(통계청, 2023e).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4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결혼이 26.3%, 임신·출산이 22.7%로 전체의 91.8%를 차지했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결혼이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있어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은 미혼여성 대비 각각 18%p, 16%p 낮지만, 기혼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이 미혼남성 대비 각각 13%p, 16%p 높고, 실업률은 4%p 낮다(정성영·한지우, 2024). 이처럼 결혼과 육아와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삶이 남성 개인의 경력력 유지 또는 상승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2013~23년 평균 성별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 실업률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비경제활동율	실업률
기혼남성	96%	95%	4%	1.4%
미혼남성	83%	79%	17%	5.4%
기혼여성	62%	60%	38%	2.0%
미혼여성	80%	76%	20%	4.9%

출처: 정선영·한지우. 2024. <BOK 이슈노트>의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저자 수정.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차이는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의 중립적인 시장경쟁 원칙이 이미 존재하는 성별 간의 격차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이주희, 2005: 172). 신자유주의 생활양식이 여성을 공적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치 성평등을 이룬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전통적 가족주의, 가부장제, 성별 분업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엄폐한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이 제공하는 외견상의 평등은 오히려 남성과 여성 간의 “영속적이고 유해한 불평등”을 더욱더 분명하게 가시화하여, 여성들의 불평등의식을 더욱더 강화하게 한다(백·백·게른샤임, 1999: 44).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들에게 결혼은 자신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위험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생활양식은 개인들에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문제화’하고 ‘성찰’하며, ‘발전’시키기를 강요하는 가운데(문강형준, 2012: 124), 여성의 삶은 남성과는 달리 “사랑, 연애, 결혼 등 사적인 삶의 성공과의 관련성 속에서 조율하고, 양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엄혜진, 2016: 43-44). 따라서 오늘날 한국 여성에게 결혼은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위험 요소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최근 여성들의 결혼 지연과 비혼은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위험관리 전략인 셈이다.

3) 결혼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 공정성 이론

한국 여성들의 결혼관 변화는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Adams, 1965)⁵⁾ 이론의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투자 대비 보상(가치 있는 결과)을 다른 사회적 행위자 또는 비교 대상의 투자 대비 보상(가치 있는 결과)과 비교해서 자신의 투자 대비 보상 비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공정성을 인지할 가능성이 커진다(Blalock and Wilken, 1979; Walster, Walster, and Berscheid, 1978). 즉, 인간은 자신의 기여에 따른 보상이 공정한가를 평가할 때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을 적용한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배우자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나 관계 지속성을 결정하는 이론적 근거로도 작용한다(Joyner, 2009). 자신과 파트너의 투입-산출 비율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친밀한 관계에 더 만족하고, 보다 헌신적이며, 지속할 가능성이 더 높다(Blau, 1964; Homans, 1961; Sprecher, 1992; Walster et al., 1978).

기여와 보상이라는 분배 공정성의 관점으로 여성의 결혼 선택을 바라보면, 결혼의 구조적 불평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결혼이라는 산출물을 얻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개인의 심리적·물질적 자원 간의 비율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투입-산출의 비율과 비교해서 공정성을 인지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가사분담의 공정성을 평가할 때 어떤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결과/투입 비율이 다른 영역에서 불평등한 결과/투입 비율에 따라 균형을 이루면 공정하다고 인식될 수도 있다(Perales, Baxter, and Tai, 2015). 그런데 현재는 남녀의 유급노동에 대한 기여와 보상이 점차 동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생계부

5) 공정성의 유형은 크게 절차 공정성(procedural justice),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상호작용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으로 나뉜다. 절차 공정성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인지하는 공정성, 분배 공정성은 의사결정에 대한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은 의사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는 공정성을 뜻한다.

양자로서 여성의 책임이 커지면서 결혼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기혼여성
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를테면 가족의 형태가 맞벌이 부부가 자녀가 보
편화되었다.

그런데 가사노동의 분업은 여전히 성 역할(gender role ideology) 관점
에 따르고 있어 가사노동의 불균형이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가령, 여성
은 요리, 청소, 빨래 등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반복적인 일을 담당하고 남
성은 자동차 정비, 야외 업무 등 비정기적이고 비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
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여겨왔다(Mikula, 1998).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
면서 가정 내 남성이 담당했던 가사노동은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가사
노동의 영역에서 벗어나 유급노동의 영역으로 이전되었으나, 여성이 담
당한 가사노동은 여전히 가정 내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성 역
할 이데올로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 내 무급노동을 여성의 몫으로 간
주하게 했다. 그 결과 남성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데 소극적이고, 그저
여성을 보조하는 역할로만 인식되었다.

실제 한국 사회에서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은 격차가 심하다(장인수 ·
우해봉, 2017; 정운대 · 서재욱, 2016).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허수영과 김
한성(2014)에 따르면, 2004년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32분,
2014년에는 40분이었다(허수영 · 김한성, 2014: 6). 이러한 가사노동에서
의 남녀 격차는 최근까지도 큰 변화는 없었다. 2019년 통계청의 <생활시
간조사>⁶⁾에 따르면, 2014년 기혼남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53
분, 여성은 238분이었고, 2019년 남성은 64분, 여성은 225분이다(통계청,
2019). 이러한 현상은 <표 4>에서 보듯이, 2019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남
성(54분)과 남성이 외벌이 가구인 남성(53분)과도 차이가 없다. 또한, 아

6) 통계청이 5년 주기로 발표하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이며 가사노동은 가정관리(자
신의 가족 또는 가구의 가정생활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행동)과 가족 보살피기
(가족 또는 가구원을 무급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살피는 일체의 행동)로 구분
하고 있다.

내가 외벌이인 가구의 남성(119분)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편이 외벌이인 가구의 여성(341분)보다 적고, 맞벌이 가구의 여성(187분)보다 가사노동 시간이 적다.

〈표 4〉 혼인 상태별 및 맞벌이 상태별 가사노동 시간 (단위: 시간)

		맞벌이		외벌이(남편)		외벌이(아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4	가정관리	28	158	27	253	86	145
	가족보살피기	13	35	19	107	13	14
	계	41	193	46	360	99	159
2019	가정관리	39	151	33	245	103	139
	가족보살피기	15	36	20	96	16	17
	계	54	187	53	341	119	156

출처: 통계청, 2019, <생활시간조사>, 저자 수정.

주. 가사노동 = 가정관리 + 가족보살피기

결혼과 출산은 개인에게 있어 중요한 생애 전환의 계기가 된다. 이러한 생애 전환이 일어날 때 가정 내에서 시간과 자원의 배분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큰데(Perales et al., 2015), 대다수 기혼여성이 여전히 집안일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다(Baxter, Hewitt, and Haynes, 2013; Lennon and Rosenfeld, 1994). 예컨대, 남성이 가사노동에 기여하는 수준은 약 20~35% 정도이며(Shelton and John, 1996), 이것은 맞벌이 가구에도 적용된다(Mikula, 1998: 216-217). 특히, 부모가 되면 남성보다 여성의 삶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Baxter et al., 2008; Gupta, 1999; Sanchez and Thompson, 1997). 가령, 여성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남성은 자녀 출산 후에도 무급노동 시간의 변화가 거의 없어서 출산이 남성의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Perales et al., 2015). 전통적으로 가장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여겼던 생계 부양의 책임을 나누었음에

도 불구하고, 맞벌이 여성은 자신의 배우자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돌봄 노동이나 가사노동의 책임지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유급 및 무급노동에 대한 공정성 인식 수준이 결혼 만족도, 결혼의 질,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다(Blair, 1993; Mikula, Freudenthaler, Brennacher-Kroll, and Brunschko, 1997; Ward, 1993).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구조적으로 결혼 생활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분배 공정성이 훼손당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여성은 결혼의 필요성을 남성보다 적게 느낄 수 있다.

게다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가 학력인데, 교육수준이 낮으면 성별에 따른 가사노동 부담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작다고 한다(Mikula, 1998).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여성의 학력 수준은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높아졌고 이로 인한 여성의 유급노동 시간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의 양태, 특히 부부간 가사노동 부담은 아주 더디게 변화하였다.

특히, <표 5>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성의 상승 폭이 더 큰 것은 한국 여성이 부담한 가사분담이 남성에게 혜택이 되지만 여성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더 강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 여성의 비혼과 만혼의 증가는 결혼과 자녀 출산은 여성에게 중요한 생애 과정이나 자신의 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이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가사분담의 공정한 분담에 찬성하는 비율 (단위: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남성	27.0	31.2	40.0	42.7	48.1	54.6	57.9	60.0
여성	37.5	42.2	50.0	52.2	58.8	63.4	67.0	69.4

출처: 통계청, 2023a. <사회조사>의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저자 수정.

3. 한국 사회의 결혼 규범 변화: 결혼의 탈제도화로 나타난 다양한 가족 형태

1) 결혼에 관한 규범의 해체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인간이 태어나 당연히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通過儀禮) 중 하나로, 아주 중요한 생애 전환과정으로 인식되는 제도(institution)이다. 한 개인이 사회에서 평범한 성인(成人)으로 인정받는 데 있어 결혼은 필수적인 요건이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특별한 사유나 하자가 없다면 결혼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혼 전에는 부모가 함께 살아야 했다. 즉 결혼은 부모로부터 합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수단이자 어른으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자격 요건 중 하나였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려웠다. 이처럼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높은 분위기에서는 설령 비혼을 선호하더라도 이를 실행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제도로서의 결혼은 기반이 약해지면서(Cherlin, 2004) 결혼에 관한 규범이 해체되고 있다. 이른바 결혼의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가 일어나고 있다.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란 어떤 사회 제도(institution)가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사회규범(social norm)으로서 갖는 정당성(legitimacy)이나 위상이 약화 되는 것을 뜻한다. 20세기 후반 개인의 선택과 가치관이 더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개인주의(individualism)가 강화되면서 여러 방면에서 탈제도화가 일어났는데(Giddens, 1992; Beck, Beck-Gernsheim, 1995; 2002) 결혼도 그중 하나다. 제도적 구속력이 약해지면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자아와 주관에 더 많이 좌우된다. 결혼의 탈제도화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나 압력이 미치는 영향은 줄이고 개인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만들었다.

Cherlin(2004)은 결혼의 탈제도화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을 산업화와 개인주의 강화로 들었다. Cherlin(2004)에 따르면, 제도로서의 결혼이 동반자(partnership) 관계로 변했고, 동반자 관계에서 다시 개별화된 결혼(individualized marriage)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결혼의 탈제도화는 나라마다 세부적인 양상은 다르다. 그런데 산업화와 개인주의 강화는 시차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현상이므로 미국을 바탕으로 한 Cherlin(2004)의 주장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Cherlin(2004)에 따르면, 1850년에서 1960년에는 제도로서의 결혼이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었는데, 이 당시 결혼은 정서적 만족감과 로맨틱한 사랑이 중요했다. 좋은 동반자(친구&연인)로서의 정서적 유대감이 성공한 결혼의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여전히 결혼만이 완전한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개인화된 결혼은 20세기 후반에 기혼여성의 유급노동 증가, 생활 수준 향상,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Bellah et al., 1985) 나타났다(Cherlin, 2004). 가장 큰 특징이 정서적 유대감보다는 결혼의 필요성과 만족감을 평가하는 데 개인주의적 관점이 강화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정을 꾸려서 아내 또는 남편, 부모 역할을 하는 데서 만족감을 얻기보다는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Cherlin, 2004). Cancian(1987)은 개인화된 결혼이 아내, 남편, 엄마, 아버지 등과 같은 ‘역할’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의 자아(identity)가 더 중요함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개인화된 결혼은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희생하기 보다는 자기계발에 초점을 두고 젠더화된(gendered) 역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역할은 달라질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Giddens(1992)와 Beck과 Beck-Gernsheim(1995; 2002)도 개인의 삶에서 사회 규범과 법보다 개인 선택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Giddens(1992)는 연인처럼 친밀한 인간관계 중에서 친밀감

과 사랑이라는 보상이 만족스러울 때까지만 유지되며, 법적인 결혼, 자녀 양육과 같은 욕구에서 자유로운 ‘순수한 인간관계(pure relationship)’가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했다. 순수한 인간관계는 사회 제도에 순응하기 위해서나 경제적 목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아 정체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동성 결혼의 출현, 동거 연인의 증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동반자 관계에 남아있던 제도로서의 결혼이 갖는 구속력을 더 약화시켰다. 즉 결혼에 관한 개인의 선호와 가치관이 더 중요해졌다.

한국에서도 결혼에 대한 규범이 해체되고 있는데, 최근 십여 년간 나타난 결혼의 탈제도화의 양상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엿볼 수 있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 의사가 2012년에 56.5%, 2022년은 36.4%로 약 20%p가 감소했다. 또한, 비혼 동거에 대한 찬성 비율이 2012년 61.8%에서 2022년은 80.9%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로써 결혼의 구속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결혼은 자녀 출산에 필요한 요건이었으나 결혼과 자녀 출산이 디커플링(decoupling)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 후에도 ‘자녀 출산이 필요없다’는 인식도 46.4%에서 53.5%로 증가했고, 비혼 출산에 대한 동의 비율도 2012년 29.8%에서 2022년 39.6%로 증가했다.

<표 6> 결혼, 비혼, 출산, 가사분담에 관한 청년(19~34세)의 인식 변화 (단위: %)

연도	2012년			2022년		
비율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결혼 의사(공정적)	56.5	66.1	46.9	36.4	43.8	28.0
비혼 동거 찬성	61.8	64.4	59.2	80.9	81.9	79.8
결혼 후 자녀 필요 없음*	46.4	38.7	54.6	53.5	43.3	65.0
비혼 출산 동의	29.8	31.3	28.3	39.6	40.2	38.8

출처: 통계청, 2023a. <사회조사>7). 저자 수정.

주: * 2018년 조사자료.

앞서 논의한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결혼 의향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결혼이 더 급진적으로 탈제도화되고 있음을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 나아가 결혼의 탈제도화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비혼을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대체로 결혼과 자녀 출산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데(Baxter et al., 2008; Gupta, 1999; Sanchez and Thompson, 1997), 대표적인 예가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이다. 특히, 자녀를 출산하면 여성은 더 큰 변화를 겪는다. 우선,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는데도 남성보다 어렵고,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한다. 이렇듯 결혼함으로써 겪는 변화가 개인의 복지(well-being)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비혼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비혼에 대한 인식까지 부정적이지 않는다면 굳이 결혼이라는 생애 전환과정을 선택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여성 청년층의 비혼 선택이 증가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통계청(2023a: 1)에 따르면, 한국의 미혼 남녀 중 결혼을 안 하는 주된 이유로 여성은 ‘결혼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이 23.7%인데 반해, 남성은 13.3%로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비중이 적었다. 물론 이것이 미혼 여성이 결혼에 따른 변화가 싫어서 비혼을 선택한다는 근거는 아니나, 현재 미혼 여성이 미혼 남성보다 비혼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7) 통계청이 매년 5월 실시하는 사회조사로,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자기응답식(self-reporting)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해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기본 조사와 10개 영역으로 구성되나 2년 주기로 5개 부문을 나눠 조사하는데, 2023년에는 기본, 복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을 조사하였다.

2)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결혼에 대한 규범이 해체되면서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 또는 가구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결혼의 탈제도화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의 증가, 동성 결혼의 출현이다. 한국도 비슷한 결혼의 탈제도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사회조사와 인구조사에서 살펴보면 한국에서 최근 나타난 결혼의 탈제도화의 다른 특징으로 핵-핵가족화, 다문화가족의 증가, 1인 가구의 급증 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나타난 결혼의 탈제도화의 특징(핵가족화의 심화, 다문화가족의 증가)과 보편적인 탈제도화의 특징인 비혼 동거 증가, 동성 결혼의 출현을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합법적인 수단이자 주요한 생애 규범인 결혼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 영향으로 가족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핵가족화의 심화: 핵-핵가족화

결혼에 관한 인식의 변화로 한국의 가구 유형도 최근 수십 년 동안 변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부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화가 더 심해져 가구당 인원수가 줄어드는 핵-핵가족화가 일어났다. 지난 40여 년간의 가구당 인원수 감소 추세를 <표 7>에 정리했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 평균 가구의 규모는 4명 이상, 1990년대 3명 이상, 2000년대 초반에 3명이 무너져 2020년에는 2.3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를 안 갖거나 1명 이하로 갖는 부부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 출생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표 6>에 따르면, 19~34세 청년층의 '결혼 후에도 자녀 출산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7〉 1980~2022년 가구당 평균 인원수(명)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2
가구당 인원	4.5	4.1	3.7	3.3	3.1	2.9	2.7	2.5	2.3	2.2

출처: 통계청, 2023f. <인구총조사>. (2023.7.31. 기준)

핵.핵가족화를 출현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1인 가구의 급속한 성장이다. 〈표 8〉와 〈표 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인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34.5%로 전체 가구에서 중 가장 높다. 표준 가구 유형으로 인식되었던 4인 가구는 14.7%에 불과하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중을 합치면 61.7%로, 더 이상 부부와 2인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가 한국의 표준 가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한국의 1인 가구 추이(%)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가구 중 비율(%)	28.6	29.3	30.2	31.7	33.4	34.5

출처: 통계청, 2023c.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저자 수정.

〈표 9〉 2022년 한국의 가구 유형별 비율(%)

가구 유형	1인	2인	3인	4명	5명 이상
비율	34.5	28.8	19.2	13.8	3.7

출처: 통계청, 2022b.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저자 수정.

1인 가구의 증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가족 실태조사⁸⁾ 분석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과반을 차지하는 50대 이상은

8)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며, 조사는 통계청에서 대행하며 2020년부터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어 3년마다 실시한다. 조사원이 면접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자기 기재, e-mail 등을 병행한다.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이 대표적 원인이나 40대 이하는 학업이나 직장이 가장 큰 원인이다(여성가족부, 2021). 특히 최근 수십 년 동안 결혼을 미루거나 초혼 나이가 많아지면서 결혼 전에 부모에게서 독립한 청년층도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까지 남성의 초혼 연령은 29.3세, 여성은 26.5세로 남녀 모두 20대 초혼이 보편적이었으나 2022년에는 남성은 33.7세, 여성은 31.3세로 초혼 연령이 4세 이상 늘었다. 게다가, 결혼이 더 늦어지거나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결혼과 무관하게 독립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을 혼인 상태별로 구분하면 미혼이 40.2%로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 구분하면 40세 미만은 27.7%를 차지한다(여성가족부, 2021: 367). 아울러, 1인 가구에서 남성의 비율은 47%인데 반해 여성은 53%로, 1인 여성 가구가 더 많았다.

<표 10> 한국의 성별 초혼 연령(세): 2000~2022년

연도	2000	2005	2010	2015	2018	2019	2020	2021	2022
남자	29.3	30.9	31.8	32.6	33.2	33.4	33.2	33.4	33.7
여자	26.5	27.7	28.3	30.0	30.1	30.4	30.8	31.1	31.3

출처: 통계청, 2023b. <2022년 혼인·이혼 통계>. 저자 수정.

② 무자녀 부부의 증가

한국의 출생률이 2023년 기준 0.73으로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률 저하는 비혼과 만혼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른바 딥크(duble income no kid, DINK)족으로 불리는 무자녀 부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십여 년 동안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은 해도 자녀를 낳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표 6>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34세의 청년층에서 결혼

후 자녀 필요 없다는 응답률이 2018년에는 46.4%, 2022년에는 53.5%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 후 무자녀'에 대한 찬성률이 더 높다. 가령, 2022년 기준 남성은 43.3%, 여성은 65.0%가 찬성했다. 결혼 후 무자녀에 찬성하는 남녀 비율의 격차는 최근 더 크게 벌어졌는데, 2018년 기준 남성(38.7%)과 여성(54.6%)의 격차는 15.9%였으나 2022년에는 21.7%로 더 벌어졌다.

또한, 통계청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혼인 기간 5년 이하) 중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중은 2018년 40.2%에서 2022년 46.4%로 4년 동안 6.2%p 상승했다(통계청, 2023g). 아울러, 혼인 6년차(18.1%→19.5%)와 7년 차(14.8→16.3%)로 4년 동안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무자녀 부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③ 다문화가족의 증가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결혼의 탈제도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결혼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국적을 초월해 가족을 이루는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성에 부부와 이들의 2세로 구성된(정상)가족'이라는 규범적 정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족의 한 형태이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전통적·정상적 가족의 생산이라는 목표로 하는 한국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규범이 탈제도화된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결혼이민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증가했으나, 통계청의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2010년대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2022년 기준 8.7%로

2010년대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치로 보고되었다(통계청, 2023b). <표 11>에서 보듯이 전체 혼인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여 년 동안 7~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 내 결혼의 전통적·제도적 규범이 약화되고, 결혼에 있어 당사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가치가 실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11> 2012~2022년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및 비중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혼인 건수 (천 건)	28.3	26.0	23.3	21.3	20.6	20.8	22.7	23.6	15.3	13.1	16.7
혼인 비중 (%)	8.7	8.0	7.6	7.0	7.3	7.9	8.8	9.9	7.2	6.8	8.7

출처: 통계청, 2023b. <2022년 혼인·이혼 통계>. 저자 수정.

또한, 다문화가족의 출생아 수는 감소했지만 한국의 전체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다문화 혼인 출생아의 비중은 2020년까지 증가했다(<표 12> 참조).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이 늘고,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늘어가는 추세는 다문화가족을 더 이상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변칙 사례라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가족과 결혼에 관한 새로운 규범과 가치관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족의 출현과 폭발적인 증가는 한국 사회의 (정상)가족의 규범을 약화시켰으며, 한국과 한국인에게도 다양성(diversity)에 대해 관심을 갖

<표 12> 2013~2021년 다문화가정 출생 추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다문화 비중	4.9	4.9	4.5	4.8	5.2	5.5	5.9	6.0	5.5
출생아 수 (천 명)	21.3	21.2	19.7	19.4	18.4	18.1	17.9	16.4	14.3

출처: 통계청, 2022a.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저자 수정.

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성인기에 이르는 2020년대 후반 이후 무렵부터는 더 뚜렷해질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확산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과 결혼에 관한 규범의 변화를 시사한다. <표 13>에서 보듯이 배우자의 유형에 따른 다문화 혼인의 성별 비중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다문화 혼인의 유형은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혼인 비중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과의 혼인보다 여전히 높지만, 코로나19 이후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혼인 비중이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2011년 70.5%에서 2020년에는 66.4%, 2021년은 62%로 감소한 반면, 외국 남성과의 혼인은 2020년 18.7%에서 2021년 22.0%로 증가했다.

<표 13> 다문화 혼인 유형별 비중(%)

연도		2013	2019	2020	2021
다문화 혼인 유형	외국인 아내	70.5	69.3	66.4	62.0
	외국인 남편	20.7	17.2	18.7	22.0
	귀화자	8.8	13.5	14.9	16.0
전체		100	100	100	100

출처: 통계청, 2022a.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저자 수정.

이처럼 결혼이주남성 또는 외국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의 증가는 결혼 선택에서 한국 여성의 선호와 가치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되는 사례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또한,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전통적 인식과 규범에서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경과 국적을 초월하여 가족을 이루는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결혼에 있어 개인의 선호와 가치관이 결혼의 전통적 규범보다 중요해졌으며,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가족이 탈제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④ 비혼 동거의 증가

비혼 동거를 결혼의 대안 제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23a). 특히,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층의 비혼 동거에 대한 찬성률은 2012년 61.8%에서 2022년은 80.9%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영국의 인구학자인 Kiernan(2002)은 동거가 결혼을 대체하는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는 동거가 비규범적이라고 인식하는 수준, 2단계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진지한 수준, 3단계는 결혼의 대안 제도로 인식되는 수준, 4단계는 결혼과 동거의 구별이 없는 수준이다. Kiernan(2002)에 따르면, 스웨덴과 덴마크는 4단계에 접어들었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1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에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하고 있었다(Smock and Gupta, 2002).

한국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유배우자 중 혼인신고를 안한 비혼 동거율이 2.8%로 여전히 낮다. 하지만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은 예전과 달라졌다(여성가족부, 2021). <표 14>에서 보듯이 2012년에 전체 인구 중 비혼 동거를 찬성하는 비율이 45.9%이었으며, 2022년에는 65.2%까지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19~34세)은 2022년에 비혼 동거를 찬성하는 기준이 80.9%까지 증가하는 등 비혼 동거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비혼 동거의 찬성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청년층의 부모 세대에서도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즉 한국에서도 비혼 동거를 비규범적이고 일탈적인 행동으로 인식하기보다 결혼을 대체하는 제도로 받아들이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비혼 동거 중에서 30세 미만이 22.8%로 가장 높고, 비혼 동거 연인 중 70.3%는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이러한 응답을 통해 청년층의 비혼 동거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을 전제로 하는 진지한 동거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4〉 비혼 동거를 찬성하는 비율(%)

년도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전체	45.9	46.6	48.8	56.4	59.7	65.2
청년층	61.8	62.3	64.2	74.5	77.3	80.9

출처: 통계청, 2023a.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 저자 수정.

비혼 동거를 선택한 이유는 여성과 남성이 약간 차이가 있다. 남녀 공통적으로 경제적 이유로 비혼 동거를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2순위와 3순위 이유는 다르다. 남성은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19.3%) -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15.8%) 순이다. 여성은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21.4%) -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18.5%) 순이다. 비혼 동거를 통해 배우자로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이는 여성이 비혼 동거를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관계로 인식하는 정도가 남성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⑤ 동성 결혼의 출현

동성 결혼의 출현도 결혼의 탈제도화로 인해 나타난 변화이다. 아직 한국은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지 않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가령, 2023년 2월 한국 법원이 처음으로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법제화의 기대를 높였다. 동성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부부가 되어 가족을 구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는 젠더화된 결혼을 탈제도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게다가 동성 결혼은 부모-자녀 관계를 혈연관계라는 전제에서 벗어나 가족이 개인의 선택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동성 결혼의 출현은 사회적 제도로써 젠더화된 결혼이 갖는 정당성이나 역할을 약화할 수 있음을 뜻한다.

아직까지 한국은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지 않아 젠더화된 결혼 제도에 미친 영향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성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통해 동성 결혼의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갤럽이 2023년 5월에 조사한 한국인의 동성 결혼 법제화 지지율에 따르면,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2001년 17%이었으나 2023년에는 40%로 23%p 증가했다(한국갤럽, 2023). 이는 동성 결혼 법제화 지지율이 지난 20년 동안 2배 넘게 상승했음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표 1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0대는 64%, 30대는 53%, 40대는 45%, 50대는 38%, 60대는 23%가 동성 결혼 법제화를 찬성했다. 이런 사회적 인식변화는 동성 결혼의 법제화 여부를 떠나 젠더화된 결혼이 예전보다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15> 2001~2023년 동성 결혼 법제화 지지율(%)

연도		2001	2013	2014	2017	2019	2021	2023
전체		17	25	35	34	35	38	40
연령별	20대	26	52	66	66	62	73	64
	30대	17	40	50	41	49	52	53
	40대	16	19	35	34	39	34	45
	50대	12	7	19	22	23	28	38
	60대	-	6	13	16	13	17	23
	70대 이상	-	-	-	-	-	-	10

출처: 한국갤럽. 2023. <데일리 오피니언> 제544호(2023년 5월 4주).

4. 결론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비혼화 또는 만혼화와 같이 결혼 규범과

가치관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가 부재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를 이론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의 결혼 규범 및 가치관 변화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성별에 따라 개인들의 결혼 의향과 결혼 가치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결혼관의 변화를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설명한 연구가 드물었다. 한국 사회에서 비혼과 만혼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미루어볼 때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를 분석하는 이론적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나,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의 의미와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이론적 맥락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주의 가족론, 신자유주의 생활양식, 공정성 이론에 근거해 현시점에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결혼 규범과 한국 여성의 결혼 가치관 변화를 거시적인 맥락에서 조망함으로써 최근 한국 사회의 결혼이 비혼화되고 만혼화되는 현상을 논의하는 이론적 기틀 마련 및 확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를 여성주의 가족론으로 보는 것은 결혼 연구에 있어 가족이라는 사적 공간 내 비가시화되었던 여성들의 개인성을 복원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가족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여성의 존재는 아내, 어머니, 며느리 등과 같이 가족 내 종속된 역할로 상정되어 가족 내 여성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가운데 여성주의 가족론은 여성을 개인으로 바라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전통적 결혼 규범과 문화가 상당히 젠더화되어 있으며, 특히나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전통적 결혼의 기능이 약화되고, 결혼의 의미가 포스트모더니즘적으로 변화하면서 성별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이라는 젠더적 결함을 유지한 결혼을 여성들이 이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 생활양식의 민주성, 자율성, 중립성은 마치 한국 사회가 평등을 실현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지만, 이러한 생활양식은 이미 존재하는 성별 간의 격차를 재생산하여 여성에게 위협 요소로 인식된다. 특히, 결혼은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생활양식의 관점에서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여성의 결혼 또는 비혼 선택 현상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엄폐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배 공정성 이론에 근거해 청년 여성층의 비혼이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주로 집단 및 조직 구성원의 인식과 감정, 행동을 이해하는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었던(박효민·김석호, 2015) 공정성 이론을 결혼에 관한 개인의 의사결정을 설명함으로써 공정성 이론의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의 결혼 규범이 해체된 상황을 살펴보았다. 결혼에 관한 전통적인 규범이 해체된 것은 한국 사회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북미, 유럽 국가들에서도 나타난 결혼의 탈제도화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혼 동거의 증가, 동성 결혼의 출현과 같은 결혼의 탈제화로 나타나는 보편적 특징과 핵가족화의 심화,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같은 한국에서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혼의 탈제도화의 특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결혼 탈제화의 특징을 규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한계점도 있다. 우선,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를 거시적인 이론의 관점에서만 분석함으로써 한국 여성의 결혼관을 변화시키는 거시적 요인들이 여성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 그리고 다양성 등과 같은 미시적 요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여성들의 결혼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논의들로 전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일루즈(Illouz, 2020)는 현대사회의 결혼을 자유와 억압, 현대와 전통, 개인의

주체성과 자본주의적 소비 저항 그리고 과학기술의 수동성이 대립하며 만들어내는 갈등의 소용돌이라고 묘사한다(일루즈, 2020: 30-31). 다시 말해, 오늘날 한국 여성의 결혼 가치관 변화는 각각의 요인들이 일차원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개인주의자가 된”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은 자기 삶의 도덕적·규범적 준거 기준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버림으로써(백·백·계론샤임, 1999: 26), 개인들의 주체성(agency)과 친밀성(intimacy)이 결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된 가운데 거시적인 이론적 틀로는 개인의 삶 전체 맥락과 맞닿아 있는 주체성과 친밀성을 분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에는 부모 세대의 결혼관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전 세대에 걸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은 점차 약화되었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2008년에 비해 2018년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도 결혼에 관한 긍정적 인식이 하락한 반면, 이혼에 대한 수용성은 더 높아졌다(통계청, 2018). 특히, 부모 세대의 결혼에 관한 긍정적 인식의 하락보다 이혼에 대한 수용성이 더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부모 세대의 결혼에 관한 가치관이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결혼관도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면, 부모의 특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결혼과 관련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결혼과 여성을 둘러싼 거시적인 관점과 연결 지어지는 미시적 수준의 변수와 이론들에 논의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결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측정가능한 양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관측되는 질적인 데이터가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은숙. 1981.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선강·어성연. 2013.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7(1): 63-79.
- 공미혜. 1992. “가족이기주의에 대한 여성학적 비판.” 『한국가족학회』 4: 1-20.
- 권성호·이준·송기민. 2010.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에 관한 연구.” 『인구교육』 3: 1-22.
- 길현종·이경희·이영수. 2022. 『일의 가치 변화와 고용정책의 미래』. 세종:한국노동연구원.
- 김은정. 2018. “미혼 여성의 일반적 특성, 결혼 가치관과 성역할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9(4): 1291-1306.
- 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김혜영·선보영. 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 -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2(2): 3-35.
- 김혜영·선보영·김상돈. 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18): 1-277.
- 도미향. 2011.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미래결혼과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4): 163-178.
- 문강형준. 2012. “자기계발의 시대, 미세하고 부드러운.” 『문화과학』 69: 121-130.
- 문소정. 2003. “1990년대 이후 한국가족연구의 동향: 페미니즘/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쟁점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13(1): 39-63.
- 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33-62.
- 박다은·유계숙. 2011.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2): 29-65.
- 박성옥·양연숙·안선희. 1997. “결혼 및 배우자 선택에 대한 대학생의 가치관 연구.” 『學生生活研究』 6: 33-57.
- 박소진. 2000.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경제와사회』 84: 12-39.
- 박지수·박인숙·이재림. 2023. “청년 남녀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 유형

- 화.”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사회통합의 시대를 위한 생활과학의 역할』자료집(2023.6.3.).
- 박효민·김석호. 2015. “공정성 이론의 다차원성.” 『사회와이론』 27: 219-260.
- 백, 올리히. 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역). 서울: 새물결.
- 백, 올리히·엘리자베트 백-게른샤임. 1999. 『사랑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강수영·권기돈·배은경(역). 서울: 새물결.
- 성금단. 2021. “여성의 결혼과 출산 회피 및 의향특성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2(5): 875-888.
- 성영식. 2005. “황혼이혼의 원인과 대책.” 광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온, 배리·매릴린 알람. 1991.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 외(역). 서울: 한울.
- 손병덕. 2022. “청년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總神大論叢』 42: 5-21.
- 손승영·김은정. 2010. “여대생의 가족 가치관을 통해 살펴 본 저출산 문제의 이해 = 성별, 세대별 하위집단 간 가족 가치관 차이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34(4): 169-200.
- 어성연·조희금·고선강. “전문직 미혼 남녀의 만혼현상에 대한 연구.”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4(2): 1-19.
- 엄혜진. 2016.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 자아 기획의 이중성과 ‘속물’의 탄생.” 『한국여성학』 32(2): 31-69.
- 여성가족부. 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 오신휘. 2022.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분석과 이해: 가족가치관 유형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5(3): 51-86.
- 이기숙. 1990. “가족제도와 여성.” 『젠더와사회』 1: 121-123.
- 이명호. 2022. “한국적 사회관계론의 모색: 친밀성의 사회학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88: 261-292.
- 이보람·김정옥. 2012. “대학생의 결혼 및 출산의식에 관한 연구: 교양강좌 ‘결혼과 가족’ 수강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2): 155-175.
- 이상호·이상현. 2011.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經濟分析』 17(3): 131-166.
- 이주희. 2005. “신자유주의 이후의 경제와 여성.” 『문화과학사』 43: 171-185.
- 이진숙. 1997. “포스트모던 사회로의 이행과 핵가족: 독일의 결혼과 가족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 91-114.

- 이현옥. 2011. “한국여성의 출산의지 결정요인.” 『정책개발연구』 11(1): 99-132.
- 이효재. 1990. “개정가족법에 대한 학제적 고찰: 여성학적 고찰.” 『가족학논집』 2: 218-233.
- 이훈희·서용석·정윤희. 2011. “20-30대 직장여성의 결혼과 출산: 선택의 기로에 선 그녀들의 심경.” 『사회보장연구』 27(3): 123-142.
- 일루즈, 에바. 2020. 『사랑은 왜 끝나나: 사랑의 부재와 종말의 사회학』. 김희상(역). 파주: 돌베개.
- 임병인·서혜림. 2021.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의향.” 『保健社會研究』 41(2): 123-140.
- 임훈민·김중백. 2013. “취업이 결혼희망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인구학』 36(3): 45-67.
- 장인수·우해봉. 2017. “기혼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와 영향요인 분석.” 『여성연구』 95(4): 41-72.
- 장정인·강금혜. 2021. “중년기 여성이 생각하는 조혼의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당심리교육복지』 8(5): 207-220.
- 정윤경·김경희·배진아·김찬아. 1997. “우리나라 성인의 결혼관 연구: 성별, 결혼여부별, 지역별 비교 분석.” 『研究論叢』 32: 49-92.
- 정윤희·서재욱. 2016. “노인 돌봄 의식의 국제비교 연구: ISSP (2012) 의 37개국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3): 335-357.
- 진미정·기쁘다·성미애. 2023. “성별에 따른 결혼 인식의 세대 차이.” 『가정과삶의질연구』 41(1): 93-107.
- 진미정·정혜은. 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한국인구학』 33(3): 31-51.
- 최효미. 2017. “청년 미혼층의 결혼 및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저출산의 패러독스」 자료집(2017.5.20.).
- 탁현우. 2020.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2): 223-244.
- 통계청. 2018. 〈한국의 사회동향 2018〉.
- _____. 2019. 〈생활시간조사〉.
- _____. 2022a.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_____. 2022b.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_____. 2023a.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

- _____. 2023b. 〈2022년 혼인·이혼 통계〉.
- _____. 2023c.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_____. 2023d.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 _____. 2023e. 〈경제활동인구조사〉.
- _____. 2023f. 〈인구총조사〉.
- _____. 2023g.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 한국갤럽. 2023. 〈테일리 오피니언〉. 제544호.
- 허수영·김한성. 201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4: 5-29.
- 홍수아·손서희·최자혜. 2023. “20대와 30대 비혼 청년의 결혼 및 출산 가능성 관련 요인.” 『Human Ecology Research(HER)』 61(2): 183-194.

(2) 국외문헌

- Adams, Stacy J.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267-299.
- Baxter, Janeen, Michele Haynes, Mark Western and Belinda Hewitt. 2013. “Gender, Justice, and Domestic Work: Life Course Transitions and Perceptions of Fairness.” *Longitudinal and Life Course Studies* 4(1): 78-85.
- Baxter, Janeen, Belinda Hewitt and Michele Haynes. 2008. Life Course Transitions and Housework: Marriage, Parenthood, and Time on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 259-272.
- Beck, Ulrich, and Elisabeth Beck-Gernsheim. 1995. *The Normal Chaos of Love*. U.K.: Polity Press.
- _____.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U.K.: Sage Pub.
- Bellah, Robert, Richard Marsden, William M. Sullivan, Ann Swidler and Steven M. Tipton. 1985.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lair, Sampson L. 1993. “Employment, Family, and Perceptions of Marital Quality among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Family Issues* 14(2): 189-212.
- Blalock, Hubert M. and Paul H. Wilken. 1979. *Intergroup Processes: A Micro-Macro Perspective*. N.Y.: Free Press.

- Blau, Peter M.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Y.: Wiley.
- Cancian, Francesca M. 1987. *Love in America: Gender and Self-Development*.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rlin, Andrew J. 2004.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America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848-861.
- Chopra, Ingrid, and Gitta Scheller. 1992. "Die neue Unbestndigkeit. Ehe und Familie in der Postmodernen Gesellschaft." *Soziale Welt* 43: 48-69.
- Giddens, Anthony. 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ordon, Colin. 1991. "Governmental Rationality: An Introduction."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and Peter Miller (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U.K.: Harvester Wheatsheaf. 1-52.
- Gupta, Sanjiv. 1999. "The Effects of Transitions in Marital Status on Men's Performance of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3): 700-711.
- Homans, George C. 1961.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Y.: Harcourt, Brace, and World.
- Joyner, Kara. 2009. "Justice and the Fate of Married and Cohabiting Coupl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2(1): 61-76.
- Kiernan, Kathleen. 2002. "Just Living Together: Implication of Cohabitation on Families, Children, and Social Policy." Alan Booth, Ann C. Crouter and Nancy S. Landale (eds). *Cohabitation in Western Europe: Trends, Issues, and Implications*. N.J.: Erlbaum. 3-31.
- Lennon, Mary C. and Sarah Rosenfield. 1994. "Relative Fairness and the Division of Housework: The Importance of Options." *Journal of Sociology* 100(2): 506-531.
- Mikula, Gerold, Heribert H. Freudenthaler, Sigrun Brennmacher-Kroll and Beatrix Brunschko. 1997. "Division of Household Labor, Perceived Justice, and Satisfaction in Student-Households." *Basic Applying Social Psychology* 19: 275-289.
- Mikula, Gerold. 1998.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Perceived Justice: A Growing Field of Research." *Social Justice Research* 11: 215-241.
- OECD.Stat. 2023. 〈Employment: Time spent in paid and unpaid work by sex〉.
- Perales, Francisco, Janeen Baxter, and Tsui-O. Tai. 2015. "Gender, Justice and Work: A

- Distributive Approach to Perceptions of Housework Fairness.” *Social Science Research* 51: 51-63.
- Rose, Nikolas. 1999. *Powers of Freedom: Reframing Political Thought*.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nchez, Laura, and Elizabeth Thomson. 1997. “Becoming Mothers and Fathers: Parenthood,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Gender & Society* 11(6): 747-772.
- Shelton, Beth A. and Daphne John. 1996.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1): 299-322.
- Smock, Pamela J. and Sanjiv Gupta. 2002. “Just Living Together: Implication of Cohabitation on Families, Children, and Social Policy.” Alan Booth, Ann C. Crouter and Nancy S. Landale (eds). *Cohabitation in Western Europe: Trends, Issues, and Implications*. N.J.: Erlbaum, 53-84.
- Sprecher, Susan. 1992. “How Men and Women Expect to Feel and Behave in Response to Inequity in Close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5: 57 - 69.
- Walkerdine, Valerie. 2003. “Reclassifying Upward Mobility: Femininity and The Neo-Liberal Subject.” *Gender and Education* 15(3): 237-248.
- Walster, Elaine, G. William Walster and Ellen Berscheid. 1978. *Equity: Theory and Research*. M.A.: Allyn & Bacon.
- Ward, Russell A. 1993. Marital Happiness and Household Equity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2): 427-438.

(3) 기사 및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5.19. 시행.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7281호, 2020.5.1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17281,20200519\)](https://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17281,20200519)) [검색일: 2024.4.18.]
- 이소연. 2023. “[2023 결혼인식조사] 결혼, 반드시 해야 할까? 결혼 의향, 그리고 혼인 감소에 대한 인식”.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2023.6.13. <https://hrcopinon.co.kr/archives/26871> [검색일: 2023.12.17.]
- 정선영 · 한지우. 2024.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BOK 이슈노트〉. 2024.1.8.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lId=10081620&menuNo=200433&pageIndex=1> [검색일: 2024.2.4.]

Abstract

Theoretical Approaches to Changes in Marriage in Korea
: Changes in Women's Marriage Views
and Korean Marriage Norms

Seong, Soo-Jin
(Keimyung University)

Kang, Young-Hee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iscuss why Korean women's attitudes about marriage has changed and how much Korean marriage norms have changed for past few decades from theoretical perspectives. Also, recently the rising age of first marriage and declining number of marriages in Korea have been paid a huge attention. However, the existing literature on marriage in Korea has paid attention to the function of reproduction and maintenance of standardized family, which is limited in understanding why Korean women are less likely to be married. In addition, despite gender is a significant variable of research on marriage,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change in marriage views from a gendered perspective. Therefore, the current study explains why Korean women's view has been changed from three perspectives: Feminist family theory, Neo-liberal lifestyle, and fairness theory. Also, this research discusses de-institutionalization of marriage in Korea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De-institutionalization of Marriage, Korean Women, Feminist Family Theory, Neo-Liberal Lifestyle, Fairness Theory

┃ 투 고 일 : 2024년 2월 27일
┃ 최초심사일 : 2024년 4월 8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4월 22일

1960~70년대 버스안내원 직종의 여성화와 ‘여성적인’ 서비스의 의미

조민지*

| 목차 |

- | | |
|---------------------------------|---------------------|
| 1. 서론 | 노동자들의 집단적 특징 |
| 2. ‘여성’이 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의 성별 교체 | 4. 더 ‘여성적인’ 노동자 만들기 |
| 3. 어떤 ‘여성들’인가: | 5. 결론 |

| 초록 |

1960~70년대 한국 사회에서 버스안내원이라는 특정 직업이 여성 직종으로 자리 잡는 과정은 당대인들이 무엇을 ‘여성적인’ 서비스로 여겼는지를 보여준다. 이 시기 대면서비스가 여성적인 속성과 결부되는 과정은 정부의 적극적인 기획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1960년대 초부터 노동자들의 성별을 교체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단순히 노동자들의 성별만으로는 당대인들이 상상한 ‘여성적인’ 서비스가 액면 그대로 구현되지는 않았지만, 취약한 지위의 노동자가 거래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반격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들의 성별을 교제한 의미가 있었다. 이처럼 대면서비스 노동이 노동자의 여성성과 결부된 결과 현장에 배치된 여성 안내원의 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자본주의적 계약관계에 익숙하지 않은 승객들로서는 이들의 존재를 통해 기존 성별 연령별 위계질서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현장의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런데 현장에 배치된 안내원들이 가정 밖에 노출된 미성년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여성성은 부족하거나 흠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여성성을 증진하려는데 초점

* 서울대학교 joyminji2020@gmail.com

이 맞추어졌다. 즉 이 시기 대표적인 대면서비스 직종이었던 버스안내원의 서비스를 둘러싼 당대의 논의는 이른바 '여성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구성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주제어: 버스안내원, 차장, 안내양, 서비스, 여성성, 성별화

1. 서론

고객을 응대하는 대면서비스에서 '여성적인' 속성은 왜 중요하게 여겨지는가? 무엇보다 이때 '여성적인' 서비스의 의미란 무엇인가? 새벽에 탕크를 몰고 주요 기관을 접수하면서 한국 사회에 등장한 직후, 시민사회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5·16 군사쿠데타 세력도 이 문제에는 상당히 관심이 있었다. 강압적인 군사쿠데타가 초래하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부드러운' 정치 수사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이었다.(조민지, 2021: 110) 특히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본질로 하는 대면서비스의 특성상 노동을 수행하는 주체의 속성은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쿠데타 세력이 생각했던 '여성적인' 서비스의 첫 번째 조건 역시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성별이 여성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쿠데타 직후 군사정부는 교통이나 대민행정 등 공공영역에서 시민들을 직접 접촉하는 대면서비스 노동자들을 일부 여성으로 바꾸고 이것을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널리 선전했다.

그러나 성별이 여성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만으로는 생각만큼 '여성적인' 서비스가 바로 구현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새로 투입된 여성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충분히 '여성적'이지 않다는 불평이 넘쳐났다. 이 과정을 잘 드러내는 사례가 바로 대중들이 아침저녁으로 이용했던 시내버스에 탑승한 여성 안내원들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대면서비

스는 1960~70년대 내내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고용주들은 물론 정부와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더 ‘여성적인’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동참했다. 이 과정을 조명하는 작업은 당대인들이 상상한 ‘여성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산업화 시기 대면서비스 직종이라는 점에서 버스안내원에 착목한 연구는 이 시기 노동자들의 성별이 교체되는 과정을 서비스노동의 성별화로 등치시킨 바 있다.(조민지, 2020) 그러나 이들에게 요구된 ‘여성적인’ 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명이 필요하다.

본고는 한국사회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던 1960~70년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대면서비스 직종의 여성적인 속성이 구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군사정부가 구사한 정치수사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당대 언론자료는 물론 국가재건최고회의 기관지로서 쿠데타 직후이던 1961년 8월부터 1963년 12월까지 최고회의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최고회의보』를 참고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부문에 대해서는 교통부가 간행한 월간지 『교통』이 군사쿠데타 세력이 등장하기 전후의 상황뿐 아니라 군사정부가 교통행정을 담당하던 1961~63년까지의 정책논의를 보여준다. 정부의 정책이 현장의 상황과 맞물리며 어떤 식으로 재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당대 언론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현장에 실제로 배치된 버스안내원들의 집단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노동청이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용역사업을 위탁한 결과 생산된 일련의 보고서들이 있으며, 민간단체가 실시한 조사결과 역시 부분적으로나마 참고할 수 있다. 특히 버스안내원 당사자 및 노동 현장에 직접 연루되었던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생산한 수기들은 당대의 상황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2. ‘여성’이 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의 성별 교체

한국 사회에서 소수의 대면서비스 직종에 여성들이 고용되기 시작한 것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근대적인 형태의 서비스 직종이 출현하던 일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1961년 한국 사회 전면에 등장한 군사쿠테타 세력은 여성들의 서비스노동을 공공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임자인 이승만이나 민주당 정부와 자신들을 차별화하기 위해 ‘친절’, ‘봉사’, ‘서비스’의 미덕을 강조했으며, 자신들의 정치수사를 전시하기 위한 장치로 일선에서 대중을 접촉하는 대면서비스의 역할을 강조했다.(조민지, 2021: 116-117) 그런데 이들이 제시한 더 좋은 서비스란 결국 ‘여성적인’ 서비스였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이 시기 대면서비스 현장에서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노동자의 성별이었다. 이는 군사정부 시기 실제로 대면서비스 현장에 배치된 노동자들의 성별을 바꾸는 조치로 이어졌다.

“카라멜, 카스테라, 사이다 있어요.”

마치 뒤에 앉은 부인이 나에게 속삭이듯 고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진 차내의 분위기를 몽땅 바꾸어 놓은 절대 존재, 여판매원의 등장이다.

“야, 야, 저것봐. 멋있지.”

“이건 본격적인데.”

“여자 판매원 등장이라. 흠—”

“남자들의 시꺼만 팔뚝보다 여자들의 보드라운 팔이 음식맛이 있다오, 호호.”

“이게 혁명이야.” (강조: 필자)

여객들의 이러한 찬사를 받으며 열차의 여왕은 판매에 신이 난다. 고운 말씨, 매끈한 옷차림, 공손한 태도, 인기절정의 여판매원은 미소를 머금고 열차 내를 오고 간다.(진애강, 1961: 71)

버스나 철도를 비롯한 교통 현장에 새롭게 배치된 이 여성들의 서비스

는 곧 군사쿠테타가 구사하는 정치적 수사와 결부되었다.(조민지, 2021: 121-122) 특히 1961년 6월 교통부는 “교통의 명랑화를 위하여”(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9: 644) 버스 요금을 내리는 한편,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지역 시내버스 안내원을 전면 여성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그동안 남성 안내원들이 승객들에게 지나치게 불손했다는 이유였다.(경향신문, 1961a; 동아일보, 1961a)

여성 버스안내원이 배치된 대중교통 현장은 대중들의 일상과 깊이 연관된다는 점에서 공보의 차원에서도 중요했다. 군사정부가 교통 규칙 위반을 단속하는 데 신경을 썼던 것은, 곧 구정권의 혼란상을 정리하겠다는 제스처이기도 했다.(조민지, 2021: 115-116) 그러나 교통경찰이 아무리 단속해도 이 시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특히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아직 제대로 된 체계도 없이 날마다 엄청난 인원을 수송하는 실정이었다. 교통 현장에 새롭게 유입된 신규 이용자들은 버스를 타고 내리는 관행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버스사업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수익을 위해서는 승차인원이나 배차간격도 임의로 조정했다.(조민지, 2020: 200-201)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 투입된 여성 안내원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현장의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킬 임무가 주어졌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이들의 성별로, 여성이라는 성별에 부착된 특정한 ‘여성적인’ 속성이야말로 인간 사이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흡수하는 일종의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여겨졌다.

이 정책 결정을 둘러싼 반응을 살펴보면, 이 시기 한국사회가 어떤 점을 ‘여성적인’ 속성이라고 여겼는지를 알 수 있다. 여성 안내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을 보도하는 기사는 “무뚝뚝한 사내 차장에 밀려났던 상냥스러운 여차장이 다시 친절과 웃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경향신문, 1961b) 그러다 보름 정도 지나자 실제 현장에 배치된 여성들이 상상 속의 ‘여성다움’과는 거리가 멀다는 품평이 이어졌다. “여차장이면 께꼬리까지는 못되더라도 작으나마 여자다와야 할 터인데, 남차장

목청을 뺏치고 나갈만큼 거치르니”(경향신문, 1961c) “정류장마다 외치는 목소리는 이미 여자의 그것이 아니”라고들 했다. “거칠고 힘든 노동이 꽃 봉오리 같아야 할 소녀들을 짧은 시일에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불평 속에서,(경향신문, 1961d) 여성성은 ‘거친’ 노동과 대비되는 일종의 ‘부드러운’ 속성으로 여겨졌다.

이때 여성성의 ‘부드러움’이 갖는 핵심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인간사회의 위계 속에서 작동한다는 점이었다. 이 점에서 여성들의 ‘부드러움’은 곧 상대의 권력에 대한 순응이며 순종이기도 했다. 현실의 버스안내원들이 제공하는 ‘부드럽지 않은’ 서비스는 성별로나 나이로나 지위가 낮은 여성들이 기존의 위계질서에 충실히 복종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승객들은 “빨리빨리”나 “어서어서”는 뒷사람이 아랫사람에게나 쓰는 명령어인데 어린 처녀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하냐고 한탄했다.(동아일보, 1962a) 19세의 여학생이 경향신문에 게재한 아래의 글은 버스안내원에 대한 당대 승객들의 요구를 잘 보여준다.

60대 할아버지와 20대 처녀가 숨 실 사이도 없이 열심히 입씨름을 주고받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허리가 굽고 안경을 낀 분이였다. 몸이 불편해서 조금 늦게 타신 모양이었다. 여차장은 "뭘 그렇게 바보같이 꾸물거려요. 빨리 타지 못하고..." 이렇게 반문해버린다. 할아버지께서 노발대발하신다. "원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나. 저놈의 가시내가. 말끝을 맺지 못하신다. 이 소리를 듣고도 대견스럽게 웃어넘겨 버린다. 그래서 될 일인가? 잘못했으면 반성하는 기색이 보여야지. 여차장들은 자기들이 마치 큰 벼슬이라도 한 양으로 큰소리를 땅땅 친다. 이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뭉클했다. 나도 여자인 탓이기에. 여차장들은 어디를 가나 여성다운 맛이 풍겨야지...(경향신문, 1966)

한국사회의 기존 질서에서 명백히 하위에 있어야 하는 어린 여성들로 하여금 “큰 벼슬이라도 한 양” 큰 소리를 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계약관계였다. 이 새로운 질서에 익숙하지 않은 승객들은 기존의 위계 질서에 복종하는 여성들의 ‘부드러움’을 기대하며, 여성성의 속성을 자본

주의적 질서와 대비시켰다. 안내원이 큰소리를 치는 것에 “여성다운 맛”이 없다면, 곧 큰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여성을 고용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들이 보기에 안내원을 ‘소녀’로 바꾼 이유도 어디까지나 명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였고, 돈 1, 2원으로 핏대를 올리는 것은 소녀답지 못한 것이었다. “화사한 봄날처럼 미소를 머금은 소녀 본연의 자세”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승객들은 “여성으로서의 참된 미덕을 상실한 데 대한 사회의 응징”으로 이들에게 분노를 표출했고, 친절한 “소녀 차장”이라도 만나면 기특한 마음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어 했다.(조민지, 2020: 204)

자본주의적 질서에 따라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고용주들도, 계약 체결과 이행과정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한다면 거리낌없이 시장 바깥의 위계질서를 동원했다. 이 시기 안내원 교육의 내용은 순종적인 여성을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고용주 측의 제스처이기도 했다. 1962년 전국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의 추천사를 달고 출간된 『여객 자동차 승무원 교본』은 버스안내원의 역할을 “여행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써비스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양기철, 1962: 11) “나는 손님을 태워주니까 돈을 받는다”라든지 혹은 “손님이 돈을 내니까 나는 당신(손님)을 태워준다”라는 태도는 “자선사업이나 하는 듯한 태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손님이 하고많은 차 중에서도 유독 당신네 차를 타 주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손님이 돈을 내시고, 우리 차를 타 주시니까 참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양기철, 1962: 13-14)

물론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교수자가 전달하는 내용이 학습자에게 실제로 얼마나 수용되었을지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더구나 버스안내원들로서는 책으로 배운 ‘친절’을 실전에서는 거의 적용할 수가 없었다. 이 시기 도로교통의 상황이 교재의 지침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다. 인구가 폭증하면서 승객들의 수가 승차 정원의 몇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

원을 지킨 상황을 전제한 교재의 지침을 적용할 수가 없었다. 버스마다 차주들이 따로 있다 보니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각종 관행들이 생겨난 것도 원칙과의 괴리를 심화시켰다. 자동차는 정해진 궤도를 따라 달리지 않는 만큼 언제든 사건 사고가 생길 가능성을 안고 있는데, 대부분의 버스 차량이 노후화되어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위험은 더 커졌다.

결국 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체계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다양한 돌발상황에 따르는 비용은 상당 부분 여성 버스안내원에게 전가되었다. 현장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일선의 여성 노동자들이 폭력과 희롱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봄비는 시간에 친절한 말로 다음 차를 안내해봤자 승객들은 문을 두드리고 차 문에 매달렸다. 등하교 시간마다 학생들의 모자를 벗겨서 던진 다음 학생들이 좁는 틈을 타서 차를 출발시켜야 할 정도였다. 물론 이런 취급을 받으면 승객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사건도 자주 일어났다. 승객 입장에서 혹시 시비가 붙어도 덜 위협적일 “부드러운 소녀 안내원”을 선호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조민지, 2020: 204)

이런 점에서 교통 현장에서 여성의 ‘부드러움’은 노동주체가 직접 수행하는 친절 같은 적극적인 의미라기보다 상대방에 비해 물리적으로 취약하여 만약의 경우에 만만하다는 소극적인 의미에 가까워졌다. 버스안내원들은 시종일관 “손님이 예의 없이 굴어도 화내지 말고 예의를 지키라”고 교육받았다.(조민지, 2020: 205) 1, 2부로 나뉜 위의 교본에서 실무지식을 다루는 2부에 가장 먼저 나오는 장은 바로 “마음의 준비”이다. “직장에 있을 동안 겪게 되는 모든 시름과 괴로움을 달게 받아드리고 곱게 삭힐 수 있는 마음의 정서”를 미리 마련해야 했다.(양기철, 1962: 22) 일단 승차한 승객이 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길 때라도, “손님을 무슨 죄인이나 다루듯이 불쾌한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양기철, 1962: 29) 술에 취한 승객이 차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심지어 창문을 부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친절한 서비스로써 대할 것”이 중요했다.(양기철, 1962: 40) 시민단체

에서 버스안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양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로, YWCA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한 예비 안내원의 후기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교육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떡이나 주저하다 얼마만한 기대를 가지고 선택해본 차장 생활이 계속되면 정말 교양있는 차장이 될 것을 맹세(?)해 본다. 오늘 내가 타고 온 빠스의 승무원 은 교양강의를 받는 지금의 우리로선 판이하기만 하다. 정말 난 저런 버릇없는 차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느껴 보지만 정말 이것마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다. 지금부터라도 내 생활은 바빠질게다. (중략) 정말 남에게 보다 나은 차장이 라고 인정받기란 정말 어려운 난관이 부닥칠게다. 나 자신을 억제시키며 도의 시간에 배운 “참는 마음”을 써 보아야지?(한국YWCA, 1966a)

열차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서, 여성 승무원들을 “점잖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손님들이 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문제였다. 이들을 지도하는 관계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들이 “서비스라는 이름의 큰 시련기”를 겪고 있으며, 한 달 정도 익숙해져야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 평가했다.(조선일보, 1963) 이 시기 열차 승무원에게 차내 현행범을 검거할 권한을 주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과정을 보면, 당대 ‘서비스’라는 개념이 어떻게 통용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열차 승무원이 여차하면 승객을 현행범으로 검거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당장 교통부 내부적으로도 손님에게 물건을 팔아야 할 점방의 점원이 “순사”가 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원래 교통부는 다른 관청과 달라서 영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속 공무원들은 “상점의 점원”과 같은 역할로 남아야 한다고 했다.(강종태, 1961: 34)

혹시나 차내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일이 생기더라도 손님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되도록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순사라는 이름을 면하고 명실공히 손님을 대접하는 점객원”으로 여겨지려면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종태, 1961: 34) 특히 “충을 잡으면 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승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그동안 “여객의 기분을 맞추려고” 참고 노력했던 검양의 미덕이 없어질까 내부적으로 단속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친절과 봉사 대신에 “오만불손”해져서 “마치 자신이 법관이나 경찰관이 된 것처럼 과대망상”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이순영, 1961: 8) 결국 1963년에는 ‘서비스’가 본업인 승무원들과 별도로 경찰 출신 인력을 투입했다.(동아일보, 1963a)

즉, 군사정부가 대면서비스 노동자들의 성별을 교체할 때 내세운 여성의 ‘부드러움’은 노동현장에서 당대인들이 상상하던 ‘상냥’, ‘친절’, ‘웃음’, 여성들의 자발적인 복종으로 쉽게 이어지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복수의 운송계약이 단시간에 체결되는 버스 승하차 현장에서, 승객·안내원 사이에 계약관계를 떠난 성별 연령별 위계질서가 이전처럼 쉽게 관찰되지 않았다. 여성 안내원의 태도에 대한 승객들의 불평이 이후로도 끊이지 않았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의 노동자가 승객의 폭력에 저항하기 힘든 조건에 처한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성별은 여전히 의미가 있었다. 정원이 한정된 공무원에게는 친절의 미덕을 강조하면서도 운수업계처럼 일선의 노동자들을 아예 여성으로 바꾸지 않았던 것만 봐도 노동자들의 성별을 바꾸는 조치가 어떤 의미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취약한 지위의 여성들에게 갈등과 잡음을 전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정 수준의 지위가 보장된 공무원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조민지, 2021: 123)

새로 배치된 여성 버스안내원들의 ‘서비스’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승객들이 그래도 여성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버스 안내원을 여성으로 바꾼 한달 후에 서울시가 시행했던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응답자의 61%인 1,659명이 버스안내원으로는 여성이 더 좋다고 답한 바 있다.(경향신문, 1961e; 조민지, 2020: 203) 이후로도 시민들은 일관되게 “수문장”을 연상시키는 “역센 청년” 대신 “상냥하고 명랑한 여차장”을 선호했다.(경향신문, 1962a; 조민지, 2020: 204) 물론 군사정부가 대중

교통 부문에 시행한 조치가 여성 안내원을 배치한 것만은 아니었다.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승무원들에게 제복을 입히고 배차 체계나 차내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기도 했다.(경향신문, 1961f; 조선일보, 1961) 버스 노선에 얽힌 이권을 뿌리 뽑겠다고 고정 배차제를 윤번제로 바꾸기도 했고, 요금을 인하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동아일보, 1962b) 그러나 무엇보다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안내원을 전격 여성들로 바꾸는 조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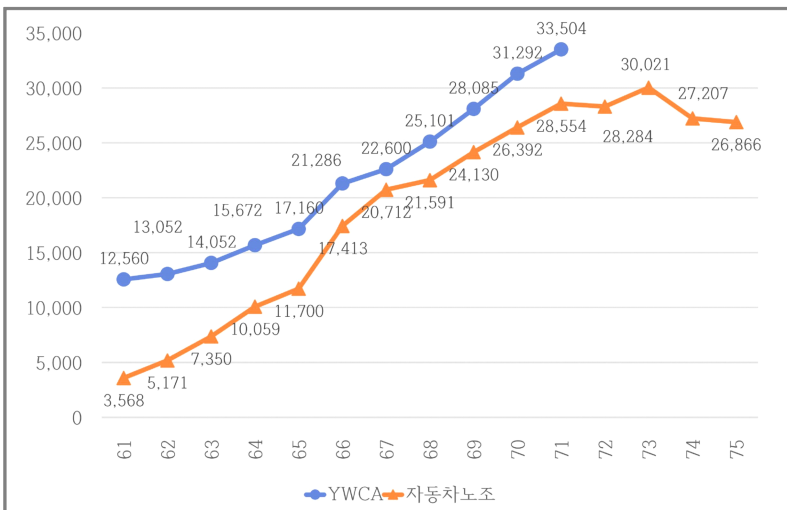
쿠데타 직후 교통현장의 상황이 군사정부의 공보에 활용되는 와중에도, 대중교통의 핵심을 담당하던 버스의 운영은 민간업자들에게 남겨졌다. 1년도 지나지 않아 요금이 도로 인상되고 고정 배차제로 복귀하는 등 버스 업계와 관련된 정책적 시도들이 업자들과의 협상 속에서 대부분 철회되는 동안,(경향신문, 1962b) 현장의 직원을 여성으로 교체한 조치만이 살아남았다. 정부와 업자들은 요금을 도로 올리는 대신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약속했고,(동아일보, 1962c) 노동자들의 성별이 그것을 보장했다. 그리하여 운수업계에서 안내원들의 성별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다.(조민지, 2020: 205) 서울시와 버스 업자들은 버스 요금을 올릴 때마다 비싼 요금에 걸맞는 서비스를 반대급부로 내세웠는데, 이때 항상 언급하는 것도 제복 입은 여성 안내원이었다. 1962년 4월 버스 요금이 올랐을 때도 업자들은 안내원을 여성으로 바꾸는 것부터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경향신문, 1962c; 동아일보, 1962c; 조민지, 2020: 206)

여성으로 교체된 지 5년이 지나자, 이 직업은 완전히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1966년 업자들이 다시 남성으로 돌리자고 서울시에 건의한 적이 있는데, 곧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혔다. 직업마다 더 적합한 성별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통념상” 남차장이란 어색하며, 여성들이야말로 보기에 낫고 서비스도 좋다고들 했다. 여론조사에서 90% 이상이 여성을 선호한 끝에, 남성으로 교체하자는 제안은 결국 기각되었다.(조민지, 2020: 203) 이는 기존의 여성 안내원들이 격렬히 반발한 결과이기도 했다. 일단

대규모로 고용된 노동자 집단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냈고, 이 과정에서 정부 측의 논리도 적극 재활용했다. 노조 내 분회 부녀부장으로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한 버스안내원 역시 연설장에서 애초에 여성을 배치했던 군사정부의 조치가 “전 세계와 수준을 같이 하기 위한 것”이었고 “조금이라도 부드러운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윤창자, 1967: 289, 298-299)

그리하여 현장에 배치된 여성 버스안내원들의 수는 점차 늘어났다. 1970년대 중반이 되면 자료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2만 3,000명에서 2만 5,000명에 이른다. 버스안내원의 수가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에 대해 1972년도 이전의 자료는 알려진 것이 없다. YWCA가 1971년에 발간한 자료와 자동차노조가 1975년에 발간한 자료 정도가 유일하게 연도별 추정치를 제시한다. 두 종류의 추정치에 따른 버스안내원 총인원 수를 연도별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도별 버스안내원 총인원 수 (추정치)



출전: 이병태, 1975 『자동차여성근로자 연구』 전국자동차노동조합, 42쪽.

YWCA 측의 추정치는 차량 1대에 안내원 2명이 승무한 것으로 보고 당 해연도 차량 보유 대 수의 2배로 안내원 수를 추산한 것이다. 그러나 이병태의 경우 안내원을 여성으로 교체하는 조치가 모든 지방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합승에는 안내원이 1명만 승무하는 등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 대신 버스안내원을 여성으로 교체한다는 군사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전체 안내원 중 여성 비율이 1961년에는 30%, 1962년에는 40%에 이르렀고, 1971년 이후에는 90%가 여성으로 교체된 것으로 추산한다. 1974년부터는 버스의 형태가 안내원이 1명만 탑승하는 도시형 버스로 바뀐 것을 감안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편차에도 불구하고 추정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961년 4천명도 되지 않던 여성 안내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970년대 초 3만여 명 가까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마침내 1974년 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 종업원 관리규칙을 제정하면서, 안내원은 국민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여자”로 1주일 이상 교육받은 자여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¹⁾ 1962년 일찍이 식품위생법상 유흥영업종사자를 ‘부녀자’로 명시한 것처럼,(박정미, 2011: 164) 박정희 정부는 버스안내원 역시 여성 직종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이처럼 버스안내원은 단순히 시장의 수요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당대 정치적인 국면 속에서 정부의 기획을 통해 등장했다. 이후로도 일회적인 기획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직종을 여성화하려는 과정을 거쳐서야 여성 직종으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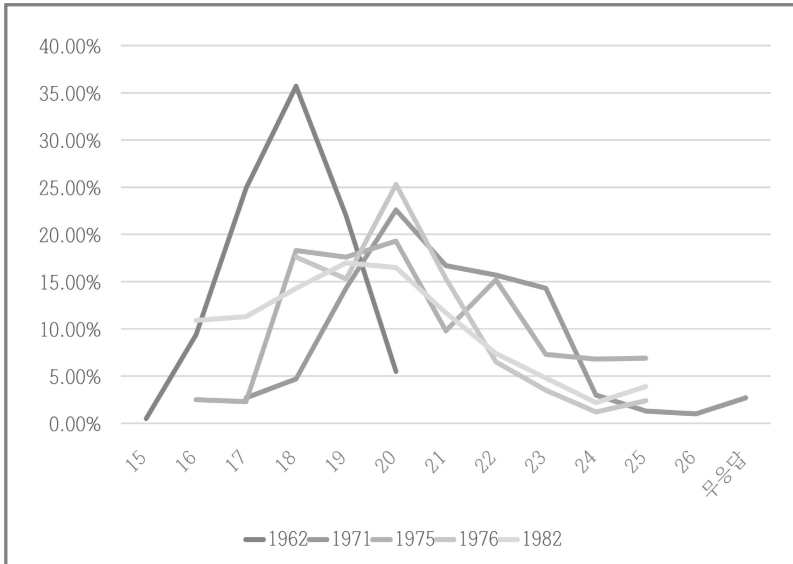
1) 사업용자동차종업원관리규칙 ([https://www.law.go.kr/법령/사업용자동차종업원관리규칙/\(00490,19740917\)](https://www.law.go.kr/법령/사업용자동차종업원관리규칙/(00490,19740917))).

3. 어떤 '여성들'인가: 노동자들의 집단적 특징

쿠테타 세력이 특정한 노동자 집단의 성별을 교체하는 조치는 일견 간단해 보였지만, 당연하게도 여성은 균질한 집단이 아니다.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현장에 배치된 여성 버스안내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1961년 서울시가 처음 100명을 일괄 선발하여 각 버스에 배치할 때, 지원 대상은 16세 이상 20세 미만의 여성들이었다.(동아일보, 1961b)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62년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사회사업과 학생들이 서울 시내 버스안내원 21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때, 최고령 안내원의 나이가 20세였다. 18세의 안내원이 35.7%로 가장 많았고, 17~19세인 경우가 80%를 넘었다. 즉, 여성 버스안내원이 대규모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 이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의 미성년 여성들이었다.

10년이 지난 1971년에 조사한 결과는 조금 달라서, 20세인 경우가 22.6%로 가장 많고, 20세를 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52%에 달한다. 그동안 안내원 직종에 진입한 인구집단이 나이를 먹으면서 연령대가 상향 조정된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 1970년대 새로 등장한 고속버스 안내원이라는 새로운 직종 때문이었다. 고속버스 안내원은 고졸 이상의 학력 제한이 있어 연령대가 비교적 높았다.(이병태, 1975: 49) 이처럼 안내원들의 연령대가 높아진 현상은 1970년대에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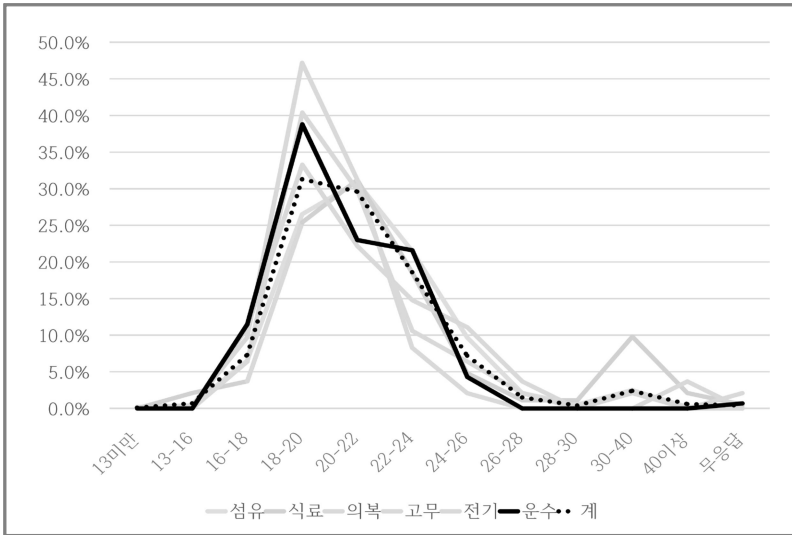
〈그림 2〉 각종 실태조사에 나타난 버스안내원들의 연령분포



출전: “빼스차장의 24시간.” 『동아일보』 1962년 11월 8일²⁾; 『한국 YWCA』 제 19권 9호 10월호, 1971³⁾; 이병태. 1975. 『자동차여성근로자연구』⁴⁾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최종호·손학순. 1977. “서울 시내빼스 안내원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복지연구』 제 11집⁵⁾; 이순애. 1982. “서울 시내 버스안내원의 영양섭취실태 및 건강상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⁶⁾.

- 2) 1962년 6월 20일부터 7월 31일에 걸쳐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과 학생 30명이 서울시내 26개 버스노선에서 버스안내원 213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 3) 1971년 6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YWCA에서 버스안내원 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 4) 1974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271개의 사업장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1/3의 안내원을 선정한 뒤, 전국자동차노동조합 부녀부가 주관한 질문지 조사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 5) 1976년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1주일 동안 서울시내버스 9개 회사의 버스안내원 179명을 대상으로 받은 질문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 6) 1982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시내 5개 버스회사를 선정하여 각각 70명씩 총 350명의 버스안내원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 회수된 250개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3〉 직종별 여성노동자들의 연령분포 (1973년)



출전: 노동청, 1973. “여성근로실태조사보고서—제조업체·운수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청, 16쪽에서 재구성.

그러나 1970년대에도 제조업계에 종사하는 다른 여성노동자들에 비하면 운수업계 여성노동자들의 연령대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물론 제조업계 여성노동자들이라고 해서 연령이 높지는 않았다. 1973년 노동청의 의뢰를 받고 서울대학교 행정조사연구소에서 수출산업 관련 업체 중 여성 50인 이상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여성노동자들의 평균연령이 20.3세로, 일본이나 영미의 사례에 비해 훨씬 낮았다. 게다가 조사자들과 면담한 관리자 중 86.8%가 “가능한 한 기혼여성을 채용하지 않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노동청, 1973: 22-23) 그러나 〈그림 3〉을 보면 1973년 전체 여성노동자들의 평균적인 연령분포(점선)에 비해 운수업계 여성노동자들의 연령분포(검은 실선)는 더더욱 낮은 연령대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섬유나 식품 등 다른 제조업 부문에 비해 30~40대 연령집단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점도 특징이다.

〈표 1〉 각종 실태조사에 나타난 버스안내원 출신지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도청 소재지	시군읍면
1962	21.6%	비서울 78.4%					
1973	5.2%	6.5%	5.7%	10%	0.4%	0.9%	63.8%
1975	5.2%	5.8%	4.7%	6%	0.4%	0.9%	77%
1976	대도시 5.9%						중소도시·읍면 92.4%
1982	도시 11.7%						비도시 88.2%

출전: “빠스차장의 24시간.” 『동아일보』 1962년 11월 8일; 이병태, 1975 『자동차여성근로자연구』 전 국자동차노동조합; 최종호·손학순 1977. “서울 시내빠스 안내원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복지 연구』; 이순애, 1982. “서울시내 버스안내양의 영양섭취실태 및 건강상태 조사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비고: 1973년의 조사결과에서 7.5%의 무응답 결과를 제외했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 유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각종 실태조사마다 버스안내원들의 출신지를 조사하는 기준은 일관되지 않아서, 가장 이른 시기인 1962년의 조사는 출신지를 도별로 분류하여 정리했다.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이후에는⁷⁾ 버스안내원들의 출신지를 조사할 때에도 서울이나 아니냐 뿐만 아니라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촌인지가 중요해진다. 일관되지 않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명한 경향은 읍면 등 비도시 지역 출신 안내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버스안내원들이 여성으로 교체된 초기 시점인 1962년에는 시내버스 안내원 중 21.6%가 서울 출신이었는데 비해, 1976년 시내버스 안내원 중에서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출신인 경우가 더욱 드물어져 5.9%에 불과하다. 1982년 조사에서도 서울 시내버스 안내원 중에서는 농어촌·광산촌을 포함한 비도시 지역 출신인 경우가 88.2%에 달했다.

7) 대통령 역시 1967년 연두교서에서 2차 경제개발계획의 중점이 ‘균형발전’에 있다며 도시와 농촌 간 지역발전상의 균형을 강조했다. (황병주, 2016: 330)

〈표 2〉 각종 실태조사에 나타난 버스안내원들의 취업동기

1962	1971	1975	1976	1981
다른직업을 얻을 수 없으니까 (40.8%)	가정생계를 책임져야 하므로 (70.7%)	(가계)빈곤 (56.0%)	생활고 (41.8%)	동생의 학자금 마련 (35.0%)
별다른 재능이나 기능이 없으므로 (27.7%)	사회생활을 터득하기 위해 (13.6%)	가정불화 (17.0%)	가정불화+학대 (18.3%)	사회경험 얻기위해 (29.1%)
다른 직업도 별수 없으니까 (12.7%)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없으니까 (10.0%)	친지 및 친구의 권유 (12.4%)	구직 (11.8%)	자립하기 위해 (16.7%)
근심 걱정 모르고 재미있으니까 (9.4%)	집에서 노는게 싫어서 (5.0%)	도시동경 (12.0%)	실연 (3.5%)	가족생계 때문에 (9.0%)
차장이 하고싶어서 (4.2%)	기타 (0.7%)	기타 (2.7%)	기타 (18.8%)	자신의 학비 마련 (4.7%)
기타 (0.5%)				농어촌이 싫어서 (0.8%)
				기타 (4.7%)

출전: “빠스차장의 24시간.” 『동아일보』 1962년 11월 8일; 『한국 YWCA』 제 19권 9호 10월호, 1971; 이 병태, 1975 『자동차여성근로자연구』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최종호·손학순 1977. “서울 시내빠스 안내원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복지연구』; 여경춘, 1981. “자동차 안내원의 직업의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강원도지역 근로자실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⁸⁾

그렇다면 이들이 버스안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각종 실태조사에서 취업동기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직업을 자발적으로 택하기보다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960년대와 1970년대 내내 공통적으로 많았다. 위의 실태조사 중 안내원들의 전 직장

8) 1981년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14일간 강릉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버스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340명의 버스안내원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 회수된 255개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이다.

에 대해 체계적으로 집계한 경우가 두 경우뿐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1962년의 조사와 1977년의 조사에서 모두 버스안내원이 되기 전 무직이었다는 비율이 약 65%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생애사를 다루는 수기 자료의 전형적인 서사처럼 버스안내원이 되기 전 여러 직업을 전전한 경우도 물론 있었겠지만, 적어도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직업을 시작으로 임노동 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었다. 많은 실태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버스안내원은 비교적 “도시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직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전반기를 묘사하고 있는 윤미화의 수기에서 오빠 하나만 대학 교육을 받는 동안 자매들이 뿔뿔이 흩어진 사연은 서울로 이주해온 여성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윤미화 본인이 가사사용인(식모)과 구두닦이를 거쳐 버스안내원으로 일하는 동안 여동생 1명은 아버지를 돌보고, 언니는 미아리에서 방직공장을 다니고, 또 다른 여동생은 가사사용인으로 일했다. 윤미화는 “식모살이의 슬픔을 너무도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에” 가사사용인으로 일하고 있던 여동생에게 “차장도 다룰 건 없지만 식모살이보다야 나은 편”이라고 설득하여 버스안내원으로 일하게 한다.(윤미화, 1983: 174)

〈표 2〉를 보면 많은 버스안내원들이 가게 빈곤 때문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이 직업에 진입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조업체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시행된 일련의 실태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노동청, 1974: 24) 버스안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중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1962년의 조사에서는 빈곤이나 생계와 같은 항목이 없었으나, 이 조사에서도 65.7%의 안내원들이 월급을 “집안 살림에 보태 쓴다”거나 “형제의 학비 보조”에 쓴다고 답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진행된 두 조사에서는 취업 동기로 “가정불화”나 “부모의 학대”가 비중있게 언급되었는데, 이 시기 ‘청소년 문제’와 가정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정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2〉 각종 실태조사에 나타난 버스안내원 학력

	1962	1971	1974	1976	1981	1982
무학	2%					
국중퇴	7%	3.7%		2.4%	6.0%	
국졸	36.2%	30.3%	56.9%	47.1%	9.5%	22.2%
중학중퇴	26.8%	23.7%	27.3%	17.6%	6.5%	7.8%
중졸	16.9%	28.7%	14.1%	26.5%	50.9%	56.1%
고중퇴	4.5%	4.0%	1.1%	5.3%	11.2%	8.3%
고졸	2%	3.3%	0.6%	0.6%	15.5%	5.7%
무응답		6.3%			0.4%	

출전: “버스차장의 24시간.” 『동아일보』 1962년 11월 8일; 『한국 YWCA』 제 19권 9호 10월호, 1971; 이병태, 1975 『자동차여성근로자연구』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최중호·손학순 1977. “서울 시내 버스 안내원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복지연구』; 여경춘, 1981. “자동차 안내원의 직업의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강원도지역 근로자실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애, 1982. “서울시내 버스안내원의 영양섭취실태 및 건강상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들은 대부분이 국민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학교를 중퇴한 정도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표 3〉을 보면 연도별로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1970년대부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학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상승한 요인뿐만 아니라, 비교적 높은 학력을 요구받은 고속버스 안내원이 집계에 포함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소규모 시내버스 업체에 속한 안내원들은 여전히 학력이 낮아서, 〈표 3〉에서 시내버스 안내원만을 대상으로 한 1976년도의 조사를 보면 국민학교만 졸업한 경우가 50%에 육박한다. 1973년도에 제조업체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도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여성노동자들의 학력이 비교적 낮은 것은 마찬가지였다.⁹⁾

9) 조사대상 여성노동자들을 전체적으로 집계했을 때는 중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한 경우가 44.8%로 가장 많았지만, 50인 이상 15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만으로 대상

4. 더 ‘여성적인’ 노동자 만들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속버스를 제외하면 안내원이라는 직업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오로지 성별이었다. 1961년 서울시에 처음 여성 안내원들을 선발할 때에도 시험관은 공공연하게 “얼굴이 예쁘고 글씨나 잘 쓰는 애고 있는 아가씨는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했다.(경향신문, 1961b) 안내원이라는 직업은 손님에게 호감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여쁜 색시 차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경향신문, 1961h) 이 시기를 묘사한 윤청자의 수기를 통해 당시 면접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지원자들이 “증명사진 두 장과 이력서”를 들고 가면 면접관은 “차장을 하려는 동기”를 묻고는 부모 이름과 본인 이름을 적어 보게 한다. 윤청자를 담당했던 면접관이 글씨를 보고 “됐어”라고 웃었고, 그는 밖으로 나와 ‘이런 것을 시험이라고 보나?’라며 그동안 나름대로 공부하던 시간을 떠올리며 허탈해한다.(윤청자, 1967: 33-34)

이처럼 버스안내원의 ‘서비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공하는 쪽의 성별이었고, 이 점에서 안내원들은 노동자이기에 앞서 ‘여성’으로 여겨졌다. 즉 공적 영역에서 여성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교통현장에 배치되었음에도 이들의 여성성은 사적 영역, 특히 가정과 밀접하게 결부되었다. 전술한 『여객 자동차 승무원 교본』에서 버스안내원-운전기사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서술할 때 가정 내의 성별분업을 유비로 삼는 대목은 현장에서 버스안내원에게 요구되는 미덕이 무엇이었는가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을 좁힐 경우 국민학교가 최종학력인 경우가 63.8%로 훨씬 높았다. 보고서에서도 “소규모 공장에서는 학력을 따지지 않고 채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노동청, 1973: 28-29) 반면 공단지역에서는 국민학교가 최종학력인 경우가 23%에 그쳐, 비교적 높은 학력수준을 보인다.(노동청, 1974: 14)

우리들은 흔히 말하기를 버스를 한 가정으로 비유하는 예가 있다. 이렇게 버스를 한 가정으로 생각한다면, 버스를 운전해서 움직여나가는 운전사는 아버지 격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다시없는 그 가정의 어머니 일을 맡아 보는 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다면, 여러분은 한 가정을 훌륭하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구김새 없는 뒷받침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 가정의 주부가 모든 교양이 짝새있게 갖추어 있고 예의범절이 두터우면, 그 가정은 화목할 것이고, 따라서 그 집안은 항상 웃음 속에서 번창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집안의 주부의 성격이 거칠고 교양이 없이 함부로 행동하게 된다면, 그 집안에는 자주 말다툼이나 싸움까지도 일어나게 되어, 그 가정의 분위기는 항상 우울하게 될 것은 뻔한 노릇이다. 이렇게 운전사와의 관계가 나빠져서는 그 가정에 찾아온 손님(승객)에게도, 따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 가정의 인격 있는 주부가 되겠다는 자각심을 가지고서, 과로하기 때문에 신경질적이 되기 쉬운 운전사의 뒤를 항상 잘 돌보아주게 하여서, 그 가정(버스차)에 찾아온 손님(승객)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베풀도록 [강조: 필재] 하는 것이다.(양기철, 1962: 19-20)

위와 같은 여성들의 돌봄노동은 어디까지나 무상의 부불(unpaid) 노동이므로, 여성 안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종종 영리 행위를 초월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 점에서 여성 안내원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넘어 종종 시민으로서 갖는 공공의 권리와 겹쳐 보이기도 했다. 물론 업자들이 요금을 올릴 때마다 안내원들의 성별을 강조한 것은, 여성들의 서비스를 보다 비싼 상품으로 여기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전제했다.(동아일보, 1964; 조민지, 2020: 206) 그러나 버스는 어디까지나 대중교통수단으로 당대 교통체계의 일부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서비스는 종종 시장의 상품보다는 일종의 공공재로 여겨졌다. 업자들에게 “영리 위주의 묵은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서비스’ 본위의 영업”을 요구하던 주장 속에서, 서비스는 영리 행위와 대조되는 비영리적인 미덕이 된다.(동아일보, 1962d; 조민지, 2020: 206)

그런 사람들은 버스안내원의 업무 역시 “대민봉사”의 일환이므로,(경향신문, 1965) 정부가 나서서 선진국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승객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럴 때 서비스는 구습(舊習)을 벗어던진 근대화의 상징이며, 영리 행위를 초월한 공익의 일부가 되었다. 국가재전최고회의부터 5·16 직후 서울 시내버스 안내원들의 서비스에 대해 “다소 친절해졌으나 아직도 봉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논평한 것을 보면, (이치업, 1962: 101-102) 많은 사람들이 여성 안내원의 서비스를 대민봉사로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오히려 시민의 권리에 돈을 요구하는 안내원들이야말로 비인간적인 속물주의를 상징했다. (조민지, 2020: 206) 동아일보 역시 1963년에 “여차장 서비스 진단”이라는 기사에서 안내원 대부분이 자신의 일을 공익사업이며 서비스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소제목에는 ‘봉사정신’이 없다는 식으로 요약했다. (동아일보, 1963b; 조민지, 2020: 206)

공익적인 서비스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성별이었다. 그러나 가정에 있어야 할 여성들, 특히 미성년 여성들이 공공장소에 노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버스안내원이라는 직업의 딜레마가 있었다. 이들은 고용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라기보다 구호를 필요로 하는 ‘불우이웃’이며,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 가정으로 복귀해야 할 여성으로 여겨졌다. 공공장소에서 익명의 존재로 남아있는 것에 종종 거부감을 느꼈던 승객들 역시 안내원들을 노동자라기보다 여자아이들로 인식했다. 안내원 일반에 대한 동정심 역시 이런 감각에 바탕했다. 즉, 이들은 운송 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하는 익명의 노동자이기에 앞서 ‘누군가의 자식’인 ‘불쌍한 아이들’로 여겨졌다. 안내원으로 근무하는 미성년 여성들은 어디까지나 가정 내에 있어야 할 존재들이었다. 15~16세의 박복한 아이가 “원만한 가정에 태어나지 못한 탓으로” “한날 여차장 노릇”을 하는데 웅당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식의 신문 기사는 언제나 관심을 끌기 마련이었다. (경향신문, 1962d)

이것은 여성 안내원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가없는 약자이자 위협적이지 않은 타자로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차주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안내원과의 고용관계는 한국 사회에 익숙한 방식으로 재편되었다.(조민지, 2020: 213) 예를 들어 기숙사가 없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차주가 안내원들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면서 유사 가족이 되어 종종 부모의 권위를 행사했다.(윤미화, 1983: 141, 233-234) 이런 경우 차주를 부모로 여기라고 교육했고, 안내원들 쪽에서 감독이나 차주에게 부모 역할을 기대하기도 했다.(윤청자, 1967: 100, 171) 일찍부터 버스안내원 문제에 주목한 YWCA가 추진한 행사들도 1960년대에는 주로 자선사업의 성격이 강했다. 1960년대 초부터(동아일보, 1963c) 매년 연말에 안내원들을 초청하여 열었던 위안회는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행사는 내부적으로도 “불우한 이웃돕기”로 규정되었다.(서울YWCA, 1972)¹⁰⁾ 어린 여성 안내원들은 온 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정을 이탈한 불우이웃이 되었던 것이다.(조민지, 2020: 213)

여성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교통현장에 배치된 안내원들이었던 만, 가정 밖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정작 이들의 여성성이 불완전하거나 일탈적인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은 종종 시정해야 할 문제로 거론되었다. 배러클러프(Ruth Barraclough)가 지적했듯이, 이 시기 한국사회에서 공장 노동자 등 가정 밖에서 일하는 여성은 “여성스럽지 못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배러클러프, 2017: 270-271) 『여객자동차 승무원 교본』이 승객에게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 필요한 “인격과 교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틈틈이라도 좋은 교양서적이나 잡지를 읽을 것이며, 집안에서는 어지신 부모님의 교훈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었다.(양기철, 1962: 16) 현실의 여성 안내원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손님들에게 덤벼드는 것도 이들이 충분히 여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고, ‘정상’ 가정에 속한 또래라면 마땅히 누릴 것으로 여겨지

10) 예를 들어 서울 YWCA가 1972년 총회에서 지난해의 활동을 보고할 때에도, “모범 여차장 초청 및 좌담회” 등 안내원 관련 활동을 “불우한 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는 ‘소녀’로서의 경험의 이들에게는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졌다. YWCA가 주최한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했던 18살의 안내원이 남긴 후기는 위와 같은 인식을 잘 보여준다.

(전략) 하루종일 뺄스 속에서 손님을 태우고 내리며 시달려야 하는 뺄스차장이고 보면 오히려 크리스마스는 내 일과를 더욱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뿐 인지도 모른다. (중략) 아마도 이런 생활이 나를 아직 나이도 먹기 전에 감정이 무딘 소녀로 만들어 버렸나보다. 작년에 YWCA에서 여차장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 주었는데 마침 비번이라 참석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 혼련이다 교양이다 여러번 모임에 불려다닌 적이 있었지만 오락과 계임을 즐길 수 있는 리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참석해본 건 처음이었다. 그날 초청받은 인원이 2백명이었는데 모두가 그 순간에만은 자신의 생활과 일을 잊고 순진한 소녀가 되어 마음껏 웃고 떠들며 놀 수 있었다. 작년 크리스마스는 내게 감격스러운 선물을 안겨 주었다. 잊었던 소녀의 감정을.(서울YWCA, 1969)

서울 YWCA가 1965년 5월부터 안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도 마찬가지로의 취지였는데, 노래나 게임, 포크댄스와 같은 오락은 물론 요리, 꽃꽂이, 편물 강습같이 안내원들이 접하지 못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었다. 교양강좌로는 “보람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설계”, “여차장으로서의 태도”, “건강과 위생” 등은 물론 “남녀교제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 “여성 생리의 몸가짐”처럼 여성들에게 필요할 것이라 여겨지는 교양, 나아가 “시부모 공경 및 며느리로서 시누이로서 지켜야 할 예의 및 태도”와 같이 ‘정상’ 가정의 여성이라면 자연스럽게 습득할 것으로 여겨지는 기술도 포함되었다.(한국YWCA, 1966b)

비슷한 시기 대통령 부인이 이끌던 양지회에서도 안내원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육을 실시했다.¹¹⁾ 1965년 연말, 육영수는 새해의 계획으로 양지

11) 양지회는 정부 관료 및 국영기업체 책임자들의 부인을 조직한 사회사업체로, 대통령 부인 육영수는 1965년부터 이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조민지, 2022: 331)

회관에서 “차장이나 여급 등 불우한 직업 소녀들을 위해” 교양 강습을 시작하겠다고 언급했고, (조선일보, 1965) 여기에서도 이듬해부터 안내원들을 위한 강습이 시작되었다. 육영수가 사망한 직후 신문마다 실린 추모 기사는 이 양지희 사업이 “요식업소, 다방종업원, 버스안내양 등에게 휴무를 이용한 교육을 실시, 한 사람의 훌륭한 사회인으로, 여성으로, 어머니로 키갈 수 있도록 지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1974)

이처럼 가정 밖에서 노동하는 여성들의 여성성을 불완전한 것으로 취급하고, 교육을 통해 ‘정상화’하려는 경향은 다른 직종 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겪던 상황이었다. (김원, 2007: 545-549) 차이가 있다면 버스안내원의 여성성은 대중들의 시선에 매일같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었다. 이 점에서 안내원들의 ‘여성적인’ 외양이야말로 다른 여성노동자들에 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업자들은 버스 요금이 오를 때마다 여성 안내원들에게 제복과 제모를 입히고, 버스조합에 차장 교과서를 배부하여 교육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경향신문, 1962c; 동아일보, 1962c) 이 교과서의 용도로 발간된 『여객 자동차 승무원 교본』은 “볼수록 귀엽고 멋지고 사랑스런” 유니폼을 자주 기워입고 세탁해서 “차장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도록 당부했다. 물론 “아무리 꼭두각시처럼 곱게 차렸다 해도 그 여자에 정숙한 맛이 없고 교양있는 품이 없다면, 하나의 허잘 것 없는 여자에 떠러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양기철, 1962: 23)

‘여성스러운’ 목소리와 표정도 매우 중요했다. 교본에서는 “고혼” 목소리를 위해 매일 몇 번씩 소금물로 입을 부실 것, 날계란을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한 개씩 먹을 것을 권하는 한편, 손님들에게 응대하는 말을 조절하여 목을 아끼도록 했다. 너무 크게 발성하지 않고, 반복되는 말수를 최대한 줄이며, 음악처럼 리듬을 만들어서 힘이 덜 들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을하늘처럼 맑고 탁 튼 말씨”로, “부드러우면서도 은은하게 들리는 맛”이 있는 목소리여야 했다. 표정은 “상냥한” 웃음을 짓되 턱없이 입을 벌리고 큰 소리로 웃어대면 “천한 격이 되고 손님에게도 실례가

되므로” 삼가야 할 것이었다.(양기철, 1962: 25-26) 특히 술주정하는 승객을 상대할 때에는 “되도록 애교있는 말솜씨로 하여야” 했다.(양기철, 1962: 45)

이후로도 안내원의 여성성을 ‘정상화’하는 것은 대중교통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목표가 되었다. 서울시 운수국장이 나서서 “미소 짓는 차장”을 만드는 것을 새해 포부로 꼽았으며,(경향신문, 1967) “여자 아닌 여자”가 되어버린 이들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고운말쓰기 운동이나 비번날 국어순화 교육을 시키는 회사도 있었다. 이 회사는 “거칠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이 참가하는 합창단까지 구성하여 양로원 위문행사를 갖는 등 “정서활동”을 벌인 끝에 운수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경향신문, 1973) 회사 차원에서 잘 웃는 안내원을 “모범 안내양”으로 뽑아 표창하는 곳도 있었다.(동아일보, 1977)

안내원 당사자들은 그들대로 더 ‘여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윤미화, 1983: 163-164) 업무시간 내내 흐트러진 몸차림을 가다듬을 최소한의 틈도 주어지지 않는 데다 세면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숙소에서 ‘여성스러운’ 외양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윤미화, 1983: 196-198) 이럴 때 ‘여성스러운’ 서비스라는 목표는 자연스럽게 안내원 노동조건에 대한 성토로 이어졌다. 즉 노동자이기에 앞서 여성이어야 했던 버스안내원들을 향한 이중적인 요구를 정부의 일방적인 기획이나 시장의 일관된 수요라는 단일한 요소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이는 안내원 당사자를 포함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여성적인 것’에 대해 기대하고 배반하며 충돌하고 갈등하는 과정이었다.

5. 결론

1960~70년대 한국 사회에서 버스안내원이라는 특정 직업이 여성 직종으로 자리 잡는 과정은 당대인들이 무엇을 '여성적인' 서비스로 여겼는지를 보여준다. 이 시기 대면서비스와 여성적인 속성을 결부시키는 조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기획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1960년대 초부터 노동자들의 성별을 교체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단순히 노동자들의 성별만으로는 당대인들이 상상한 '여성적인' 서비스가 액면 그대로 구현되지는 않았지만, 취약한 지위의 노동자가 거래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반격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들의 성별을 교체한 의미가 있었다. 버스의 경우, 승객들과 업자들이 모두 대중교통 관행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라는 건 결국 물리적으로 취약한 여성노동자가 승객의 폭력에 저항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했다. 나아가 '친절'로 상징되는 여성들의 돌봄노동은 어디까지나 무상의 부분(unpaid) 노동이므로, 노동자들의 성별을 여성으로 교체하는 조치는 종종 영리행위를 초월한 공익으로 여겨졌다.

이처럼 대면서비스 노동이 노동자의 여성성과 결부된 결과 현장에 배치된 여성 안내원의 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서비스를 이유로 신규로 고용된 여성들의 존재가치는 오로지 자연적이라고 규정된 성별에 있었고, 그것은 경력이나 훈련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었다. 자본주의적 계약관계에 익숙하지 않은 승객들로서는 이들의 존재를 통해 기존 성별 연령별 위계 질서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현장의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런데 현장에 배치된 안내원들이 가정 밖에 노출된 미성년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여성성은 부족하거나 흠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여성성을 증진하려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1960~70년대 대표적인 대면서비스 직종이었던 버스안내원의 서비스를 둘러싼 당대의 논의는 이 시기 이른바 '여성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종태. 1961. “열차승무원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에 관한 고찰.” 『교통』 6: 33-37.
- 김원. 2007.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 서울: 이매진.
- 노동청. 1973. 『여성근로자의 고용관리 실태와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노동청.
- 노동청. 1974. 『여성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노동청.
- 박정미. 2011. “한국 성매매 정책에 관한 연구—‘목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 여성
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배러클러프, 루스. 2017. 『여공 문학』. 서울: 후마니타스.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9. 『서울교통사』. 서울: 서울특별시.
- 양기철. 1962. 『여객 자동차 승무원 교본』. 서울: 수문사.
- 여경춘. 1981. “자동차 안내원의 직업의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강원도지역 근로자실
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화. 1983. 『흰 구름 가는 곳』. 서울: 대현문화사.
- 윤청자. 1967. 『홀로 내 길에 서서: 나의 여차장 시절』. 서울: 진명문화사.
- 이병태. 1975. 『자동차여성근로자연구』. 서울: 전국자동차노동조합.
- 이순애. 1982. “서울 시내 버스안내양의 영양섭취실태 및 건강상태 조사연구.” 이화여
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영. 1961. “직권의 행사와 권력의 남용.” 『교통』 5: 7-9.
- 이치업. 1962. “교통행정 일원화에 대한 논고.” 『최고회의의보』 12: 96-102.
- 조민지. 2020. “1960~70년대 버스안내원과 ‘서비스’ 노동의 성별화.” 『역사비평』 133:
197-223.
- _____. 2021. “5·16 쿠데타와 ‘서비스’의 젠더정치.” 『역사비평』 135: 109-137.
- _____. 2022. “5공의 어머니: 전두환 정권의 영부인 정치와 새세대 육영회.” 『한국문
화』 99: 327-356.
- 진애강. 1961. “교통수필: 혁명 후의 교통풍경.” 『교통』 7·8: 68-72.
- 최종호·손학순. 1977. “서울 시내버스 안내원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복지연구』 11:
66-108.
- 황병주. 2016. “박정희 체제의 근대적 시공간 인식과 시골/도시 담론.” 『역사연구』 31:
303-342.

(2) 기사 및 인터넷 자료

- 경향신문. 1961a. “빠스 요금은 내리는 방향에서.” 〈경향신문〉. 1961.6.15.
 _____ . 1961b. “6대 1의 경쟁, 빠스차장 시험.” 〈경향신문〉. 1961.7.3.
 _____ . 1961c. “여적.” 〈경향신문〉. 1961.8.19.
 _____ . 1961d. “빠스와 여차장의 단속.” 〈경향신문〉. 1961.8.22.
 _____ . 1961e.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실업자 구제 대책.” 〈경향신문〉. 1961.8.29.
 _____ . 1961f. “영업차량에 7개 실천사항, 운전수는 제복, 제모.” 〈경향신문〉. 1961.6.12.
 _____ . 1961h. “여적.” 〈경향신문〉. 1961.6.21.
 _____ . 1962a. “반사경.” 〈경향신문〉. 1962.3.23.
 _____ . 1962b. “고정배차제로 환원.” 〈경향신문〉. 1962.3.24.
 _____ . 1962c. “빠스 차장 여자로.” 〈경향신문〉. 1962.3.24.
 _____ . 1962d. “애뜻한 차장에 따뜻한 말씨를.” 〈경향신문〉. 1962.9.28.
 _____ . 1965. “버스 차장에 대민봉사교육 시키라.” 〈경향신문〉. 1965.2.15.
 _____ . 1966. “여성다운 맛 잃은 버스 차장.” 〈경향신문〉. 1966.3.21.
 _____ . 1967. “100인의 새해포부.” 〈경향신문〉. 1967.1.1.
 _____ . 1973. “국어순화 곱고 바르게—그 현장을 따라 (8) 직장.” 〈경향신문〉. 1973.10.27.
 동아일보. 1961a. “여자로 바꾸도록.” 〈동아일보〉. 1961.6.20.
 _____ . 1961b. “시립직업소개소서, ‘빠스’ 여차장 모집.” 〈동아일보〉. 1961.7.5.
 _____ . 1962a.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2.4.30.
 _____ . 1962b. “ 시내빠스 노선별 고정배차제로.” 〈동아일보〉. 1962.3.25.
 _____ . 1962c. “전국 빠스요금 오늘부터 꺾춤.” 〈동아일보〉. 1962.4.1.
 _____ . 1962d.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2.4.4.
 _____ . 1963a. “철도경호원으로 전 경관 40명을 배정.” 〈동아일보〉. 1963.6.14.
 _____ . 1963b. “여차장 서비스 진단.” 〈동아일보〉. 1963.5.7.
 _____ . 1963c. “여차장 백여명 불러 X마스 위안파티 YWCA서.” 〈동아일보〉. 1963.12.20.
 _____ . 1964.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4.7.14.
 _____ . 1977. “출근길 밝히는 ‘미스 스마일’ 김영순 양.” 〈동아일보〉. 1977.1.19.
 매일경제. 1974. “발 닿는 곳마다 희망의 씨 뿌리고...” 〈매일경제〉. 1974.8.17.
 서울YWCA. 1969. “즐거웠던 X-마스의 선물, 오락과 게임으로 즐겨.” 〈서울YWCA〉. 1969.12.
 _____ . 1972. “사회정의 위한 여성의 능력으로.” 〈서울YWCA〉. 1972.2.

- 조선일보. 1961. “빠스 승무원은 설비·봉사사항 지사…” 〈조선일보〉. 1961.6.12.
- _____. 1963. “명랑여행의 길잡이 여자열차원.” 〈조선일보〉. 1963.1.31.
- _____. 1965. “퍼스트레이디 육여사와 한시간.” 〈조선일보〉. 1965.12.9.
- _____. 1966a. “내가 차장이 되면.” 〈한국YWCA〉. 1966.4.
- _____. 1966b. “여차장을 위한 제언.” 〈한국YWCA〉. 1966.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Abstract

The Meaning of the “Feminine” Service: Feminizing of the Bus Attendants during the 1960s and 1970s

Jo, Min-Ji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making the so-called “feminine” service in the field of face-to-face service sector such as bus attendants, which indicates what Korean society considered “feminineness.” Even after the Korean government actively associated the face-to-face service with the workers’ femininity by changing them to female, their “feminine” services imagined by their contemporaries could not be easily realized. It mattered, however, that vulnerable workers became a buffer for the counterattacks from consumers unfamiliar with contractual practices, which gradually increased the number of female guides in the field. Passengers not familiar with contractual practices had a relative advantage in the existing gender and age hierarchy with the workers’ presence, thereby alleviating tensions on the scene. However, given that the attendants in the field were underage women exposed outside the home, their femininity was considered lacking or flawed. Therefore, policies and programs targeting them also focused on promoting their femininity. In other words, the dynamics surrounding the service of bus attendants was also a process of constructing the meaning of “feminineness” in Korean society.

Key words: Bus attendant, Service, Femininity, Feminization

┃ 투 고 일 : 2024년 3월 17일
┃ 최초심사일 : 2024년 4월 8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4월 29일

대학 미투운동의 응결점들

— B시 P대학의 경험을 중심으로*

최나현** · 김영***

| 목차 |

- | | |
|--------------------------------|-----------------------------|
| 1. 들어가며 | 1) ‘편페미’의 등장, 저항 행동의
마중물 |
| 2. 선행연구 검토 | 2) ‘결페미’의 탄생: 함께 커지는 힘 |
| 1) 교수 성폭력 만연 요인 | 3) 대학원생 연대모임 ‘한줌단’ |
| 2) 대학 반성폭력 운동 주체의 탄생
경로 | 5. ‘미투 그 후’ 활동의 형성과 전개 |
| 3) 대학 반성폭력운동과 다양성의
정치 | 1) ‘친밀성의 공동체’와 정치적
목소리 |
| 3. 연구방법과 연구참여자 | 2) 각자의 자리에서 |
| 4. ‘P대페미’의 탄생과 ‘페미니스트
스펙타클’ | 6. 결론 및 함의 |

| 초록 |

이 글은 2018년 P대학 미투운동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대학에 안정된 여성운동조직 기반이 없었음에도 미투운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까닭을 파악하고, 미투운동 참여 경험이 참여자에게 미친 영향과 후속효과를 확인했다. 2018년 3월초 P대

* 유익한 논평으로 논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 익명의 심사위원들과 연구참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 연구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해 수행되었다.

** 제1저자: 부산대학교 nahyun_choi@pusan.ac.kr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bominsurge@pusan.ac.kr

학에서는 연이은 미투 고발과 함께 스스로를 'P대페미'라 명명하던 '편페미', '겉페미', '한줌단'이라는 세 주체가 나란히 등장했는데, 이들은 학생운동 조직에서의 훈련과 여성학 수업에서 맺은 관계를 바탕으로 미투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활동 과정에는 여성학 행사에의 참가자 운집과 미투운동 선전물이 캠퍼스를 가득 메우는 '페미니스트 스펙타클' 전술이 작동했다. 이는 참여자들의 연대감을 강화할 뿐 아니라 운동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며 교내 구성원의 미투운동 지지 의견 표명을 활성화했다. 한편, 미투운동 참여 경험은 참여자들이 새로운 페미니즘 소모임을 구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실시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페미니스트로서의 구체적 실천을 고민하도록 만드는 토대였다. 이 연구는 대학 여성운동의 재활성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동시에 미투운동의 불씨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남아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대학 미투운동, 여학생 운동, 여성학 수업, 운동권, 페미니스트 스펙타클

1.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2018년은 미투운동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16년 10월 “오타쿠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으로 시작한 반성폭력 운동은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2018년초, 서지현과 김지현의 고발은 더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전환점이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한국 여성의 ‘보편적’ 경험임을 알렸고(권김현영, 2018: 342), ‘나도 당했다’를 넘어 ‘함께 하겠다(with you)’를 선언하며 안전하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 흐름에서 대학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8년 개학과 더불어 교수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의 붓물이 터졌다. 15.2%의 대학에 미투 관련 사건이 접수되었고 34.4%의 대학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건수가 증가했다(신상숙 외, 2019: 69).

대학은 한국의 반성폭력운동에서 언제나 주요한 전장의 하나였다. 한국 사회에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고 확산된 계기는 1993년 서울대에서 신정휴 교수의 조교 성희롱 폭로였다. 1990년대 대학 여성운동의 핵심영역이었던 반성폭력운동은 일상의 다양한 성적 차별과 폭력을 ‘성폭력’으로 문제화하여 대학의 젠더위계질서를 여성의 경험에서 재구성하고 ‘공동체’로서의 대학공간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발전시켰다(신상숙, 2007; 김보명, 2008; 한중태, 2014; BRIDGE, 2018). 2018년에도 대학은 거리 및 사이버 공간과 더불어 반성폭력 운동의 주전장의 하나였다.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봇물 터지듯 터진 대학미투운동은 공적 교육공간조차도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님을, 성폭력 가해자가 예외적 일탈자가 아님을 드러냈다. 대학미투운동은 성폭력이 익명성 아래에 숨은 사이버 공간이나 위계적 조직운동을 특징으로 하는 임금노동의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범람하며 여성을 공적 공간에서 배제하는 성차별 기제임을 드러내며 일상의 대면적 공간 속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조직해냄으로써 미투운동의 파고를 고조시켰다. 중소도시에서 그 힘은 도시 전체의 여성운동을 재활성화시키는 정도였다(김혜경, 2022).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 미투운동의 구체적 경험에 대한 연구가 풍부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2018년에 대학 미투로 언론에 보도된 대학·학과만 해도 30곳이 넘음에도 불구하고(유현미, 2022b: 6) 개별 대학에서 전개된 미투운동사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8년 미투운동 이전에 전개되었던 동국대 사회학과 투쟁사례와 서울대 사회학과 투쟁사례에 관한 연구뿐이다(박경태, 2018; 유현미, 2018, 2022a, 2022b). 2018년 미투운동에서 대학미투운동이 가졌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의외이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대학미투운동의 사례연구는 대학이라는 공적 교육기관을 구성하는 여러 주체 간의 교수성폭력에 대한 대응동학을 분석해 대학 내 여성운동의 발전과 성평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규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P대학에서도 2018년 3월 개강과 더불어 교수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2018년 1학기 동안 미투운동이 격렬히 전개된 결과 6~7월 사이 두 명의 원로 교수가 해임되었다. 한 명의 가해 교수는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다는 점, 다른 한 명은 학위 논문 심사자라는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은 명백했다. 그러나 서울대에서 갑질교수를 대학에서 추방하기 위해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2년에 걸쳐 장기천막농성 및 단식투쟁, 집단자퇴서 제출 등의 극한 전술을 구사하며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3개월이라는 결과밖에 얻지 못했음(유현미, 2018)을 생각하면 국립대학인 P대가 정년퇴직을 앞둔 두 명의 원로 교수를 즉각 해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비수도권 대도시인 B시의 P대학에서 2018년 봄에 진행된 미투운동의 전개과정과 참여자들의 경험을 검토해 대학에서 반성폭력 운동 주체가 형성되었던 경로를 분석하고 2018년 여름 이후의 확장에 관해 살펴본다. P대학 사례를 분석하는 이유는 P대학 미투운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대학반성폭력운동 주체가 형성되는 다양한 경로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P대학 미투운동은 2018년 봄의 단발적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대학 내외에서 성평등운동을 활성화하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대학 미투운동 참여자들의 활동 방식은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의 실천에서 두드러졌던 익명성의 강조와 대조적이다. ‘불편한 용기’ 집회 등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실시된 직접 행동 현장에서는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쓴 참여자가 대부분이었다. 보복 폭력과 페미니스트 낙인이 초래하는 배제와 차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키보드워리어로서만 실천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이처럼 젊은 세대 여성들이 가졌던 두려움을 상기한다면 대학이라는 일상공간에서 학생들이 반성폭력 투쟁에 자신을 걸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만든다. 대학에서는 대자보

나 포스트잇을 부착하는 장면을,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강의실에 항의 방문하는 모습을 지인이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의 수업을 들었거나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때문에 대학미투운동의 활동 주체들은 거리와 광장에서의 실천과는 또 다른 부담을 안고 실천행위에 참여하게 된다. 익명성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중소도시의 경우 페미니스트들이 거주지역에서는 집회 참여는 물론이고 심지어 헤어스타일, 페미니즘 서적 소지까지도 엄격히 자기검열 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이정인, 2021; 김태영·육주원, 2022; 김하영, 2022) P대학에서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격렬한 미투운동이 전개되고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¹⁾.

2017년 가을에 개최된 한 학술행사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여성문제를 제기하고 활동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인가요? 어떤 활동이 있기는 했었나요?”라는 참가자의 질문(지영경, 2018: 42)이 나오는 정도로, 2005년 이후 학내 여성주의 활동의 명맥이 끊어졌던 P대학²⁾에서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내는 미투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걸까? P대 미투운동 주체형성 경로 및 확산과정을 분석하고, 미투운동 참여 경험이 참여자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는 이 연구작업은 대학 여성운동 재활성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인 동시에 여성운동의 불씨들이 백래쉬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재점화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1) P대학은 총장이 미투운동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고, 미투운동을 계기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젠더사회학 교원을 특채하기도 했다.

2) P대에서는 1989년 설립된 총여학생회가 2003년에 해산하고 2005년에 여학생잡지 HerStory가 제8호를 발간한 이후 공개적인 여성주의 활동은 중단되었다.

2. 선행연구 검토

1) 교수 성폭력 만연 요인³⁾

2018년 대학미투로 언론에 보도된 대학이 30곳을 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에는 수많은 성폭력 교수가 존재한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대부분 남성교수에 의해 행해지고 피해자는 여성구성원, 특히 여학생이다(김엘림, 2016: 292). 많은 경우 한 명의 교수는 한 명의 학생에게만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는다. 부산대 L교수 피해자는 밝혀진 것만 22명이고 한국예술종합학교 H교수의 피해자는 44명이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대부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대학에서 교수성폭력이 이토록 만연하는 이유에 대해 선행연구는 네 가지에 주목했다.

첫째는 대학에서 교수가 가진 권한과 신분보장 특권이다. 교수는 학점 부여 권한뿐 아니라 많은 자원과 업무의 책임자로서 조교 업무 결정(소득획득), 학위논문심사와 취업 등 대학에서의 생활뿐 아니라 대학 이후의 인생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학생에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유현미, 2018; 한준단, 2018; 김태현, 2018; 문화과학토론회, 2018; 백영경 외, 2019). 이 때문에 대학원 제자들이 성폭력 가해 교수를 옹호하기도 한다(조주현, 2008; 박경태, 2018). 또 교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와 달리 최종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피해자와 격리되지 않고 수업을 포함한 일상업무를 모두 수행할 뿐 아니라 해임 또는 파면되지 않는 한 징계기

3) 성폭력은 강간과 강제추행 등 실정법상의 성폭력범죄를, 성희롱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P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2조 제2항)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 모든 행위가 ‘성적 폭력’이라는 점에 주목해 성폭력으로 쓴다.

간이 종료되면 복귀해 수업을 한다⁴⁾. 이런 비대칭적 권력구조는 교수성폭력의 피해자가 피해구조를 호소하지 못하고 견디게 만드는 실질적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는 중년남성중심의 인력구조에 기초한 가부장제 문화다. 2022년 현재 4년제 대학의 교원 중 여성비율은 전임교원 26.2%(국공립 대학 19.1%), 비전임교원 41.0%다. 여학생 비율은 학부생 42.7%, 석사과정생 55.3%, 박사과정생 43.9%다(한국교육개발원, 2023: 88, 126, 129, 157). 또 2022년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중 30대 이하의 비율은 8.8%, 40대는 30.0%, 50대와 60대는 61.2%다(한국연구재단, 2023: 34). 즉 교수의 대다수가 중년의 남성이며, 여성대학원생들은 남성대학원생에 비해 교수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중년남성의 기준과 감각이 대학을 지배할 때 성폭력은 친밀감의 표현이거나 기껏해야 실수라고 명명된다. 이런 대학에서 연구자로서 일자리를 얻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여성대학원생들이 일상적 심기노동뿐 아니라 성폭력과 연구결과물 수탈까지 감내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셋째는 신자유주의의 대학 지배다. 유현미(2022a)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상품성 있는 지식을 생산하고 경쟁력 있는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하는 능력주의의 압력이 가중되는데 이 압력은 그간 대학을 유지하던 비판적 지식과 주체의 생산지로서의 공동체 규범을 파괴하고 연구실을 ‘쪽방화(cellularization)’했다. 쪽방은 남성 교수의 지위 권력을 중심으로 남학생들 간의 위계적 분업과 통제, 교수직과 쪽방운영의 남성 승계의 질서, 남성 교수 간 네트워크의 확장과 연결, 여학생들의 성애화되는 감정 노동과 친밀성 수행을 통해 작동한다. 쪽방 구조는

4) 동국대에서 김익기 교수가 해임되자 교권수호를 내건 동국대 교수 201명(서울 캠퍼스 교수의 대다수), 전국 사회학과 교수 194명(전국 사회학과 교수의 대다수, 서명 후 철회 4명), 동국대 사회학과 졸업생 119명의 탄원에 힘입어 교원징계재임위원회에서 복직판정을 받았다(박경태, 2018).

성폭력에 우호적인 상황 구도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력 행동을 무력화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넷째는 가문구조를 기반으로 한 대학·학계의 재생산 구조의 문제다. 권명아(2018)는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주장하는 학문집단에서조차 내부자의 성폭력에 대해 모르는 척하거나 문제가 공론화되어도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는 이유로 대학·학계의 재생산 구조에 주목했다. 학계는 특정 분야와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면서 서로 받아쓰고 이어쓰는 관계인 가문구조를 형성한다. 가문구조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논리를 넘어서 외부의 논리를 들을 수 있는 비판적 능력이 마비되기 때문에 같은 가문에 속하는 가해자 주변 인물들은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2) 대학 반성폭력 운동 주체의 탄생 경로

2010년대 중반의 페미니즘 활성화를 1990년대 후반 이후의 파퓰러 페미니즘과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든 리부트라고 보든(손희정, 2015, 2016), 디지털 공간과 대중문화가 새로운 페미니스트 탄생의 주요 경로라는 것에 이견은 없다(손희정, 2015; 김보명, 2018; 고은해, 2019; 권은채, 2022; 오혜진, 2022).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거리와 광장에서의 애도와 참여”다(김보명, 2018). 2008년 광우병 집회와 세월호 추모, 국정농단규탄 촛불집회 등 한국사회의 핵심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여성들은 경험은 행동 능력의 증가로 이어졌고, 2016년 5월 17일에 발생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에 대한 애도의 정동은 여성들의 행위능력을 폭발시켰다. 디지털 공간과 대중문화에서 여성들은 주체이자 참관인으로서의 모호한 거리두기가 가능했다면 강남역 사건은 대다수 청년 여성들에게 더이상 중립은 없음을 실감하게 했기 때문이다. “살여주세요. 넌 살아男았잖아”라는 포스트잇 문구가 압축적으로 드러내듯이 청년여성들은 강남역 사건이

“성차별적 구조 속에 위치한 ‘여성됨’의 집합적 경험 및 삶의 조건”임을 인식했고(정용림·이나영, 2018),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에 특별한 자기 동일시가 없었던 ‘평범한’ 여성들이 강남역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추모시위를 개최하고 참가했다.

2010년대 중반 페미니즘의 확산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실천은 “페미니즘 도서 열풍”이다(조혜영, 2017). 2010년대 중반 페미니즘 관련 서적 출판이 급증⁵⁾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젊은 페미니스트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획득한 문제의식을 독서로 심화했다(여성신문, 2016; 한국일보, 2021). 김주희(2017)는 여성들이 “독서의 과정, 독서로부터 파생된 질문 등을 SNS와 같은 텍스트 외부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재조직화하고 재유통시킴으로써 이른바 ‘서적-이후적 독서 양식’과 같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서적 외부로 나아가려는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는 현상을 분석한다. 김주희가 주목한 대상이 “이론화, 조직화 이전에 각개전투에 참여함으로써 조직화를 가능하도록 한”, “독학자⁶⁾ 페미니스트”인 반면 권은채(2022)는 소규모 페미니즘 책모임을 사례 연구했다. 참여자들은 성차별을 설명하는 언어를 익혀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대응할 언어와 논리를 갖추며 페미니즘을 더 깊게 배우기 위해 페미니즘 서적을 읽지만, 혼자서 책을 읽고 지식을 흡수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같이 읽고 토론하기 위해 독서모임에 참여한다.

그런데 페미니즘 서적에 대한 깊은 독서, 함께 읽기의 가장 전통적인

5)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알라딘의 ‘여성학·젠더’ 분야 도서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8% 증가했고 <이갈리아의 딸>은 2015년 11월과 12월에만 4,000부가 판매되었다.

6) 일찍이 사회운동의 주체 형성과 독학자문화의 관계에 대한 주목한 사람은 에드워드 팔머 톰슨(2000)이다. 톰슨은 19세기 초 영국노동계급 내에 급진주의 문화가 형성된 중요한 토대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독서열풍에 주목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새로운 사회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망과 함께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도 학습모임을 토대로 태동했다.

형식 중 하나는 대학에서의 여성학 교과목 수강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축적한 교원의 안내 하에 함께 학습하는 것이 대학 반성폭력 운동 주체의 형성에 직접 기여할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페미니스트 정체화 및 연대하는 시민으로의 성장에서 대학 내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백영경 외, 2019). 또 페미니스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때문에 위축되고 삶에 대한 불안과 변화가능성에 대해 우울한 전망을 갖는 여성청년 페미니스트들에게 대학의 여성학 강의는 안전한 사회적 관계망을 제공하는 곳 중 하나이고(추지현, 2019; 오혜진, 2022), 바로 이곳에서 페미니스트 소모임이 결성되기도 한다(김혜경, 2022).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여성학 강의 수강 경험이 대학 반성폭력 운동 참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다. 여성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여성학 수강 경험과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치적 실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여성운동 주체의 부상과 관련해 ‘친밀성’과 ‘자매애’의 역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회집단과 사회운동에서 신뢰와 연결이 중요한 토대지만, 오랜 세월 공식적 사회집단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들의 경우 공적 공간에서의 집합적 발화 과정에서 비공식적 관계망에서의 친밀성 구축의 의미가 더 클 수밖에 없다⁷⁾. ‘자매애’를 토대로 한 여성들의 단결이 19세기 중후반 영국여성운동의 태동에서 큰 역할을 한 것처럼(강남식, 1997), 1970년대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의 ‘친밀성의 공동체’라고 할 만한 소모임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1970년대의 한국에서 여성사업장의 민주노조는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운동세력이었지만 여성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노동운동의 투사로 노동조합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계급적 상황을 인지하게 만든 출발점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소모임에서 쌓은

7) 퍼트남(2006)은 동호회 참가 등의 활동이 사회적 연결과 신뢰의 네트워크(사회적 자본)의 발달로 이어지며, 그것이 민주주의와 지방정부 성공의 토대임을 밝혔다.

친밀성과 자매애였다(정미숙, 1993; 김원, 2004). 여성들의 연결은 사회 운동으로 발전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상황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본의 대형마트에서 기혼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의 ‘수다공동체’는 친밀성을 증진할 뿐 아니라 관리직들의 통제를 견제하는 비공식 권력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이 비공식 권력은 비정규노동자가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김영, 2020). 이상과 같이 여성들의 집합적 발화에서 친밀성의 공동체의 중요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발견은 대학미투운동에서도 친밀성과 자매애의 역할에 관해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3) 대학 반성폭력운동과 다양성의 정치

성폭력 피해란 고정된 사실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미구성 실천이고 이를 해석하는 행위자들의 해석 투쟁임을 생각할 때(유현미, 2018: 99) 다양한 위치의 참여자와 지지자들을 조직해 반성폭력 운동의 외연을 확장하는 ‘다양성의 정치’는 운동의 내실을 심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제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폭넓은 연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의 페미니즘 재부상 이후 연대범위의 제한 경향, 즉 ‘동일성의 정치’가 지적되고 있다. “나와 ‘같은’ 피해를 경험했으며 따라서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강력한 자매애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동일시와 소구”의 결과 “사회문화적 범주로서의 ‘여성’이 구현되는 다층적인 구조들과 맥락들, 그리고 정체성의 정치학을 넘어서는 저항의 전략과 행위성을 삭제”한 것이다(김보명, 2018: 130). 불편한 용기 집회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참가대상으로 정하고, 페미니즘의 깃발 하에 난민과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모습이 그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배제의 정치는 운동권 배제에 더해(우지안, 2018) 기존 여성운동과의 거리두기로까지 확장된다(최나현, 2022).

그런데 미투운동 이후 대학 반성폭력 운동에서는 다양한 세력들이 연대하는 점이 특징으로 보고된다. “기존 학생회 중심의 대응형태에서 벗어나 피해자 중심의 사건 대응 모임이 많이 구성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연대공동체가 등장”하고(김태현, 2018: 115), 졸업생, 교수 등의 참여도 보고된다(유현미, 2018). 전주시 A대학의 페미니스트들은 세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서로 다른 입장의 페미니스트들이 차이를 묵인하고 함께 할 뿐 아니라 기존의 여성운동세력, 심지어 정부기관도 연대했다(김혜경, 2022). 디지털 공간과 거리라는 익명적 공간에서 전개되는 반성폭력 운동과 대학이라는 구체적이고 비익명적 공간에서 전개되는 반성폭력 운동의 연대 지향성이 이렇게 대조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여교수회나 여성연구소 등의 대학내 여성 및 성평등 기구/기관들, 나아가 페미니스트 교원도 대학 반성폭력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학내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의 역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3. 연구방법과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심층면접으로 2018년 P대 미투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17명(2018년 당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필자들의 관계망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는데, P대 미투 전개 과정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하여 중앙동아리, 소모임, 여성학 수업 수강생, 학과 비상대책위원회, 대학원생 연대모임 등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연구 참여를 요청했다. 동아리/소모임 대표였던 강정연, 배지은, 이수영⁸⁾과는 2차례 만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1회 면접했다.

8) 성명은 모두 가명으로, 실명과 연결하지 않고 성과 이름 모두를 바꾸었다.

진학, 취업 등으로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배지은, 김희연, 배정운, 강한성, 장지선과는 줌으로 면접했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학내 연구실에서 대면 면접했다. 면접시간은 회당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인터뷰 방식은 질문과 네러티브 자극을 조합시킨 인터뷰 방식인 문제 중심 인터뷰(problem-centered interview) 방식을 취했다(우베 플릭, 2009: 166-172). 사전에 전달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페미니즘을 접한 계기, 대학 생활 경험(학과 내 성차별, 여성학 수업 수강 등), P대 미투와 관련된 기억, 미투운동참여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현재의 일상생활에서의 페미니스트로서의 실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면접 종료 이후라도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시한 연구참여동의서를 전달하고 서명받았다.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면접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해 분석했다. 수년간 수업 내에서 쌓은 신뢰와 친밀성, 함께 활동했던 경험과 P대 미투운동 기록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매우 활발하게 구술했고 풍부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면접 후 sns로 여러 차례 추가 질문을 했다.

심층면접 자료 외에 대자보와 포스터 등과 사진, SNS 게시물 등의 1차 자료도 함께 검토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P대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했을 뿐 아니라 교원과 졸업생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미투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지선언을 했기 때문에 1차 자료가 상당히 풍부하다. 필자들은 미투운동 당시부터 향후의 역사기술을 위해 자료를 수집해두었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연번	성명(가명)	성별	입학년도	소속/활동기반*	인터뷰 당시 직업	인터뷰 일자
1	강정연	여	2014	동아리(대표)	취업	2020.06.07.(1차) 2023.08.14.(2차)
2	배지은	여	2016	동아리(대표)	대학원 재학	2022.08.18.(1차) 2022.08.19.(2차)
3	반경림	여	2017	동아리(대표)	취업 준비	2022.08.11.
4	차유빈	여	2015	소모임(대표)	취업	2020.04.19.
5	이수영	여	2016	소모임(대표)	대학원 재학	2020.04.20.(1차) 2022.08.04.(2차)
6	하소정	여	2016	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취업	2022.09.30.
7	배정운	여	2009	대학원생 연대체	취업	2022.08.21.
8	이수경	여	2012	동아리, 소모임	취업 준비	2022.08.09.
9	강수현	여	2014	동아리, 소모임	취업 준비	2022.08.29.
10	김희연	여	2015	동아리	취업	2022.08.29.
11	장지선	여	2014	소모임	취업	2022.08.24.
12	임윤정	여	2015	소모임	취업	2022.08.27.
13	양시영	여	2015	소모임	취업	2022.08.12.
14	손경운	남	2011	없음	취업	2022.08.22.
15	강한성	남	2013	없음	취업	2022.08.21.
16	김예진	여	2013	없음	취업	2022.08.26.
17	정혜준	여	2015	없음	대학원 재학	2022.08.22.

* 동아리: 전교생 참여, 소모임: 특정 학과를 중심으로 타과생 참여

4. ‘P대페미’의 탄생과 ‘페미니스트 스펙타클’

이 장에서는 2018년 P대학 미투운동의 결집을 대학 내부의 운동 주체 형성과 환경적 조건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교내에 총여학생회로 상징

되는 조직적 여학생운동의 명맥이 단절된 상황에서 다양한 운동 및 학술 장은 교내 반성폭력 활동 주체 육성을 담당하는 중요한 토대였다. 특히 미투운동 국면에서 자신들을 ‘P대폐미’라 명명한 세 운동 주체는 학생운동과 ‘진보적’ 세력 및 여성학 수업(학부, 대학원)에서 맺어진 관계 속에서 탄생했다. 더불어 P대학 미투운동에는 페미니스트의 결집과 미투운동 지지를 가시화하는 ‘페미니스트 스펙타클’이 하나의 전술로 작동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⁹⁾. 미투운동 지지 선전물이 캠퍼스를 가득 메우거나 여성학 행사에 참가자가 운집하는 광경 등이 대표적 예시다. 페미니스트 실천이 캠퍼스를 압도하는 장면은 페미니스트 학생들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활동을 한층 고양 시켰을 뿐 아니라, 교내외 구성원들에게 목소리를 보태도록 자극하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미투운동의 확장에 기여했다.

1) ‘편폐미’의 등장, 저항 행동의 마중물

리부트 세대 페미니스트의 결집과 가시화에는 운동권에서의 학습과 훈련이 중요하게 활용되어왔다. 〈불꽃페미액션〉과 〈페미당〉 이가현의 알바노조 및 노동당 활동 이력과 〈페미당당〉 우지안(2018)의 경험은 리부트 세대 내부 “편폐미”의 역할을 보여준다(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22.). 그러나 리부트 세대 페미니스트의 활동에서 운동권 페미니스트의 기여는 진지하게 조명되지 못했다. 때로 운동권이라는 출신지는 여성에게서 떼어내야 하는 정체성으로 폄하되기도 했다. 해화역 시위의 “편배제” 구호가 시사하듯, 전통적인 학생운동조직이 특유의 남성중심성을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해석되면서 여성운동의 성공을 위해 선을 그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반성폭력 운동에서 “편

9) 페미니스트 스펙터클이라는 말은 강남역의 포스트잇 추모행동이 불러일으킨 정동이 시사하듯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군중(행동)의 운집 그 자체가 참여자들에게 부여했던 강렬한 연대감과 고양감을 떠올리며 만들었다.

페미”의 투쟁을 간단히 삭제하기는 어렵다. “편페미”는 운동권의 이중구조와 여성차별을 폭로한 당사자들이었고, 운동권 내 성폭력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을 일으키며 성폭력을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성했다(박정미, 2002; 엄혜진, 2009).

P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일찍이 진보정당 학생조직에서 활동가로 훈련 받은 여학생들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정연, 지은, 희연은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이 예의주시하며 전문적인 활동가로 훈련 시킨 조직원이었다. 이들은 페미니즘 리부트의 열기와 함께 ‘여성’ 정체성에 눈을 뜨면서 따로 또 같이 페미니즘을 학습했고, 이를 통해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선배들은 “여성운동은 부문운동에 불과하다”고 힐난했지만, 이들에게 여성운동은 “내 운동”이라는 확신으로 다가왔다. 여성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은 “운동권 선배들의 요청으로 하게 되는 하기 싫은 일들”과 달랐기 때문이다¹⁰⁾. 정연과 희연은 교내에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2016.5.23.) “같이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여명〉을 만들었다¹¹⁾. 지은은 페미니스트인 친구가 운동권 선배에게 “되게 미움” 받는 것을 목격하며 “페미니즘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만나려 〈싫다잖아〉를 시작했다. 2017년 3월, 페미니즘 리부트 후 처음으로 페미니즘 동아리 홍보물이 캠퍼스에 게시됐다.

희연이가 P대학역 앞에 강남역 집회가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집회를 많이 가봤으니까 집회 분위기를 대충 알았는데, 너~무 막말을 하고, 마 이크를 뺏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못 듣게 하고, 몸부림 일어나고... 되게 충격인 거예요. ‘**집회인데 왜 저러지?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여자라서 그렇구나**’ 그런 생

10) 2000년대 초 P대에서는 “편페미”들이 ... 조직 내 여성운동의 한계를 직시”하며, 성정치운동 세력과 학생운동 출신이 연합하여 함께 활동한 바 있다(지영경, 2018: 72).

11) 희연은 정연에게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함께 〈여명〉을 만든 초기 멤버이지만, 운동권 활동으로 누적된 피로감과 활동의 부담으로 인해 〈여명〉결성 반년 후 동아리를 떠났다.

각이 딱 들고 그럼에도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는 여성분들이 계셨는데, 하나같이 자기가 겪었던 삶, 자기가 봐왔던 사회, 자기가 겪었던 폭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 **P대학역 앞에서 집회, 추모집회를 하고 나서 학내에서도 이런 자리를 열어보자고 얘기가 나왔어요**(정연).

[싫다잖아를 만든 이유는 **페미니즘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것도 있었고, 학생운동 선배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독자적인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좀 더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 선배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후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권위적이었거든요. 아예 활동에서 배제하기도 하고, 제 친구 중에는 사실 **나이주의라든지 권위적인 문화에 굉장히 반대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페미니즘을 먼저 공부하기도 하고, 좀 깨어 있어서 **선배들에게 되게 미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지은).

그 해 〈여명〉과 〈싫다잖아〉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대학 반성폭력 문제 대응이었고¹²⁾, 이 활동은 학내 다양한 여성들의 위치와 상황을 일깨우는 출발점이었다. 〈여명〉은 동아리 결성 첫 달에 대학병원 교수의 성범죄와 예술대학 교수의 성차별적 발언을 규탄하는 대자보(또 다시 부끄러운 P대)를 게시했다(2017.3.). 〈싫다잖아〉는 B시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토론자로 나서며 대학에서 경험하는 여학생의 어려움에 관해 적극 발언했으며, 하반기에는 교내에서 독립적인 집담회를 조직하기에 이른다. 두 사람의 활동 방식과 속도는 이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동아리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동아리원들은 “정연 님이 대자보 쓰시면 나는 불이러” 다니는 식으로 활동의 문법을 익혀나갔다. 외연화된 활동은 정연과 지은이 일찍부터 여성단체가 조직한 〈B시미투운동본부〉의 일원으로 합류하고, P대학 최초 미투 고발 시점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활동하는 것으로 연결됐다(2018.3.8.)¹³⁾. 두 사람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12) 두 동아리는 결성 직후 한 해 동안 교내에서 정기적인 독서·영화모임, 각종 강연회와 토론회 등도 활발히 개최했으며, 가을에는 학내에서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활동도 했다. 2018년에는 〈여명〉 회원수가 80명이 넘을 정도로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은 많은 학생의 지지를 받았다.

를 하며 P대학 재학생 중 처음으로 미투운동을 시작한다.

정연과 지은이 교외에서 동아리 대표로서 맺은 관계도 P대학 미투 운동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동아리 결성 직후 B시 다른 대학 페미니즘 동아리와 만나게 된다. 처음 이 모임은 동아리 운영진이 서로 고민을 나누는 사적인 관계였으나,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 성추행 대응을 계기로(2017.5.)¹⁴⁾, 불법촬영근절집회(2017.11.10.)와 검은시위(2018.3.9.)를 함께 조직하는 연합체로 발전됐다¹⁵⁾. P대학 총장면담(2018.4.24.)에도 함께 배석한 동아리 대표들의 존재는 B시의 모든 여학생이 P대학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압력이 됐다. 동시에 정연과 지은은 기존에 소속됐던 운동조직과도 관계를 유지했다. 정연은 미투 운동 과정에서 가해 교수 징계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총장실을 점거하겠다고 계획했었는데, 이는 자신이 출신 조직의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총장실 점거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으나, 운동조직과의 관계는 2018년 하반기 B시끝장집회를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13) P대 미투운동의 물꼬를 튼 것은 여성단체연합, 성폭력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미투운동B지역대책위의 토론회에서 한 참가자가 31년 전 P대 사회학과 교수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를 증언한 것이었다(연합뉴스, 2018. 3. 8.). 이후 대책위는 각 대학 페미니스트까지 포함한 <미투운동B시본부>를 구성해 활동했고, 총장면담요청 등 P대 미투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또 이 네트워크는 2018년 5월부터 연말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진행된 <B지역 성차별·성폭력끝장집회>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끝장집회는 대학 페미니스트들이 스쿨미투를 실천하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과 조우한 장이기도 했으며 캠페인은 스쿨미투를 적극 지원했다. 이와 같은 활동은 P대 미투운동 참여자와 지역 내 다양한 여성운동 세력의 밀접한 결합을 보여준다.

14) 이들은 성추행 피해 신고에 대해 2차 가해 발언을 한 경찰서장의 징계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통해 그를 좌천시켰다.

15) 이들은 2018년 10월에 B시퀴어문화축제에 함께 참여하기로 한 이후부터 <캠퍼스 페미니네트워크>라는 공식명칭을 썼다. 이전까지는 특별히 모임에 대해 명명하지 않고 동아리 대표와 주요 멤버가 공동으로 행동했다. 2017~2018년 사이 대학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함께 한 행사 포스터를 통해 K대 <파워페미레인저>, D대 <더치페미>, PK대 <부페세력>, PE대 <페듀비결>, KM대학교 <마린페미>가 활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형적인 운동권”은 아니더라도, 진보적 사회단체 활동 경험이 학내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혜준과 정윤이 대표 사례다. 혜준은 미투 고발 초기 학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 대자보 작성을 논의했고, 미투 운동 지지 의사 표명을 위한 포스트잇 작업을 여러 차례 했다. 정윤은 일면식 없던 피해자와 만난 직후(2018.4.16.) 대학원생 연대체 〈한줄단〉으로 활동했다. 이들에게는 사회단체 활동 경험이 문제 제기 능력과 실천력, 연결과 연대에 대한 감각으로 축적되어 있었다.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과정도 활동 경험과 포개어져 있다. 미투 운동의 기억을 더듬는 인터뷰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세월호나 촛불집회 참여, 제주 강정 방문을 언급하는 것, 야학 활동의 경험이나 채식을 결심한 계기가 묻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다양한 정체성이 겹쳐 있는 활동에 여성에 대한 고민 역시 쌓아 올려졌다. 2017년 가을, 혜준이 교양 강좌 〈성의 과학〉 담당교수에게 수업자료로 불법촬영물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요구한 일은 과히 미투 운동의 전초전이라 할 만했다¹⁶⁾. 학교는 이미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의해 들쭉날쭉 시작하고 있었다.

“편배제”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하나의 중요한 구호였다(손희정, 2020: 51). 전통적인 운동권의 남성중심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페미니즘 리부트와 더불어 가장 기민하게 움직였던 이들에는 운동권 출신 페미니스트가 있었고, ‘P대페미’들은 “편페미”가 만든 틀에서 저항의 문법을 익혀나갔다. 또 진보적인 사회단체에서의 학습과 경험이 적극적인 미투 운동 참여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운동권과 여성 사이를 경계 짓지 않는 시

16) 교수는 문제제기한 학생들을 공개 비난하고 수업을 폐강시키겠다고 발언했다. 그로 인해 곤욕을 치르던 혜준을 〈여명〉과 〈싫다잖아〉가 돕고, 해당 교수를 성평등상담센터(현. 인권센터)에 학습권 및 인권침해로 신고하면서 공론화가 시작됐다. 교수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는 대자보(성의 과학 폐강 팩트 체크)를 부착한 〈여명〉과 혜준의 이름을 적시하며, 왜곡된 사실을 공표했으니 진실규명을 위한 공개토론을 하자는 대자보를 붙이기까지 했다. 이 사건은 대학 내 교수와 학생 간 권력 비대칭의 문제, 성평등상담센터의 사건 처리 방식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각, 리부트 세대 페미니스트 내부 “편”들의 역할을 드러낼 때 리부트 세대 페미니스트와 미투 운동의 역할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사회운동의 경험이 거의 없는 ‘평범한’ 여학생들이 미투운동에 합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심에는 여성학 수업이 있었다.

2) ‘결페미’의 탄생¹⁷⁾: 함께 커지는 힘

P대학 미투 운동의 주요 참여자들은 2018년 3월에 여성학 수업을 듣고 있었거나 이전에 들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고,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특별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활동에 나서게 된다. 대학 여성학 강의에서 이뤄지는 특수한 유대 관계 형성에서 이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페미니즘 지식 갱신은 읽기와 말하기, 그리고 듣기라는 행위의 순환 속에서 이루어지며(김주희, 2017), “집합적 읽기 실천”은 서로의 경험을 듣고 답하는 상호 의존성을 통해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강한 지지와 신뢰 관계를 만들기 때문이다(추지현, 2019). 학습 공간에서 형성된 연대감이 차별적 현실에 맞서는 저항 행위로 연결되는 것은 여성학의 실천적 면모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 중에서는 대학의 인간관계 자체를 여성학 수업 중심으로 설명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들이 힘주어 말한 “관계”는 P대학 미투 운동 국면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변모했다.

학생들은 “원탁의 관계”를 통해 끈끈한 학습 공동체를 만들었다¹⁸⁾. 연구참여자 대다수가 수강한 일부 수업은 교수자와 수강생이 모두 동그랗

17) ‘결’이라는 표현은 엄기호의 저작에서 차용했다. 엄기호는 사람들에게 “결”이 만들어질 때 사회적 행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동글게 모여 앉아” 적극적으로 말하고 듣는 관계 안에서 “사적인 경험을 공적인 이슈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고 보았고, 그렇게 “자기를 넘어서는” “결”을 만들며 성장해야만 공동의 행위를 꾀할 수 있다고 했다(엄기호, 2014: 8-25).

18) 이 수업 방식은 본래 참여자들의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수업에 대해 “누구 방관자가 되지 않는” 책임감을 요구하겠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수업이 진행될수록 이 ‘책임’은 수업 참여의 의미를 넘어서게 된다.

게 모여 앉아 토론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눈을 마주치며 격렬하게 감정을 나누는 일은 결코 ‘가벼울 수 없었다’. 사회적으로 많은 여성이 자기의 경험을 큰소리로 외치던 바로 그 시기에 여성학 강좌도 가장 역동적으로 진행됐으며, 수강생들의 이야기는 고발과 고백을 오갔다. 그에서 비롯된 감정의 파고도 높았다. 표면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 “침묵”의 순간조차도 슬픔이나 분노 같은 다양한 감정들로 채워졌다(오혜민, 2022). 연구참여자들이 수업을 심리상담이나 자조 모임에 비유하는 이유다.

유사한 일은 교내 학술행사에서도 있었다¹⁹⁾. 매회 250명 전후의 인원이 참가한 〈성평등네트워크심포지움〉의 규모는 그 자체가 하나의 경관, 즉 ‘페미니스트 스펙터클’이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발표자들의 이야기에 크게 감동하거나 울었고, 자기 혼자만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안심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집단적 경험은 ‘P대페미’의 세력화와 무관하지 않았다. 특히 수영은 단지 친구의 권유로 이 행사에 참석했었다가, 당시 여성학 수업 수강생인 경윤과 수정의 발표에 감명을 받아 그다음 해 여성학 강의를 신청하게 된다. 이처럼 수업과 학술행사를 오가는 경험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의 공통성을 이해하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는 현실의 문제 해결에는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는 책임으로 확장됐다.

2018년 3월, 여성학 수업은 P대 미투 고발에 관한 내밀한 정보가 집중

19) 여성연구소, 여교수회 등 학내 여성기구가 중심이 되어 2016년 가을에 만들어진 〈P대학교성평등네트워크〉가 그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매년 ‘성평등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다. 초기 심포지움의 주제는 여성혐오(2016), 청년여성(2017), 대학여성운동역사(2018)이었으며, 전문연구자들과 더불어 학부생 발표자가 등단하여 공감의 폭을 극대화했다. 2016년 말 250여 명이 참석한 첫 행사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처음으로 학내에 페미니스트들의 존재가 집단적으로 가시화되는 계기였다. 참석자들은 이곳에서 “나만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며 안도하거나 “여성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발전시켰다(여성연구소, 2018). 성평등네트워크 측은 참가자 규모가 자체가 갖는 힘(페미니스트 스펙터클)을 중요시하며 참여자 운집에 전력을 쏟았다.

적으로 오가는 곳이었고, 이는 강남역 사건부터 들끓고 있던 감정들이 구체적인 대상으로 모이는 계기였다. 한성은 3월 초 여자친구와 미투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피해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감정적으로 더 확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다. 남학생들도 페미니즘 동아리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자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윤정이 말하듯, 이 시기에는 대부분이 성폭력 고발에 격노하면서도 자기의 감정을 정치적 행위로 연결하는 방법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수업과 수업단톡방에서 공유된 구체적 정보들은 가해자의 얼굴을 생생하게 만들었고, 분노의 방향과 해야 할 역할도 분명하게 했다. 학생들은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집단행동을 실행했다.

“[서지현 검사, 김지은 씨 고발 이후 3월이 됐는데 학교에서도 [미투 고발이] 터져요,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되게 약간 너무 그때 되게 분노해 있었던 기억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학교 안에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미투가 엄청 생겨날 때였으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그런데 제가 막상 그런 활동에 참여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아는 게 거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수업명 들어가서야] [알았죠]**(윤정).”

수강생들은 온라인에서 흔히 사용되는 거친 언어로 ‘방 꾸미기²⁰⁾’를 하면서 가해 교수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2018.3.27.). 그중에는 학생 본인의 피해 경험과 직결되는 표현도 있었다. 두 번째 ‘방 꾸미기’에서 사용된 언어는 더욱 과격했다(2018.5.30.). 사실 리부트 세대 페미니스트들에게 남성에 대한 노골적 표현은 매우 익숙한 일이지만, 가상공간이기에 허용되었던 표현이 사회적 권위가 부여된 공공장소에 게시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도약이었다. 그 교수가 성폭력 가해자라 해도, ‘학생이 교수에게 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말들이었다. 복도에는 교수 연구실이 줄지어

20) 가해 교수의 연구실 출입문과 벽에 가해 행위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붙이는 저항 행동이다.

있었다. 학생들은 아는 교수를 마주치는 위험도 감수했다. 지선이 말하듯, 이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던 것은 다 같이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었다. 같이 한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용기를 불어일으켰고, 학생들은 집단행동을 통해 현실의 권력 관계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런데 ‘방 꾸미기’ 참여는 집단적 발화에 대한 전적인 동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영에게 ‘방 꾸미기’의 경험을 묻자, 당시 느꼈던 “혼란”을 언급했다. 촛불집회 당시 “친구”와 “놀이”하듯 나갔다는 기억을 꺼내며, 참여 동기는 다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동기나 혼란이라는 그녀의 표현은 당시의 고무된 분위기와 한 발 떨어져 있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시영의 이 “혼란”은 어떤 사안이나 저항 행위에 대한 이해와 결단이 불완전하더라도 함께 목소리를 내러 갈 만큼 강한 감정적 동요가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유현미, 2022a).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는 ‘방 꾸미기’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과정은 명료히 설명되지 않거나, 거의 삭제되어 있었다. 이는 어쩌면 참여자들의 행위 동기에서 “언어는 부차적인 위치밖에 차지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일 테다(최정운, 2013: 121).

상당한 고양감 속에서 진행된 ‘방 꾸미기’는 그 자체가 정치 교육의장이었고, 수강생들은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식세계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시영에게 그 일은 “사랑하는 남자들과 싸우는 계기”가 됐다. 윤정은 2018년 상반기 ‘방 꾸미기’를 비롯한 여러 집회에 참여하면서 “마음을 좀 탄탄하게 먹고”, “참여하는 걸 주저하지는 말아야지”라고 다짐한다. 지선은 이 시기를 “순응적인 인간에서 저항적인 인간으로” 변하며 개인적으로 오래 겪었던 우울감을 해소한 때로 기억한다. 집합적인 연결의 경험이 각자의 삶의 맥락과 함께 새롭게 몸에 새겨진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행동에 동참했던 친구들을 다시 한번 페미니스트로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사이로 인식하게 만든다. 계속해서 이어진 친구 관계는 2019년 초 두 개의 페미니스트 모임으로 가시화되었다.

정신적으로 엄청 우울하고 피폐한 상황이었는데, [수업명] 사람들끼리 만나서 으쌔으쌔 하는 게 저한테는 삶의 원동력이 됐어요. 같이 뭘 한다는 것 자체가. (...) 네, 그냥 **우울감이 싹 날아갔습니다. 너무 즐거운 기억이 그걸로 남아서, 지금도 종종 그때 생각을 해요. 아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어떤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제가 할 수 없었던. **순응적인 인간에서 저항적인 인간으로 탈바꿈**되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모두랑 같이,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였으니까**(지선).

여성학 수업은 하나의 실천 장소가 될 수 있다. “원탁의 관계”는 수강생들 사이에 특별한 결속을 만들었고, 이들은 피해자의 싸움을 자신의 싸움으로 여기며 미투 운동에 참여했다. 학습과 실천을 순환하는 경험 속에서 이들은 여성학 수업을 “페미사관학교”라 부르기도 했다. 이론과 실천을 넘나들면서 “싸우는 여자”로 성장했다는 은유였다²¹⁾.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대학에 조직적 학생운동이 사라진 상황에서 여성학 수업이 성찰적 시민을 키우는 훈련장이자 전장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교수 성폭력’은 교수와 학생의 비대칭적 권력 관계가 젠더화된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며, 교수의 권력은 대학원생과의 관계에서 극단으로 나타난다. 다음에는 위계적 권력 관계의 당사자인 여성 대학원생이 미투운동에 참여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대학원생 연대모임 ‘한줌단’

대학원생 연대모임 〈한줌단〉은 K교수 피해자가 속한 연대체로, 공식적인 첫 대응부터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키워드를 전면 강조했다(2018.4.17.)²²⁾. 〈한줌단〉에게는 피해자와의 만남 이전부터 ‘교수 성폭력’

21) 학생들은 해당 수업에서 매주 2~3편의 학술지 논문에 대한 요약문과 토론문을 작성하고 논평을 받았다. 학생들은 학업량의 무게감을 “9학점짜리 수업”이라는 말로 칭하기도 했다.

22) 〈한줌단〉은 피해자가 최초 조력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가 본인과 관계가 형성

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은 미투 운동 직전 몇 년 간 대학원 여성학 수업과 페미니즘 스튜디오 정기적인 만남을 가졌었고, 이들에게는 ‘여성 대학원생’이라는 특수한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주요한 논의였다. 여기에는 교수에게 착취당할 가능성이 큰 ‘을’의 입장과 더불어, 대학원의 위계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동시에 그곳에 의존하며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는 모순에 대한 성찰이 공존했다. 따라서 이들에게 피해자의 경험은 각자 체험해왔던 교수 권력이 성폭력으로 드러났음을 확인하는 계기이자, 성폭력 가해 교수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거대한 시스템”에 자신이 가담한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과정이었다(한준단, 2018: 124). 이들이 피해 사실에 느낀 분노에는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일은 제한적이거나 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활동이었다.

〈한준단〉은 ‘페미니스트-여성 대학원생’이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속했고, 학내외를 아우르는 여론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²³⁾. 이 무렵 L교수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²⁴⁾, 그 소식에 K교수 피해자가 느끼던 압박감과 불안도 한준단의 활동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한준단, 2018: 119). 이는 가해자 L교수 소속학과 비대위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한 학과비대위는 위치에 따른 입장 차가 있었고, 성폭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부터가 풀어야 할 숙제였다. 그로 인해 대응 활동의

되어 있던 대학원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만들어졌다. 최초 조력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다.

23) 〈한준단〉은 결성 다음 날 페이스북 PNU_METOO 페이지를 만들어 피해 사실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게시했고, 피해자는 방송사(JTBC)와 인터뷰를 했다(2018.4.18.). 활동 한 달 경과 후(2018.5.13.) 해당 페이지를 통해 시작한 ‘파면동의서’ 서명운동에 1,692명이 참여했다.

24) 교원의 징계 수위는 정직3개월 다음이 해임이다. 이 격차가 너무 커서 대부분의 중징계가 정직3개월로 결정되므로 그 사이에 몇 단계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유현미, 2022).

방향, 문건 작성의 수위를 조율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써야만 했다. 이들에게는 다른 연대체와 접촉하는 것 자체가 논쟁거리였고, 교수진과의 의사소통도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까닭에 미투 국면에서 학과비대위의 외화된 활동은 실질적으로 활발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반면 〈한중단〉은 신속히 의사결정을 진행하면서 짧은 기간 사이 여러 외부의 요청이나 문제 사안 등에 대응해나갔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저는 성희롱은, 성추행은 안 당했지만 그 사람이 대학원 내에서 겪었던 여러 교수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 제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는 남성 지도 교수 권력, 아카데미 안에서 남성 교수가 가지는 절대적인 권력과 지방대 출신의 여성 학생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취업을 해보려고 하는 또 공부에 열망이 있는 여성 대학원생이 가지는 관계...**(정윤).

당연히 의견조율이 잘 안 됐고, 매일 밤 그런 회의를 한 거죠.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대자보를 쓸 거면 어떤 워딩까지 써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매일 새벽같이 모여서 **이 워딩은 이게 문제일 수 있고, 왜 이런 워딩을 써야 하며 이런 얘기만 이제 계속 지남하게 하는 과정이었고, (...) 정치색을 띠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비대위에 되게 많았어요. 어디 나가서 사회적인 발언을 하고 혹은 성폭력상담소랑 같이 활동을 한다면 그 교수를 학교에서 몰아내는 것 이상의 정치적인 행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되게 많이 했었고(소정).

〈한중단〉의 주된 교내 활동은 대자보 게시였다. 〈한중단〉 활동 개시 직후 약 열흘은 매일 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운 손글씨의 대자보가 학교 곳곳에 걸렸다. 캠퍼스를 수놓는 대자보 행렬은 교내 미투운동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을 모두 자극하며 교내 대자보전(戰)으로 격화되기에 이른다. 예컨대 학과비대위 중 “급진적” 입장이었던 일부 학생들은 내부에서 느낀 답답함을 가해 교수 규탄 현수막 게시로 드러냈고, 국문과, 철학과, 비정규교수노조의 성명서도 뒤이어 게시됐다. 적은 숫자지만 개인

명의의 대자보도 등장했다. 한편, 반대 세력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자보가 불법적으로 게시되었다는 ‘대자보 허가론’을 주장하며 대자보를 훼손했다. 대자보 위에 지지 세력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낙서하고, 대자보가 쓰레기통에 처박힌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식이었다. 페미니스트 학생들은 온라인 백래쉬에 대한 분노를 더 많은 대자보 작성으로 풀었다. 학생들의 열렬한 참여로 게시판이 대자보로 뒤덮이자, K교수 소속 단과대학에서는 지나친 게시는 삼가라는 공지를 붙일 정도였다. 〈한줌단〉은 ‘대자보 허가론’을 빌미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커뮤니티를 향해 반박문을 게시했다. 이렇게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계속해서 서로를 자극하는 일은 여론의 관심을 지속시켰다.

〈한줌단〉이란 새로운 그룹의 합류는 학부생들에게도 힘이 되었다. 공적인 장소에 가해 교수를 규탄하는 말을 게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제재당할 수도 있었다. 활동 경험이 많은 일부 학생을 제외하면 대다수 학생은 자기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알 수 없어 걱정하기도 했다. 실제로 학교에는 학생들을 위협하거나, 학생들이 활동내용을 검열하도록 만드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페미니즘 동아리를 저격하는 게시물이 꾸준히 작성됐고, 미투 운동 지지 여론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방 꾸미기’ 이후 가해 교수 소속학과 학생이 동아리명을 명시하며 경고문을 부착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줌단〉은 ‘언니’ 지원군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한줌단〉의 당사자성과 예리한 문제의식은 순식간에 활동을 밀어붙이는 힘이 되었으나, 운동의 시야를 좁히는 문제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들은 ‘여성 대학원생’이라는 동질성을 피해자와의 동일시로 연결하면서 자신들을 고립된 존재로 위치시키곤 했다. 그러나 P대 미투 운동은 다양한 단위의 협력으로 시작됐고, 〈한줌단〉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곳과 연결되어 있었다. 전국을 휩쓰는 미투운동의 노도 하에서 가해 교수를 감싸는 적극적 움직임도 생겨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외부와 연

결되는 동안 단체의 성격이 다르기에 발생하는 견해차나 의사소통의 문제를 피해자에 대한 공감 결여나 가해자 감싸기 등으로 과도히 해석했다. 연대 과정이 오히려 외부와 선을 긋고 자신들의 “소수자성”을 확인받고 강화하는 시간일 때도 있었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주변을 재촉했고, 이것은 인권센터와의 갈등 격화로 번졌다. 사실상 가장 협력해야 할 교내 기관을 잃는 패착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감정적 부침은 〈한줌단〉의 “영혼을 소진시켰다”(한줌단, 2018: 131).

2018년 6월과 7월 두 명의 가해 교수가 차례로 해임되었다. 징계가 결정된 속도와 수준 모두 이례적이었다. P대 미투 운동은 대학의 다양한 페미니스트 그룹이 상황에 따라 응집력 있게 기능하는 것이 대학본부에 강력한 저항 압력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줌단은 대자보전(戰)이라는 불쏘시개를 통해 P대 미투운동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지지 여론을 지속시켰다. 삼시간에 불붙은 운동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 수 있는 세력은 없었다. 징계결과 발표 후 교내 미투 운동은 사실상 종료된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운동의 열기가 여전했다. 활동을 하며 이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미투운동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생각보다 힘이 있는 존재이자 저항할 용기를 낼 수 있는 능동적 행위자임을 깨달으면서(유현미, 2018: 233), ‘미투 그 후’ P대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활동을 전개했다.

5. ‘미투 그 후’ 활동의 형성과 전개

이 장에서는 미투운동이라는 강력한 연결의 경험이 참여자들에게 미친 영향력과 그에 따른 일상의 실천을 검토한다. 미투 이후, 그 이전까지는 페미니즘 동아리나 여성학 수업의 참여자였던 ‘평범한’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모임을 구성하면서 여러 활동을 기획 및 주도하게 된다. 2019년초 나란히 결성된 두 개의 소모임은 학과의 남성중심적 네트워크와 각을 세

우며 여학생들만의 “친밀성의 공동체”를 탄생시켰다. 비록 소모임 자체는 짧은 수명을 다하고 사라졌지만, 이들은 졸업 이후에도 일종의 정치적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동시에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인으로 존재하는 각자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성평등 가치를 중심에 두는 여성 그룹에서 집단적 활동을 도모하거나, 자신을 페미니즘(교육)을 실천하는 주체로 설정하며 자기 주변의 규범을 바꿔나가는 식이다. 이와 같은 ‘미투 그 후’ 일어난 구체적인 실천들을 조명함으로써 미투운동 참여 경험이 페미니스트 및 페미니즘 운동 재생산이라는 후속효과를 창출하였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친밀성의 공동체’와 정치적 목소리

〈여명〉과 〈싫다싫아〉가 활동가의 소진과 모임 해산으로 변동을 겪는 가운데, 2019년초 특정 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보스〉와 〈해쳐〉가 등장한다²⁵⁾. 이 새로운 모임의 출발은 사실 수업 바깥에도 페미니즘이라는 관심사를 매개로 안전하고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누군가는 소모임에 대해 여성들이 속 편하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곳이라는 의미로 “빨래터”에 비유하기도 했다²⁶⁾. 하지만 대학의 남성중심문화에서

25) 공식명칭은 〈P대학교 여성주의 대모임 해쳐〉와 〈P대학교 사회학과 여성주의 소모임 보스〉다. 해쳐라는 명명은 ‘여성주의의 부화기(hatcher)가 되겠다’, ‘남성중심주의 사회를 해쳐나가겠다’, ‘우리가 다 해쳐먹겠다(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의미다. 보스BOS는 ‘성차별을 베는 칼날(Blade On Sexism)’, ‘유리천장을 뚫고 우리가 보스가 되겠다’는 의미다. 해쳐는 신입회원 모집 공고에 “언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언니들이 여기 있다”는 문장을 사용하며, 모임의 주된 키워드를 ‘언니’로 설정했다.

26) ‘여성주의 실천’을 전면에 내건 〈여명〉 및 〈싫다싫아〉와 달리 두 동아리는 여학생들의 ‘친목’과 ‘네트워킹’을 강조했다. 또한 〈여명〉은 일찍이 교차성 페미니즘을 주창했지만, 이들은 교차성이나 트랜스젠더 배제냐를 놓고 뚜렷하게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 혐오발언금지와 같은 내규도 없었다. 이러한 모임의 성격은 구성원들에게 ‘자유로움’을 줬다. 트랜스젠더에 대해 가지는 서로 다른 입장은 친목모임이라는 목적성 속에서 쉽게 희석되었다.

여학생 모임은 단순한 “놀이터”로 보이기 어려웠고, 〈보스〉와 〈해쳐〉도 자신들의 선언적 성격을 분명하게 인지했다. 두 동아리는 “남학생들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조금 폭력적이었던 분위기”에서 여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외면당했던 역사에 주목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학과에 애착을 가지며 남학생들과도 잘 어울렸던 여학생일수록 남학생들의 끈끈한 관계와 여성 배제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페미니즘 소모임이라는 틀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남학생들의 “형·동생” 관계보다 더 강한 “언니·동생”이라는 지지집단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소모임 활동은 여성학 수업이나 미투운동과는 다른 “친밀한” 분위기를 통해 여학생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해쳐〉와 〈보스〉에게 페미니즘 소모임은 여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해 대학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창구였다. 대표의 주된 역할은 언제든지 만날 구실을 만들어 “같이 놀고 술을 마셔 주는 것”이었는데, 예컨대 “이별”이란 남성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했기에 모두가 모여서 성대한 축하파티를 열어야 하는 즐거운 일이었다. 또 여성들만의 장소는 남학생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여러 정신적·신체적 불편함이 소거된 곳이었다. 남성의 시선을 의식해 대화 주제와 표현을 검열할 필요도 없고, 어떤 화제든 바로 꺼내고 공감받으며 커다란 해방감을 느꼈다. 때문에 〈해쳐〉의 신입회원에는 “저기서 놀면 재밌다고 소문”이 나서 “친구를 데려오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다. 실제로 공대와 같은 ‘남초학과’에서 걸 돌던 여학생들은 소모임에 깊은 소속감을 가졌다.

동시에 “언니”들은 자신이 “여동생”에게 시험 족보나 취업 정보를 개인적으로 전해주는 존재가 됐다는 것에서도 커다란 효능감을 얻었다. 이들은 일찍이 남학생 네트워크에서만 족보나 일자리 정보가 유통되고, 자신들에게 정보 획득의 기회가 절대로 오지 않는 것에 분개하고 있었다. 여동생들이 족보를 얻고자 남학생들의 기분을 맞추며 어울렸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이들은 지금껏 여학생들이 학과의

각종 유용한 정보 유통망에서 파들려졌던 것에 보복하듯, 동아리 내부에서 족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유사한 진로를 가진 친구들을 서로 소개하며 도움을 주고받도록 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정보 교환은 이후에 두 동아리가 학습/취업 정보 공유 홈페이지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발전됐다.

이왕이면 다- 끝어주고 싶고, 족보도 나눠주고 싶고, 이때까지 내가 학과에서 가졌던 불만이나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고 싶은, 그리고 [〈해쳐〉에서] 그제 너무 가능했던 것 같아요. (...) 저는 족보 없이 공부했으니까 제 족보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애들한테 다 뿌려주고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 뿌듯함이 있었죠.** (...)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 동기가 뭐였을까? 왜 그랬을까? 그제 [여자친구들과 놀고 서로를 돕는 것이] 되게 **진심으로 즐거웠던 순간이 많았어요. 자유롭고 즐거웠던 순간이 많아서, 그걸 애네가 대학교 때 꼭 맛을 보고 졸업을 해야될 텐데 하는 마음도 있었**고(수현).

그런데 자기들만의 “놀이터”에서 이루어지는 “친목”에는 여러 페미니즘 도서를 읽고 왁자지껄하게 이야기 나누는 일이 뒤섞여 있었다. 유빈에 따르면 당시는 “여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었고, 소모임에서 페미니즘 도서를 읽는 일은 이들에게 친숙했다. 마침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독서모임을 지원하고 있었기에 활동비를 얻기도 쉬웠다. 이들은 연애에 관한 에세이부터 여성노동 관련 사회과학 서적까지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집단적인 학습을 이어나갔다. 참가자들은 매주 발제문을 쓰거나 질문거리를 가져오면서 “폐 세미나 수업 같은”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었다. 여성학 수업을 여러 차례 들은 학생들은 페미니즘을 새롭게 접하는 학생들에게 선생 역할을 자처했다. 그렇게 참가자들은 책 내용에 자기 일상의 고민을 겹쳐 말하면서 여성으로서의 시야를 확장해나갔다.

소모임 활동은 다양한 여성 문제를 새롭게 접하고, 거기서 비롯된 문제

의식을 발언하는 외부 활동으로도 연결됐다. 예컨대 〈해쳐〉가 성매매 여성 지원 기관의 현장학습에서 받은 “충격”은 유빈이 교내 인권센터 세미나에서 반성매매를 주장하는 발표를 하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보스〉는 성매매 관련 도서 저자인 학과 선배를 초청해 북토크를 열었다. 또 〈보스〉, 〈해쳐〉는 물론 정연과 지은도 함께 준비했던 위안부 망언규탄 집회에서²⁷⁾, 윤정은 예비 교사인 본인의 교육관을 토대로 교육자가 역사적 사실을 오독하고 부정하는 것이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이를 위해 윤정은 문제 영상을 전체 검토하고 내용을 정리했다. 반복되는 외부와의 접촉은 성매매 여성, 일본군 위안부처럼 여학생의 일상과는 먼 여성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으켰고, 이들에게 발언을 준비하고 앞에 나서는 시간은 자신을 공공의 장에 위치시키는 훈련의 시간이었다. 그러니 “어떻게든 여자들을 찢으려고 갈라놓으려니 하는 체제”에서 “여자가 셋 이상 모이면 운동”이라는 유빈의 말은 과언이 아니다. 2019년 11월, 〈여명〉과 〈보스〉, 〈해쳐〉가 여성연구소와 함께 학술행사를 공동개최하며 설리와 구하라의 죽음을 추모하는 행사를 연 것은 활동력의 정점이었다. 여기에는 2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했다.

저는 **셋 이상 모여서 뭔가를 도모하면 다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명〉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운동이고. **‘우리끼리 친목 다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의 이런 지대 위에서 **‘우리 여자들끼리 친목 다지고 싶어’**라고 얘기하면 **되게 정치적인 의도가**

27) 2019년 여름과 가을에는 소모임 구성원들이 주최하고 참여한 토론회와 집회가 다수 열렸다. 2019년 7월 19일 P대 사회대 학장(정치외교학과)과 행정학과 교수가 북 콘서트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P대 페미니스트들은 즉각 망언규탄과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2회 개최했다(8월 28일, 9월 4일). 이 집회에는 총여학생회 출신 졸업생은 물론이고 B시여성회 및 B시여성단체연합, P대학교민주화운동동지회 등 광범한 세력이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대 여교수회와 함께 개최한 다큐멘터리 〈김복동〉 상영회 및 감독 GV(9월 3일)에는 B시시민까지도 다수 참여했고 참가자들은 250여 명을 수용하는 대형 강의실 계단과 복도에 빼곡하게 앉아 영화를 관람했다.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유빈).

[위안부 집회에서] 발언은 반일종족주의 복 콘서트 영상을 보고 문제가 되는 내용을 짚 정리를 해서.. 그때도 그 발언한 게... ‘언니 발언할래?’ ‘나?’ ‘어 해 줘!’ ‘어(웃음) 이렇게 했고(웃음) ‘한 번 해볼게 열심히 해볼게’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뭔가 행동할 수 있게끔 해 준.. 뭔가 앞에 나설 수 있게 해줬던 게 개네들이라서(윤정).

2022년 9월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인사건 추모집회는 교내에 페미니스트 그룹이 재가시화되는 계기였다(탁경륜, 2022). 사실 소모임 활동은 2020년에 코로나와 주요 구성원의 졸업과 취업으로 짧은 수명을 다했다. 하지만 두 동아리의 행동력은 2년간 매월 여성의 날을 의미하는 3800원을 모금해 청소년 지원 기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살아있었다. 와중에 신당역 사건은 이제 막 사회인이 된 참여자들에게 다시 한번 절실한 문제로 다가왔다. 단톡방에서는 추모집회를 열자는 의견이 모였고, 학내 곳곳에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정문 앞에 추모 공간을 설치했다. 추도식에는 “이런 일이 있는 김에 친구들 보러” 먼 곳에서 KTX를 타고 온 사람도 있었고, ‘남초’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처지에 공감한 공대 출신 졸업생도 참여했다. 모두 소모임에서 만난 인연이었다. 대자보를 쓰는 공간에서는 “어른이 되면 장례식에서 만난대”라는 대화가 오갔다. 그리고 이 활동은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 학생식당 노동자의 무기한 파업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거는 행동으로 이어졌다(2022.10.31.). 이 활동들에는 〈한줌단〉과 여성학협동과정의 학생들도 참여했으며, 소모임 구성원 일부는 소속된 대학원 학생회와도 상의해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제 “친밀함의 공동체”는 추억을 공유하는 대학 친구들의 평범한 관계다. 소모임의 출발이 그랬듯 이 공동체는 특정한 정치적 행위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나 행위 양식을 가지는 집단이 아니다. 그러나 각각은 공적

영역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독립된 주체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동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함께 행동했던 경험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나아가 “친밀함의 공동체”는 행위자들이 페미니스트 그물망에 속해 함께 존재하는 한 필요하다면 집결하여 함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각자의 자리에서²⁸⁾

“사회인”이 된 연구참여자들은 각자 소속된 곳에서 새롭게 관계를 만들며 페미니스트 그물망을 조금씩 넓혀 나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연은 ‘여성노동운동’을 상상하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었고, 정연의 연결망은 페미니즘 리부트 세대가 여전히 ‘운동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정연은 2019년 이후 소진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운동’ 대오의 바깥에서 여성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 시간은 정연에게 젊은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자기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도, 제대로 협상하지도 못하는 존재임을 실감하고, 주변의 친구들 또한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던 중 마침 스쿨미투를 지원할 때 만난 활동가A가 “더 진화하고 싶다”며 스터디 모임을 제안하여 정기적인 만남을 시작하게 된다. 둘은 누군가 한 명이 운동을 시작하면 무조건 함께 운동하기로 약속한 “동지” 사이이기도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다시 페미당이가현과 타지역 성폭력상담소 재직자와의 정기적인 만남으로도 연결되었다. 활동가A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다”는 정연의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과의 교류 활동”을 시작한 이가현을 소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연은 “역전의 용사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며 “노동자가 된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날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과거 소진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고,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운동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모색하고 있었다.

28) 강윤지의 글(2023)에서 가져온 표현이다.

B사에서 20대 여성이 노조를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일단 네트워크라도 만들어서 교육을 한 다음에... (...) 제가 같이 만나던 친구들이 다 노동자가 되니까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만나지? 산업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른데 어떻게 만나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노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는,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랑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정연).

다른 한편으로, 2018년 격렬했던 미투운동은 각 계에 성평등 가치를 중심에 둔 여성 그룹을 가시화하는 변화를 불렀고, 연구참여자들은 바로 그곳에 소속되기 시작했다. 특정 직업군 내부에서 속속 등장한 여성 중심 공간은 “〈보스〉의 연장선”처럼 여성들끼리 친밀한 감정을 나누며 관계를 이어갈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남성중심적 문화에 대항할 수 있게 돕고 있었다. 이러한 조직의 힘을 알았던 지선은 경찰이 되기 전부터 경찰 젠더 연구회²⁹⁾에 가입하기를 희망했었고, 입직 후 “알음알음 아는 사람 통해 들어”갔다. 그는 바로 그 공간에서 극단적인 남초 환경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곤란을 해소하고 있었으며, 조직 내 팽배한 여경에 대한 편견에 “여경들끼리 연대하는” 모습으로 대항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선은 인터뷰가 진행된 시기에 젠더연구회에서 한 여성 경찰이 처한 어려움에 공동명의로 문제 제기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 남성중심조직의 “미꾸라지”가 되겠다는 결심과 포개어져 있다. 그뿐 아니라 젠더연구회에서 다양한 위치의 선배들을 만나는 일은 ‘여성경찰’로 성장해 나가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사실 입직하고 되게 즐겁게 팀 생활을 하긴 했어요. (...) 재미없는 건 아니었는데 확실히 외로운 건 있었어요. 혼자 여경이니까 말 못 할 그런 사정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뽕은 말하는 거 다 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해소할 창구가 필요

29) 경찰젠더연구회는 2017년 경찰 간담회에서 조직 내 여경 대상 성희롱 문제 제기가 있는 후 그 자리에 참석했던 여경들을 중심으로 2018년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했던 거죠. 대학생 때처럼- (...) 그리고 또 여경들끼리 뭉쳐야... 그런 말을 들었거든 ‘여경의 적은 여자’라고...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님을 또 느끼는 창구도 필요했고... 또 여경들끼리 연대하는 그런 것도 필요했고... 어떻게 보면 보스의 연장선이죠(지선).

직업 내부의 개인적 실천이 페미니즘 관점의 확장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있다. 먼저 ‘페미니스트 교사’인 연구참여자들은 교육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들의 교육 방침은 성평등 교육 반대와 페미니스트 교사를 비난하는 여론의 틈새를 벌린다. 연구참여자들의 페미니즘 교육이 지식 전달 그 이상이라는 점은 일상적인 지도에서도 드러난다. 의도적으로 민낯, 짧은 머리, 바지 정장을 입은 모습으로 연출하면서 여학생들에게 외모 가꾸기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부여했다. 또 희연은 마치 자신이 여학생들의 “언니”인 것처럼 여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기도 하고, 페미니스트 학생을 보호할 방안을 미리 상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민은 스쿨미투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을 강요당하는 교사의 위치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한편, 학부 시절부터 꾸준히 채식 모임을 진행했던 지은은 채식 급식의 필요성을 고민하며 대학원에 진학했다. 학교 공간이 사회적 포용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식사 선택권이 필수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지은에게 채식 급식은 교육 공간에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및 타자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을 확장할 수 있는 일상적 방안이다.

여자 중학교라 여성 인권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학교는 제가 매일 수업을 구상하고 활동을 짤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도 사실 페미니즘도 그렇고, 제가 요즘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환경 이야기도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것만큼 다 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웃음). (희연)

학교 3년 다니면서 화장한 날이 이틀 될 거예요. 어쨌든 누군가한테 내가 뭔가의 표본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하고, 저는 그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 늘 턴트를 바르고, 늘 뭔가 이렇게 좀 화장을 한다면 아이들도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시영)

마지막으로 개별화된 실천 역시 존재한다. 경운과 한성은 ‘남성 페미니스트’로서 자기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들의 실천은 사소해 보이지만, 남성으로서 자신이 소속된 곳의 일상적인 문화와 규율을 바꿔보려 시도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경운은 여전히 노골적인 여성차별의 문화가 남아 있는 사무실에서 자기의 지위를 활용해 특정 업무에 대해 “성비를 맞추”거나, “가사노동스러운 일들을” 남성에게 의도적으로 맡기는 방식으로 차별/성역할 문제에 신경을 쓴다. 또 자동차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한성은 주차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일부러 “여성전용주차장” 이야기를 꺼내 여성 대상 범죄가 빈발하는 현실에 관해 말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한다. 한성은 여성학 수업을 들은 이후부터 남학생들의 단톡방에 적극적으로 그들의 여성혐오적 생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읽을거리나 영상을 공유해왔었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실천을 이어나가는 모습은 수경의 발언을 되새기게 만든다. 인터뷰가 진행되던 2022년 여름은 백래시가 한창이었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몇 년의 폭발적인 활동이 마치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만 같았다. 교내에서도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수경은 선불리 “침체”를 말하지 않았다. 젊은 여성들에게 페미니즘 리부트와 미투운동을 지나온 경험은 새겨져 있을 것이고, 그 여자들은 어디에나 있으며, “일상 속에서 자기만의 페미니즘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리라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경의 말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의 배움과 경험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남은 불씨는 필요한 때에 다시 불붙고 폭발을 일으킬 것이라는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저는.. 침체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 미투운동 집회도 가고 끝장집회도 가고, 그리고 해화역 시위도 갔었거든요. 근데 [집회에 같이 참여했던 그 여자들이 다 어디로 증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시위했던 여자들이 다 일상 속에서 자기만의 페미니즘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각자 다양한 이슈를 맞이하면서... (수경)

6. 결론 및 함의

이 논문에서는 P대학 미투운동 사례를 통해 대학에 총여학생회로 대표되는 조직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반성폭력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더불어 미투운동 참여자들의 ‘미투 그 후’를 조명함으로써 강렬한 연결의 경험이 참여자들에게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치적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토대이자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혔다.

먼저 각 주체의 탄생 경로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 논문에서는 학생운동 조직 출신 “편페미”의 활동을 조명하여 이들이 반성폭력 운동에 기여한 방식을 밝혔다. 운동권에서 축적한 특수한 훈련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대학 여성운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활동으로 이어졌으며, 대학생-페미니스트를 연결하고 가시화하는 역량으로 발휘되었다. 그 뿐 아니라 이들은 특유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학외에서도 (대)학생-페미니스트 네트워크를 다졌고, 다양한 사회단체와 밀접히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는 2018년 상반기에는 P대학에서, 하반기에는 B시 전체에서 반성폭력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미투운동 및 여성운동이 각계각층의 운동경험과 분리되지 않으며 각각의 역량이 결합한 결과물임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이 논문은 “결페미”를 통해 대학 여성학 수업이 여성운동 주체를 육성하는 장이었음을 드러냄으로써 여성학이 실천학문으로서 가지

는 힘을 다시 한번 규명하였다. 학생들은 “원탁의 관계”를 통해 ‘자기’의 경계를 넓혔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의 책임을 나눠 가졌다. 이는 여성학이 사회참여적 시민 육성이라는 과제를 더욱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페미니즘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고 다양한 존재의 공존을 도모하는 관점임을 고려한다면 운동주체 형성은 여성 문제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멈추지 않는 사회운동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구성원 간 연대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해방적 역량과 관점을 기를 수 있는 페미니즘 지식에 노출될 기회를 늘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줌단〉의 활동은 대학의 권력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대학원생’이라는 위치성이 교수 성폭력의 본질에 대한 간파로 이어지고, P대 미투운동 국면에서 해당 정체성을 중심에 둔 적극적 선전 활동으로 발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결합은 수평적 결속과 관계성을 체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그 내부에서 선행되었던 성찰적 토의와 토론이 미투운동이라는 ‘실천’과 연결될 때 만들어지는 순간적인 폭발력을 드러낸다. 〈한줌단〉의 사례는 일상에서 공동체를 경험하고 성평등/민주주의를 논하는 다양한 자장이 사회운동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토록 한다.

다음으로 ‘P대페미’라는 미투운동주체 형성 및 미투운동 성과 도출에서 “페미니스트 스펙터클”이 전술적 효과를 발휘했음을 짚고자 한다. 교내에 페미니스트들이 ‘보여지는’ 장면은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의 백래시와 대비되며, 압도적 물량 공세를 목격한 힘은 대학에서 페미니스트로 활동할 수 있다는 확신과 안심감으로 이어졌다. ‘방 꾸미기’, ‘포스트잇 작업’, ‘대자보전(戰)’은 교내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에 대한 비난과 반대 여론을 무력화했다. 이는 대학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 자기의 경험을 발언하고 집합적으로 행동하는 배경이었다.

이 전술의 구사에는 대학 내 여성기구와 여성교원의 역할도 컸다. 대학 여성기구 및 여성교원의 주변화로 페미니스트 교원이 교내 성평등 문제에 대응하며 겪는 과중 노동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유현미, 2022a; 추주희, 2022). 선행연구가 드러내는 현실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 글에서는 여성교원이 교육의 주체로서 가지는 역할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P대 성평등 네트워크>도 성평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발족한 교내 여성/성평등 기구 연합체였으며, 그중 하나인 여교수회는 2012년에 대학본부가 성폭력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계를 내리자 그 교수를 학과 밖으로 추방하는 활동에 성공한 적도 있다. 여성교원은 여학생 운동에도 영향 미칠 수 있다. <페미회로>의 대학 페미니즘 동아리 인터뷰 시리즈에서는 페미니스트 교원의 활동 지원 사례가 등장한다(페미회로, 2019). <여명>의 직접적 결성 계기 또한 <성평등네트워크>의 총여학생회 재건 요청이었다. 따라서 대학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 구성원 간의 관계성을 확장하고, 그 ‘그물망’에서 여성교원의 역할을 질문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한편, 논문의 본격적 분석대상은 아니었으나, P대 미투운동은 B시여성운동단체의 조직적 대응으로 시작됐으며, 여러 여성운동 세력은 학생들의 학교 밖 활동을 견인하는 핵심 동반자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리부트 세대 페미니스트의 활동에서 드러나지 못했던 지역 여성운동의 공헌을 설명하며, 세대 간 연대가 P대 미투운동의 바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오랜 시간 비수도권 여성운동은 지체와 결핍의 공간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P대 미투운동의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여성운동의 활동력이 결코 성기지 않으며, 여성운동단체의 선전과 협력이 대학 미투운동 성과 도출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부산여성운동 역사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마녀들의 카니발>에는 “부산 여성운동은 수많은 ‘전국 최초’ 타이틀을 지닌다”는 발언이 등장한다. 이는 서울지역의 여성주의 실천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비가시화되었던 비수도권 지역 여성운동을 새롭게 점검할 필요성

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다(최나현, 2022).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미투운동 참여자들의 ‘미투 그 후’를 통해 미투운동의 경험이 일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여학생 모임을 만들고, 그 틀을 토대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친밀성의 공동체”는 최근까지도 학내 문제에 개입하면서 행동력이 살아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자신을 정치적 주체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연결망에서는 언제든지 정치적 실천이 배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인”으로 존재하는 각자의 자리에서도 자신들을 페미니즘(교육) 실천 주체로 설정하고 주변의 질서를 바꾸어나가고 있었다. 이를 통해 “페미니스트 사회인”들의 일상적 행위가 페미니스트 육성에 이바지하고, 여성운동의 새로운 싹을 틔우는 씨앗임을 목격했다. 페미니스트 재생산과 여성운동의 지속은 ‘각자의 자리에서’ 흩뿌려지는 수많은 작은 실천들을 살피고, 독려하고, 연결하는 데에서 다시 출발할 것이다.

〈부표〉 2018년 1학기 P대학 미투운동 일지

날짜	
3. 8.	사회학과 교수에 의한 성추행 피해 미투(피해발생시점 1987년): 미투운동B시본부 주최 미투운동토론회 <당연한 걸 당당하게 말하다>
3. 12.	예술대 예술문화협동과정 졸업생 예술문화영상학과 L교수 성추행 미투(피해발생시점 2013년): 페이스북
3. 13.	다수 피해자들(14일까지 합계 15명)의 예술문화영상학과 L교수 성추행 미투: 페이스북과 트위터 (3월말까지 총 20명의 피해자가 피해 고발. 1990년대에도 피해자가 있었음을 확인)
3. 14.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L교수 제외 전원) 교수비상대책위 구성 및 입장문 발표
3. 15.	예술문화영상학과 학생 자치비상대책위 구성, 성명서 발표
3. 20.	인문대 언어정보학과 K교수 성추행 피해자(피해발생시점 2015년) 인권센터 상담
3. 27.	L교수 연구실 주변 성범죄규탄 유인물 부착
3. 27.	K교수 피해자 인권센터 사건 접수
3. 28.	본부앞 집회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목소리 #들어라 우리의 목소리를>
3. 28.	국제학부 M교수(외국인) 성희롱 발생
4. 3.	국제학부 M교수 계약 해지
4. 6.	여성연구소 입장문(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라) 발표
4. 11.	여성연구소 소장 B일보 컬럼(대학내 미투 운동과 성평등 교육) 게재
4. 17.	K교수 피해자 기자회견
4. 17.	대학생원 지지자 모임 <한중단> 결성 및 활동 시작 (대자보 작성,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등)
4. 18.	K교수 피해자 JTBC뉴스룸 인터뷰
4. 19.	여교수회 미투운동지지 성명
4. 23.	총장 미투운동지지 답화문(1차)
4. 23.	졸업생들 미투운동지지 현수막 다수 부착
4. 23.	국문과 대학원생들의 미투운동 지지 성명
4. 24.	미투운동B시대책위 총장면담(캠퍼스페미니스트네트워크도 참여)
4. 24.	인문대 교수회 입장문 발표
4. ?	사회학과 교수진 성추행피해자(3.8. 미투운동토론회) 위로문 전달*
4. 26.	정문 앞 포스트잇 부착(ME TOO WITH YOU)
4. 28.	비정규교수노조 지지성명 발표
4. 30.	철학과 대학원생 미투운동 지지성명 발표
5.3/18/31.	여성연구소 · 사회학과 공동주최 <미투운동의 현황과 과제 연속강연>(3회)
5. 4.	교수성폭력 피해자-총장 면담
5. 16.	사회학과 대학원생 미투운동 지지성명 발표
5. 30.	K교수 연구실 주변 성범죄규탄 유인물 부착
6. 27.	L교수 해임 결정
7. 17.	K교수 해임 결정
8. 13.	총장 미투운동지지 답화문(2차)

* 사회학과와 의 경우 가해자가 10여 년 전에 사망했고 현교수진 중 성추행 발생 당시 교원이었던 사람이 없는 사정 등으로 미투운동의 대의에 공감하며 피해자를 위로하는 내용의 문안을 전달했다.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 강남식. 1997. “영국 여성노동정책과 여성들의 ‘자매애’: 1840~1880년대.” 『한국여성학』 13(1): 51-85.
- 권김현영. 2018. “미투, 반성폭력 운동의 윤리·정치적 전환.” 『문학동네』 95: 329-347.
- 권명아. 2018. “지역여성의 비가시화, 선거를 통한 지역 전유의 관습 - 보궐선거 전후의 젠더 정치를 중심으로.” 전남대링크+사업단, 전남대대학원혁신본부 주최 학술 행사 「페미니즘. 지역, 정치 - 빈집의 여성사회문화학」 자료집(2021.8.17.).
- 권은채. 2022. “참을 수 있는 공동체의 ‘가벼움’: 페미니즘 책모임 ‘위폐’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소고.” 『韓國文化人類學』 55(3): 149-190.
- 김보명. 2008. “1990년대 대학 반성폭력 운동의 여성주의 정치학.” 『페미니즘연구』 8(1): 191-217.
- _____. 2018. “페미니즘의 재부상, 그 경로와 특징들.” 『경제와사회』 118: 99-138.
- 김엘림. 2016.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 『法學論集』 20(3): 281-320.
- 김 영. 2020. 『주부협정과 파트타임 노동』.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 원. 2004. 『여공 1970 그녀들의 반(反) 역사』. 서울: 이매진
- 김주희. 2017. “‘독학자들’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지식문화 현재성에 대한 소고. 신간 페미니즘 서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3: 351-379.
- 김태영·육주원. 2022. “일상화된 혐오와 생존의 페미니즘: 지역 청년여성들의 페미니스트 되기.” 『안과 밖』 52: 157-188.
- 김태현. 2018. “대학 내 위계형 성폭력.” 『문화과학』 95: 100-116.
- 김하영. 2022. “지역 거주 20~30대 여성들의 페미니스트 인식과 실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젠더와문화』 15(2): 133-168.
- 김혜경. 2022. “페미니즘 리부트와 지역 여성운동: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8(1): 179-211.
- 고은혜. 2019. “웹사이트 위마드의 ‘홍자’ 담론 분석: 굴절된 자기혐오라는 성공예의 동력.” 『미디어,젠더&문화』 34(4): 53-97.
- 박경태. 2018. “성폭력 교수 구하기에 맞선 학습권 투쟁, 9년의 경험과 기억 이야기.” 『경제와 사회』 120: 36-89.
- 박정미. 2002. “성폭력과 여성의 시민권: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위원회’ 사례 분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백영경·유현미·전희경·최나현. 2019. “페미니즘이 대학을 구한다.” 『창작과비평』 47(2): 275-304.

- 손희정. 2015. “페미니즘 리부트.” 『문화과학』 83: 14-47.
- _____. 2016. “젠더戰과 퓨리오-숙들의 탄생.” 『여/성이론』 34: 35-59.
- _____. 2020. “다시 물질, ‘디지털 페미니즘’이라는 정치적 기획에 대한 노트.” 『문화과학』 104: 49-72.
- 신상숙. 2007. “한국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신상숙 · 김수아 · 양현아 · 최은영 · 노정민 · 박선영 · 정지원. 2019. “대학 성희롱 · 성폭력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엄기호. 2014. 『단속사회』. 서울: 창비.
- 엄혜진. 2009. “운동사회 성폭력 의제화의 의의와 쟁점.” 『페미니즘연구』 9(1): 31-78.
- 오혜민. 2022. “침묵으로 쓰는 백래시 시대의 페미니스트 페다고지.” 『여성학논집』 39(1): 3-33.
- 오혜진. 2022.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페미니스트-되기의 해방과 곤경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5(1): 39-79.
- 우지안. 2018. “미투, 살아남은 자리에서 말하기 = ‘권 배제’와 연대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65: 74-99.
- 유현미. 2018. “성차별적 위계구조의 담장 넘기: ‘교수 갑질’ · 성희롱 사건 대응활동과 대학 미투운동의 현재.” 『경제와 사회』 120: 90-131.
- _____. 2022a. “대학 성폭력의 지속과 성별화된 능력주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22b. “청년 여성들의 성평등 실천, 그 가능성과 한계: 대학 미투 운동 분석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12(4): 5-47.
- 이미정 · 박종석. 2019. “대학 내 성희롱 · 성폭력 고충처리 현황과 문제.” 『이화젠더법학』 11(2): 59-90.
- 이정인. 2021. “페미니즘의 교차적 구성: 비수도권 대학 내 페미니즘 모임에 대한 참여 관찰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숙. 1993.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경험 세계적 연구 - 섬유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용림 · 이나영. 2018. “포스트/강남역.” 『페미니즘 연구』 18(1): 181-228.
- 조주현. 2008. “대학내 교수성희롱의 성차별적 특징: 세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 219-258.
- 조혜영. 2017. “대중문화를 사건화하는 페미니즘 서적.” 『아시아여성연구』 56(2): 305-313.
- 지영경. 2018. “1985~2005, 다시 만난 부산대학교 여성운동.” 부산대학교 성평등네트워킹 제3차 심포지움 「시대를 넘어 페미니스트, 만나다」 자료집(2018.11.9.).

- 최나현. 2022. “지역×청년×여성의 여성주의 실천 경험에 관한 연구 - ‘충전소’를 만들고, ‘기피시설’로 여겨지다.” 『여성학연구』 32(1): 73-108.
- 최정운. 2013. 『오월의 사회과학』. 파주: 오월의 봄.
- 한국연구재단. 2023.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분석보고서』.
- 한종태. 2014.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 연구: 활동가들의 ‘위기’ 경험 분석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추주희. 2022. “지방대 학문후속세대의 여성학하기: 전남대 여성연구소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61(2): 205-246.
- 추지현. 2019. “페미니즘들: 변화, 위해, 소통의 경험들.” 『여성학논집』 36(1): 59-91.
- 퍼트남, D 로버트. 2006.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안청시(역). 서울: 박영사
- 플릭, 우베. 2009. 『질적 연구방법』. 임은미·최금진·최인호(역). 파주: 한울아카데미.
- 툰슨, 에드워드 팔머. 2000.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나종일(역). 파주: 창비.
- 한국연구재단. 2023. 『2022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 2023. 『2022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한준단. 2018. “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화과학』 95: 117-139.

(2) 기사 및 인터넷 자료

- 강윤주. 2021. “거스를 수 없는 페미니즘, 멈추고 싶을 때까지 앞으로.” 〈한국일보〉. 2021.03.04. <https://m.hankookillbo.com/News/Read/A2021030409220005416> [검색일: 2023.8.20.]
- 강윤지. 2023. “미투 이후의 연극.” 〈일다〉. 2023.08.28. <https://www.ildaro.com/9709> [검색일: 2023.8.28.]
-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22. “‘페미니즘 정치’ 얘기하며 버티는 사람 있단 희망 주고 싶다.” 〈오마이뉴스〉 2022. 11.08.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8806 [검색일: 2024.3.16.]
- 여성신문 뉴미디어부. 2016. “[2016 페미니즘 이슈 ⑩] 페미니즘 도서 열풍.” 〈여성신문〉. 2016.12.14. [검색일: 2023.8.10.]
- 페미회로. 2019. “전북대라는 페미니즘 황무지를 갈다, 인터뷰.” 〈페미회로 아카이브〉. 2019.10.12. <https://femicircuit.wordpress.com/> [검색일: 2023.8.10.]
- 탁경륜. 2022. “‘신당역 사건’은 사법부와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죽인 것”. 〈부산일보〉. 2022.09.18.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91818154677661> [검색일: 2024.2.10.]

Abstract

Seeting Points of the University Me-Too Movement
– an case study on “P” university in “B” city

Choi, Na-Hyun
(Pusan National University)

Kim, Yo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is an case study on “P” university Me-Too Movement, aiming at identifying the factors of the subjects making of the university women’s movement. In 2018, “P” University did not have a stable female student organization, but during the Me-Too movement, ‘three subjects’ appeared, based on the relationship and training in women’s studies class and the student movement group. In 2018, “P” university campus was filled with countless post-its, hand-written posters, and banners supporting Me-Too movement, this “feminist spectacle” tactic boosted the movement. Me-Too movement participation experience is not a one-time experience but a long lasting experience continuing to feminist network and practices in their daily lives in their own ways. The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revitalizing the women’s movement in universities and the continuity of the Me-Too movement in our lives.

Key words: University Me-Too Movement, Female student movement, Women’s studies, Student activist, Feminist spectacle

┃ 투 고 일 : 2024년 3월 17일
┃ 최초심사일 : 2024년 4월 8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4월 25일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유화정** · 김효정***

| 목차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역사적
흐름과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하며
드러난 쟁점
 3. 연구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논의
- 1) 가정폭력의 시작: 고립과 통제
 - 2) 코로나19 시기 고립도와
위험도가 높아지는 ‘집’
 - 3) 코로나19 시기 상담소 운영
제한 및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
 - 4) 코로나19 시기 보호시설 이용
경험 및 어려움

| 초록 |

본 연구는 넥스트 팬데믹 등 미래사회의 새로운 위기상황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하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이용한 피해자들의 경험을 통해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내 감염 예방 조치가 실시된

* 이 논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김효정·황정임·고현승·박언주·유화정, 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환을 위한 연구』에서 저자들이 집필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제1저자: 동국대학교 hwajeong.kimyoo@gmail.com

*** 교신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jkim@kwadimail.re.kr

기간 동안 피해자 지원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총 15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행된 사회적 조치들은 피해여성들을 집에 고립시켜 폭력 피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가정폭력의 맥락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립과 통제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고군분투하면서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지원체계는 피해자들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감과 안정감을 되찾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팬데믹 선언 초기, 대면상담 금지, 기관폐쇄 등 피해자 보호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들로 인해 피해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는 한정되었고, 재난 대응 매뉴얼의 부재로 인한 초기의 혼란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상담소의 경우 대면상담 금지 및 기관 운영 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고, 보호시설 경우 팬데믹 발생 이전부터 제시되어 왔었던 공동생활의 어려움과 개인 공간 제공 등의 문제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기존의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연관된 문제들은 더욱 강화되었고, 그 결과 피해여성들의 안전 보장과 일상의 삶으로의 회복은 지체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원칙에 대한 재확인,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 타워 운영과 재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통합매뉴얼 개발 및 배포, 코로나19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공동생활에 따른 문제 해소와 시설 운영 방식의 다양화, 피해자의 경험에 기반한 정책 수요 발굴 등을 중장기적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코로나19, 팬데믹, 가정폭력, 젠더폭력, 여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대응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팬데믹 시기를 경유하며 드러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방향과 운영 방식을 피해자의 관점과 경험을 통해 파악하고 분석하여, 넥스트 팬데믹 등 미래사회의 또 다른 위기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선제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출발한다.

코로나19 시기 안전한 ‘집’에 머무르라는 권고가 제시되고 공공기관 폐쇄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면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피해자들의 가정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 건강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 세계적인 문제의식이 공유되었다(UNFPA, 2020; UN Women, 2020a; WHO, 2020).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유럽, 아시아, 남미 등의 국가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UN Women, 2020a), 한국의 경우 유의미한 증감 추세가 보고되지 않으면서 코로나19와 가정폭력의 연관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전형적으로 암수율이 높은 범죄이고, 더구나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 및 상담 건수를 통한 코로나19와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가정폭력 신고 및 상담률의 하락을 가정폭력 발생의 감소로 오인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홍미리, 2020).

한국 사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한 초기에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피해자 지원사업이 운영되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2020년 8월 이후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면서 개인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가급적 ‘안전한 집’에 머무르라는 방역 전략이 제시되면서, 여타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동일하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도 휴관을 권고하는 등 감염병 초기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조치에 미흡한 양상을 보였고, 이로 인해 대면 상담 축소, 캠페인 및 교육 개최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송관희, 2020; 제오복, 2020; 김원정 외, 2020). 또한 2020년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세대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세대주가 아닌 가

정폭력 피해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급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신변이 노출되어 피해자와 활동가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한국여성의전화, 2020).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과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회적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드러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문제들이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한 것만은 아니다. 일반적인 공공시설, 복지기관과는 다르게 어떠한 긴급상황에서도 항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재난 발생 시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의 부재, 개인적인 공간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쉼터 운영의 필요성 등, 코로나19 시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문제들이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하면서 촉발되고 강화되어 드러난 측면이 있다. 근대화 시대, 고립과 통제에 기반해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회 지원 시스템 제도는 탈근대로 나아가며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 당사자의 권한과 역량강화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제도와 체계는 그 변화의 속도가 더딘 상황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머물러 있고, 이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피해자의 권리와 자립역량을 도모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김홍미리, 2018; 정춘숙, 2015). 또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체계는 자녀를 둔 전업주부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초기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쉼터 운영 방식의 변화와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한국여성의전화·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2022). 이런 점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방향과 서비스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점검하여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존재하는

문제들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과 개인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지원 상담의 경우 감염병의 영향력과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걸맞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호시설의 경우, 차단과 통제에 기반한 공동생활 중심의 운영이 현대사회의 가치관 및 생활방식과 충돌할 뿐 아니라 자신의 폭력 피해를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여러 개인적·사회적 고립을 경험해 온 피해자들을 폭력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또다시 고립시키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와 함께, 보다 다양한 쉼터 모델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유화정 외, 2019; 김원정 외, 2020; 한국여성의전화·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2022).

지금까지 피해여성들의 시설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지만,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한 피해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현행 지원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걸맞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의 수립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하며 피해자 지원시설을 이용한 피해여성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지원체계를 통해 제공된 지원들은 피해여성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시설 내 감염 예방 조치로 인해 변화된 시설 운영방식 속에서 피해여성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피해여성의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엔데믹 시대에 접어든 현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드러나고 강화된 가정폭력 대응과 관련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향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

설을 이용한 피해여성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하며 드러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코로나19 시기 피해자 지원시설을 이용한 피해여성들의 경험을 면밀히 듣고 분석하여 넥스트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을 위한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역사적 흐름과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하며 드러난 쟁점

한국 사회에서 80년대 민주화 운동 및 여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한 가정폭력 문제는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1996년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정폭력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되었고, 1997년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두 개의 특별법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이듬해부터 시행되었다(이미정 외, 2008). 가정폭력 문제의 제도화는 여성운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뜻깊은 성과로 가정폭력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사적인 문제에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공적인 이슈로 전환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 지원기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저해하고, 여성주의 관점과 운동성에 기반한 초기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피해자 지원을 여성운동이 아닌 특정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신상숙, 2008). 「가

정폭력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 및 쉼터 운영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열악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한 한편, 기관의 자율성 및 운동성을 약화시키는 양면적 효과를 낳았다(이미정 외, 2008: 29-31).

1998년 여성폭력피해 초기 대응체계인 여성긴급전화 1366이 개통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면서 긴급전화·상담소·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틀이 갖추어졌다. 또한 기존에 소수의 민간 여성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던 피해자 지원 상담소 및 쉼터가 양적인 차원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2022년 기준, 전국 18개 시도별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정폭력 상담소 213개소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6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 그 외에도 이주민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특화된 시설인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9개소)와 보호시설(33개소)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바라기 센터(39개소)를 통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 24).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설치와 확대는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과 서비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 피해 지원의 원칙 및 방향에 대한 의제 설정이 모호한 상태로 개별 기관의 역량에 맡겨지고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방식이 예산 지원과 서비스 제공 차원에 집중되면서,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폭력철폐를 위한 운동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운영 이슈가 분리되는 양상이 강화되었고,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선도하는 여성주의적 기관으로서의 지원기관의 성격이 약화되는 반면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로서 지원기관 운영은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김소정, 2005; 신상숙, 2008). 가정폭력 관련법 제정과 정책 수립을 통한 가정폭력 문제의 공식화는 분명 페미니스트 운동의 흐름에서 출발한 정치적 투쟁과 분석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제도화 이후 페

미니스트 정치학 또는 관점이 개입할 여지가 축소되면서 가정폭력 문제를 개인화하는 보수적 담론이 강화되는 상황은 제도화의 문제이자 퇴보로 평가된다(허민숙, 2011: 151).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80년대 이후 여성주의 운동의 성과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논의가 사회적인 의제로 부상하면서 90년대와 2000년대를 경과하며 제도화를 통한 유의미한 성과들이 도출되었고, 피해자 지원기관의 규모 역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가정보호에 초점을 두는 「가정폭력처벌법」 목적 조항에서 보여지듯이 성평등과 인권의 관점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을 두는 방식으로 가정폭력피해 지원 제도화의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정책의 수단이나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을 둘러싼 정치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연관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그렇다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운영 목적과 원칙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젠더화된 사회구조의 문제로 젠더기반폭력의 대표적인 양상이다. 따라서 가정폭력 발생과 피해자 회복의 책임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성과 시설 운영 역시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적 책무로 다루어져야 한다.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폭력철폐선언」 제4조는 국가는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지체 없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국제협력, 국가 행동계획 수립, 여성폭력 근절 활동을 위한 정부예산 마련, 폭력 예방 교육의 마련, 관련 연구수행 및 데이터 수집 등을 포함하는 국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피해자 보호의 차원에서,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보장과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지원서비스로 긴급전화, 형사·사법적 대

응, 보건·의료적 대응, 숙소, 쉼터 및 상담의 5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UN Women, 2020b: 2).

이러한 내용에 기반하여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시기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도출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국가적 책무로 피해자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해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피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가정폭력 피해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재난 또는 위기 상황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 젠더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가정폭력 이슈를 부차적이거나 덜 중요한 이슈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소, 쉼터 등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은 중단없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과 목적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명확한 사회일수록 현재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사회의 또 다른 재난 상황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재난으로 인해 붕괴된 사회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업으로 설정되고, 그 속에서 가정폭력, 여성폭력 이슈는 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거나 재난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일탈적 상황으로 여겨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김효정, 2020: 15-16).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대응조치 초기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바 있다. 사회적 대응조치 강화에 따른 지침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도 여타의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방식으로 휴관 등 방역 관련 지침이 제시되어, 가정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김원정 외, 2020: 220-223). 앞서 우리나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제도화 과정의 결과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피해자 지원의 원리보다는 사회서비스 제공시설로서의 역할

이 보다 강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여타의 사회서비스 제공시설과 다르게 보지 않는 이러한 인식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를 필수서비스로 지정하여 휴관, 방역물품 지급 등에 관한 개선된 대처방안이 제시되었고, 2023년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대응조치가 해제되고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해당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한 형태로 바라보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발생한 문제들은 다시금 재현될 수 있다. 초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국가 정책안에 제도화하여 정착시키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현재의 지원체계 구성과 운영 방법이 그러한 목적에 잘 부합하는지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젠더기반폭력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UN Women, 2012).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지원과 피해 회복의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경험과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재난 시기 강화되는 젠더 불평등과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와 관련된 문제를 사회구조에 내재된 성별 규범과 재난 시기 남성성의 위협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김효정, 2020; 김소진, 2022; Enarson, 1999; Parkinson, 2013; Enarson and Pease, 2016; Fraser, 2020),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실질적인 지원시설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는 일천하였다. 본 연구는 80년대 이후 피해자 지원체계 제도화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구

축되어 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시설 운영, 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이슈들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과 교차하면서 어떻게 변화, 강화되는지를 피해여성들의 경험과 관점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개선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내 감염 예방 조치가 실시된 2020년 2월부터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점(2022년 9월~10월) 사이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시기인 2020년 초부터 2022년 중반까지의 기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행된 강력한 사회적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시기라는 점에서 연구참여자 섭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섭외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협의회, 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와의 자문회의를 수행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연구참여자 섭외를 위한 협조를 구하였다. 자문회의 결과 피해자의 연령대와 이들이 이용한 지원시설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피해자의 경험과 욕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고, 따라서 특정 연령대 또는 특정 지원시설 이용자로 연구참여자가 한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지원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코로나19 시기 동안 피해자들이 경험한 어려움 간의 연관성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으나, 되도록 다양한 지역의 연구참여자를 섭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최종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 총 15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가해자는 남편이다. 연구참여자가 이용한 시설은 서울, 인천, 부산, 광주, 경기도, 경상남도 등에 분포되어 있다. 주요 이용시설의 유형은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섭외를 요청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보호시설이라는 점에서 상담소보다 보호시설 이용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¹⁾

면접은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이 이루어지던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의 의사와 상황에 따라 방역에 유의하면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각 인터뷰는 평균적으로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연령대	가해자	주요 이용시설	인터뷰 당시 상태
사례1	20대	친부	보호시설	보호시설 거주
사례2	30대	남편	보호시설	보호시설 거주
사례3	30대	남편	상담소	가해자와 거주
사례4	30대	남편	상담소	가해자와 거주
사례5	30대	남편	보호시설	보호시설 거주
사례6	40대	남편	보호시설	보호시설 퇴소
사례7	40대	남편	상담소	가해자와 거주

1)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여성긴급전화1366을 거쳐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나 주요 이용서비스에 1366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사례12의 경우에는 1366의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로 선정되어 1366과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이용서비스에 여성긴급전화1366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구분	연령대	가해자	주요 이용시설	인터뷰 당시 상태
사례8	40대	남편	보호시설	보호시설 거주
사례9	40대	시누이	보호시설	보호시설 거주
사례10	50대	남편	상담소	가해자와 거주
사례11	50대	남편	보호시설	보호시설 거주
사례12	50대	남편	1366, 상담소	이혼, 독립 거주
사례13	60대	남편	보호시설	보호시설 퇴소
사례14	60대	남편	보호시설	보호시설 퇴소
사례15	70대	남편	보호시설	보호시설 퇴소

2) 자료 수집 및 분석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 회의와 연구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면접에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개요와 질문지를 사전에 전달하여 원활한 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의 전 과정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수행되었다. 조사 당일에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면접조사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하였다. 조사 내용은 익명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인터뷰를 중단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다. 이후 연구윤리동의서를 작성하여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각각 한 장씩 보관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였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질문에 대한 대답 중 감정이 격해져 눈물을 흘리는 참여자에게는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충분히 감정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한 후 나머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가정폭력의 발생과 유형 및 피해 정도, 폭력 발생 이후의 대응 및 대처 경험, 지원기관 도움요청 경험, 피해자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코로나19로 인한 경험과 어려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관련 정책 수요 등에 관한 것이다. 전체적인 질문의 내용과 방향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면접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면접 진행 흐름에 따라 세부적인 질문을 추가하거나 변형하는 등 열린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고 축약하였고 공통되는 내용을 분류하여 핵심 내용과 의미를 도출하였다. 피해여성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구술하는 생생한 경험과 인식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들의 경험과 인식이 구성되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구조의 영향력, 코로나19 시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미치는 영향력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분석 결과

1) 가정폭력의 시작: 고립과 통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가정폭력이 연애 혹은 결혼 초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답했고, 특히 폭력의 시작은 고립과 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첫째, 폭력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관계이고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지 않는’ 정서상 고립되기 쉬우며, 둘째, 한국의 가부장제적 문화 안에서 여성(아내)에 대한 남성(가부장)의 통제가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를 바탕으로 고립과 통제적 특성이 생겨난다.

가정 폭력은 결혼 생활 시작할 때부터 쭉 있었던 것 같아요. [...] 어떻게 하다 보니깐. 정상적인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 집에 들어가서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 친구, 사회생활 등 모든 게 단절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랬나, 가스라이팅 그런 거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강압적이고 제한적이고, 회사에서는 착실하고 성신했던 부장님이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저를 너무 제압하고 핸드폰이고 뭐고 가족들과 연락 다 두절 되고 왜 연락하느냐고, [...] 처음에는 저를 위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도 마냥 그런가보다 이러면서 살았는데 살다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하다못해 시장을 가도 본인과 같이 가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의치중도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첫째를 임신하면서 질염이 생겨서 산부인과를 가니까 밤에 대뜸 어떤 남자와 뭘 했기에 질염이 생기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껌판을 부리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집 전화도 따르릉 세 번 안에 안 받으면 다른 남자와 뭐했냐면서 추궁이 들어가고, 그런 날에는 술 먹고 들어와서 집안에서 껌판을 부리고 난리를 피우죠. (사례6)

사례 6은 회사 상사로 만난 남편이 처음에는 자신의 부모님, 친구 등 전반적인 사회생활로부터 고립시켰으며, 가부장적인 가치관으로 사례 6을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이가 생기면 나아지겠지’ 라는 사례 6의 기대와 달리, 남편의 통제는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집착과 스토킹(의치중)으로 발전해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트러블 중의 하나가 저를 친정집에 못 가게 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랑 나이 차이가 20살이다 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매우 달랐어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생각으로 여자가 결혼했는데 친구를 왜 만나? 결혼했는데 친정집에는 왜 가?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엄마 얼굴은 왜 못 보나. 그러면서 사건이 터져서 추석 때 친정을 가겠다. 남편은 남편 친구들과도 왕래를 안 해요. 명절이 돼도 저희는 그냥 집에서 가족끼리 지냈었거든요. 추석 음식 다 하고, 연휴가 기니까 엄마한테 가고 싶다. 그게 발단이 돼서 일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더 못 참겠다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사례 6)

그러나 문제는 국가가 법과 정책으로서 개입하는 가정폭력의 위험과 실제로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 내에서 처해지는 위험의 간극이 존재하고,

그 간극의 폭력의 본질은 강압적 통제이다(허민숙, 2021). 가정폭력은 연구참여자들도 언급했듯이, ‘어디 하나가 부러지고’(사례 4), ‘피가 철철’(사례 7)나고, ‘경찰차를 부를 정도’(사례 15)가 되어야 ‘폭력’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국가가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그러한 폭력의 횟수, 폭력의 강도, 외형적 상처 등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그 때는 몰랐지만 돌아해보면 신체적 폭력이 반복적이고 심각하게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언어적·정서적 폭력에 상당기간 노출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친정엄마랑 저녁 식사를 하고 오겠다고 남편한테 얘길 했는데 둘째가 아파서 나가지 말라고 해서 싸움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일찍 안 들어오면 죽이겠다고 해서 제가 무서워서 동네를 서성거리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화가 났는데 제 먹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서 죽이려고 행동해서. 그렇게 돼서 경찰에 신고해서 분리조치가 돼서 여기에 오게 되었어요. (사례 2)

‘강압적 통제는 여성을 지배하고 복종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가부장적 성차별문화의 직접적인 실천행위’(허민숙, 2021: 237)이자 가정폭력의 시작이고 본질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가정폭력 개념 역시 단순히 신체적 폭력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닌, 가부장적 위계에 기반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강압적으로 통제하려는 폭력의 본질로 전환되어야 한다.

2) 코로나19 시기 고립도와 위험도가 높아지는 ‘집’

코로나19 시기 동안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집’에 머물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집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장 안전한 공간일 것이라는 인식에는 가정폭력 가해자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해여성들에게 가정

폭력은 결혼 전, 결혼 직후, 또는 태어나면서부터(아동학대의 경우) 발생하였고, 그 근본에는 고립과 통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면서 기존에 존재해 왔던 고립과 통제가 강화되었다고 말했고, 이것이 가정폭력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제가 대학을 늦게 가서 재택 수업을 2020년 시작을 했는데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전 가족이 4명의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가스라이팅이나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형태가 늘어나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을 견디면서 서로가 민감해지는 시기다 보니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사례 1)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잘 외출을 못 하게 하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 (사례 2)

아무래도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갈등도 좀 더 자주 생기고. (사례 1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시작된 2020년 초부터 대부분의 국민들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게 되었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학생들은 재택 수업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집이라는 한정적 공간 안에 장시간 함께 있으며 ‘갈등도 좀 더 자주 생기고’, ‘코로나 시국을 견디면서 서로가 민감해지는 시기다 보니 더 심해지기도 하였고, 장기화 되면서 ‘가스라이팅이나 감정 쓰레기통’ 등의 정서적 폭력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립화와 가족 내 갈등 등의 폭력발생 가능성 증가의 문제는 ‘집’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상정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을 제기한다(김원정 외, 2020). 감염병의 위험이 존재하는 공적 공간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서 사적 공간(집)을 구분 짓는 이분법적 인식은 재난 시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집’이 갖는 고립과 폭력의 위험성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3) 코로나19 시기 상담소 운영 제한 및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외부인 접촉 최소화, 보호시설 입소자 일일 2회 발열 체크 의무시행, 휴관 권고 등의 지침 공문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김원정 외, 2020).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이 이용한 가정폭력 상담소의 대면상담이 전면 중단되어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들은 지속적인 피해지원과 상담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상담)하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된다고 해서 종료가 되었죠. 그러다가 전화 상담으로 한 번 받았었어요. 30분 정도. 그때도 선생님 바쁘시다고 2, 30분 정도. 전화로도 괜찮은데 그분이 바쁘셔서 길게 못 했어요. 대면으로 하면 50분 정도에서 길게는 1시간 30분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전화로 2, 30분 하나가 흡족하지 않더라고요. [...] 2020년 4, 5월 그때 대면이 안 된다고 중단되고 2020년 하반기와 2021년에 일을 하게 되어서 낮에 가기가 어려워 흐지부지된 거 같아요. (사례 10)

그 일이 있고 나서 상담을 하는데 코로나라서 대면 상담이 안되는 때가 있었어요. 거의 상담소 폐쇄처럼. 대면 상담이 안 될 때 남편이 재택근무를 해서 집에 있는데 집이 좁아서 다 들려요. 전화로 상담해야 하는데 저쪽에서 남편 일하고 있어서 같은 공간에서 조마조마하게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편했어요. 그게 성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얼굴을 보고 해야지 집중되고 전화로나 줄이나 화상으로 하면 할 말을 잊어서 힘들었어요. (사례 3)

사례 10은 2019년부터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상담소가 대면상담을 중단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2020년 하반기와 2021년에는 대면상담이 가능해졌지만, 개인적인 일정(취업, 자녀양육 등)으로 결국 상담을 지속하지 못한 것이다. 사례 3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제한으로 상담소에서 대면상담이 불가능하여 전화상담으로 대체하였지만, 가해자인 남편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

근무를 하느라 집 안에서 전화상담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사례 3 역시 외출하기 여의치 않았고, 상담의 특성상 단순한 언어의 정보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효과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상담소들은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대면상담 중단과 유선상담 대체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상담과 캠프 프로그램까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때는 아동 상담도 안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놀이치료 개념으로 여기 와서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못하니까 아이들이 아동 상담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피해자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상담을 못 하니까. [...] 그리고 캠프가 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캠프에서 했던 집단 상담 중에 드라마 치료를 한 적이 있어요. 전문적인 드라마 심리치료 강사님이 오셔서 해 주셨어요. 넓은 공간에서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편 없이 자고 우리끼리. 아이들끼리 추억도 되고, 근데 코로나 그 때문에 그걸 못 하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사례 3)

아내폭력 기반의 가정폭력은 그러한 폭력적 환경에 노출된 자녀에게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신나래, 2019). 따라서 가정폭력 상담소는 피해당사자 상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상담과 피해회복 프로그램(캠프 등)을 지원한다. 문제는 놀이치료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상담과 아동 동반 캠프 프로그램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것이다. 사례 3은 ‘넓은 공간에서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편 없이 자고 우리끼리. 아이들끼리 추억도 되는 캠프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에 ‘너무 속상’하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당사자와 자녀의 상담 중단은 단순히 서비스가 중단된 것만이 아닌,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치유가 중단된 것이다. 이것은 환경적 요인에 따라 국가는 언제든지 피해당사자의 회복과 치유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원은 국가에 의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코로나19 시기 보호시설 이용 경험 및 어려움

(1) 비공개 시설의 명과 암: 안전감의 제공과 공동생활의 불편함

일명 쉼터라고 불리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의 피해 회복, 트라우마 치유, 자립을 위해 피해당사자와 동반자녀의 숙식, 상담, 법률·의료지원, 아동상담 및 비밀전환 지원, 취업교육, 주거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현행 가정폭력 피해지원체계의 중심을 이룬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피해여성들은 쉼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폭력에서 벗어나 쉼터에 입소하면서 안전감과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냥 모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례 13)

원 가족으로 망가진 나의 삶을 복원한 것 같은 느낌. (사례 1)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해자에 의한 고립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할지 막막한 마음을 가졌던 피해자들은 보호시설에서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활동가 및 다른 폭력 피해자들과 교류하면서 힘을 얻고 자신감을 갖는 등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계속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대책이 없었고, 앞길이 막막했는데 쉼터에 와서 상담 받고, 상담 선생님들 덕분에 힘이 많이 되었어요. [...] 거기서 마음을 먹고 쉼터 생활을 했죠. 활동가 선생님들도 도움이 됐고 다른 폭력 피해자들도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자신감도 생기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쉼터에서 1년 생활하면 주거 지원까지 된다고 했고 9개월쯤에 주거 지원을 받았어요. (사례 14)

네, 많아요. 여기 와서 진짜 많은 것을 배우고 제가 퇴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말일경에 퇴소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가지고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왔을 때 보다는 제가 당당하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만족하고 있어요. (사례 11)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쉼터의 통합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만족해했으며, 특히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완전한 분리와 차단이 되는 것을 중요한 장점으로 꼽았다. 사례 14는 쉼터에 있었던 시간이 ‘생애에 가장 편안한 시기’였다고 할 만큼 가해자와 안전하게 분리되고 사생활이 보호되며 안정감 속에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른 참여자들도 불안에 떨 필요가 없고, 가해자로부터의 완전한 격리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왔던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비공개 시설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생활하는 것은 상당한 안정감과 안전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쉼터에 있을 때 내 생애에 가장 편안한 시기였어요. 모든 생활이 단절되고 누구와 연락이 안 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여기 쉼터는 직접 식사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만큼은 편하고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 그리고 쉼터에서 생활하면 사생활이 보호되니까 그게 안심돼요. 쉼터에서 마음 정리를 할 수 있고. (사례 14)

또 남편이 술 먹으면 불안에 떨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것 없이 아이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고,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 연락의 불안함도 없었고, 저는 핸드폰 없는 게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5)

제일 처음 받았던 거는 상대방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비공개 시설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것. 그게 저한테는 그때 당시 가장 필요했었고 좋았던 서비스였어요. (사례 8)

그러나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이러한 보호시설의 운영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보인 것은 아니다. 가해자의 보복과 폭력의 두려움이 심화된 피해 여성들에게 비공개형 쉼터는 높은 안정감과 안전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여성들은 다양한 상황과 차이 속에서 가정폭력 피해로부터 회복해 나가게 되고, 외부와 단절되고 생활에 여러 제약이 존재하는 폐쇄형 쉼터에서의 생활은 어떤 이들에게는 또 다른 통제와 고립으로 여겨질 수 있다.

여기가 또 쉼터라는 장소가 비밀의 장소다 보니까 외출이나 핸드폰 사용 그런 게 차단이 되는 규칙. 규칙이 저희를 위해서 안전하기는 한데 그런 규칙이 있다 보니 좀 힘들었어요. [...] 남편이 추적할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조심하라고 하세요. (사례 11)

예를 들면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이가 할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위험하다고 가족과 연락을 못 하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족과 아예 연락이 안 되니까 가족으로서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해하고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 그리고 외출시간이 3시간이어서 조금 짧았다는 점이고. 아이들이 좀 놀고 싶다고 할 때는 연장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입출 할 때마다 보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사례 8)

쉼터는 제약이 있었어요. 핸드폰도 소지가 안 되고 외출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일 같은 건 할 수가 없는, 단절된 쉼터였거든요. 그래서 큰 아이가 “언니, 나는 같이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서 큰 아이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아이는 그때 독립을 하고, 우울증이 심한 스무 살 아이와 제가 낳은 아이 둘을 데리고 쉼터로 입소를 한 거예요. (사례 6)

현재 많은 보호시설들은 입소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갖추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핸드폰 사용 중단, 제한적 외출, 그리고 일상생활(직장, 학교

등) 중단 등을 요구한다. 쉼터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한 운영 원칙이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핸드폰 사용, 직장 생활 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운영 원칙으로 인해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고 직장생활을 포함한 개인적 관계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 사례 6은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 때문에 결국 쉼터에 입소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현대사회에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가정폭력 이후 쉼터에도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다고 회고하였다. 그 외에도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생활에 따른 규칙들로 인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답답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해지는 건 자유가 없으니까. 잠도 10시에 자야하고 밥도 그때그때 먹어야 하고 핸드폰 못하고, (사례 2)

딸아이는 공간이 한정되어있나 보니 감옥 같다는 표현을 많이 했었고, 여기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안전 규칙이 많아서 엄한 것 같아요. 아이가 구속당한다는 스트레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 8)

이러한 상황은 폐쇄형, 공동생활 중심의 보호시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다양한 피해자들의 상황에 적절한 보호시설 운영방식이 다양화되지 못한 데 따른 문제로 분석될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깊은 공포와 보복 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피해자들에게는 비공개형 시설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폭력의 공포에서 벗어나 서서히 자립을 준비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보다 자유로운 생활과 직장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에서의 삶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손문숙(2019)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패러다임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80~90년대에 수립된 자녀를 둔 전업주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모델에서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2) 공동생활로 인한 감염병 예방의 한계

현행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은 공동주거시설이면서 한 방에 여러 명이 합숙하는 구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 명이 감염되면 함께 거주하는 모두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되었던 시기에 쉼터에서는 모든 식기를 삶고, 소독하는 등의 대공사를 매 끼니때 마다 치러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감염이 종종 발생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한 방에 감염 가족을 격리하고 나머지 전체 인원이 남은 방에 몰려 협소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 쉼터에 들어와서 쉼터 내 다른 가족이 코로나에 걸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도구를 다 삶았어요. 삶는 게 힘드니까 나중에는 일회용 그릇을 사용했어요. [...] 다 (PCR 검사)하고 들어오는데 중간에 아이 한 명이 걸리다 보니까 공동생활로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도 걸리더라고요. 식사 준비도 힘들었지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맞는 음식을 조절해서 줘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고 안 먹으니까 걱정도 되고, 코로나 걸린 분들은 검침한 방 안에서 견뎌야 하니까 힘들었죠. [...] 그리고 일단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방이 협소했어요. 방이 현재 3개인데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양쪽 방을 써서 안 걸린 사람들이 한방에서 생활했었고 환기가 되지 않으니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했고요. 제가 식사를 준비해서 갖다 주는데 입맛들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 방이 좀 협소했었어요. 그런 게 많이 힘들었어요. (사례 11)

여기는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공동체이다 보니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요즘 코로나에도 약간 헤이해졌다고 느껴요. 사람 많은 식당을 간다거나 카페를 간다거나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약물 부작용이 있어서 백신을 못 맞은 상태이고 아이들도 백신을 안 맞았는데 지금도 항상 불안해요. 한 아이가 열이 난다고 하면 여기는 계속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고 또 불안하고, 한사람이 열이 나면 다 같이 대형 병원에 가서 한 시간 넘게 줄 서서 코로나 검사해야 하고, 그런 일들이 3번 넘게 있었어요. 그게 힘들거든요. 단체 생활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례 8)

별도의 방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화장실, 부엌 등 공동생활시설을 공유하는 것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최근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인원이 감소하면서 보호시설의 상황에 따라 입소자에게 1인 1실을 제공할 수 있는 쉼터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방을 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화장실이나 부엌, 거실 등의 공간은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입소자들은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감염에 대한 공포는 쉼터 거주자들을 더욱 예민하게 하고, 쉼터 차원에서는 예방 목적으로 기존의 안전 규칙을 강화하게 되면서 보호시설 생활은 피해여성들에게 안전감과 안정감을 주는 감사한 공간에서 ‘창살없는 감옥’으로 변모하였다.

코로나 격리 때는 화장실 하나는 코로나 걸린 분들만 사용해서 나머지 화장실 한 개로 사용해서 줄 서야 했었고, [...] 3월에 쉼터에 있을 때 한 달 정도 코로나가 퍼져서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쉼터가 가정별로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방에 같이 생활하고 있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코로나 걸린 분들과 방을 같이 썼었거든요. 그러다 아이는 다 낫고 1주일 후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었을 때 식당에서 소독을 다 하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지냈었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코로나 격리 공간이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코로나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이 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었어요. 쉼터에서. (사례 8)

코로나가 확진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자가격리 기간이었어요. 부엌이 분리가 안 되다 보니 밥을 먹고 치우고 소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대공사처럼 진행되었어요. 코로나는 공동생활에 가장 취약해요. 한 사람이 걸리면 전파력이 너무 쉬웠어요. 저도 걸린 게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이 걸리면 바로 걸리는 그런 취약한 점이 있어서 불편하긴 해요. (사례 1)

근데 쉼터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창살 없는 감옥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종종 있어요. 그나마 이런 곳에 오게 된 것에 감사함은 있어요. 근데 생활하면서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종종 있어요. (사례 9)

(3)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부재로 인한 문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외부 강사의 음악·미술·원예치료 프로그램 등이 전면 중단되었다. 특히 사례 6은 쉼터 거주자와 퇴소자 모두 함께 놀러가는 교류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비공개 쉼터 특성상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거주자들에게 ‘여행의 전부’였던 여름캠프가 취소된 이후 ‘사는게 무료하고 친구가 없어진 것 같고 우울감도 더’ 생겼다고 말했다. 쉼터 거주자들의 감염 예방과 안전을 위한 조치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공연보고 음악회 가고 영화관 가고 그런 것 너무 잘 해주셨었어요. 저는 처음 거기서 예술의 전당 가서 호두까기 인형 보았어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삶이 힘들어서 문화생활이나 남들 누리는 것들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딸이 음악을 전공하는 아이이고 근데 그런 데를 그렇게 못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 주세요. 한 달에 또 한번은 야유회에 나가서. 그런데 나가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사람 많은 데 가지 않고 왜냐면 노출이 되니까. 그런 게 좋았고 코로나 전에는 그 안으로 강사님 초빙을 해서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코로나 후에는 강사가 못 들어오는 거죠. 그게 좀 아쉬웠었어요. [...] 코로나 터지고 바로, 코로나가 조금 주춤해지고 재개되어서 저는 퇴소를 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 수공예품 만들기도 하고 바자도 해요. 저는 그런 것을 좋아해서 끼워달라고 해서 갔는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아예 중단되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다 중단되었죠. (사례 13)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못 했어요. 외부 사람이 못 오니까. 우리도 생활에 제재를 받죠. 어디를 가도 많이 못 나가게 했고, [...] 프로그램하고 외부 사람도와 야지 좋은데 지지도 해주고, 그 힘이 큰데 그걸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게 좀 힘들어요. 전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례 14)

쉼터에서는 다 같이 놀러 가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가 오밀조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아예 모이지도 못하고 집단 상담도 제한이 되고 하니까. 저희는 사실 그런 것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꼈거든요. 저희가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류가 많지 않아요. 우리끼리도 못 만나니까 조금 마음이 허한 것 같은. 의지하면서 지냈던 사람들끼리 만나지 못하고, 여름 캠프를 가지 않으면 놀러 가기가 힘들어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데리고 가기가 조금. 쉼터에서 가는 캠프가 저희에겐 여행의 전부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아예 없었어요. 사는 게 무료하고 친구가 없어진 것 같고 우울감도 더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례 6)

코로나19 위험시기에 모든 위험 요소를 차단한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 벨기에,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 국가들은 쉼터 거주자들의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찍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폭력 쉼터 지침을 마련하고, 추가 격리 공간이 필요할 경우 외부 호텔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예산을 투여한 바 있다(김원정 외, 2020). 코로나19 시기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한 한국과 긴급예산을 투여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한 국외사례의 차이점은 가정폭력 쉼터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해자로부터의 격리’로 둘 것인지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에 둘 것인지에 따른 차이일 것이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넥스트 팬데믹 등 미래사회의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하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이용한 피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내 감염 예방 조치가 실시된 2020년 초부터 2022년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 지원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총 15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인터뷰 분석 결과, 과거부터 존재해 왔었던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연관된 문제와 이슈들은 팬데믹이라는 재난 시기를 경과하며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과 통제에서 출발하는 가정폭력의 양상은 코로나19 시기에도 다르지 않았으나, 이를 위한 가해자의 전략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조치들 속에서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졌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집에 머물라는 사회적 지침은 공적인 공간을 감염병으로부터 위험한 공간으로, 사적인 공간인 집은 이와 대비되는 안전한 공간으로 상징하여 공사 이분법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고, 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으로서의 ‘집’이라는 가정폭력의 맥락을 탈각시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험과 친밀성에 기반한 젠더폭력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유선전화, 대면상담 중심의 전통적 상담기법의 다양화와 변화의 필요성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었던 시기에 그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피해여성 내부의 다양성 증가와 사생활이 보호되기 어려운 공동생활 운영에 따른 보호시설 거주자의 어려움 역시 코로나19 시기에 더욱 강화되었다. 자유로운 외부활동이 어렵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보호시설 운영지침으로 인해 직장에 다니는 피해여성들은 자신의 안전과 직장생활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고, 이는 코로나19 시기 여성폭력의 위험 증가와 여성 경제활동의 어려움이라는 이중의 맥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하면서 피해자 지원시설을 이용했던 피해여성들이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과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 및 재난 상황에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들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어떠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운영되어야 하는 필수서비스로 가정폭력,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운영 원칙이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가 그림자 전염병(shadow pandemic)처럼 확산될 것을 경계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 방안 수립을 권고한 국제사회와 달리 우리나라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상담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 제한 또는 중단을 권고하였다(김원정 외, 2020).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어떤 환경적 변수에도 운영되어야 하는 필수서비스가 아닌, 복지서비스로 바라보는 인식에 기인한다. 유엔 위민은 팬데믹 시기에도 피해자 상담소 및 쉼터 등 여성폭력 관련 지원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어서는 안되며, 감염병 시기에 감추어지기 쉬운 여성의 폭력경험을 드러내고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UN Women, 2020b). 이러한 재난 시기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재확인하여 향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기존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운영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기관에 선제적으로 배포하고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피해여성들이 경험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은 재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젠더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통합매뉴얼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어떠한 원칙과 지침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대처해야 할지 국가적 차원의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어려움들은 개별 기관 및 활동가들의 역량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이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피해여성들이

제공받는 지원서비스의 수준에 차이를 발생시켜 모든 피해여성들이 안정적이고 동등한 수준에서 각자의 상황에 걸맞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할 권리를 침해한다. 미래사회 또 다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 타워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등의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운영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비대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방법의 확대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화 경향과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단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쇄적인 보호시설 운영 방침은 폭력에 대한 공포가 심각하고, 취업상태가 아니면서, 집중적인 케어와 지원이 필요한 피해여성들에게는 적합할 수 있지만,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자신의 피해를 치유하고자 하는 피해여성들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복합적인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피해지원 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현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사회변화를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설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지원 관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 보장과 일상의 삶에 대한 회복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관점과 목소리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경험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젠더기반폭력으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정책 입안 및 정책 추진 과정에 개입하는 관련자들의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엔데믹 시대에 접어든 현재는 코로나19 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동일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다.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경험한 위기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을 뿐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팬데믹 시기에 드러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쟁점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파악하여 미래 사회의 변화에 걸맞는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Ⅰ 참고문헌 Ⅰ

(1) 국내문헌

- 김원정 · 구미영 · 류임량 · 유화정 · 임연규. 2020. 『코로나(COVID-19) 대응 정책 특성성별영향평가』. 서울: 여성가족부.
- 김홍미리. 2018.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 지원 모델 연구 보고.”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 모델 연구 보고 및 토론회: 당사자가 말하는 ‘자립’의 의미』 자료집 (2018.5.29.). 한국여성의전화.
- _____. 2020. “코로나19 시기 ‘집안’은 안전한가?: 가정폭력 신고율 하락의 의미.” 『젠더이슈 8호』.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소진. 2022. “재난불평등과 젠더,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과제.” 『민주법학』 78: 179-203.
- 김효정. 2020. “코로나19 와 가정폭력: 팬데믹의 젠더화된 효과.” 『여성연구』 107(4): 5-29.
- 김효정 · 황정임 · 고현승 · 박언주 · 유화정. 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환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손문숙. 2019.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 프로젝트 ‘당신 곁에 뷰티풀 라이프’의 성과와 한계.” 「한국여성의전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자료집 (2019.12.10.).
- 송란희. 2020. “코로나19와 가정폭력: 정책과 관점 모두의 부재.” 「제4차 코로나19 관련 여성 · 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와 젠더폭력·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자료집(2020.7.16.). 서울: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신나래. 2019.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질적연구: 쉼터거주 피해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0(4): 119-150.
- 신상숙. 2008.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 한국의 반(反)성폭력운동과 국가 정책.” 『한국여성학』 24(1): 83 - 119.
- 여성가족부. 202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 _____. 2023. 『2022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 _____. 2024. 『2024 여성 ·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유지영 · 유화정 · 민가영. 2021. 『여성긴급전화 1366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유화정 · 송란희 · 홍예슬. 2019. 『서울시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개발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미정·변화순·황정임·이소영, 2008. 『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개선방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춘숙, 2015.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제오복, 2020. “코로나19와 젠더폭력: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토론편.” 「제4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와 젠더폭력·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자료집(2020.7.16.).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의전화·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2022.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오래된 35주년 기념 토론회 -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 현재와 미래」 자료집(2022.6.10.).
- 허민숙, 2021. “국가가 초래한, 국가가 알지 못하는 위험: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 『한국여성학』 37(1): 223-251.

(2) 국외문헌

- Enarson, Elaine and Bob Pease, 2016. *Men, Masculinities and Disast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Enarson, Elaine, 1999. “Violence against women in disasters: A study of domestic violenc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Violence Against Women* 5(7): 742-768.
- Fraser, Erika, 2020.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Parkinson, D, 2013. “The hidden disaster: Domestic violence in the aftermath of natural disaster.” *Australian Journal of Emergency Management* 28(2): 28-35.
- UN Women, 2012. *Handbook for national action plans on violence against women*. NY: UN Women.

(3) 인터넷 자료

- 한국여성의전화, 2020. “성명 및 논평: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된 여성들.” http://hotline.or.kr/board_statement/67909 [검색일: 2024. 3. 1.]
- UN Women, 2020a. *COVID-19 and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0/04/issue-brief-covid-19-and-ending-violence-against-women-and-girls> [검색일: 2024. 3. 1.]

- _____. 2020b. *Brief: COVID-19 and Essential Services Provision for Survivor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0/04/brief-covid-19-and-essential-services-provision-for-survivors-of-violence-against-women-and-girls> [검색일: 2024. 3. 1.]
- UNFPA. 2020. *COVID-19: A Gender Lens: Protect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nd promoting gender equality*. <https://www.unfpa.org/resources/covid-19-gender-lens#> [검색일: 2024. 3. 1.]
- WHO. 2020. Joint Leaders' statement - Violence against children: A hidden crisis of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who.int/news/item/08-04-2020-joint-leaders-statement--violence-against-children-a-hidden-crisis-of-the-covid-19-pandemic> [검색일: 2024. 3. 1.]

Abstract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in operating victim support facilities through the experiences of women who have bee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during the COVID-19 period

Yoo, Hwa-Jeong
(Dongguk University)

Kim, Hyo-Jung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is study is based on the critical awareness that preemptive measures must be sought to ensure the stable operati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 support facilities in the next pandemi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domestic violence victim support facilities and derive improvement tasks. To do th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femal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who had experienced using victim support facilities during the COVID-19 peri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cial measures implemented to prevent COVID-19 resulted in an increased risk of violence by isolating female victims at home, and the isolation and control of victims were further strengthened. In this context, the victim support system was found to play a vital role in helping victims escape violent situations and regain a sense of safety and stability. In the case of counseling centers, however,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due to the ban on face-to-face counseling and the reduction of institutional operations. In the shelters, difficulties in communal living and provision of personal space appeared to be intensifying. Therefore, the safety of victimized women and their recovery to their daily lives were delayed. The conclusion is to reaffirm the operating

principles of victim support facilities that must be permanently operated under any circumstances, establish a control tower at the national level, develop and distribute an integrated manual. The mid-to-long-term improvement plans included diversifying facility operation methods and discovering policy demands based on victims' experiences.

Key words: COVID-19, Pandemic, Domestic violence, Gender-based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투 고 일 : 2024년 3월 17일
■ 최초심사일 : 2024년 4월 8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4월 28일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에 대한 성별 분석*

최희경**

| 목차 |

- | | |
|-----------------|--------------------|
| 1. 서론 | 2) 연구의 윤리성 확보 |
| 2. 선행연구 검토 | 4. 연구 결과 |
| 1) 가족돌봄청년의 경험 | 1) 범주, 주제 묶음, 주제어의 |
| 2) 가족돌봄과 젠더 | 성별 내용 |
| 3. 연구방법 | 2) 패러다임 모형 분석 |
| 1) 조사 및 자료분석 방법 | 5. 결론 및 제언 |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가족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19~34세 청년 13명(여 9명, 남 4명)에 대한 개별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를 가족돌봄청년의 돌봄경험을 가족, 지역 사회, 공공정책, 젠더 규범 등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성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인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추출된 주제어를 주제 묶음과 범주로 구성하고 성별로 제시하였으며, 주제들간의 관계를 정렬하고 조직화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돌봄 자원 부족과 사회경제적 안전망의 부실 속에서 청년에게 전가된 가족돌봄 부담이 과부화된 상태로 수행되고 있었다. 가족돌봄청년의 공통된 조건 및 동기와 더불어 돌봄의 동기 및 특성, 결과에서 젠더 차이가 나타났고, 돌봄의 성역할과 관련된 젠더 규범이 관찰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1046476).

** 신라대학교 hkyung@silla.ac.kr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성의 돌봄 동기에서는 성역할 기대가 지배적이었고, 돌봄 수행에서 가족 돌봄에 강하게 결속된 상태에서 현재의 돌봄뿐 아니라 미래의 진로나 전문적 정체성 등 사회적 차원으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남성 참여자들은 주변과 연결되지 못한 고립된 돌봄 경험이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돌봄 경험이 주변화되고 개인화됨으로써 사회적 정체성으로 통합되지 못하였다.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청년정책의 다양화, 가족돌봄 경력의 사회적 인정 등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통찰이 제시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돌봄의 경력화를 통한 노동과 돌봄의 통합,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과 성인지적 가족돌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연대와 조직화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가족돌봄청년, 돌봄 경험, 성별 분석, 근거이론 연구방법

1. 서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 정신적인 문제나 알코올·약물 의존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젊은 사람을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일컫는다(시부야 도모코, 2021:6). 정부에서는 영 케어러를 공식적으로 “가족돌봄청년”으로 지칭하였고, 지자체 조례에서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2).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청소년기를 제외한 19~34세의 청년¹⁾의 가족돌봄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가족돌봄청년의 간병살인 사건 이후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 영 케어러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 우리나라에서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의 연령은 공식적으로 19~34세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 연령대를 청년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영 케어러는 가족돌봄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하며, 가족돌봄청년은 영 케어러 중 19~34세 청년을 의미한다.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현황 조사와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들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족돌봄청년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²⁾ 19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규정하여 관련 조사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족을 주로 책임지고 돌보는 주돌봄자를 0.6%에서 1.4%가량으로 추정하고, 최소한의 추정치인 0.6%를 19~34세 청년 인구에 적용해 보면 대략 6만 1,000명을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함선유, 2023).³⁾

청년기는 청소년에서 성인 초기로 이행한 시기로, 성인으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독립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들은 경제 상황 악화와 사회적 경쟁의 강화 등으로 성인기 삶으로의 전환

2) 2022년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의 규모는 과잉축소되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만 13~3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였으나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4만3832명 중 가족돌봄청(소)년은 1,802명으로 추정치의 0.29~0.46% 수준에 불과하여 실제 가족돌봄청(소)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조사였다(경향신문, 2022).

3) 보건복지부의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주돌봄자인 가족돌봄청년들은 중증질환(25.7%), 장애인(24.2%), 정신질환(21.4%), 장기요양 인정 등급(19.4%), 치매(11.7%) 등을 가진 가족을 주당 평균 32.8시간, 평균 54.7개월 동안 돌보고 있었다. 주돌봄자인 청년의 우울감은 70.9%로 일반 청년(8.5%)보다 8배 이상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한겨레신문, 2023). 동일 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당 15시간 이상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청년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4.1%로, 통상 가족돌봄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과 달리 청년층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이 낮고,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주돌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함선유, 2023). 비슷한 시기에 수행된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여성 66.4%, 남성 33.6%). 중고등학생 16.2%, 학교밖청소년 3.3%, 대학생 12.0%, 성인 68.4%로 구성되어 있었다. 돌봄대상자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할아버지 순이었고, 2/3가 돌봄대상과 동거하고 있었다. 65.7%가 월평균 소득 199 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었으며 돌봄에 따른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 '문화 및 여가 참여 기회 부족', '정신건강 문제', '주거비 부담', '돌봄 자체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다(이수영 외, 2023).

과 독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볼 때 성인으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점에서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는 것은 현재의 삶뿐 아니라 미래 삶으로의 이행에서 지체나 어려움을 초래하여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Greene et al., 2017).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가족돌봄을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교육, 심리, 사회관계 등에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승·이정은·이의정, 2022; Addo et al., 2021; Stamatopoulos, 2018). 무엇보다 가족돌봄청년은 노동시장 진입으로의 이행기에 돌봄 부담으로 취업 준비나 경력을 쌓을 기회와 시간이 부족하여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될 수 있으며, 이것은 성인기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과 생활 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함선유, 2017; Day, 2019; Hamilton and Adamson, 2013).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구조 변화와 규모의 축소에 따라 돌봄 문제가 사회화 이슈가 되면서 각종 돌봄 관련 정책이 생겨났으나, 주로 아동 양육 지원이나 노인 돌봄을 책임진 중장년 대상의 돌봄 지원이 다수를 이루면서 청년들의 가족돌봄은 비가시화된 영역으로 존재하였다. 지금까지 가족돌봄을 주로 중, 장년기 여성이 책임지고 있었기에 청년의 가족돌봄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가족돌봄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돌봄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공론화되지 못한채 돌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였다(Boumans and Dorant, 2018).

정치적으로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청년정책이 제시되면서 2022년에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을 지원하게 되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들은 가족돌봄을 제공하는 ‘청년세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청년들의 삶도 어려운데, 이에 더해 가족돌봄의 책임 때문에 사회가 상정한 일반적인 청년기 과업을 수행하기 더 어려운 예외적 존재로서의 가족돌봄청년 문제가 부각되었다. 가족돌봄청년들은 가족돌봄 때문에 중층적인 어려움을 경험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청년세대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가족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눌 다른 가족구성원, 사회관계망이나 제도의 문제와 더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가족돌봄청년 문제를 특정 연령이나 세대 문제로 축소하기 보다는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라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에서 고려되어야 할 또하나의 중요한 차원은 가족돌봄의 수행 주체에 내재된 권력의 비대칭성이다.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는 개인의 선택이나 개별 가족의 특수성을 넘어서 젠더 규범, 노동 시장의 지위(소득), 가족관계 등의 복합적인 역동과 관련이 있으며 주로 권력 위계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이 돌봄 역할을 담당한다(Kittay, 2001).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가족돌봄자 구성의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함선유, 2023), 서울시 영 케어러 실태조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많았고, 돌봄의 전 영역에서 여성이 어려움을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이수영 외, 2023). 최근 몇 년간 집중적으로 출간된 가족돌봄청년의 에세이에서는 왜 취업이 아닌 돌봄을 수행하는가라는 시선과 질책을 받는 남성 청년, 가족돌봄 역할을 당연시하면서도 가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한이나 대표성에 있어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청년의 경험이 나타난다(윤이재, 2020; 조기현, 2019). 이러한 내용들은 청년의 가족돌봄 경험이 성별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기의 남성과 여성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기대되는 역할이 상이하며, 서로 다른 생애 경험과 정체성 속에서 가족돌봄 역할을 수행하기에 그 내용과 의미가 다를 것이다. 따라서 청년의 가족돌봄 경험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을 필요로 한다.

한편, 출생률 저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아동 양육 관련 지원이 확산된 이후 아동 돌봄에서 젠더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23), 노인 돌봄에서 가족돌봄 자원의 부족으로 남성 돌봄자가 증가하였기에(이윤경 외, 2020), 전체 사회 차원에서 볼 때 가족돌봄 수행의 젠더

격차는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젠더 요인은 다양한 요인들(연령, 소득, 직업, 결혼 여부, 돌봄 자원, 가족관계 등)과 더불어 복합적이고 유동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기 가족돌봄은 젠더뿐만 아니라 연령과 취업 상태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복합성을 분석하기에 적절하다. 청년기의 가족돌봄에 대한 분석은 가부장적 가족의 해체와 돌봄 자원의 고갈 속에서 가족돌봄을 둘러싼 성별분업의 변화 양상을 보여줄 수 있으며, 가족돌봄의 다양한 요인들간 상호작용과, 이후 생애과정에서의 노동과 돌봄의 재편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것이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관련 지원은 당사자의 다양한 경험과 욕구를 반영하기보다 청년층의 지지와 관심을 받기 위한 정략적 차원의 ‘보여주기식’ 지원, 혹은 취업이나 결혼, 출산 등 사회가 부여한 정상적 청년 역할을 지원하는 획일적인 ‘청년 프레임’에 갇혀있다(조기현, 2022).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실제 가족돌봄을 수행하거나 이를 경험한 당사자들의 경험과 욕구에 기반해야 하며, 이들의 다양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출발선에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경험과 요구에 대한 경청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의 경험 드러내기, 의견 표출과 참여는 사회가 일방적으로 부여한 청년(기)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고 가족돌봄청년들을 지원정책의 주체로 세워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지역사회 관계망, 공공정책, 사회적 규범 등 다양한 환경 맥락 속에서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둘째, 가족돌봄 경험에서 여성청년과 남성청년의 공통점과 차이는 무엇인가?

2. 선행연구 검토

1) 가족돌봄청년의 경험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 영 케어러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어려움과 긍정적인 영향들이 함께 보고되었다. 영 케어러들은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학교생활과 학업, 경제적 문제와 취업, 가족과 사회관계 등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승·이정은·이의정, 2022; Addo et al., 2021; Stamatopoulos, 2018).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기 돌봄에 소홀해지고, 피로감과 스트레스, 좌절감, 죄책감과 불안, 우울감,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였다. 학업 또는 직업과 돌봄을 병행하면서 학업과 일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고(Becker and Sempik, 2019), 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라면 취업 준비에 집중하지 못해 취업 기회를 갖기 어려워지고, 노동시장 진입의 지체와 주변화로 성인기 이후 지속적인 빈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D'Amen, Socci, and Santini, 2021). 또한 가족돌봄 책임으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여가시간 부족으로 또래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부족하다(Rose and Cohen, 2010; Addo et al., 2021). 가족돌봄의 긍정적 영향으로는 대처기술과 일상생활 기술 향상, 조기 성숙과 배려심, 회복탄력성(resilience) 증진, 목적의식, 조직력 및 계획 능력, 유연한 시간 관리 기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착감 증진 등이 보고되었다(Addo et al., 2021; Moore and McArthur, 2007).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돌봄청년 문제가 가시화된 2021년 이후 주로 질적 연구를 통해 당사자들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권지성·좌현숙·최서경, 2023; 김서영·이재림, 2023; 김아롱·정익중, 2023; 선미정·장정은·김진영, 2022; 임정현 외, 2022; 최윤진·김고은, 2022). 가족돌봄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가족 갈등과 해

체, 경제적 문제, 정보 부족 등)이 가족 돌봄의 계기로 제시되었으며 중첩된 돌봄 부담과 다중적인 역할, 또래와 다른 생활, 불안정한 일자리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등이 공통적 문제로 제시되었다. 또한 공적 지원의 까다로움과 복잡한 행정절차,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좌절감을 경험하였으나, 돌봄의 긍정적 의미 부여와 인간적 성장, 가족에 대한 헌신과 애정을 표현하였다.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하는 영 케어러 관련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에 의하면 ① 가족돌봄 상황 전개, ② 돌봄 노동, 고단한 삶과의 직면, ③ 세상 속 돌봄 상황 가운데 나의 대응 노력과 변화들, ④ 새롭게 발견한 돌봄의 의미, 그리고 성장 등 4개의 범주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길태영, 2023). 서울시의 영케어러지원사업 참여자들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도움과 자기 돌봄과 자신만의 시간 확보, 청년돌봄자로서의 사회적 인정에 따른 공감과 위로를 받고 우울감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다(임정현 외, 2022).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적은 수의 사례 수(46명)를 대상으로 주관적인 경험을 탐색한 질적 연구들이로서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가족돌봄청년이라는 개별 주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가족과 친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전체사회)을 고려한 체계적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으며, 특히 청년기 가족돌봄에서 주요요인 중 하나인 젠더 특성에 주목한 성인지적 연구는 실행되지 않았다.

2) 가족돌봄과 젠더

가족 중에 누가 돌봄을 담당하는가는 개인, 혹은 개별 가족을 넘어서 젠더 역할, 노동 시장의 지위(소득), 가족관계와 친밀성 등의 역동을 반영한 결과이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다. 그 결과 주로 가족 내 권력 위계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이 돌봄 역할을 담당한다(Kittay, 2001).

사회적 차원에서도 젠더와 인종, 계급 등의 위계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로 돌봄 제공자가 된다(트론토, 2014).

대다수 사회에서 가족돌봄을 주로 여성이 담당하며,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젠더화된 돌봄의 특성(gendered nature of care)이 제시되었다. 가족돌봄의 책임 할당과 역할 분담, 돌봄의 내용과 수행 방식, 서비스 욕구에서 젠더 차이가 나타난다(Brewer, 2001; Hooyman and George, 2005). 가족돌봄을 주로 여성이 담당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성장 과정에서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돌봄 역할에 숙련되기 때문이다(Dwyer and Coward, 2002; Finley, 1995). 또 다른 이유는 여성들의 노동 참여율이 남성보다 낮고 저임금이나 임시직, 시간제 등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서 일하므로 경제활동을 쉽게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Cancian and Olicker, 2000; Lewis and Giullari, 2005; Ware et al., 2003). 그간 돌봄의 탈가족화(상품화와 사회화)가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많은 가사와 돌봄 시간을 보여주며, 우리나라는 4배 이상 격차가 나타났다(안숙영, 2018). 이는 “돌봄의 여성화” 현상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족돌봄의 젠더 차이가 여전히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부모 돌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돌봄 제공자 1순위는 비혼 딸이며, 다음 순위로 기혼 딸, 비혼 아들, 다른 대안이 없을 때 기혼 아들이 돌봄 책임을 맡는다(석재은, 2020; 지은숙, 2017). 노인 돌봄의 경우 배우자가 1순위이기 때문에⁴⁾ 남편 주돌봄자가 증가하고 아들이 주돌봄자가 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기는 했지만, 아내나 딸 등 여성에게 돌봄 책임이 우선적으로 할당되므로 노인 돌봄에서 젠더 규범이 약화되었다기보다 가족 내 돌봄 자원의 부족과 대안의 부재에 따른 상황 적응으로

4)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이 가족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의해 돌봄을 받는 경우, 가사와 식사 등 주된 일상적 돌봄에서 배우자, 딸, 아들의 순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며느리의 역할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윤경 외, 2020).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지은숙, 2017). 가부장적 가족 규범의 해체와 가족 구성의 변화로 노부모 돌봄을 주로 며느리가 담당하던데서 딸이 담당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으나, 노부모 돌봄에서 젠더의 비대칭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아동 돌봄의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돌보는 아빠’의 등장과 맞벌이 가족 증대에 따른 불가피성, 출생률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남성의 돌봄 참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⁵⁾ 이러한 경향 속에서 남성의 가족돌봄 실천 사례를 통해 “돌보는 남성성”이라는 새로운 남성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문현아, 2021). 특히 경제적으로 근대적 가부장적 남성성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20-30대 청년 남성들이 성찰적 개인화 경향을 보이며 고정된 성별분업을 유연하게 만들고 젠더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남성성”을 수행한다고 보았다(김순남, 2021; 김엘리, 2020). 돌봄 참여 남성들이 실제보다 과잉대표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변화된 가족구조와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남성성이 가진 복합성과 유동성은 기존의 젠더관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족 돌봄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회구성원에게 전가되는 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적 가치는 돌봄 민주주의이다. 돌봄 민주주의는 돌봄이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자 조직 원리로 작동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관심과 책임, 돌봄 제공(실행)을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고 돌봄 수혜의 권리를 완전히 존중받음을 의미한다(트론토, 2014). 돌봄의 젠더 불평등은 돌봄의 사회화와 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이기에, 돌봄 민주주의 실현의 선결과제이다.

5) 2022년 육아휴직자 13만 1천명 중 남성은 약 3만 8천명(28.9%)으로 2019년에 비해 1.7배 증가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근로자 중 남성이용자는 약 2천명(10.3%)으로, 동년 대비 2.7배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23).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돌봄의 의미와 삶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특히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례 수를 다룰 수 있고, 자료 분석을 단계별로 수행하여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효과가 있으며, 분석 과정에서 정밀성과 엄격성을 부여하도록 고안되어 체계적이고 설명력 있는 결과를 제시하는데 유용하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주관적 경험을 인과적 상황, 현상, 맥락적 상황, 중재적 상황, 대응전략, 결과로 분석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는데,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홍현미라 외, 2010; 글래서·스트라우스, 2017). 가족돌봄청년의 주관적 경험, 가족관계의 역동과 상호작용, 공적 지원의 효과, 돌봄에 대한 가치 및 인식의 변화, 개인적 성장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성별로 비교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타당성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데 근거이론 연구방법이 적절하다.

1) 조사 및 자료분석 방법

(1) 조사방법

질적 연구의 조사참여자 수는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개별심층면접이 가능한 선에서 10인 내외로 선정한다(패짓, 2001). 가족돌봄청년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족돌봄청년 사업을 수행한 서울시 마포구와 서대문구, 부산시 중구, 광주시 광산구 등 지자체의 구청 사업담당자, 영 케어러 지원사업 주관기관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과 가족센터, 대학교 등의 기관에 모집을 의뢰하여 조사참여자를 선정하는 의도적 표집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참여

자들이 추천하는 참여자를 추가로 확보해가는 눈덩이 표집방식도 활용하였다. 조사참여 요건은 당시 기준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부모나 조부모, 형제나 자매 등)을 주 15시간 이상 6개월 이상 혼자 돌보고 있거나, 여럿이 돌보는 경우 돌봄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과거 돌봄 경험은 1년 이내) 19~34세 청년이었다. 연구자는 조사참여 지원자에 대해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연구 목표와 내용, 조사의 내용과 방식, 개인정보활용 동의 여부 등을 설명한 후 지원자 중 조사참여자 13명(여성 9명, 남성 4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조사참여자 선정 후 조사참여자들에게 개별심층면접 조사 질문지를 미리 발송하여 사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2023년 1월 4일~2023년 6월 2일에 개별심층면접 조사를 실행하였다. 개별심층면접은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와 대면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참여자당 1-2회 수행하였으며, 1회당 1시간 30분~2시간이 소요되었다. 개별심층면접 조사의 내용은 ① 인구학적 특성(연령, 성별, 가족관계) ② 가족돌봄 경험 ③ 가족돌봄 이외의 개인생활 ④ 가족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⑤ 자신의 삶에서 가족돌봄 경험의 의미 ⑥ 사회적 요구 등이었다. 보완조사로 구글폼을 활용한 서면조사를 통해 자세한 돌봄 수행 내용 및 하루 일과, 개별심층면접에서 누락된 내용, 연구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개별심층면접 완료 후 참여자 중 희망자 9명(여성 6명, 남성 3명)을 여성과 남성 집단으로 나누어 2023년 6월 2회에 걸쳐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초점집단면접 조사를 실행하였다. 초점집단면접조사의 내용은 ① 자기소개 및 가족돌봄 상황 소개 ② 가족돌봄 경험 공유 ③ 여성(남성)으로서 가족돌봄의 보람과 어려움 ④ (희망하는) 가족돌봄의 지원 등이었다. 초점집단면접 조사는 2시간30분~3시간 가량 소요되었으며 개별심층면접 조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참여자간 공통된 경험 공유, 공감과 상호 격려, 유대감, 성별 돌봄 경험(여성(남성)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깨달음) 등

에 대한 진술이 나타났다.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는 녹음과 대화 텍스트 기록 기능을 이용하였으며, 대면조사는 네이버 클로바노트 앱을 활용하여 음성 녹취와 텍스트 변환을 하였다. 비대면조사와 대면조사에서 연구자는 주요 내용과 관찰 내용 등을 직접 기록한 조사노트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텍스트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조사참여자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참여자의 특성

연번	연령	성별	하는 일 (직업)	돌봄 대상	돌봄 기간	동거 여부	사적 지원 (보조돌봄자)	공적 지원
1	25	남	회사원	어머니	3년 반	비동거	없음	영케어러 지원
2	31	여	공공근로	아버지, 동생	2년	동거	없음	청년안심일자리, 공공근로
3	26	여	대학생	어머니, 외삼촌	6년	동거	친척	기초생활수급,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영케어러 지원
4	26	여	프리랜서	아버지	7년	비동거	어머니	난치성 질환자 지원, 영케어러 지원
5	33	여	무직	언니	14년	비동거	비혼 동거인	기초생활수급, 영케어러 지원
6	31	여	연구원	어머니	10년	동거	없음	기초생활수급, 장애인활동지원, 영케어러 지원
7	27	여	무직	여동생	3년	동거	친척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지원, 청년 상담지원
8	34	여	무직	부모	12년	동거	없음	영케어러 지원사업, 공공근로

연번	연령	성별	하는 일 (직업)	돌봄 대상	돌봄 기간	동거 여부	사적 지원 (보조돌봄자)	공적 지원
9	20	남	대학생	어머니	5년	비동거 (사망)	외가 친척	기초생활수급
10	28	여	사회복지사	동생, 아버지	3년	비동거	새어머니	없음
11	21	여	대학생	언니	6년	동거	없음	산정특례 치료비 감면
12	22	남	대학생	친할머니	6년	비동거	친척	없음
13	20	남	대학생	아버지	10년	동거	없음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지원

연령은 20대가 9명, 30대가 4명이었고, 여성 9명, 남성 4명이었다. 현재 하는 일은 대학생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3명이 무직, 회사원과 사회복지사, 프리랜서, 연구원 등의 직업과 공공근로 참여자가 있었다. 돌봄 대상은 부모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생이나 언니, 할머니, 외삼촌 등이었으며, 3명은 돌봄대상자가 2명이었다. 돌봄 기간은 짧게는 2년에서 최장 14년까지였으며, 7명은 돌봄대상자와 동거, 5명은 비동거, 1명은 돌봄대상이 얼마 전에 사망한 상태였다. 비동거인 경우 주중에 시간날 때마다 수시로 오가면서, 주말에 돌봄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돌봄에서 다른 가족이나 친지, 지인의 도움 여부에 대해 6명이 없다고 하였고, 4명이 친척, 어머니나 새어머니, 비혼 동거인 등이 돌봄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관련 기관의 도움으로 조사참여자를 모집한 관계로 공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10명)였으며, 2명은 공적 지원을 받지 않았다.

(3) 자료분석 방법

텍스트로 변환된 개별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 구글폼 보완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자료분석을 실행하였다. 자료분석은 질적 연구의 자료분

석 방법인 지속적 비교방법에 따라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의 순서로 실행하였다(패짓, 2001). 개방 코딩에서는 모든 텍스트를 차례로 통독하면서 줄 단위로 근거자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지속적인 비교과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휘, 개념 등을 주제어로 추출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하였다. 코딩 과정에서 설정된 상호관련된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이해 가능한 이름을 부여하여 주제 묶음으로 구성한 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축 코딩 단계에서는 주제 묶음들간 관계를 확인한 후 선택적 질문 과정을 거쳐 개방 코딩에서 추출된 주제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하여 각 주제 묶음 간의 관계를 정렬하고 조직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설명을 체계화하였다. 선택 코딩에서는 주제 묶음을 더욱 추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범주를 구성한 후, 구조와 과정에 대한 분석을 결합하여 분석 과정을 통해 추출된 경험과 의미의 개념들을 조직화하여 인과적 상황, 현상, 맥락적 상황, 중재적 상황, 작용 및 상호작용 전략, 결과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각 요소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별도로 표기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의 윤리성 확보

본 연구의 조사를 실행하기 전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번호 1041449-202210-HR-001). 본 연구의 주제인 가족돌봄은 개인과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사와 연구에 있어 윤리적 민감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윤리성 확보와 조사참여자의 사적 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하였다: ① 조사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한 경우에만 조사에 참여하였다, ② 조사 질문 중 답변을 원하지 않는 내용은 답변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③ 사생활이

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대화를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이후 모든 연구절차에서 연번으로만 명명하였다, ④ 조사 내용은 연구자 이외에 아무에게도 개방되지 않았으며 녹화 및 녹취 파일은 텍스트 변환 후 모두 삭제하였다, ⑤ 조사참여자가 면접조사 텍스트 파일을 확인한 후 연구에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가 있었던 경우 이를 제외하였다. ⑥ 연구자는 조사참여자와의 첫 접촉부터 연락, 조사 및 분석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이고 신속한 연락과 소통을 통해 조사참여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조사 과정에서 따뜻함과 공감, 격려와 존중을 표현하였다.

4. 연구 결과

1) 범주, 주제 묶음, 주제어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나온 주제어를 주제 묶음으로 제시한 후 이를 범주화하였으며, 성별로 범주와 주제 묶음을 제시하고(〈표 3〉)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각 범주와 주제별로 주제어와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3〉 범주와 주제 묶음의 성별 제시

여성		남성	
범주	주제 묶음	범주	주제 묶음
돌봄까지 떠맡다	끊어진 가족관계	돌봄이 떠넘겨지다	끊어진 가족관계
	엮힌데 덮친 문제		엮힌데 덮친 문제
	사랑과 보은		사랑과 보은
	가능한 상황?		가능한 상황?
	당연한 내 책임		나밖에 없음

여성		남성	
범주	주제 묶음	범주	주제 묶음
돌봄을 전디다	너무 벅찬 역할들	돌봄을 전디다	너무 벅찬 역할들
	나의 삶 포기		나의 삶 포기
	돌봄에 묶임		고립된 돌봄
	여자니까		남자라서
돌봄과 삶의 균형	체념과 버티기	돌봄과 삶의 균형	임기응변과 적응
	자기 돌봄과 내 생활 지키기		자기 돌봄과 내 생활 지키기
	지원 찾기		지원 찾기
함께 잡은 손들	공적 보호망	함께 잡은 손들	공적 보호망
	사적 지원		사적 지원
	당사자 연대		
돌봄이 남긴 것들	여전한 불안	돌봄이 남긴 것들	여전한 불안
	상처의 흔적		상처의 흔적
	나의 성장과 보람		나의 성장과 보람
	돌봄과 나의 미래		
	필요한 지원		필요한 지원

(1) 돌봄까지 떠맡다 vs. 돌봄이 떠넘겨지다

가족돌봄의 동기에 대한 범주는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은 ‘돌봄까지 떠맡다’, 남성은 ‘돌봄이 떠넘겨지다’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돌봄의 동기에 있어 여성들은 기존의 가족 역할과 더불어 돌봄 역할의 자발성과 당연함의 의미가 지배적으로 나타났고, 남성들은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떠밀리듯 역할을 수용했다는 점이 더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세부 주제 묶음에서는 ‘끊어진 가족관계’와 ‘엮힌데 덮친 문제’, ‘사랑과 보은’, ‘가능한 상황?’이 공통으로 나타났으며, ‘당연한 내 책임’(여성)과 ‘나 밖에 없음’(남성)의 주제가 다르게 나타났다(표 4).

〈표 4〉 ‘돌봄을 떠난다’ vs. ‘돌봄이 주어지다’ 주제 묶음과 주제어의 성별 내용

여성			남성		
범주	주제 묶음	주제어	범주	주제 묶음	주제어
돌봄 까지 떠날다	끊어진 가족관계	가출, 이혼, 재혼 후 단절, 불 화로 연락 끊음, 가족 해체, 발병 이후 관계 단절, 부모의 무책임과 돌봄 회피, 과거부 터의 방임 지속	돌봄이 떠넘겨 지다	끊어진 가족관계	부(모)와의 단절, 갈등 과 불화, 도움을 바랄 수 없음, 어른들의 회피와 미루기
	엮힌데 뒹친 문제	부모의 경제 능력 상실, 부모 의 지원이 원래 없음, 빈곤상 태에서 생긴 사고와 질병, 실 직, 가족원의 장애(정신질 환, 알코올중독), 나의 건강 도 나쁨		엮힌데 뒹친 문제	생계의 어려움, 실직, 한 부모 가정, 기댈 언덕이 없음
	사랑과 보은	사랑받은 만큼 표현하고 싶 음, 은혜를 되갚음, 사랑이 돌봄을 선택하고 유지하게 함,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함		사랑과 보은	고마움, 내가 받은 사랑 을 돌려줌, 키워주신데 보답, 나에게 의존과 기대, 뭐라도 하고 싶어 서, 가족은 내가 지킨다 는 책임감
	가능한 상황?	취준생이어서 돌봄 역할 수 용, 대학생이어서 가능, 하 교 후 시간 이용, 매인 대가 없음, 돈을 벌지 않으므로		가능한 상황?	대학생이어서 시간이 자유로움, 직장이 없는 상태
	당연한 내 책임	외동딸, 시설 입소에 대한 죄책감, 처음부터 그랬던 것 처럼 자연스러운 일, 가족들 이 나에게 기대함, 예전부터 당연하게 생각, 부모에 대한 불신감과 부모 역할 대신하 기, 가족의 일이 곧 내 일		나밖에 없음	선택 불가능, 다른 사람 없음,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밖에

① 끊어진 가족관계

조사참여 가족돌봄청년들의 가족관계는 대부분 부나 모의 가출, 이혼과 재혼, 갈등과 불화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내에 돌봄 요구가 발생했을 때 자원 자체가 부재하거나 부족한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참여자 5명이 연장자들(부모나 친척들)의 무책임과 회피, 과거로부터의 방임으로 미성년자 시기부터 가족돌봄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가족들의 관계 문제로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다”(2)는 조사참여자의 진술은 가족 문제가 청년돌봄자에게 전가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② 옆친데 덮친 문제

이들의 경제적 여건이나 가족구조, 주변의 지지망 등은 원래부터 취약한 상태였다. 한부모가족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주변에 도움을 줄 친척이나 관계망이 부족하였다. 거기에 실직과 산재사고,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발병과 장애 등으로 부모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거나, 가족 중에 중증 정신질환과 알코올중독 등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도 많았다. 빈곤과 실업, 장애와 질병의 악순환 속에서 상황은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처럼”(9) 덮쳐왔다고 한다.

③ 사랑과 보은

조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족돌봄의 동기로 가족에 대한 사랑과 보은을 이야기하였다. (조)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고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있기에 돌본다는 점은 여성과 남성이 공통적이었다. 다만, 남성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내 가족을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12)이나 “사명감”(13) 등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사랑이 돌봄을 선택하고 유지하게 했다..... 정말 할만큼 한거 같다. (6)
 사랑받은 만큼 뭔가 해드리고 싶었다. 그게 여기까지 오게했다....나에게 많이 의지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런거에 대한 사명감이 있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 (13)

④ 가능한 상황?

대다수의 조사참여자들이 돌봄을 맡게 될 당시에 자신이 대학생이거나 휴학 상태,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시간이 많고 “매인데가 없는”(7) 상황이 작용했다고 하였다. 미성년자인 중고생때부터 돌봄을 수행한 경우, 취업한 어른들을 대신하여 하교 이후 시간에 틈틈이 돌봄을 수행하였다. 또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돌봄 역할을 수용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가족돌봄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업에 심각한 침해를 받았으며 취업 준비를 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나 청년이 가족돌봄에 투입된 것은 자발적이라기보다 사회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봄 역할이 떠넘겨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취준생이었으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취업을 하고 있었다면 돌봄에서 빠져나갔을 것이다. (2)

⑤ 당연한 내 책임 vs. 나밖에 없음

돌봄의 동기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돌봄이 당연한 본인 책임이 되었는가,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수용하였는가 하는 부분이다. 여성의 경우에도 외동딸 등의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지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가족돌봄이 자신의 책임이 되었다는 점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시기부터 시작된 돌봄 역할의 연장이거나, 가족들의 기대 등으로 당연하게 돌봄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특히 어머니)의 돌봄 역할 망기나 회피를 본인이 대신하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 한부모가족이거나 가족이 어린 동생밖에 없고 돌봄 대상과 친한 사람이 자신밖에 없는 등, 불가피한 상황적 요인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돌봄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가족돌봄의 조건과 동기에 대한 이상의 결과는 가족돌봄이 젠더(성 역할 규범)에 의해 지배적으로 결정되며(안숙영, 2018; Brewer, 2001;

Hooyman and George, 2005; Dwyer and Coward, 2002), 미혼의 딸들에게 우선적으로 할당된다는 점(석재은, 2020; 지은숙, 2017)을 재확인해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족 수의 축소와 해체 등으로 가족돌봄 자원 자체가 부족할 경우 남성이 돌봄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취업 여부나 돌봄대상자의 선호, 가족관계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2) 돌봄을 건디다

가족돌봄의 수행과 관련된 ‘돌봄을 건디다’ 범주에는 여성과 남성 각각 4개의 주제 묶음이 나타났다. ‘너무 벅찬 역할들’, ‘나의 삶 포기’는 동일하게 나타난 주제 묶음이었다. 여성은 ‘돌봄에 묶임’과 ‘여자니까’라는 주제 묶음이, 남성은 ‘고립된 돌봄’과 ‘남자라서’의 주제 묶음이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돌봄을 건디다’ 주제 묶음과 주제어의 성별 내용

범주	여성		남성	
	주제 묶음	주제어	주제 묶음	주제어
돌봄을 건디다	너무 벅찬 역할들	여러 명을 같이 돌봄, 나에게만 의존하고 나는 도움 받지 못함, 기약 없는 돌봄, 학업 및 아르바이트와 돌봄 병행, 생계 책임(가장 역할), 가족 갈등 증재, 항상 변이웃 상태, 증상 악화(폭력, 발작 등)시 감당 못함, 장애를 감추려는 가족과 해결하려는 나	너무 벅찬 역할들	모두 내 책임, 상황에 압도됨, 두 집 살림, 많은 돌발상황, 아픈걸 지켜보기 힘들, 내가 다해야 한다는 압박감, 나는 아무도 안챙겨줌, 외출 타기(빠끗하면 바로 죽음), 지속적 긴장상태 유지
	나의 삶 포기	휴일 없음(휴일이 더 바빠), 개인 시간 없음, 정상진료 이탈, 직장 생활 및 사회생활 중단, 대학진학 포기, 자격증과 실습 등 스펙 포기과 공백, 원하는 전공 포기, 성적 하락에 따른 장학금 탈락과 학자금 대출 악순환, 나 자신에 집중하고 미래 준비할 여력이 없음, 연애와 사랑 포기, 더 나은 삶 희망 접음, 돌봄 위해 지역 이동, 지인(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짐	나의 삶 포기	학교 중단, 성적과 학점 포기, 상급학교 진학 포기, 내 생각 포기, 대인관계와 친구 관계 최소한으로 유지, 공적 생활의 신뢰(약속, 역할, 책임분담 못 지킴) 상실, 휴식과 수면 포기, 만성피로 상태, 여가는 잠과 누워있기로 채움, 규칙적 식사 어려움

범주	여성		남성	
	주제 묶음	주제어	주제 묶음	주제어
	돌봄에 묶임	나와 돌봄이 항상 결부됨, 모든 것(일상, 시간, 감정, 욕구)을 돌봄대상에게 맞춤, 가족돌봄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임, 돌봄과 내 미래가 분리되지 않음	고립된 돌봄	고민 나눌 사람이 없음,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움(공동화제가 없음), 혼자 섬에 갇힌 듯, 맞게 하고 있는지 확신이 안 섬, 다른 사람에게 (돌봄에 대해) 말하지 않음
	여자니까	청년여성 자살은 본인보다 가족관계 때문, 남자 가족원들의 이기적인 삶, 착한 딸이라는 가스라이팅, 딸들은 지원은 못받고 돌봄만, 아들이었으면 맡기지 않았을 일, 억울한 마음, 엄마의 역할이 딸에게 대물림, 엄마가 돌봄 책임을 딸에게 전가	남자라서	군대생활이라 생각, 사회적 기대와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다름(취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선), 돌보는 남자를 불편해함, 정서적 돌봄 기술 부족, 일상 돌봄(배변, 목욕)의 민망함과 불편

① 너무 벅찬 역할들

가족돌봄청년들은 모두 돌봄과 학업, 아르바이트, 취업을 기약 없이 병행하고 있었고, 별거하는 경우 두 집을 오가야 하고, 여러 가족을 동시에 돌보는 경우도 많았다(2,3,5,8). 이들은 수면과 휴식을 줄여가면서 다중 역할과 과중한 책임을 감당하였으며, 지속적 긴장 상태와 압박감, 수많은 고비와 위기 속에서 “압도된 상태”(9)였다. 다른 가족이 돌봄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위태롭게 지속되는 돌봄 상황은 “빠듯하면 바로 죽음인 외줄 타기”(7)로 비유되었다. 특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 폭력과 자해 등 돌발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기진맥진한 상태로 돌봄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정작 자신은 돌봄이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이런 위태로운 상태의 돌봄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다는 부분”(6)이었다.

② 나의 삶 포기

여성과 남성 모두 가족돌봄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였다고 하였는데, 개인 시간이나 휴식, 여가시간을 포기하고 돌봄을 수행하였다. 가족 돌봄 때문에 학업이나 취업 중단, (돌봄과 관련된)전공으로 변경, 상급학교 진학 포기, 성적 하락에 따른 학자금 대출 증가, 경력(스펙) 포기과 진로 공백, 연애와 대인관계 포기, 지역 이동 등을 경험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 일부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접은”(8) 상태라고까지 하였다. 청년기에 경험하거나 배워야 할 것, 미래에 대한 준비 등을 포기하고 규범적인 생애경로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은 박탈감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 부분을 다 숨기고, 나도 그게 약점이 되어서 연애를 지속하기 어려웠다.... 나는 사랑도 할 수 없고, 미래의 삶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때문에.....(5)

③ 돌봄에 묶임 vs. 고립된 돌봄

여성과 남성의 돌봄 수행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여성들은 돌봄대상과 자신이 항상 결부되어있고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모든 일상과 시간, 정서와 욕구 등이 돌봄 대상자에게 맞추어지고 본인의 직업, 진로나 미래 계획에서도 자신보다 돌봄대상자를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이것은 가족돌봄이 여성의 삶에서 매우 크고 무겁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의 과거, 미래, 현재와 동생 돌봄이 반드시 결부된다. 직업(사회복지사)을 선택할 때부터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였고, 미래계획에도 동생에 대한 돌봄 책임이 결부된다. (10)

나는 언니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릴때부터 분리가 되지 않았다..... 최대한 언니를 돌보면서도 할 수 있는 직종을 생각해야 했다.....이렇게 묶여서 계속 같이 가야 한다. (11)

남성 참여자들은 주변에 가족돌봄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도 타인의 공감을 구하기 어렵고 친구들과 공통 화제가 없으며, 돌봄에 대한 고민이나 의문이 생겨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남성 청년이 가족돌봄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본적이 없어서 “혼자 섬에 갇힌 듯한”(13) 느낌이 든다고 하였으며, 자신의 가족돌봄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거나 드러내어 말하지 않으려 하였다. 남성청년의 가족돌봄은 타인과 공유하기 어려운 고립된 경험으로 존재하였다.

나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다른 사례나 조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확신도 없고.... 이렇게 고립된 상태가 제일 힘든 부분이다(1)

④ 여자니까 vs. 남자라서

돌봄 수행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진술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딸(여성)이기 때문에 가족돌봄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많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부당하고 화가 나며 억울하다고 생각하였다. 많은 경우 가족 내에서 아버지나 남자 형제들은 돌봄과 상관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머니와 딸이 가족돌봄을 감당하였다. 어머니와 딸의 가족돌봄 역할이 연결되는 경우는 어머니가 돌봄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딸이 돌봄을 이어가는 경우와(3,4,6), 어머니가 돌봄 역할을 하지 않아서 딸이 그 역할을 대신 감당하는 경우(5,7,10)로 나뉘어졌다.

사람들이 나한테 착하다, 역시 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거 진짜 듣기 싫고....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착해서 하는게 아닌데..... 웬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같아서 너무 짜증난다. (4)

내가 아들이었으면 다르지 않았을까? 남자에 들어있다면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보게 했을까? 아니라고 본다. (10)

오빠는 오로지 1인분의 삶만을 살고, 아버지는 자기 감당도 안되는 분이다. 엄마가 아버지 감당하시다가 병을 얻고 또 엄마 돌봄을 내가 감당하는 그런 대물

림 구조.....(6)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너희들끼리 지금까지 다 했는데, 왜 내가 지금 해야 되냐고 해서 너무 충격을 받고....그 후에는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게 되더라. (7)

남성으로서의 돌봄 수행에 대해 군대 생활에 비유하기도 하였으며 군대보다 보람 있는 경험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직장생활에 지장 많겠다”(1), “나중에 취업 못하면 어쩌냐”(12) 등 청년 남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화된 시선 때문에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과 자신이 수행하는 돌봄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다고도 하였다. 병원 같은 곳에서는 대다수의 돌봄자가 여성이어서 남자 돌봄자의 존재 자체를 낯설거나 불편해하는 경험을 하였다. 돌봄 대상이 여성인 경우 (1,9,13) 배변이나 목욕 등 일상 돌봄에서 민망함과 불편함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돌봄 대상의 욕구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돌봄 기술이 모자라 세심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남성들의 경우 가족돌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만, 돌봄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나 돌봄 영역에서 남성의 희소성 때문에 돌봄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화되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돌봄 경험과 기술의 부족으로 돌봄 수행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군대 면제를 받았으니까 (돌봄을) 군대 왔다고 생각한다....솔직히 군대보다 보람있다. 내 가족을 돌보는 거니까. (1)

어떨 때는 좀 혼란스럽다. 사회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12)

여성들은 더 꼼꼼하고 내가 할머니 방식에 잘 못 맞춰서 힘든 것도 있다. 화장실이나, 옷을 입혀드릴 때도 민망하고.... 다 이기고 해야 하지만, 불편함이 쌓이는 건 어쩔 수 없다. (13)

(3) 돌봄과 삶의 균형

참여자들은 가족돌봄을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돌봄과 삶의 균형을

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범주화되었다. 여성의 진술에서는 ‘체념과 버티기’, 남성은 ‘임기응변과 적응’이 주요 주제로 나타났다. ‘자기 돌봄과 내 생활 지키기’, ‘지원 찾기’는 여성과 남성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표 6〉 ‘돌봄과 삶의 균형’ 주제 묶음과 주제어의 성별 내용

범주	여성		남성	
	주제 묶음	주제어	주제 묶음	주제어
돌봄과 삶의 균형	체념과 버티기	정신 나간 채 그냥 하기, 해탈 수준, 그만둘 방법이 없어서 계속 함, 사는 게 아니라 견디고 연명 함, 돌봄 덕에 삶 유지, 돌봄 대상자와 서로 의지	임기응변과 적응	부딪히면서 실수하며 터득 하기, 임기응변, 터지면 막는 식으로, 무작정 대처하기, 긍정적 사고, 생활 적응,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 당황하지 않기, 생활과 시간을 균형 있게 조정
	자기 돌봄과 내 생활 지키기	가능한대로 내 일 계속하기, 의도적으로 혼자 시간 확보, 내 시간에 집중하기, 건강 유지와 운동, 종교, 정신과 치료받기, 나에게 보상하기, 친구들과 계속 관계 유지, 마음돌봄 사업 참여, 자기 돌봄조차 돌봄을 더 잘하기 위함, 돌봄 대상과 생활 분리, 마치면 빠져나오기, 별거, 독립 준비	자기 돌봄과 내 생활 지키기	시간 내서 쉬기, 영양제 먹고 식사 잘 챙겨먹기, 밝게 웃으며 살려 노력, 계속 상담 받기, 나만의 시간 확보, (일부러) 이기적이며 노력,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만들기, 친한 친구나 이성친구와 만남 이어가기, 돌봄 대상과 생활 분리,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기, 마치면 빠져나오기, 별거
	지원 찾기	서울 아닌 지방은 지원 부족, 서비스 알아보고 지원과 관리 혼자 다 하기(정보제공이나 안내 없음), 인터넷 해매기, 중증만 혜택(사각지대)받고 대부분 실질적 지원 없음, 접근성 저하와 행정절차의 복잡성, 기준의 엄격성, 지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자포자기, 청년 지원은 취업과 결혼에만 집중됨, 돌봄과 근로에 대한 모순된 요구, 사생활 공개와 굴욕감(자존심 포기), 국가는 가족의 독박돌봄 강요	지원 찾기	너무 복잡하고 빈틈이 많은 지원 서비스, 가능한 지원이 없음, 지원과정이 너무 까다로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발로 뛴, 거절 당함과 불신

① 체념과 버티기 vs. 임기응변과 적응

여성들은 현재의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 체념이나 그냥 버티기와 같이 다소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 자체에 압도되거나 소진의 결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돌봄 수행을 위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거나, 돌봄 대상자의 존재가 삶을 지탱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진술이 많았다. 이는 돌봄으로 삶을 포기할 만큼 힘들지만, 돌봄을 해야 하기에 삶을 포기할 수도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준다. 돌봄 수행자와 돌봄 대상자가 서로 의존하며 삶을 지탱하는 모습은 여성들이 돌봄 대상 가족과 정서적으로 매우 밀착된 상태에서 돌봄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느 정도는 해탈한 느낌? 보통사람 멘탈로는 할 수가 없다. 정신이 늘 반쯤 나가 있는 상태에서 산다. 지금 당장 다 죽었으면, 다 멸망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아빠 보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4)

힘든걸 티 낸다고 해서 바뀔게 없으니, 그냥 이렇게 지낸다. 버티는 거지 살고 있는게 아니다. (10)

동생을 돌보는 책임을 져야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거 같다. 안그렇다면 생을 포기하고 지금의 내가 없었겠지. (7)

남성참여자들은 생소한 상황에 그냥 부딪히거나 계속 실수하면서 터득하고 그때그때 문제상황을 모면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시간이 가면서 처음보다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면서 생활이 안정되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남성들은 과업이나 상황에 더 집중함으로써 생활의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때그때 쓰나미가 몰려오면 물 맞으면서 힘이 있으면 수영을 하고, 터지면 또 막고 이런 식으로..... (9)

황당하고 상황이 이해가 안가니까 그냥 닥치는대로 막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터

득해 나갔다.....대학교 와서는 성인이고, 많이 적응이 되어서 훨씬 잘 대처하게 되었다. (12)

② 자기돌봄과 내 생활 지키기

모든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가족돌봄과 분리하여 자신의 생활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가능한대로 학업, 원래 하던 자신의 일, 운동, 종교, 친구들과의 만남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식사 챙기기, 긍정적 사고, 스스로 보상하기, 마음돌봄 서비스나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등 적극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였다. 또한 돌봄을 마치면 빨리 빠져나오고 돌봄 이외의 시간에는 자신에게만 집중하고자 하였다. 자기돌봄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돌봄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시간이었다. 더 적극적으로는 돌봄대상과 주거를 분리하거나 별거, 각자의 독립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없어진다.....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심분 활용하고 집중하려고 한다. (5)

의도적으로 혼자 지내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이 시간조차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기보다 사실 돌봄을 더 잘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이다.

(6)

동생이 같이 안살고 옆집에 살고 싶다고 했을 때 현타가 왔다.....동생은 나를 떠날 준비가 되었는데 나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구나... 나도 이제 독립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10)

③ 지원 찾기

조사참여자들은 어려운 가족돌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각종 공적 지원을 찾아다녔다. 특히 안내자나 정보가 없어 “맨땅에 헤딩하듯이”(4), 혼자서 인터넷과 관련 기관을 직접 헤매고 다니며 가능한 지원을 찾아내었다. 그러나 너무 엄격한 지원기준과 복잡한 행정절차, 까다

로운 과정 등으로 좌절하였고, 어렵게 지원을 받았지만 너무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각종 청년 관련 지원들은 주로 취업과 결혼에 집중되어 있고, 가족돌봄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성인으로서 근로능력이 있으니 일을 해서 돈을 벌라는 모순된 자격 기준 때문에 가족돌봄청년으로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지원(경제적 지원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가능한 지원을 찾는 과정에서 사생활을 모두 공개하고 굴욕감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그럼에도 지원 대상에서 거듭 탈락되면서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다 맡기려는 국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었다.

사생활 다 말하고 복잡한 절차랑 필요한 서류도 무지 많았고 기관마다 다 다르고.....근데 이러저러해서 결국 안된다고....제도는 다 완비된거 같은데 빈틈이 너무 많아서 받기가 힘들다. (1)

엄마와 동거인이 되면 서비스 시간도 줄고 나머지는 내가 다 돌보라는 의미인데..... 또 내가 근로능력이 있으니 생계비가 안나온다고 했다. 결국 주민등록을 분리할 수 밖에 없었다. (6)

(4) 함께 잡은 손들

‘함께 잡은 손들’ 주제 묶음은 조사참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에 대처하는 개별적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로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지원과 도움을 의미한다. ‘공적 보호망’과 ‘사적 지원’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여성의 경우 당사자 연대가 추가 주제 묶음으로 제시되었다. 남성들은 아무도 당사자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성들은(총 4명) 관련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표 7〉 ‘함께 잡은 손들’ 주제 묶음과 주제어의 성별 내용

범주	여성		남성	
	주제 묶음	주제어	주제 묶음	주제어
함께 잡은 손들	공적 보호망	영케어러 지원사업의 도움(돌봄자에 집중), 기초생활수급,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지원 등 공공지원 덕에 돌봄 병행 가능, 자립 기반 제공, 지원을 감사히 무조건 받음, 복지전문가들의 헌신과 유사가족 같은 관계, 공적 지원 덕분에 생을 포기하지 않음, 너무 적은 혜택	공적 보호망	영케어러 지원사업의 도움, 행복복지센터와 복지관의 도움, 학교를 통한 도움, 외부기관 연결, 공적 보호시스템 안에 있었기에 살아남음
	사적 지원	가족 중 유일한 기댈 곳(언니, 새엄마, 이모, 비혼배우자, 사촌동생), 나를 나 자신으로 봐주는 사람들, 편견 없는 주변인들	사적 지원	부정기적인 친척들의 도움
	당사자 연대	돌봄자 정체성, 목소리 내기와 공동행동 시작, 영케어러지원사업 참여자 모임과 공모전 준비, 다른 가족돌봄청년의 존재만으로 위안과 의지가 됨,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모임 참여, 커뮤니티 활동의 중요성		

① 공적 보호망

조사 당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공적 지원이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조사참여자들 중 두 명(10, 12)을 제외하고는 어떤 방식으로든 공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참여자 모집이 관련기관의 의뢰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영케어러지원사업은 가족돌봄청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명(1, 3, 4, 6, 8)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또한 6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계층으로서 지원을 받고 있었다. 돌봄대상 가족이 장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았다(3, 6).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의 치료비 감면 혜택이 있었다. 그러나

공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가능한 지원은 모두 받으려 노력하였다. 공적 지원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중요한 보호망의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경제적 지원과 활동지원 서비스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돌봄과 학업,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헌신적인 사회복지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사회복지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것이 없었다면 위험했을 수 있다. (9)

(가족과 활동지원사) 네 명이 똘똘 뭉쳐서 거의 유사가족 수준으로 함께 잘 해 나가고 있다. 그분(활동지원사)은 내 인생의 인연이다. (3)

② 사적 지원

전반적으로 조사참여자들은 돌봄 자원이 부족하고 사적 지원 또한 빈약하여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지는 못하였다. 특히 남성 참여자들의 경우 두 명이 부정기적으로 친척의 도움을 약간 받을 뿐 다른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여성참여자들은 돌봄에 도움을 주고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들(다른 가족, 친척, 주변인)이 있어서 많은 의지가 된다고 하였으며 장애에 대한 편견없이 지내는 주변인들도 심리적 지지가 된다고 하였다.

③ 당사자 연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영케어리지원사업은 2021년 11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지원을 받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들의 모임이 지속되고 있다. 참여자 중 2명이 이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1명은 발달장애 인형제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한 명은 가족돌봄 경험을 계기로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공모전과 청년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가족돌봄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존재

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관련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다른 가족돌봄청년과의 연대를 통해 “돌봄자 정체성”을 수립하고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당사자 연대에 나타난 인식은 이들이 다른 가족돌봄청년들과의 연대를 통해 사적 돌봄자 정체성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나와 같은 경험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느낌.....(10)

대구 청년 간병살인 사건을 계기로 활동과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나도 돌봄자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나같은 사람이 말해야 하고 경험한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3)

(5) 돌봄이 남긴 것들

가족돌봄은 조사참여자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여전한 불안’과 돌봄 과정에서 받은 고통으로서의 ‘상처의 흔적’, 돌봄 과정을 견디며 이루어낸 ‘나의 성장과 보람’이 주요 범주로 나타났으며, 많은 여성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돌봄과 자신의 미래를 연결시키는 ‘돌봄과 나의 미래’ 범주가 나타났다. 돌봄 경험을 통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지원에 대한 욕구는 ‘필요한 지원’ 범주로 묶었다.

〈표 8〉 ‘돌봄이 남긴 것들’ 주제 묶음과 주제어의 성별 내용

범주	여성		남성	
	주제 묶음	주제어	주제 묶음	주제어
돌봄이 남긴 것들	여전한 불안	경제적 곤란(아무 대책 없음), 현재 생활 지속 가능성 불확실, 위태로운 균형상태, 더 악화됨에 대한 불안, 미래에도 돌봄이 지속될 것 같은 불안	여전한 불안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모름, 경제적 어려움, 수급 취소 불안감, 발목 잡힌 느낌(경쟁에서 뒤처짐)

범주	여성		남성	
	주제 묶음	주제어	주제 묶음	주제어
	상처의 흔적	신체적 질병(근골격계 질환, 암 진단)과 정신적 문제(우울증, 공황장애, 게임중독 등), 생사의 기로(자살사고와 시도), 절망감, 분노와 우울, 정체되고 뒤쳐진 느낌, 청년기에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움, 사회생활의 의욕 상실, 돌봄 대상자와 관계 악화, 다른 가족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실망, 국가에게 버림받은 느낌	상처의 흔적	신체질환(만성피로, 디스크), 상실감(성장할 기회와 내게 집중할 시간을 잃음), 낙인감, 자아실현 욕구의 좌절, 우울증, 혼자 다 안고가려는 태도, 가족관계 악화, 집안 어른들에 대한 원망과 불신
	나의 성장과 보람	가족관계 개선, 성취감과 효능감(혼자 힘으로 해냄), 성장의 밑거름, 삶의 전환점,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미래가 두렵지 않음, 견뎌낸 자신에 대한 자부심(희망의 근거), 무뎌하고 침착해짐, 삶의 방향성 설정, 죽음에 대한 성숙한 태도, 후회하지 않음, 함께 보낸 시간의 소중함	나의 성장과 보람	일찍 철들, 책임감, 자부심, 워라밸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음, 타인에 대한 이해,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수립(내 자신으로 서게 됨), 일상생활 자립, 강한 생활력, 후회 없음, 나의 강점과 미래의 자산을 얻음, 복지 시스템에 대한 지식 생김, 사회복지전문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
	돌봄과 나의 미래	내 진로의 뿌리로서의 돌봄, 가족돌봄으로 표창받음, 돌봄 후 진로 변경, 가족돌봄이 직업 전 문성에 도움,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구상, 정부에 제안하고 발언, 가족돌봄 관련 공모전 참여와 스펙 쌓기		
	필요한 지원	생계지원(돌봄 수당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연장, 전문적인 상담 지원, 여가 및 문화 지원(돌봄자 집중 지원), 찾아가는 지원(안내, 정보제공, 사례관리), 맞춤형 지원, (정신장애, 중증 지로한 등에) 전문화된 돌봄 서비스,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간 확대, 자조집단 구성, 가족간병휴가 확대(모든 가족 다 포함), 취업시 돌봄 경력 인정, 군대 면제나 대체복무	필요한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 연장, 가족돌봄청년(온라인)전담 창구, 지속적인 심리상담, 욕구와 상황에 따른 청년 지원

① 여전한 불안

조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한 돌봄의 결과 중 가장 보편적인 진술은 다중적인 불안이었다. 공통적으로 돌봄과 생계를 병행하는데 따른 경제적 불안을 가장 많이 표출하였고, 위태로운 돌봄 상황이 언제까지 지탱될 수 있을지, 돌봄이 언제 끝날지도 기약이 없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도 많았다. 돌봄 이후를 상상하기 어렵고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의 삶과 진로에 대한 불안도 심화되었다.

돌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나도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유나 해방이 있을까?..... 상태가 더 나빠지리라는 불안감과 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크다. (6)

② 상처의 흔적

조사참여자들은 가족돌봄을 수행하며 갖게 된 고통과 어려움이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랜 직접 돌봄에서 오는 신체적 질병(근골격계 질환, 만성피로, 암 등)과 심리적 문제(우울증, 공황장애, 게임중독 등)를 겪었으며 정서적으로도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였다. 학업이나 진로 선택에서 자아실현 욕구를 포기한데 따른 상실감과 좌절감, 의욕 저하 등이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여성들의 경우 자살 사고나 시도, 극단적인 절망과 번아웃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과정에서 돌봄대상자와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는 다른 가족원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신도 표출되었다.

책임감을 얻은 대신 잃은게 너무 많다.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성장할 시간을 잃었다. (13).

(돌봄을 하며) 20대를 지나고 부작용이 너무 많이 왔다. 건강도 상하고, 친구도 없고, 가족관계도 박살나고 스스로도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다. 마음 속으로는

분노와 의심밖에 없다.... 번아웃 상태처럼 일도 싫고, 사회생활도 싫고, 해보고 싶은 의욕이 사라져서..... (5)

③ 나의 성장과 보람

가족돌봄의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사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내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였고 보람을 느꼈으며 가족돌봄의 긍정적인 결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근거로도 작용하였다. 어려운 일들을 견뎌 낸 후의 성취감과 효능감, 삶의 정체성 획득, 강한 생활력과 건강의 중요성 인식, 인간과 삶에 대한 성숙한 이해 등이 개인적 차원의 성장이었으며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복지나 지원제도에 대한 지식이 많이 생기고,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전문가들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생겼다고 하였다.

나에게 가족돌봄이란 재수하는 것과 같다. 인생에서 하고나면 많은 교훈을 얻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권장하고 싶지 않은..... (1)

(가족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너무 힘들었는데..... 다 이겨냈으니 앞으로 나는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2)

(간병생활) 속에서 뭐라도 견져보자, 내 젊음과 청춘을 다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 느리게 가고 있을 뿐이야라고 생각한다. (4)

퍼즐을 100조각 맞춰야 하는데 이제 3-4조각 맞춘 느낌. 이걸 모두 그래도 내가 해낸 것이다. 맨땅에 헤딩해가며, 나머지 조각들은 맞추기 좀더 쉬워지겠지? (7)

④ 돌봄과 나의 미래

여성참여자들의 경우 가족돌봄과 자신의 미래나 진로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진로를 가족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나 사회복지로 선택하였으며(3,6,10),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 전공을 변경하였다(11). 관련 진로로 취업한 경우 가족돌봄 경험이 직업 전문성에 도움이 되었고 가족돌봄으로 표창을

받기도 하고 관련 공모전 참여 등을 통해 가족돌봄 경험을 경력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자조집단에 참여하는 경우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 공청회나 정책 제안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에게 가족돌봄 경험은 개인의 심리적 정체성을 넘어서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가족돌봄을 개인적 불행에 가두지 않고 사회적 노동으로서 연결하여 진로를 모색하고, 더 나아가 가족돌봄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언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엄마 돌봄을 통해 나의 진로를 만들어갔다. 엄마의 돌봄을 통해 나의 진로 설정으로 이어졌다. (6)

넘어져도 동전을 쥐고 일어나라는 말이 있는데.....동생 때문에 진로가 결정되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연결시켜보려고 한다. (10)

내 인생이 좀 지속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진로를 그렇게 설정했다. 어차피 언니를 안고 가야 된다면 최대한 가능한 쪽으로 생각해야 하니까.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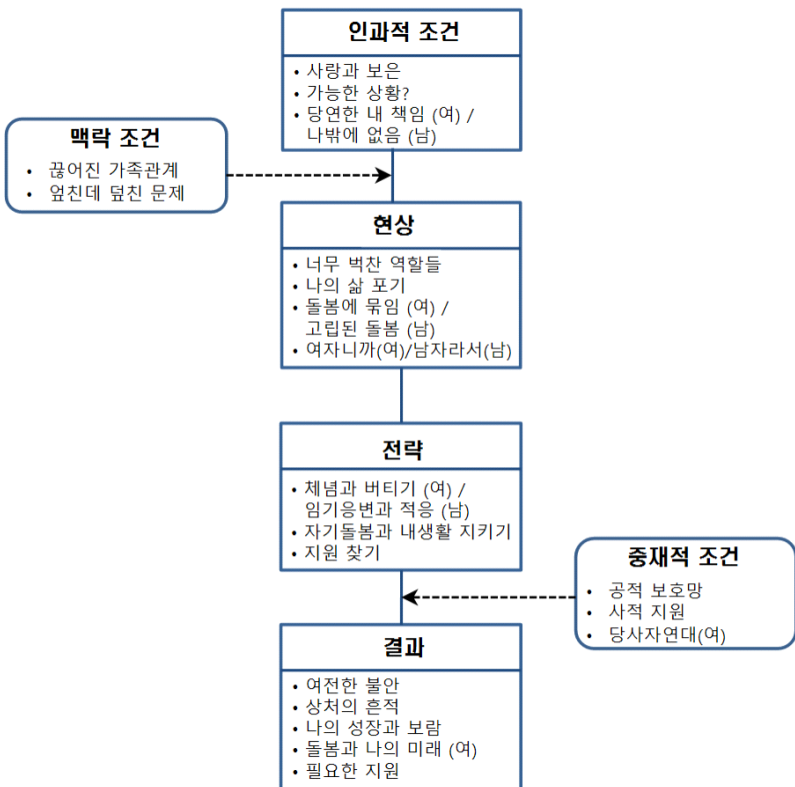
⑤ 필요한 지원

조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돌봄 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가장 필요한 지원은 경제적(생계) 지원이었으며, 이는 돌봄수당이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청년기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 등으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로 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와 시간 연장이 많이 제안되었으며, 돌봄이 어려운 정신장애인이거나 중증 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욕구도 높았다. 청년정책 대상에 가족돌봄청년이 포함되어야 하며, 돌봄대상이 아닌 돌봄청년을 위한 서비스(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제공, 서비스 안내와 정보제공, 찾아가는 서비스와 전담 창구 설치, 가족돌봄 휴가 확대, 여가 및 문화 지원 등)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더 나아가 취업시 돌봄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 가족돌봄청년의 군입대 면제나 연기, 대체복무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취업할 때 공백으로 남아있고, 스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취업할 때 가족돌봄에 대한 가산점, 경력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노력을 할만큼 했고, 남들이 자격증 딸 때 가족돌봄을 했으니까. (6)

2) 패러다임 모형 분석

축 코딩을 통해 근거자료에 의해 도출된 주제 묶음을 재배치하고 각 범주들을 중심으로 주제들간의 관계를 정렬하고 조직화함으로써 가족돌봄 청년의 돌봄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였다(〈그림 1〉). 패러다



〈그림 1〉 가족돌봄청년의 성별 돌봄 경험 패러다임 모형

임 모형은 앞에서 제시한 범주들과 주제 묶음을 체계적으로 재배치하여, 현상을 있게 하는 주체의 인과적 조건과 이를 둘러싼 환경적 상황 조건으로서의 맥락조건, 핵심 현상, 개인의 대응 방식으로서의 전략, 이를 지지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중재적 조건, 그리고 주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서의 결과를 보여준다.

패러다임에서 중심 현상은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으로 ‘너무 벅찬 역할들과 ‘나의 삶 포기’, 여성의 ‘돌봄에 묶임’과 남성의 ‘고립된 돌봄’이었다. 각각 ‘여자니까’, ‘남자라서’ 경험하는 가족돌봄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은 다중적인 역할 부담을 지고 학업과 진로, 사회적 관계, 자아실현을 포기한채 가족돌봄을 수행하였다. 여성의 경우 가족돌봄과 자신의 삶이 지나치게 결부되는 특성을, 남성은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돌봄을 수행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현상은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여기서 가족돌봄의 공통 인과적 조건은 ‘사랑과 보은’, 가족돌봄의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여성은 ‘당연한 내 책임’, 남성은 ‘나밖에 없음’이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책임 외에도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학생, 비취업자 신분이 가족돌봄의 조건이 되었고 여성은 가족돌봄의 우선적 책임에 대한 성역할 기대가, 남성의 경우 가족돌봄 자원의 결핍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한편, 맥락 조건은 현상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차이와 특성, 상호작용 등을 형성하는 상황과 여건들을 의미한다. ‘끊어진 가족관계’와 취약한 사회경제적 상태를 의미하는 ‘엮인데 뗀 문제’가 맥락조건으로 파악되었다. 이혼과 재혼, 가출과 별거, 가족 갈등에 의한 단절 등은 가족원들이 협력하여 돌봄역할을 분담하기보다 특정인에게 부담이 집중되도록 하는 조건을 형성하였으며, 실업과 산재사고, 과거부터 지속된 빈곤은 소득활동 중단과 의료비 지출 증가라는 이중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취약한 사회경제적 보

호망이 청년기 가족돌봄의 사회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참여자들은 가족돌봄을 수행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동원하였다. 이때 전략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 문제를 조절하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주체의 대응방식을 의미한다. 여성은 ‘체념과 버티기’, 남성은 ‘임기응변과 적응’이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공통적 대처방식으로 제시된 ‘자기돌봄과 내 생활 지키기’는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가족 돌봄과 분리하여 자신만의 생활을 지키면서 돌봄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모든 조사참여자들이 ‘지원 찾기’를 통해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였으나 지원 정책의 부재나 부적절함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얻기 어려웠다.

상황에 대한 주체의 대응방식으로서의 전략은 주체를 둘러싼 환경적 조건들인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결과로 나타난다. 공통의 중재적 조건으로는 ‘공적 보호망’과 ‘사적 지원’이 있었다. 생계지원과 돌봄서비스 지원 등은 가족돌봄과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보호망이 되었으며 친척이나 친구들의 도움도 존재하였다. 여성 참여자 중에서는 가족돌봄 관련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당사자 연대’로 상호지지와 사회적 돌봄자 정체성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돌봄 상황을 주변과 더 많이 공유하고 지지와 지원을 받는 반면, 남성들이 돌봄을 주변인과 공유하지 않는 특성이 중재적 조건과 결합됨으로써 결과에도 영향을 다르게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과로는 위태로운 돌봄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여전한 불안’, 가족돌봄이 남긴 부정적인 결과로서 ‘상처의 흔적’, 돌봄 속에서 얻게 된 긍정적인 결과로서 ‘나의 성장과 보람’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여성 참여자들 중에서 가족돌봄과 자신의 진로나 미래를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필요성을 ‘필요한 지원’으로 제시하였는데, 경제적 지원과 돌봄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지

원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가족돌봄의 동기에서 가족돌봄 자원의 부족과 함께 돌봄에 대한 성역할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였으며(‘당연한 내 역할’), 이러한 인과적 조건은 가족 내에서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가족돌봄 역할이 전수되거나 대체됨으로써 ‘돌봄에 묶임’이라는 가족돌봄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돌봄에 대한 성역할 규범과 돌봄 대상에 강하게 결부된 특성이 현재의 가족돌봄 경험을 사회적 진로와 연결시키거나 전문적 정체성으로 발현되는 결과(‘돌봄과 나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들은 돌봄 대상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정도가 크고 가족돌봄과 자신의 생활이 강하게 결속됨으로써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때로 심각하고 극단적인 정신건강 문제로까지 나타났다.

남성 참여자들의 가족돌봄의 동기는 대체로 가족돌봄 자원의 절대적 결핍(‘나밖에 없음’)이었으며 이러한 인과적 조건은 남성 돌봄자에 대한 불편한 시선, 가족돌봄과 취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기대의 차이, 남성 돌봄자의 희소성 등으로 가족돌봄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지 못하는 ‘고립된 돌봄’으로 나타났다. 남성참여자들은 개인적으로 가족돌봄 경험 자체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적극적으로 돌봄 경험을 공유하거나 사회적 정체성화하기보다는 돌봄의 주체임에도 주변화되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남성참여자들이 개인 전략에서는 적응적이었지만 중재적 조건에서 사적 지원이나 당사자 연대에 소극적인 내용과도 연결된다. 가족돌봄의 결과에서도 남성참여자들은 가족돌봄에 따른 개인적 ‘성장’과 ‘보람’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과 미래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연결시키기보다 가족돌봄 경험이 초래할 직업이나 진로의 지체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경험을 알아보고 이를 성별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부모나 조부모, 형제나 자매 등)을 주 15시간 이상 6개월 동안 넘게 혼자 돌보고 있거나, 돌봄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19~34세 청년 13명(여 9명, 남 4명)의 조사참여자에 대한 개별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실행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인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추출된 주제어를 주제 묶음과 범주로 구성하고,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가족돌봄은 우리나라의 가족구조 변화와 가족규모 축소에 따른 돌봄 자원 부족과, 돌봄을 초래하는 질병과 장애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지망이라는 환경 조건 속에서 개별가족에게 전가된 돌봄이 가족 내 권한과 위계상 더 약한 존재인 미성년자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에게 맡겨지고, 가족돌봄청년의 다중적 역할 수행을 통해 부담이 과부화된 상태로 수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돌봄이 젠더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나 가족관계 등의 역동에 의해 결정되며 권력위계가 낮은 사람이 가족돌봄을 담당한다(Kittay, 2001)는 것을 재확인 시켜준다. 가부장적 가족 내에서 며느리와 딸, 아내에게 집중되었던 가족돌봄 역할이 젠더와 연령, 가족 내 권력관계, 취업 상태와 소득, 주거상황 등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 결과가 청년의 가족돌봄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어느 시점에 가족돌봄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점에서, 가족돌봄청년은 도움이 필요한 예외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라기보다는 청년기에 돌봄을 수행하게 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당면한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들과, 가족돌봄에 대한 전생애 차원의 사회적 지원의 결여가 중첩된 결과 가족돌봄청년들의 과부화된 부담과 위태로운 삶으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둘째, 가족돌봄의 인과적 조건에서 젠더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하고 가족돌봄청년의 공통된 조건이나 동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의 가족돌봄의 동기 및 특성, 결과에서 젠더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돌봄의 성역할과 관련된 젠더 규범이 관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족돌봄의 동기에서는 여성이 성역할 기대로 ‘당연하게’ 돌봄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경우가 많았고, 돌봄 수행에서 가족돌봄과 돌봄 대상과 강하게 결속된 상태에서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가족돌봄과 결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과 지나친 결속으로 가족의 문제를 본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돌봄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도 더 크게 경험하여 가족돌봄의 부정적인 영향도 여성에게 더 다양하고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심층분석에서 여성이 집안일 부담이 높고, 정신건강 문제와 가족관계로 스트레스를 더 크게 경험하며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결과(이수영 외, 2023)와 일치한다. 특히 우울증, 공황장애, 중독, 자해, 자살사고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다수 경험하였는데, 이것은 2,30대 청년 여성의 자살 사고를 ‘노동 위험’, ‘가족 위험’, ‘돌봄 위험’의 세 가지 원인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이소진, 2023)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가족 위험’은 가족 내 가부장적 관계나 가족(부모)의 통제와 폭력을, ‘돌봄 위험’은 가정 내 간병과 가사노동이 성차별적으로 분배되면서 시간과 감정이 착취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이소진, 2023), 본 연구에서 여성 참여자들이 드러낸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는 ‘가족 위험’과 ‘돌봄 위험’이 중첩될 때의 위기를 보여준다. 한편, 가족돌봄 경험을 진로나 전문적 정체성 등 사회적 차원으로 연결시키는 경향은 여성들에게만 나타났다. 가족돌봄 경험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길을 모색한다는(“넘어저도 동전을 쥐고 일어나기”) 점에서 개인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여성들만 가족돌봄 경험을 사회적 진로로 연결시키고자 할 경우 개별 가족 내 돌봄의 여성화가 사회적 돌봄노동의 여성화로 이어지는 연

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셋째, 남성 참여자들의 가족돌봄 동기는 가족돌봄 자원의 부족이나 결핍으로, 상황적 요인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족돌봄을 수행하였으며, 주변과 연결되지 못한 고립된 돌봄 경험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돌봄 경험을 공유할 수 없고, 남성 돌봄자에 대한 불편한 시선, 취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남성 청년에 대한 사회적 기대 등으로 주변의 지지와 연결 없이 혼자 책임을 감당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남성 참여자들은 가족돌봄 결과 개인적 성장과 보람을 경험하였지만, 돌봄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돌봄 경험을 사회적 정체성화하기보다는 주변화되고 위축됨으로써 돌봄 경험에서 소외되어 진로나 직업에 대한 불안감과 박탈감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가족돌봄청년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계기가 되었던 2021년 대구 간병살인 사건은 고립된 남성청년의 가족돌봄의 극단적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남성청년의 고립된 돌봄은 또 다른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다. 남성 청년들의 고립되고 주변화된 가족돌봄 경험은 자녀 양육에 참여한 남성들의 돌봄 경험이 사회적 차원의 정체성 변화(‘돌보는 남성성’, ‘하이브리드 남성성’ 등으로 표현된)와 성별분업 해체의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것과 대비된다. 자녀 양육 참여 남성들의 돌봄은 아동양육수당, 유급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화된 양육 지원을 매개로 남성육아 콘텐츠의 유행이 더해져 사회적 관심과 지지 속에 촉진되었다. 반면에 남성 청년들의 돌봄 경험은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인생에서 하고나면 많은 교훈을 얻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권장하고 싶지 않은”(1) 개별적 경험에 머물러있었다. 남성 청년의 가족돌봄 경험이 사회적 정체성으로 통합되어 ‘돌보는 남성성’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돌봄 지원과 더불어 돌봄 경험의 확산과 공유를 통해 그들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조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청년정책의 다양화, 가족돌봄 경력의 사회적 인정 등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통찰을 보여주었다. 조사참여자들은 가족돌봄의 공적 지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돌봄서비스의 미비와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요건, 결혼과 출산 및 취업에만 집중된 청년 관련 지원 정책들을 통해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보다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전가하려는 국가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경험하였다. 조사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청년에게 부여된 특정한 역할(학업, 취업, 결혼과 출산 등) 밖에서 가족돌봄을 수행하면서 복지시스템을 비롯한 공적 지원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 나아가 가족돌봄자로서의 권리의식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여성 참여자들은 의식 변화를 통해 가족돌봄청년 자조집단이나 연대활동 등 청년가족돌봄자로서 사회적 발언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돌봄 경험을 통한 비판적 통찰과 의식 변화는 돌봄자들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사적 돌봄의 사회적 의미를 인식하는 ‘돌봄자로서의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 of carers)’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최희경, 2014). 본 연구에서 조사참여자들이 보여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의식과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당사자로서의 경험에 기반한 발언과 활동은 개별가족에게 전가된 돌봄을 공적 의제로 전환하여 돌봄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고 가족돌봄자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관련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아동, 청년, 노인 등 특정 인구집단을 분절적으로 지원하기보다 가족돌봄을 전생애적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과 돌봄(혹은 일과 가족)의 양립에서 더 나아가 돌봄과 노동의 통합이 필요하다. 돌봄과 노동의 통합은 인간의 삶을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조직하여 노동에 과부하되었던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새롭게 배분하는 시민성의 재구성을 의미한다(최희경, 2018). 그러나 일자리 감소와 저성장 전망으로 우리나라 청년의 생애전망이 남, 녀 모두

노동중심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예측(김은지 외, 2019)을 감안하면 노동 중심적 생애경로를 안정적으로 추구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은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경력상 불이익을 경험하고 장기적으로 취업시장에서의 배제와 주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함선유, 2017; Day, 2019; Hamilton and Adamson, 2013). 따라서 제도적 지원과 기회 제공을 통해 가족돌봄 경험과 사회적 진로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족돌봄의 경력화, 혹은 사회적 일자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취업 경력과 마찬가지로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 혹은 보상을 통해 돌봄과 노동의 연계,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가족돌봄의 사회적 경력 인정, 가족돌봄 수당 및 연금 크레딧 제공, 가족돌봄자에 대한 우선적 취업 지원 등이 현실적 방법으로 거론된다(조기현, 2022; 최희경, 2011).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돌봄 경험을 사회적 진로와 적극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가족돌봄의 경력화나 사회적 일자리화가 제도화된다면 성별과 상관 없이 다양한 인구집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에 참여함으로써 돌봄의 성별분업 해체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년 지원정책이 가족돌봄청년 등 다양한 조건과 욕구를 가진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다양화하여야 하며, 가족돌봄청년 지원에서 성인지적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지원정책은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생애과업을 전제로 취업과 결혼, 출산 지원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나 사회가 청년이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경로이며, 실제 청년들은 다양한 생애경로와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요구에 기반한 다양하고 세분화된 청년 지원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은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성인지적 고려에 기반한 지원과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로 돌봄의 동기과 수행방식, 어려움과 대처방식이 다르기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성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가족관계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상담 및 치료 지원이 필요하며, 직접적인 일상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과 위기상황에서의 긴급 돌봄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주거 지원을 통해 돌봄 대상이나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과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남성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고립된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특히 또래 가족돌봄청년과의 연계 및 자조집단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을 군 복무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대체복무제 등도 남성 가족돌봄청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돌봄청년의 고립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발언권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가족돌봄자로서의 사회적 정체성과 조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돌봄에 있어 돌봄자들의 지역적 연계와 지지집단 구성은 가족돌봄자 지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Nolan, Grant and Keady, 2006; Zimmerman, Litt, and Bose, 2006). 가족돌봄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고 단절된 가족돌봄자들에게 사회적 연결을 제공하고 당사자들의 자발적 연대와 조직화가 이루어진다면, 가족돌봄은 개별 가족의 특정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집단적 의미를 가진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 조직화된 가족돌봄자들은 당사자로서 돌봄 경험을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이에 기반하여 적절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도화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의존자에 대한 돌봄을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고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주변화, 최소화하고자 하는 왜곡된 사회복지 담론에 도전하는 정치적 주체의 역할을 한다(최희경, 2014; McLaughlin et al., 2008). 따라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많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이 금전이나 서비스 지원과 같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의 조직화와 연대사업을 통해 사회적인 당사자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하겠다.

가족돌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전체 시민의 일이 된다면 가족돌봄자를 지원하는 사회적 정책과 법규가 제정될 수 있다. 199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들의

연대와 조직화가 시작되었고, 장애인이나 특정질환 가족돌봄자들의 영향력과 활동력이 강화된 결과 각국에서는 이들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고 이들의 요구로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정, 실행하였다.⁶⁾ 가족돌봄을 개별 가족에게 전가하거나 가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돌봄을 공적 제도와 사회정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젠더나 세대, 취업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모든 시민이 가족과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진정한 ‘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3명의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의 돌봄 경험을 인과적 조건과 맥락 조건, 현상과 주체의 대처전략, 중재적 조건과 결과로 체계화하여 이를 성인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조사참여자들 중 여성의 수(9명)가 남성(4명)보다 많았기 때문에 분석대상 자료의 분량과 내용의 다양성이 성별로 불균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관련 기관의 도움으로 조사참여자를 모집하였기에 조사참여자 중 공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10명)였다. 공적 지원을 받는 경우 가족돌봄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편이며, 다른 가족돌봄청년과의 연대나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제한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 영국의 1995년 돌봄자 법안(Cares Act of 1995), 2003년의 지역사회돌봄법(Community Care Act), 2004년의 돌봄자 기회균등법(Carers Equal Opportunity Act) 등은 가족돌봄자의 욕구와 권리를 명시하고 가족돌봄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체계화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다(최희경, 2014).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관계부처합동. 2022. 『가족 돌봄 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 세종: 관계부처 합동.
- 권지성·좌현숙·최서경. 2023. “가족돌봄청년의 경험에 대한 맥락-패턴 분석-대리가 정위탁 보호아동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의 전환.” 『한국가족복지학』 70(2): 5-42.
- 글래서, 바니·스트라우스, 안셀름. 2017. 『근거이론의 발견: 질적 연구 전략』 이병식, 박상욱, 김사훈 (역). 서울: 학지사.
- 길태영. 2023. “영 케어러의 가족돌봄 경험: 질적 해석적 메타통합(QIMS) 적용.” 『한국국제학』 5(6): 227-255.
- 김서영·이재립. 2023.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과 가족체계 역동.”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8(1): 3-32.
- 김순남. 2021. “‘남자로서의 당연한 삶은 없다’: 20-30대 남성들의 ‘성찰적 개인화’와 새로운 관계적 삶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7(1): 155-189.
- 김아롱·정익중. 2023. “영 케어러의 가족 돌봄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70(1): 77-105.
- 김엘리. 2020. “20-30대 남성들의 하이브리드 남성성.” 『한국여성학』 36(1): 139-173.
- 김은지·송효진·배호중·선보영·최진희·황정미. 2019.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연구(Ⅰ):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승·이정은·이의정. 2022. 『해외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및 청년(young carer) 지원제도 비교 연구』 서울: 서울시 복지재단.
- 문현아. 2021. “돌보는 남성성의 가능성 모색: 남성의 가족돌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7(3): 33-63.
- 석재은. 2020. “비혼 딸의 부모돌봄 경험이 말하는 것들: 부정의(不正義)한 독박 돌봄으로부터 돌봄 민주주의를 향하여.” 『노인복지연구』 75(4): 117-141.
- 선미정·장정은·김진영. 2022.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13(3): 33-67.
- 시부야 도모코. 2021. 『영케어러: 돌봄을 짊어진 아동청년의 삶』. 박소영 (역). 서울: 황소길음.

- 안숙영. 2018. “돌봄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여성학』 34(2): 1-32.
- 여성가족부,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서울: 여성가족부.
- 윤이재. 2020. 『아흔살 수퍼우먼을 지키는 중입니다』. 서울: 다다서재.
- 이소진. 2023. “성별화된 위험이 이야기하는 존재론적 불안: 청년여성의 자살생각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9(3):37-72.
- 이수영 · 민소영 · 장연진 · 양효안. 2023.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심층분석』.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 이윤경 · 김세진 · 황남희 · 임정미 · 주보혜 · 남궁은하 · 이선희 · 정희 · 강은나 · 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정현 · 김정현 · 우아영 · 윤연숙, 2022. 『2022년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영 케어러 케어링’ 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보고서』. 서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조기현. 2019. 『아빠의 아빠가 됐다. 가난의 경로를 탐색하는 청년보호자 9년의 기록』. 서울: 이매진.
- _____. 2022. 『새파란 돌봄』. 서울: 이매진.
- 지은숙. 2017. “비혼여성의 딸노릇과 비혼됨(singlehood)의 변화: 일본의 부모를 돌보는 딸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50(2): 189-235.
- 최윤진 · 김고은. 2022. “영 케어러(Young Carer)의 돌봄 경험에 대한 탐색.” 『청소년학연구』 29: 155-184.
- 최희경. 2011. “노인 돌봄과 노동의 양립을 위한 가족 지원 정책 연구.” 『한국사회정책』 18(4): 271-298.
- _____. 201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참여로서의 가족 돌봄자 운동조직 사례연구: 영국 Carers UK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1(3): 37-70.
- _____.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돌봄 정의.” 『한국사회정책』 25(3): 103-130.
- 통계청. 2022. 『장래인구추계』. 서울: 통계청.
- 트론토, 조앤. 2014. 『돌봄 민주주의』. 김희강 · 나상원(역). 서울: 아포리아.
- 패짓, 테보라.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유태균 (역). 서울: 나남.
- 함선유. 2017. “비공식 돌봄과 시장 노동 참여: 일상생활활동에 제약이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 『사회보장연구』 33(4): 295-321.
- _____. 2023. “가족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3(5): 34-46.
- 홍현미라 · 권지성 · 장혜경 · 이민영 · 우아영. 2010.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서울: 학지사.

(2) 국외문헌

- Addo, I. Y., Aguilar, S., Judd-Lam, S., Hofstaetter, L., and Poon, A. W. C. 2021. "Young Carers in Australia: Understanding Experiences of Caring and Support-Seeking Behavior," *Australian Social Work* 77(2): 1-14.
- Brewer, L. 2001. "Gender Socialization and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Elder Caregivers," *Journal of Aging Studies* 15(3): 217-235.
- Becker, S., and Sempik, J. 2019. "Young Adult Carers: The Impact of Caring on Health and Education," *Children & Society* 33(4): 377-386
- Boumans, N. P., and Dorant, E. 2018. "A Cross Sectional Study on Experiences of Young Adult Carers Compared to Young Adult Noncarers: Parentification, Coping and Resilience,"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32(4): 1409-1417.
- Cancian, F. M and Oliker, S. J. 2000. *Caring and Gender*, Oxford: Altamira Press.
- D'Amen, B., Socci, M., and Santini, S. 2021, "Intergenerational Car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Young and Young Adult Caregivers of Older People," *BMC Geriatrics* 21(1): 1-17.
- Day, C. 2019. "An Empirical Case Study of Young Adult Carers' Engagement and Success in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25: 1597-1615.
- Dwyer, J. W. and Coward, R. T. 2002. "Gender, Family and Long-Term Care of the Elderly". In J. W. Dwyer and R. T. Coward (Eds.)(4th. ed.) *Gender, Families, and Eldercare*, New bury Park: Sage. 35-58.
- Finley, J. 1995. "Motivators and Inhibitors of Attitudes of Filial Obligation toward Aging Parents," *The Gerontologist* 28: 112-119.
- Greene, J., Cohen, D., Siskowski, C., and Toyinbo, P.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aregiving and the Mental Health of Emerging Young Adult Caregivers," *The Journal of Behavioral Health Services & Research* 44(4): 551-563.
- Hooyman, N. and George, J. 2005. *Feminist Perspectives on Family Care: Policies for Gender Justice*, (4th. ed.), New York: Sage Publications.
- Kittay, E. (2001). "When Caring Is Just and Justice is Caring: Justice and Mental Retardation," *Public Culture*, 13(3): 557-579.

- Hamilton, M.G, and Adamson, E. 2013. "Bounded Agency in Young Carers' Life Course-Stage Domains and Transitions," *Journal of Youth Studies* 16: 101-117.
- Lewis, J., and Giullari, S. 2005. "The Adult Worker Model Family, Gender Equality and Care: The Search for New Policy Principles and the Possibilities and Problems of a Capabilities Approach," *Economy and Society* 34(1): 76-104.
- McLaughlin, J., Goodley, D., Clavering, E. K, and Fisher, P. 2008. *Families Raising Disabled Children: Values of Enabling Care and Social Justice*, Basingstoke: Palgrave.
- Moore, T., and McArthur, M. 2007. "We're All in It Together: Supporting Young Carers and Their Families in Australia,"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15: 561-568.
- Nolan, M., Grant, G. and J. Keady. 2006. *Understanding Family Care*. (3rd, ed.).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Rose, R., and Cohen, K. 2010. "The Experiences of Young Carers: A Metasynthesis of Qualitative Findings," *Journal of Youth Studies* 13: 473-487.
- Stamatopoulos, V. 2019. "The Young Carer Penalty: Exploring the Costs of Caregiving among a Sample of Canadian Youth," *Child & Youth Services* 39(2-3): 180-205.
- Ware, T., Matosevic, T. Hardy, B., Knapp, M., Kendall, J. and Forder, J. 2003. "Commissioning Care Services for Older People in England: The View from Care Managers, Users and Carers," *Ageing and Society* 23: 411-428.
- Zimmerman, M. K, Litt, J. S. and Bose, C. E. 2006. "Valuing Carework through Policy and Culture: Communities, States, and Supranational Institutions." In Zimmerman, M. K, Litt, J. S., and Bose, C. E.(Eds.) *Global Dimensions of Gender and Care Work*,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87-304.

(3) 기사 및 인터넷 자료

- 경향신문. "영 케어러 첫 실태조사'총체적 부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회의0회." <경향신문>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0021042001#c2b>
 (검색일: 2023.11.05.)
- 한겨레신문. "가족돌봄청년, 우울감 7배 이상 높아." 2023.04.26.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89465.html#ace04ou>
 (검색일: 2023.10.13.)

Abstract

A Gender Analysis Study on Care Experiences of Young Adults Caring for Family

Choi, Hee-Kyung
(Silla University)

In this study,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used with 13 young adults aged 19 to 34 (9 female, 4 male) who are responsible for family care in order to examine their care experiences and analyze them by gender. Adopting the grounded theory research method, which 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extracted themes were organized into bundles, categorized, and presented by gender.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presented that the heavy burdens of family care passed on to young adults being carried out in an overloaded state with lack of care resources and a poor socioeconomic safety net. In addition to the common conditions and motivations of young adults caring for family, gender differences emerged in the motivations, characteristics, and results of care, and it was confirmed that gender norms related to gender roles in care are being implemented. Gender role expectations were dominant in women's motivation for care, and in the performance of care, while being strongly tied to family care, there was a tendency to connect it not only to the present but also to social dimensions such as future careers and professional identities. Male participants were characterized by isolated care experiences that failed to connect with other people, and were unable to integrate into their social identity in a marginalized and personalized care experiences. Insights from the participants were revealed regarding social support for family care, diversification of youth policies, and social recognition of family care

experience.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integration of labor and care through career-orientation of family care,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young adults and gender-sensitive supports for young adults caring for family, and solidarity and organization of young adults caring for family.

Key words: Young Gender Analysis, Adults Caring for Family,
Care Experiences, Grounded Theory Research Method

- 투 고 일 : 2024년 2월 21일
- 최초심사일 : 2024년 4월 8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4월 27일

『여성학연구』 간행규정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여성학연구』의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발행)

『여성학연구』의 발간은 연 2회로 하며,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에 발간한다.

제3 조 (원고내용)

- (1) 『여성학연구』에 게재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 (2) 『여성학연구』에 게재하는 원고의 주제는 학문 분야별 여성/젠더 관련 현안 및 문제, 또는 성평등에 기여하는 여성/젠더관련 논문이어야 한다.
- (3) 『여성학연구』의 원고는 연구논문, 기획논문, 특집, 서평 등으로 구성된다.
 - ① 연구논문 : 이론적 분석이 깊이 있게 다루어진 논문
 - ② 기획논문 : 여성연구소 기획 하에 집필된 연구논문
 - ③ 특집 : 대답이나 좌담 등 여성연구소 기획의 결과물
 - ④ 서평 : 최근 3년간 발행된 여성주의 관련 단행본, 간행물, 논문에 대한 서평

제4 조 (논문의 투고자격)

- (1) 연구논문 또는 기획논문은 석사 학위 이상 소유의 여성/젠더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가 투고할 수 있다.
- (2) 한 호에 투고되는 연구논문 또는 기획논문의 수는 주저자 당 하나로 제한한다. 다만 공동저자인 경우는 두 개까지 가능하다.

제5 조 (원고투고 및 접수)

- (1)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나 3월 1일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2호, 9월 1일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 1호의 간행 일정에 맞추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2) 원고는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 (<https://pusanwomen.jams.or.kr>)을 통해 제출한다. 원고 파일 제출 시 투고자는 반드시 접수 여부와 원고 내용의 손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주 소 : (609-735)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공동연구소동 715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

- 전 화 : 051) 510-1893

- 이메일 : women@pusan.ac.kr

- (3) 원고 투고 시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논문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복수의 저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저자의 기여도 순서대로 이름을 제시해야 한다.
- (4) 원고내용에는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원고 내용에 투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5) 원고는 반드시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에 입각하여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6)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제6 조 (편집위원회)

- (1) 부산대 여성연구소에서는 『여성학연구』의 편집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한다.
-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 가운데서 여성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4) 편집위원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 ① 원고접수
 - ② 심사위원 위촉
 - ③ 투고된 연구논문 및 기획논문의 심사
 - ④ 관련 규정의 제·개정
 - ⑤ 기타 『여성학연구』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중요사항
- (6)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임포함)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 조 (원고심사절차)

- (1)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가 심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원고작성요강에 맞지 않거나 중요한 부분이 빠져 완성된 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혹은 『여성학연구』의 성

격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심사대상원고의 저자명은 익명으로 하고 제목을 수합하여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회부한다.
- (3) 편집위원회는 각 원고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4)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제8 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원고를 심사한다.

- (1) 연구의 독창성
- (2) 연구방법의 타당성
- (3) 전개의 논리성
- (4) 문장력
- (5)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
- (6) 젠더연구 분야에 대한 기여도
- (7) 형태사항의 적절성(원고분량, 도표, 요약 등)

제9 조 (심사결과판정)

- (1) 심사위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하며, 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2) 각 심사의견에 따른 심사결과판정은 다음에 의한다.
 - ①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심사결과
3				게재
2	1			게재
2		1		수정 후 게재
2			1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게재
1	2			수정 후 게재
	2	1		수정 후 게재
1	1	1		수정 후 게재
1	1		1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
	2		1	수정 후 재심
1		1	1	수정 후 재심
1		2		수정 후 재심
	1	1	1	수정 후 재심
	1	2		수정 후 재심
		2	1	게재 불가
			3	게재 불가
1			2	게재 불가
	1		2	게재 불가
		1	2	게재 불가

*숫자는 심사위원의 수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원고에 대해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며, 수정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수정본과 심사평 반영 사항 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의 게재 여부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초심			비고
심사자 A	심사자 B	심사자 C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세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두 명에게 ‘게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기존 심사위원 외에 제3자 한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게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한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게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두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한 명에게 ‘게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두 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두 명이 모두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확정. 한 명만이 게재 판정할 경우 편집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며, 다음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제3자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의뢰를 할 수 있다.

- (3) 기타 게재순서,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4)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등급에 따라 일부논문은 다음호로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 (수정 및 이의신청)

- (1)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수정한 원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수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 (3) 심사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원고는 재심 및 재투고가 불가능하며,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4)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심사
에 대한 명시적인 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
의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결과판정이 부당한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판정을 재고하고,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원고 편집)

- (1)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게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원고에
한해 발간을 위한 교정 교열 및 편집 작업을 진행한다.
- (2) 게재될 원고의 초고는 저자가 하며, 저자는 발간 전에 최종본 원고를
확인하고 원고 내용에 의도하지 않았던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편집위원회에 편집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 (원고발표)

최종 게재 원고는 '부산대 여성연구소' 홈페이지(<http://mypage.pusan.ac.kr/women>), KCI, KISS에 PDF 파일 형식으로 원문을 공개하므로, 이에 대
해 투고자는 동의하여야 한다.

제13조 (판권)

『여성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가 소유한다.

(제정) 2007.10.31.

(1차 개정) 2010.06.30.

(2차 개정) 2018.04.30.

(3차 개정) 2019.06.30.

(4차 개정) 2022.10.31.

(5차 개정) 2024.04.30.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

『여성학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미발표된 것으로 다음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분량 및 구성〉

1. 한글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150매로 하며, 200매를 넘을 수 없다.
2. 영어 논문의 분량은 10,000단어 내외로 하며, 15,000단어를 넘을 수 없다.
3. 논문 편집 후, 30쪽을 넘는 경우 1쪽 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4. 논문의 제목 및 저자 이름, 소속은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며 논문에는 목차, 국문초록과 국문주제어(6개 내외), 영문초록(Abstract)과 영문주제어(Key words)(6개 내외)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문요약은 한 단락으로 작성하며 300단어 내외로 한다.
5. 서평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로 한다.
6. 원고의 구성은 논문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초록, 영문주제어의 순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원고 편집 양식〉

1. 원고는 한글(1997 이후판) 프로그램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2. 원고용지는 백색의 A4용지를 세로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 그림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여백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위쪽: 35mm, 아래쪽: 35mm, 좌측: 30mm, 우측: 30mm.
4. 글자의 크기는 10, 장평은 95, 글자 간격(자간)은 0, 줄 간격은 160으로 하고, 글자체는 신명조를 사용한다.
5. 본문에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에는 한 글자(혹은 두 칸) 뒤로 들여 쓰기를 한다.
6. 쪽 번호는 원고 하단의 중앙에 위치시키며, 줄표 없이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다.
7. 본문의 소재목은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1, 1), (1)로 구분하며, 더 세부적인 목차는 ①로 표기한다.

〈주석 및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인용한 문헌은 각주가 아니라 본문주에서 제시한다.
2. 본문에서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구체적인 부분을 인용 또는 참고할 때 :
홍길동(1997: 127) 또는 (홍길동, 1997: 127)
 - 2) 전반적인 참고로 페이지 제시가 불필요할 때 :
홍길동(1997) 또는 (홍길동, 1997)
 - 3) 저자의 이름이 외국어인 경우 처음에만 원명을 괄호 속에 넣고, 그 이후에는 한글표기만 한다.
한글표기와 원명 모두 성(姓)만 표기한다.
예) 맥किन(MacKinnon)은 ...
 - 4) 인용되는 도서명이 여러 권인 경우에는 책이름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9; 허난설현, 2000)

- 5) 저자가 다수일 경우에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고 4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만 표시하고 그 외의 저자는 ‘외’ 또는 ‘et al.’로 나타낸다.

예) 허난설현 외(2001) 또는 Cornell et al. (1999)

- 6) 동명 저자의 서로 다른 연구가 본문에 포함될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출판 연도를 구별하여 표기한다. 저자의 성(姓)만 표기한 서양 문헌의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저자의 성(姓) 앞에 이름의 첫 글자를 기입할 수 있다.

예) 허난설현(1992)은...

예) A. Dworkin(1997)과 R. Dworkin(1996)의 차이는...

3. 본문주에서 국내·외 문헌을 함께 인용할 때 국내문헌을 먼저 제시하고 국외문헌을 제시한다. 국내·외 문헌 모두 먼저 간행된 문헌부터 제시한다.
4.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원래의 저술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주(footnote)에서 서지사항을 제시한다.
5.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 또는 언급된 것에 한하며, 다음의 예에 따라 작성한다.
 - 1) 첫째, 국내에서 출간된 문헌(번역문헌 포함)은 저자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둘째, 국외문헌은 저자 성의 알파벳순으로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기사나 인터넷 자료를 제시한다.
 - 2) 동일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 출판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동일 저자의 문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년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 3) 저자명이 영문인 경우 성(姓)을 먼저 쓰고 쉽표를 찍는다. 단,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저자명만 이 지침에 따르고 두 번째부터는 영문식으로 표기한다.

- 4) 따옴표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 경우 닫는 따옴표 안에 찍는다.
- 5) 단행본이나 잡지에 실린 논문은 맨 끝에 페이지를 명기한다.
- 6) 참고문헌의 종류에 따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단행본

- 국내문헌 -

조혜정. 1998.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하딩, 샌드라. 2009.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조주현(역). 서울: 나남출판.

- 국외문헌 -

Andersen, Margaret L, 1988, *Thinking About Women: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ex and Gender*, N.Y. : Macmillan Pub. Comp.

(2) 정기간행물의 논문

권영자. 1988. “서비스업 여성종사자에 관한 연구.” 『여성 연구』 6(2): 5-33.

Betz, Michael and Lenahan O’Connell, 1989. “Work Orientations of Males and Females.” *Sociological Inquiry* 59(3): 318-330.

(3) 편집한 책의 논문

조옥라. 1985. “사무직 여성의 일, 사회관계,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편). 『한국여성과 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04-129.

Huber, John, 1986, “A Theory of Gender Stratification.” Laurel Richardson and Verta Taylor(eds). *Feminist Frontiers II*. N.Y.: Random House. 10-19.

(4) 학위논문

하정화. 2010. “부산 여성기자의 젠더 경험과 여성주의 실천 연구: 지역 여성주의의 가능성 모색.” 부산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5) 학술대회 발표문

장명선. 2008. “적극적 조치의 합헌적 요건.” 한국젠더법학 회 ·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제7차 한국젠더 법학회 학술대회. 「젠더법학에서의 성평등의 이론과 실제(Ⅲ)」 자료집(2008.4.12.).

(6) 신문기사·잡지

진혜민. 2019. “불꽃페미 ‘여성의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여성신문〉. 2019.7.3.

Walker, L. A. “The Battered Woman.” *New York Times*, 23 July, 1993.

(7) 통계 자료

통계청. 2017. 〈가구동향조사〉.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 인터넷 자료

여성부. 2008. “여성 e news.” <http://www.mogef.go.kr>

[검색일: 2008.4.16.]

진주원. 2019. “김복동 운동가·서지현 검사, 3.8세계여성의날 수상.”

〈여성신문〉. 2019.3.7.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66> [검색일: 2019.7.5.]

6. 이 원고작성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편집 위원회에서 발행한 〈여성학연구〉 기존 호의 관례에 따른다.

(제정) 1989.10.31.

(1차 개정) 2010.06.30. (2차 개정) 2018.04.30.

(3차 개정) 2019.06.30. (4차 개정) 2020.09.30.

『여성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 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부산대 여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여성학연구』를 비롯한 연구결과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투고한 필자, 편집위원(회),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연구자의 윤리규정)

1. 간행규정 제3조(원고의 내용) 1항에 따라, 『여성학연구』에 게재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계획이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4) 이미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아무런 명시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3. 연구자는 자신의 원고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 4.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겐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연구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제3 조 (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 그리고 심사위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3. 편집위원회는 편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윤리 위원회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제4 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 1.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윤리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5 조 (연구윤리 위원회)

1.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는 즉시 5인 이상으로 연구윤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그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저자에게는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4. 연구윤리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5. 연구윤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연구윤리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회의록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의견 청취 결과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 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구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및 비밀 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 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 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내용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며 조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 (1) 해당 논문을 학술지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논문을 취소한다.
- (2) 부산대 여성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 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9 조 (부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 2.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7.10.31.

(1차 개정) 2019.06.30.

부산대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제34권 제2호 원고모집

『여성학연구』는 1988년 설립된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가 1989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로서, 2017년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승격되었습니다.

오는 2024년 10월 31일에 발행할 제34권 제2호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원고는 반드시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에 따라 작성해 주시고, 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투고자격 : 석사 이상
- 원고주제 : 학문 분야별 여성/젠더관련 현안 및 문제
또는 성평등에 기여하는 여성관련 논문
- 접수마감 : 2024년 9월 1일
- 심 사 료 : 6만원 (재심사시 심사료가 추가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01-0231-3621-41 부산대 여성연구소
(게재시 일반논문은 10만원, 연구비 지원논문은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투고방법 : 부산대 여성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
(<https://pusanwomen.jams.or.kr>)에서 회원가입 후 논문제출
- 연 락 처 : 부산대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
전화 (051)510-1893, 팩스 (051)581-2478
홈페이지: <http://women.pusan.ac.kr>
웹메일: women@pusan.ac.kr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

편 집 위 원 장	김남이(부산대학교 한문학과)
편 집 위 원	김경연(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보명(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김수정(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애령(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김인선(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문재원(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박미선(한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백영경(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신지은(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안숙영(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여성학과)
	추주희(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황정미(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신기영(お茶の水女子大學 人間文化創成科學研究科)
	Nam Yunju (Univ. at Buffalo, School of Social Work)
편 집 간 사	박수정(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여성학연구 제34권 제1호

인 쇄 | 2024년 4월 30일

발 행 | 2024년 4월 30일

발 행 인 | 김남이

발 행 처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주 소 |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051-510-1893)

홈페이지 | <http://women.pusan.ac.kr>

이 메 일 | women@pusan.ac.kr

인 쇄 처 |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23

ISSN 1598-950X

